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076-10

2013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2013.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제 I 장 총괄편	1
1. 2013년도 시행계획 개요	3
2. 분야별 주요 추진계획	4
3. 2013년도 투융자 계획	11
제 II 장 부문별 시행계획편	17
1. 보건·복지 증진	19
1-1.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	21
1-1-1-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23
1-1-2-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26
1-1-3-1.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	29
1-1-3-2. 수산인 재해공제 지원	32
1-1-3-3.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35
1-1-4-1. 농작업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협력기반 조성 ...	38
1-1-4-2.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42
1-1-4-4.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및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	46
1-1-4-5. 농작업재해예방 체험매체 개발 및 정보화 지원	50
1-1-5-1.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舊농부증예방 지원방안 마련)	54
1-2.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56
1-2-1-1.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58
1-2-1-4.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61
1-2-1-5.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64
1-2-1-6.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	67
1-2-1-7. 농어촌 보건의료기술지원	69
1-2-1-8.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71

1-2-1-9. 분만취약지 지원	74
1-2-2-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舊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76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82
1-3.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 지원	84
1-3-1-1.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87
1-3-2-1.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	89
1-3-2-2. 영세·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	92
1-3-2-3. 경영이양 직불제	95
1-3-3-1. 농어촌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여건 개선	98
1-3-3-3.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05
1-3-3-4.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109
1-3-3-5.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112
1-3-3-6.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16
1-3-3-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118
1-3-4-1. 다문화 가정 농업교육	119
1-3-4-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122
1-3-4-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125
1-3-5-1. 취약농가 인력지원	128
1-3-5-2. 농업인 복지시책 교육·홍보 강화	131
1-4. 농어촌의 능동적 복지기반 강화	133
1-4-1-1.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134
1-4-3-1. 농어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138
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141
2-1.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143
2-1-1-1.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145
2-1-2-2.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149
2-1-3-1.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153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157
2-1-5-2. 한국농수산대학 개편·운영	159
2-1-6-1.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162

2-2. 우수 공교육프로그램 확충 및 교원확보	164
2-2-1-1. 우수 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165
2-2-2-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168
2-2-3-1. 농어촌학교 우수교원 유치방안 마련	171
2-2-4-1.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	174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179
2-3-1-1.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181
2-3-1-2.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183
2-3-1-3. 농어촌 대학생 장학금 지원	186
2-3-2-1.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88
2-3-2-2. 자연농수산고교 급식비 지원	190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195
2-3-3-1.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	197
3.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199
3-1. 지역주도의 개발체계 정착지원	201
3-1-1-1. 일반농어촌개발(포괄보조) 관리	202
3-1-1-2. 연계협력사업	206
3-1-2-1. 지역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208
3-2. 정주계층별 선도거점 개발	210
3-2-1-1. 신규마을조성 및 마을재개발	211
3-2-1-2.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213
3-2-2-1. 소생활권 종합정비 등	215
3-2-3-1. 지역거점 기능 향상	217
3-3.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219
3-3-1-1.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221
3-3-1-2.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224
3-3-1-3.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27

3-3-1-4.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233
3-3-2-1. 농어촌 도로정비	237
3-3-2-2. 교통서비스 강화	239
3-3-2-3. 국고여객선 건조	242
3-3-2-4.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244
3-3-3-1. 정보화마을 조성	247
3-3-3-3. 농어촌정보이용활성화	249
3-3-3-4. 농어촌광대역 통합망 구축	252
4.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255
4-1. 농어촌산업 고도화	257
4-1-1-1. 복합산업화지원(포괄보조) 관리	259
4-1-1-2. 향토자원 발굴 및 D/B구축	266
4-1-3-1. 농어촌지역 창업, 기업성장 지원	270
4-1-3-2. 소규모 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	273
4-1-3-3.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	281
4-1-4-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285
4-2. 체험, 휴양기반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	289
4-2-1-1. 농가-마을-거점별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291
4-2-1-2. 산림휴양공간 조성	300
4-2-1-3.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303
4-2-2-1.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306
4-2-3-1. 슬로시티 녹색관광 자원화	312
4-2-4-1.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315
4-2-4-2. 초·중·고등학교의 농어촌 체험·교류 확대	328
5. 문화·여가여건 개선	333
5-1. 생활친화형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335
5-1-1-1.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336
5-1-1-2. 지방테마과학관 건립 지원	339

5-1-2-1.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	342
5-1-3-1.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	345
5-1-4-1.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 구축	347
5-2. 농어촌 주민 문화향유 지원	350
5-2-1-1.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351
5-2-1-2.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운영	354
5-2-1-3.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362
5-2-1-4. 문화나눔 사업	365
5-2-2-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368
5-2-2-2. 문화 관광축제 육성	371
5-2-2-3.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계	374
5-3. 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및 교육강화	378
5-3-1-1.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379
6.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383
6-1.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활용	385
6-1-1-1. 경관보전직불제	386
6-1-1-2. 조건불리지역직불제	389
6-1-2-1.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392
6-1-3-1. 농어촌형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396
6-1-3-2. 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	398
6-1-4-1. 농촌경관조성 관리기반 기술 구축	401
6-2. 농어촌 환경오염 방지	406
6-2-1-1.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408
6-2-1-2.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411
6-2-2-1. 유기질비료(친환경비료) 공급	413
6-2-2-3. 친환경농업기반(지구조성) 구축	418
6-2-2-4.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423
6-2-3-1. 해양폐기물 정화	428

6-2-3-2. 소하천정비	432
6-2-3-3.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436
6-3.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	439
6-3-1-1. 목재펠릿 사용 확대	441
6-3-1-2.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	444
6-3-1-3.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448
6-3-1-4. 가축분뇨처리 지원	453
6-3-1-5. 농산물 및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458
6-3-2-1.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464
6-3-2-2.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	468
7. 지역역량 강화	475
7-1. 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	477
7-1-1. 단계별·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478
7-1-2. 역량강화 교육 품질 제고	485
7-2. 지역발전 컨설팅 강화	487
7-2-2-1. 지역개발 총괄계획가제도 활용	488
7-3. 지역발전 네트워크 강화	490
7-3-1-1.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491
7-3-2-1. 전국단위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	492
7-3-3-1. 농어촌개발 포털사이트 확충	493
7-4.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496
7-4-1-1.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497
7-4-2-1. 도농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	504
7-4-2-2. 농어촌공동체 활성화지원	506
<참고 :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511



제 I 장 총괄편

1. 2013년도 시행계획 개요

□ 수립 주체 : 11개 부처, 3개 청, 지자체(13개 시·도)

□ 수립 대상 :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127개 과제

* 127개 과제 : 기본계획 133개 - 통합추진 13 + 신규 15 - 과제완료 등 8

□ 수립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6조

□ 수립 절차

○ '13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12.12월)

- 과제별 시행계획은 제2차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12년 말
까지의 추진실적, '13년도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제시
- 지방이양 사업은 관계 부처가 지자체로부터 자료 취합 후 총괄 작성
- 지자체의 자체 추진 과제는 '11년부터 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 14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과제별 '13년
시행계획 수립·제출('13.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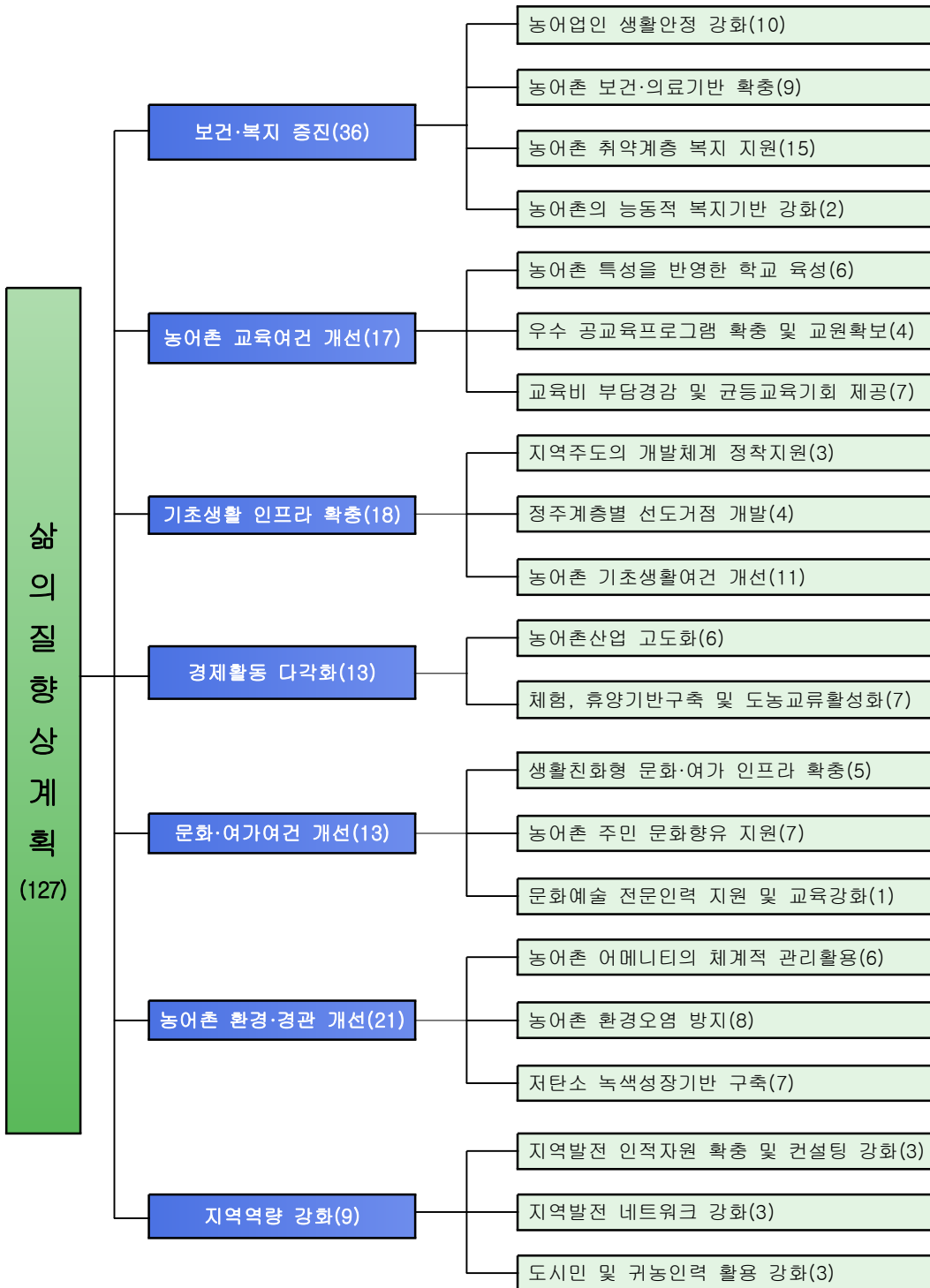
- '13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7조 6,249억원의 투융자 계획 포함
- * 국비 4조 2,788억원, 지방비 2조 7,059억원, 민자 등 기타 6,402억원

○ 사무국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13년도 시행계획을 종합('13.1~2월)

□ 향후 계획 : 위원회 심의 후 국회 제출('13.6월)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2조에서 6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2. 분야별 주요 추진계획



가 보건·복지 증진

- 농어업인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및 농지연금 제도 개편, 농어업 작업 재해 보장 확대
 -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차등지원**(복지부, 농식품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 현실화**(농식품부)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액 : ('12) 2,593억원 → ('13) 2,820
 - 농업인/수산인 재해공제 가입률 제고 : ('12) 54%/34% → ('13) 58/40
 - * 농업인 재해공제 유족급여 보상금액 확대 : ('12) 80백만원 → ('13) 90
- **공공 보건의료 시설 확충, 원격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및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 등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의 신·증축(136개소) 및 의료장비 현대화(231개소),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장비 개선(37개)
 - 치매환자 등 **원격건강관리시스템** 설치 확대('12:72기관 → '13:152)
 - 호흡기, 근골격계 등 농업인 직업성 질환에 대해 진단·조사 및 예방 연구를 수행하는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5개소)
 - 낙도 등 오·벽지 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강원, 충북, 경북, 경남), **병원선**(인천, 충남, 전남, 경남) 운영 지속 지원
- **고령농, 다문화가족 등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 **영농도우미** 단가 및 상한연령 상향 : ('12) 일52천원 75세 → ('13) 60, 80
 - **다문화가족지원센터**('12:200개소→'13:212)의 가족상담 등 내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15개소) 및 **소규모 어린이집**(36개소) 확충

나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과 농어촌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 면지역 초·중학교 250개교를 농어촌 전원학교로 육성
 - * 전원학교 지원(돌봄학교 포함) : ('11) 570개교 → ('12) 289 → ('13) 250
 -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확보 등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 * 지원학급/지원액 : ('12) 46,948학급/657억원 → ('13) 46,323/737
 - 노후버스 교체, 통학버스 운영비 및 통학비 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 학생의 원거리 통학 지원(636억원)

-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교사들의 농어촌에 대한 이해 제고 방안 마련
 - 농어촌지역 학생에게 다양한 영어 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 *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초청(496명, 20억원), 원어민 원격 화상수업(907개교, 30억원)
 - 교원 직무연수과정에 농어촌 체험 등 연수프로그램 개설·운영 및 농어촌 교사의 특별연수·해외연수 기회 확대 권고
 - 다문화 거점학교 지정(50개교) 및 대학생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1:1멘토링(1,500명)으로 한국어 및 학과 보충수업 지원

- 농어촌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확대 등 교육비 부담 경감
 - 농어업인 대학생 자녀 등에 장학금 지원(117억원, 6,282명)
 -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에 학자금 전액 지원(631억원, 7만여 명)

다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일반농어촌개발사업(포괄보조)을 통해 117개 시·군에 1조3,165억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지역개발 추진체계 구축 유도
 - 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7억원)으로 체계적 지역개발 추진
 -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지원(300억원)으로 광역경제권 기반구축

- 「마을-소생활권-거점읍·면-중소도시」로 이어지는 정주계층별 선도거점 개발
 - 소득기반확충, 생활환경정비 등 마을권역 정비(395개)
 -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217개 권역)를 통해 거점 기능 강화
 - 전원마을 등 신규마을 조성 지원(38개소) 등을 통해 농어촌에 도시민 유입 확대(4개소) 추진('11:3,174명 → '12:3,244 *누계)

- 노후주택 개량, 상수도 확충 등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 노후불량주택 개량(10천동) 및 슬레이트 철거 지원(20천동)
 - * 노후불량주택개량(누계) : ('12) 468천동 → ('13) 478
 - 면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 ('11) 59.1% → ('13) 67.6
 -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870억원) 및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 20% 지원(180억원) 등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서비스 강화

라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 향토자원을 활용한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로 농어촌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 복합산업화지원사업(4,560억원)을 통해 농어촌 산업 인프라 조성
 - 향토자원 및 농어촌기업과 연계한 특화농공단지 5개소 신규조성
 - * 특화농공단지 조성 : ('12) 17개소 → ('13) 22
 - 27개 향토자원 신규 발굴 및 산업화('12년 157개 → '13년 184 *누계)
 - * 가평 잣, 정읍 귀리, 포항 가시오가피, 서귀포 감귤주 등
 - 소규모 농업인 창업기술 지원(22개소), 농산물 가공시설 공동 이용 및 기술 습득을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설치(8개소)
- 농어촌 체험·관광 방문객 1,000만명 달성을 위한 다양한 체험·휴양기반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
 - * 농어촌 체험·관광 방문객 : ('09) 752만명 → ('11) 946 → ('12) 1,113
 - 농어촌 관광의 품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관광사업 등급제 도입
 - 체험마을·민박 등(100개) 체험관광 품질, 안전 및 위생 수준 평가
 - 슬로시티*가 국제적 농어촌 관광지로 발전하도록 지원(45억원)
 - * 장흥(유치자연휴양림), 영월(김삿갓) 등 12개 지역에 인프라조성, 운영프로그램 지원
 - 1사1촌 운동을 농수산물 직거래 등 단순교류에서 법률·세무 상담, 의료서비스 등 재능기부로 확산

마 문화·여가·여건 향상

□ 농어촌 지역의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 농어촌 공공도서관 10개소 건립 지원('12까지 276개소 개관) 및 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작은 도서관 15개소 조성
- 지방테마과학관 4개소 건립 지원('12까지 39개소 지원)
- 읍·면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5개소 설치 지원('12년까지 43개 설치)

□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 소외지역에 국립예술단체의 우수공연 제공(70여개 문예회관 참여)
- 예술강사(4,488명)를 파견하여 농어촌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확대: ('12) 341개, 35억원 → ('13) 365, 41

바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 농어업·농어촌의 고유한 농법과 이로 인해 형성된 유산자원의 발굴·정비 및 관리를 위한 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 지원(15억원)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13.1월) : 청산도 구들장논(제1호), 제주도 돌담밭(제2호)

□ 농어촌폐기물 처리 지원, 하수도 확충 등으로 쾌적한 농어촌 조성

-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15개소), 해양폐기물 처리 지원(14억원)
-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확대 : ('11) 59.5% → ('13) 70.0

□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 지원**

- 목재펠릿보일러(3천대) 보급 지원, **지열냉난방** 지원(140ha 1,116억원) 등을 통해 농가의 난방비 부담 경감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지원(12개소, 626억원),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확대설치('12 : 19개소 → '13 : 39)

사 지역발전 역량 강화

□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 양성 및 맞춤형 교육** 실시

- **핵심주체 후보군 10만명**을 선정하여 역량진단 및 수준별 교육·훈련 실시

* '12년 후보군 64천명 선정 및 D/B구축

- **마을사무장에** 대해 초·중·고급 **수준별 교육** 과정 시행

□ **도시민 및 귀농인력 등 도시 우수인력을 농어촌 발전에 활용**

- 도시민유치 지원 사업 대상 시·군을 확대('12 : 27개→'13 : 35)하고, 「**귀농·귀촌 종합센터**」 설치를 통해 정보 종합제공
- **농촌 재능기부 범국민 캠페인** 전개 및 **재능기부자 5만명 확보**로 마을발전 및 활력 창출

* '12년 농어촌 재능기부 신청자 30,879명, 재능요청마을 1,504개소(연계1,072)

- **지자체, 언론,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농어촌지역정책 포럼** 개최(연 4회)

3. 2013년도 투융자 계획

□ 2013년도 투융자 계획은 7조 6,249억원으로 2012년도 투융자 계획 6조 5,418억원 대비 16.6% 증가

○ **재원별** : 국비 4조 2,788억원(56.1%), 지방비 2조 7,059억원 (35.5%), 민자 등 기타 6,402억원(8.4%)으로 구성

○ **분야별** : 보건·복지 1조 5,887억원, 교육 5,034억원,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2조 5,398억원, 경제활동다각화 7,488억원, 문화·여가 1,713억원, 환경·경관개선 2조 157억원, 지역역량강화 572억원으로 구성

○ **기관별** : 미래부 164억원, 교육부 3,103억원, 안행부 220억원, 문화부 1,724억원, 농식품부 3조 8,774억원, 복지부 8,835억원, 환경부 1조 2,485억원, 고용부 11억원, 여가부 739억원, 국토부 877억원, 해수부 1,159억원, 농진청 369억원, 산림청 1,807억원, 방재청 5,166억원, 지자체 816억원

□ 주요 사업별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

부문	사업명	소관 부처	'12년 계획	'13년 계획	증감	
					증감액	증감율
합 계			65,418	76,249	10,831	16.6
소 계			11,133	15,887	4,754	42.7
보건 복지 증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식품부	1,669	1,761	92	5.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식품부	924	1,059	135	14.6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	농식품부	717	736	19	2.6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	해수부	13	14	1	7.7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해수부	727	782	55	7.6
	농업재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농진청	4	4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안전기술 개발	농진청	9	8	△1	△11.1
	농작업안전모델시범 및 편이장비 지원	농진청	102	85	△17	△16.7
	농작업재해예방체험매체개발 등	농진청	12	6	△6	△50.0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농식품부		15	15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복지부	221	199	△22	△10.0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복지부	877	891	14	1.6

부문	사업명	소관부처	'12년 계획	'13년 계획	증감	
					증감액	증감율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복지부	808	1,137	329	40.7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	복지부				
	농어촌보건의료기술지원	복지부		6	6	
	농어촌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복지부		40	40	
	분만취약지 지원	복지부		79	79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복지부	644	496	△148	△23.0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지자체	54	70	16	29.6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복지부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	농식품부	190	237	47	24.7
	영세·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	농식품부	15	18	3	20.0
	경영이양 직불제	농식품부	659	624	△35	△5.3
	①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복지부	50	49	△1	△2.0
	②농어촌 보육여건개선	농식품부	567	646	79	13.9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복지부	1,887	5,900	4,013	212.7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여가부	1	1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진청	86	84	△2	△2.3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고용부	11	11		
	여성농어업인센터 개보수,운영지원	지자체	56	50	△6	△10.7
	농촌여성일자리 지원사업	여가부	11		△11	△100.0
	다문화 가정 농업 교육	농식품부	12	13	1	8.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여가부	626	646	20	3.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여가부	63	92	29	46.0
	취약농가 인력지원	농식품부	90	71	△19	△21.1
	농업인 복지시책 홍보강화*	농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농식품부	28	28		
	농산어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농식품부		29	29	
	소 계		4,608	5,034	426	9.2
교육 여건 개선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교육부	56	134	78	139.3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교육부	657	737	80	12.2
	기숙형고교 육성·지원	교육부	67	160	93	138.8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지자체	78	60	△18	△23.1
	한국농수산대학 개편·운영	농식품부	133	145	12	9.0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지자체				
	우수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부	223	195	△28	△12.6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교육부	25	25		
	농어촌학교 우수교원 유치방안 마련*	교육부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	교육부	132	65	△67	△50.8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농식품부	713	631	△82	△11.5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농식품부	355	311	△44	△12.4
	농어촌 대학생 장학금 지원	농식품부	145	117	△28	△19.3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교육부	1,640	1,787	147	9.0
	자영농수산고교 급식비 지원	농식품부	32	31	△1	△3.1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지자체	352	636	284	80.7

부문	사업명	소관부처	'12년 계획	'13년 계획	증감	
					증감액	증감율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	교육부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소 계		23,903	25,398	1,495	6.3
	포괄보조사업(일반농어촌개발)**	농식품부	13,331	13,443	112	0.8
	연계협력사업	농식품부		375	375	
	지역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농식품부	1	3	2	200.0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농식품부		42	42	
	농어촌형 뉴타운 조성	농식품부	359		△359	△100.0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농식품부	4,000	5,000	1,000	25.0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환경부	200	480	280	140.0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환경부	4,642	4,524	△118	△2.5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복지부		38	38	
	농어촌 도로정비	안행부	121	145	24	19.8
	교통서비스강화	국토부	775	877	102	13.2
	국고여객선건조	해수부	16	8	△8	△50.0
	내항여객선운임보조	해수부	168	180	12	7.1
	정보화마을 조성	안행부	75	75		
	농어촌정보이용 활성화	농식품부	95	81	△14	△14.7
	농어촌광대역 통합망 구축	미래부	120	127	7	5.8
경제 활동 다각화	소 계		7,340	7,488	148	2.0
	포괄보조사업(복합산업화지원)**	농식품부	4,062	5,436	1,374	33.8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	농진청	4	4		
	농어촌지역 창업, 기업성장 지원	농식품부	43	23	△20	△46.5
	소규모농업인 창업활동 및 소득화 지원	농진청	114	106	△8	△7.0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	농진청	4	5	1	25.0
	지역간 연계·협력 프로그램 지원*	농식품부	26		△26	△100.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식품부	1,181	295	△886	△75.0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농식품부	4		△4	△100.0
	산림휴양공간 조성	산림청	1,173	972	△201	△17.1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청	474	361	△113	△23.8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농식품부	153	174	21	13.7
	슬로시티 녹색관광 자원화	문화부	37	48	11	29.7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농진청	60	64	4	6.7
	초중등학생의 농어촌 체험·교류확대	농식품부	5		△5	△100.0
문화 여가 여건 개선	소 계		1,069	1,713	644	60.2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문화부	103	156	53	51.5
	지방테마과학관 건립 지원	미래부	68	37	△31	△45.6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	문화부	30	38	8	26.7
	농어촌작은도서관 조성	문화부	18	15	△3	△16.7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문화부	8	8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문화부	30	29	△1	△3.3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	문화부	10	9	△1	△10.0
	지방문화원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부	35	41	6	17.1
	문화나눔사업	문화부		493	493	

부문	사업명	소관부처	'12년 계획	'13년 계획	증감		
					증감액	증감율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문화부	12	12			
	문화 관광축제 육성	문화부	134	134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계	문화부	2	11	9	450.0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확대	문화부	619	730	111	17.9	
	소 계		16,915	20,157	3,242	19.2	
환경 경관 개선	경관보전직불제	농식품부	107	200	93	86.9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농식품부	531	483	△48	△9.0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산림청	216	243	27	12.5	
	농어촌형 경관보전 제도적 기반 구축*	농식품부					
	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	농식품부		15	15		
	농촌경관조성관리기반 기술 구축	농진청	7	3	△4	△57.1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환경부	3,863	4,909	1,046	27.1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환경부	78	89	11	14.1	
	유기질비료(친환경비료) 공급	농식품부	2,430	2,530	100	4.1	
	친환경농업기반(지구조성) 구축	농식품부	728	819	91	12.5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환경부	71	64	△7	△9.9	
	해양폐기물 정화	해수부	168	175	7	4.2	
	소하천 정비	방재청	4,537	5,166	629	13.9	
	하천·하구쓰레기 정화 사업	환경부	150	204	54	36.0	
	목재펠릿 사용 확대	산림청	295	206	△89	△30.2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지원	농식품부	1,240	1,116	△124	△10.0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환경부	1,083	2,213	1,130	104.3	
	가축분뇨처리 지원	농식품부	1,162	1,425	263	22.6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농식품부	67	83	16	23.9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1)	안행부	38		△38	△100.0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2)	농식품부	5		△5	△100.0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3)	환경부		2	2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4)	산림청	51	25	△26	△51.0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	농식품부	88	187	99	112.5	
		소 계		450	572	122	27.1
	지역 역량 강화	단계별, 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농식품부	358	254	△104	△29.1
역량강화 교육 품질 제고*		농식품부					
지역개발 컨설팅기관 인증제 도입*		농식품부					
지역개발 총괄계획가제도 활용*		농식품부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농식품부					
전국단위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		농식품부					
농어촌개발 포털사이트 확충		농식품부	9		△9	△100.0	
귀농귀촌활성화지원		농식품부	52	276	224	430.8	
도농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		농식품부					
농어촌공동체활성화지원	농식품부	31	42	11	35.5		

* : 비예산 과제

**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기존 과제 중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소생활권 및 지역거점 기능 향상을 포함

***: 각 사업별 투융자 금액은 국비, 지방비, 민간 등 기타금액을 합산한 총액임

※ 제2차 기본계획 관리과제(133개) 대비 변경과제 목록

분 류	기본계획	'13년 시행계획
과 제 통 합 (1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4-1(농업재해모니터링시스템구축) 1-1-4-3(안전한 농촌사회 구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2-2(취약계층 작업안전기술 교육매체개발) 1-2-2-3(농업인 건강·안정 정보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1-1(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1-2-1-2(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 확충) 1-2-1-3(낙도오지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3-2(농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 1-3-3-3(농어촌 영유아 양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1-1(농어촌전원학교 육성) 2-1-2-1(농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3-1(기숙형고교 육성·지원) 2-3-2-3(농어촌고교생 기숙사 이용료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3-3-3-2(농어업경영체 정보화 지원) 3-3-3-3(농어촌정보이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3-3-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2-1(농어촌 생산품 수요확대 지원) 중 일부 4-1-3-1(농어촌지역 창업, 기업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3-2(소규모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지원) 4-1-1-3(향토음식자원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2-1(농어촌 생산품 수요확대 지원) 중 일부 4-2-2-1(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4-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7-1-1-1(주민역량교육 강화) 7-1-1-2(핵심리더 육성) 7-1-1-3(역량강화교육이수자 pool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7-1-2-1(우수민간교육기관 육성) 7-1-2-2(교육쿠폰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7-1-2
	'11년 신규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2-4(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1-3-3-7(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 6-2-3-3(농어촌지역 쓰레기 수거·처리) 6-3-2-2(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3-8(농촌여성일자리 지원사업) 3-3-3-4(농어촌광대역 통합망 구축) 5-2-1-4(문화나눔사업) 7-4-2-2(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1-7(농어촌보건의료기술지원) 1-2-1-8(농어촌보건의관 원격건강관리) 1-2-1-9(분만취약지 지원) 3-1-1-2(연계협력사업) 3-2-1-2(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3-3-1-4(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6-1-3-2(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2-1(농어촌지역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 마련) 2-1-4-1(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3-2-4-2(금수강촌 만들기 사업) 6-2-2-2(생물학적 병해충 방제) 1-3-3-8(농촌여성일자리 지원사업) 3-2-4-1(농어촌형 뉴타운 조성) 4-1-4-1(지역간 연계·협력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완료('10년) 과제 완료('10년) 과제 완료('10년) 과제 완료('10년) 과제 완료('12년) 과제 완료('12년) 과제 완료('12년)
미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7-2-1-1(지역개발 컨설팅기관 인증제 도입) 	'14년 이후 계획 수립예정



제 II 장

부문별 시행계획편

1

보건·복지 증진

1. 보건·복지 증진

1-1.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

(1) 개관

□ '13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농어촌거주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속 지원
 - 경감률 50%(농식품부 28%지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농어촌 지역 보험료 22%경감)를 유지하여 의료비 부담완화 및 복지증진 도모
-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지속 지원(최대 50%지원)
 - 소득이 기준소득금액(79만원) 이하 시 보험료의 50%지원 초과 시 정액지원(35,550원)
 - 상·하반기 대상자 일제조사를 통해 신규대상자 및 부적격자 발굴
- 재해공제 지원 확대 및 가입률 제고를 통해 농어업인 생활·경영 안정 도모
 - 농업인 재해공제의 유족급여 보상금액을 최대 80백만에서 90백만원으로 확대('13.1)
 - 어업인 및 어업인의 배우자에게 수산인안전공제 주계약의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 지원
 - *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률 제고 : ('12) 54.2% → ('13) 57.9%
 - * 수산인 안전공제 가입률 제고 : ('12) 34% → ('13) 40%
 - * 어선원/어선 재해보험가입률 제고 : ('12) 16.1%/15.4% → ('13) 16.0%/13.6%
- 전문인력활용 및 기술개발을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작업재해를 예방, 농어업인의 안전성 향상
 - 농작업재해 통계수립·감시체계 구축하고 농작업안전모델 시범마을 사업 추진(개소당 3년간 2억원, 33개소) 및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개소당 2년간 1억원, 140개소)

□ 예산 내역

<2013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176,121				176,121			176,12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105,905				105,905			105,905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	36,818				36,818		36,818	73,636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	1,440				1,440			1,440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78,222				78,222			78,222
농작업재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00					400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800					800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및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785	3,461			4,246	4,246		8,492
농작업재해예방 체험매체 개발 및 정보화 지원			600					600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1,505				1,505			1,505
합계	400,796	3,461	1,800	0	404,257	4,246	36,818	447,121

< 1-1-1-1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어촌사회과	담당자	김병준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4	이메일	kim94@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1)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개선 (기본계획 p14)</p> <p>□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및 내실화 (p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득 농어업인은 현행보다 지원율을 인하하고, 저소득 고령농어업인은 현행보다 지원을 내실화하여 형평성 제고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09.4) * 현행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는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건강보험료의 50%(농식품부 28% 지원, 복지부 22% 감면)를 경감·지원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04년부터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추이 및 지원 실적

연도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국고 지원율	18 %	28 %	28 %	28 %	28%	28%	28%	28%
월 평균 지원세대 (전년대비 증감)	603천세대 (0.5% ↓)	521천세대 (13.6% ↓)	504천세대 (3.3% ↓)	484천세대 (4.0% ↓)	457천세대 (5.6% ↓)	435천세대 (4.8% ↓)	413천세대 (5.1% ↓)	402천세대 (2.7% ↓)
지원예산 (전년대비 증감)	666억 (95.8% ↑)	1,339억 (68.4% ↑)	1,431억 (6.9% ↑)	1,559억 (8.9% ↑)	1,559억 (-)	1,626억 (4.2% ↑)	1,608억 (1.1% ↓)	1,676억 (4.2% ↑)

- 2012년 지원세대는 12월까지 지원한 월 평균 지원한 지역가입자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속 지원(연중)
- 상·하반기 대상자 일제조사를 통해 신규대상자 발굴 및 부적격자 지원 배제

-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
 - 법이 통과되는 대로 지침 개정 등 차등지원 방안 마련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393천세대
 - 지원금액 및 형태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내용 :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 가입자 농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의 28% 지원(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농어촌 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법적근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33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제4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67,585				167,585			167,585
2013	176,121				176,121			176,121
(증△감)	8,536	-	-	-	8,536	-	-	8,536

- * '12년 건강보험료 세수 부족으로 타 사업에서 전용(214억)하여 '13년 이월 지출
- '12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없음(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지원)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939,972	-	-	-	-	-	939,972
'12	402천세대	166,861	-	-	-	-	-	166,861
'13	393천세대	176,121	-	-	-	-	-	176,121
'14	381천세대	190,652	-	-	-	-	-	190,652
'15	366천세대	196,616	-	-	-	-	-	196,616
'16	352천세대	209,722	-	-	-	-	-	209,722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16		
건강보험료 1인당 지원액 증가율(%)	8.0	8.0	8.0	8.0	8.0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1인당 지원액 / 전년도 1인당 지원액 × 100	건강보험공단 정산자료

* 건강보험료 인상률 인하로 목표치 8.0로 조정

< 1-1-2-1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어촌사회과	담당자	김병준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4	이메일	kim94@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2)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및 가입 유도 (기본계획 p14)</p> <p><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p> <p>*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 ('08)67만원 → ('09)73만원 → ('10안)79만원</p> <p><input type="checkbox"/> 지원방식을 농어가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p> <p>○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이 희망할 경우 농어업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연금보험 별도 가입 및 지원 추진</p> <p><input type="checkbox"/> 미가입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확대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p> <p>○ 연금 급여가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실제소득 신고 유도</p> <p>*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는 444천 세대이나,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지원대상 농업인은 270천명(174천명 미가입)</p>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를 위해 '95년부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 '07년에 복지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사업 이관
-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준소득금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자 일제조사, 홍보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신규 가입 유도
- 기준소득금액 인상 추이

구분	2004.7 ~ 2005.6	2005.7 ~ 2005.12	2006	2007	2008	2009	2010 ~2013
보험료율	8%	9%	9%	9%	9%	9%	9%
월보조금	8,800~ 17,600	9,900~ 19,800	9,900~ 21,600	9,900~ 23,400	9,900~ 27,900	9,900~ 32,850	9,900~ 35,550
비고	기준소득 이하 : 정율(50%) 기준소득 초과 : 기준 소득보험료액 1/2 정액						
기준소득	44만원		48만원	52만원	62만원	73만원	79만원

- 대상자 일제조사 : 신규 대상자 발굴 등을 위해 지자체와 협조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
- 홍보 리플릿 배포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등 농어업인 대상 복지시책 홍보를 위한 포스터 상·하반기 8만부 배포
- * 국민연금 신규지원자 : ('10,10) 36,503명 → ('11,10) 59,707명 → ('12,10) 59,707명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지속 지원(연중)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가입 대상자 발굴(연중)
 - 담당자 워크숍, 홍보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신규대상자 발굴
 - 상·하반기 대상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신규대상자 및 부적격자 발굴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18~60세 미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257천세대
 - 지원금액 및 형태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의 최대 50%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내용 :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농어업 소득이 농외소득보다 많은 지역 가입자 농어업인에게 연금 보험료 지원
 - 연금 신고소득 79만원 이하 :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 연금 신고소득 79만원 초과 : 35,550원/월 정액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92,428	-	-	-	92,428	-	-	92,428
2013	105,905	-	-	-	105,905	-	-	105,905
(증△감)	13,477	-	-	-	13,477	-	-	13,477

- '12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없음(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지원)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610,545	-	-	-	-	-	610,545
'12	230천명	92,428	-	-	-	-	-	92,428
'13	257천명	105,905	-	-	-	-	-	105,905
'14	269천명	123,527	-	-	-	-	-	123,527
'15	288천명	141,074	-	-	-	-	-	141,074
'16	288천명	147,611	-	-	-	-	-	147,611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연금보험료 1인당 지원액 증가율(%)	9.3	9.1	8.0	8.0	8.0	당해연도 연금보험료 1인당 지원액 / 전년도 1인당 지원액 × 100	국민연금공단 정산자료

< 1-1-3-1.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재해보험팀	담당자	안중현
전화번호	044-201-1792	이메일	dilaw@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농작업 재해 지원 강화 (기본계획 p15)

-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농작업안전공제 및 수산인 안전공제 보장수준 확대 및 가입률 제고
 - (농업인 안전공제) 사망시 보장수준을 현행 60백만원에서 '14년까지 100백만원 수준으로 확대
 - 공제 가입률을 현행 49%에서 '14년까지 60%수준으로 제고
 - * 농업인안전공제 가입률 : ('04) 35% → ('09) 49.1 → ('14p) 60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재해공제 지원 확대 및 가입률 제고
 - 공제료 전년대비 0.6%(2억원) 국고지원 감소
 - * ('11) 360억원 → ('12) 358억원
 - 보장수준 확대 및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예산감소로 인하여 가입률 목표에는 미달하였으나 가입률은 0.5% 상승
 - * ('11) 816천명/1,520 → ('12) 803천명/1,482
-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시범사업 확대
 - 농장주가 만20~84세 피고용인에 대하여 1~89일 기간 동안 보험 가입
 - * 농작업재해·일(열)사병 사망보험금, 농작업재해·노동력상실 장애보험금 : 10백만원
 - 시범사업지역(40개소)
 - * 전국 40개 시·군 : 경기(3), 강원(3), 충북(5), 충남(4), 전북(4), 전남(5), 경북(7), 경남(7), 제주(1), 부산(1)
- '13년도 농업인재해공제 추진 계획 수립('12.12)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업인 재해공제 사업 확대 추진('13.1~12)
 - ('12) 358억원 → ('12) 368억원(2.8%)
- 재해공제의 보상수준 및 보장범위 확대로 농업인 실익 증대
 - 유족급여 보상금액을 최대 80백만원에서 90백만원으로 확대 시행('13.1)
- 현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상품개선 및 사업 홍보(연중)
 - 일선 공제사업 영업점 및 농가 방문으로 현지의견 청취 및 제도 개선(반기 1회 이상)
 - 농민신문 등 농업인 전문지 및 지역 언론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와 사업조기 확대를 위한 상품안내장 및 팸플릿 등 홍보물 배포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농업인 805천명, 농기계 38천대
 - 지원 금액 및 형태 : 국고 보조금 36,818백만원('13년도)
 - 지원조건 : 공제료의 50% 국고지원(자부담 50%)
 - 지원내용 :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농업인재해공제의 기본 공제료 50%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35,841				35,841		35,841	71,682
2013	36,818				36,818		36,818	73,636
(증△감)	977				977		977	1,954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없음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천건)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803/835	35,841/35,841					35,841/35,841	71,682/71,682
'13	805	36,818					36,818	73,636
'14	827	38,585					38,585	77,170
'15	835	40,437					40,437	80,874
'16	850	42,378					42,378	84,756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률	51.7	53.7	54.2	57.9	60.0	(당해연도 안전공제 가입인원/농림업경제 활동인구)×100	공제가입 자료 (농협생명)

< 1-1-3-2. 수산인 재해공제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수산개발과	담당자	김봉현
전화번호	044-200-5467	이메일	kbh934@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농작업 재해 지원 강화 (기본계획 p15)

-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농작업안전공제 및 수산인 안전공제 보장 수준 확대 및 가입률 제고
 - (수산인 안전공제) 사망 시 보장수준을 현행 45백만 원에서 '14년까지 80백만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 공제 가입률을 현행 20%에서 '14년까지 50% 수준으로 제고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기존 절약형(25백만 원), 표준형(45백만 원)에 추가로 고액형(65백만 원)을 신설하여 「수산작업 중 재해로 사망」 시 보장 수준을 확대 ('12. 2월)
- 고령의 가입니즈를 반영코자 기존 8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던 것을 만 87세로 상향 조정 ('12. 2. 13)
- 수산인안전공제 가입률을 '11년도 30%에서 '12년도 35%로 확대
 - 가입자 : ('11년도) 24,441명 → ('12년도) 26,097명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보장수준 점진적 확대로 수산작업 중 재해발생 시 어업인의 생활안정 도모
 - 「수산작업 중 재해로 사망」 시 '12년 60백만 원을 '14년 80백만 원(기존 고액형) 및 1억 원(신규 개발)으로 상향 조정, 보급 추진
- 영세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약보험료도 2014년부터 국고 보조 대상에 포함되도록 '14년 예산반영 추진
- 지방비 보조 증대를 통한 어업인의 자부담을 감소하고, 회원조합의 판매를 장려하고 어업인의 복지 혜택 증진에 기여

- 수산인안전공제 가입 목표 (2013년도) : 40%
 - 상반기 캠페인 등 각종 판촉행사 시 수산인안전공제 실적 포함
 - 2013년도 대상 등 각종 평가 시 수산인안전공제 실적 인정
 - 가입률 제고를 위한 특별 이벤트 전개
- 수산인안전공제 우수조합 육성 지원
 - 판촉에 필요한 판촉물 등 물품 지원 확대
 - 우수 조합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원 등
- 지역별 영업점 직원 교육 및 판매 독려를 위한 현장 방문 ('13. 5~11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수산인안전공제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배우자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보험에 당연 및 임의 가입자 제외
 - 사업 규모(사업량) : 어업인 72천명 및 어업인의 배우자 1.5천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1,440백만 원,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수산인안전공제 가입자
 - 지원내용 : 수산인안전공제 주계약의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항 및 제2항
-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주체 :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 ① 공제사업 약정 체결(보험사업자 ↔ 농림수산식품부)
 - ② 수산인이 관할 시·군 수협에 보험 가입 (보험료 보조 상당액 감면)
 - ③ 보조금 지원명세 제출(회원조합 → 공제보험지부 → 수협중앙회)
 - ④ 보조금 신청 및 지급(수협중앙회 → 농림수산식품부)
 - ⑤ 공제사업 운용현황 보고(수협중앙회 → 농림수산식품부)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 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186				1,186			1,186
2013	1,440				1,440			1,440
(증△감)	177				177			177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 없음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백만 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26,097명 / 26,613명	1,186 / 1,263						1,186 / 1,263
'13	계획 30,266명	1,440						1,440
'14	계획 33,997명	2,077						2,077
'15	계획 37,816명	2,310						2,310
'16	계획 41,640명	2,412						2,412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수산인안전공제 어업인 가입률 (단위:%)	30	31	34	40	45	(수산인안전공제가입어 업인 / 수산인안전공제 가입대상어업인) × 100	수협중앙회
수산인안전공제 어업인 배우자 가입률 (단위:%)	-	100	100	100	100	(수산인안전공제가입어 업인배우자이전년도 수 산인안전공제 가입자 × 6%) × 100	수협중앙회

* '10년 ~ '12년은 실적 기준, 그 이후는 계획 기준

< 1-1-3-3.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수산개발과	담당자	김 봉 현
전화번호	044-200-5467	이메일	kbh934@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농작업 재해 지원 강화 (기본계획 p15)

-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농작업안전공제 및 수산인 안전공제 보장수준 확대 및 가입률 제고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2012년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 특별캠페인 전개('12. 3~8월)
 - 신규 가입 추진실적 : 2,725건, 수입 보험료 3,323백만원

- 어선원 및 어선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어업현장 밀착형 마케팅 전개
 - 지역별 어업인 설명회 개최(7개 지역)
 - ※ 전남 동부·서부(완도·무안)·제주·전북(4월), 경인·부산(5월)
 - 어촌계장을 자문위원으로 하는 지역별 자문위원회 운영(188명)

- 어업인 편익 위주의 제도개선을 통한 가입 확대 도모
 - 선외기어선 실손보상 특약 실시('12. 2. 20 시행) : 기본요율의 200~223% 적용
 - 5톤 미만 소형어선 전손사고보험 개발('12. 3. 30 시행) : 기본요율의 50% 적용
 - 단체가입 할인제도 개선('12. 6. 1 시행) : 어촌계에서 수산단체도 포함토록 확대 등
 - 어선 평가표 및 감가상각율표 개정('13. 1. 1 시행) : 어선평가액 평균 24% (선체 기준) 상향 조정 및 감가상각방법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
 - 낚시어선 어선보험료 현실화('13. 1. 1 시행) : 기본요율의 200%~223%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소형어선 가입 확대를 위한 특별 캠페인 실시(6개월)
- 어업현장 중심 홍보 강화
 - 지역별 어업인 설명회 개최
 - 지역별 자문위원회 확대(200명)
- 정책보험 제도개선 워크샵(4월) 및 발전 전략 토론회(11월) 개최
- 어업인 편의 위주의 제도개선을 통한 가입 확대 도모
 - 당연가입 대상 확대 검토('13년 5톤 미만 어선 조업 및 고용 실태조사 실시)
 - 의료재활 시범사업 실시('13년 : 사업 준비, '14년 시범사업 실시)
 - 낚시 전용어선의 요율 차등화 방안 검토
 - 자기부담금 최저한도의 조정 검토 등

4. 관련 사업 내용

가.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
 - 사업 규모(사업량) : 어선원 117천 명, 어선 67천 척
 - 지원금액 및 형태 : 78,222백만 원,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톤급별 차등 지원

구분(구성비)	10톤 미만	10~20톤 미만	20~30톤 미만	30~50톤 미만	50~100톤 미만	100톤 이상
순보험료(80%)						
- 어선원보험	70%	60%		30%	20%	-
- 어 선보험	70%	60%	-	-	-	-
부가보험료(20%)	75%					

- 지원내용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지원
- 법적근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9조, 제13조

○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주체 :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 ① 어업인이 관할 시·군 수협에 보험 가입(보험료 보조 상당액 감면)
- ② 보조금 지원명세 제출(회원조합 → 공제보험지부 → 수협중앙회)
- ③ 보조금 신청 및 지급(수협중앙회 ↔ 농림수산식품부)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 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72,700				72,700			72,700
2013	78,222				78,222			78,222
(증△감)	5,522				5,522			5,522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 없음

○ 중기재정계획

	사업 규모 (명, 개소)	국비(백만 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등			
합계		450,235						450,235
'12	- 어선원 37,426명 / 35,366명 - 어 선 10,360척 / 7,233척	72,700/72,700						72,700
'13	- 어선원 계획 36,651명 - 어 선 계획 9,415척	78,222						78,222
'14	- 어선원 계획 37,837명 - 어 선 계획 10,872척	101,250						101,250
'15	- 어선원 계획 37,837명 - 어 선 계획 10,872척	102,310						102,310
'16	- 어선원 계획 37,837명 - 어 선 계획 10,872척	95,753						95,753

* '12년은 실적규모·금액 / 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 (%)	13.1	14.3	16.1	16.0	17.0	$(\text{어선원보험 가입어선척수} / \text{어선원보험 가입대상 어선척수}) \times 100$	수협중앙회
어선 재해보험 가입률 (%)	9.7	11.9	15.4	13.6	15.0	$(\text{어선보험 가입어선척수} / \text{어선보험 가입대상 어선척수}) \times 100$	수협중앙회

<1-1-41. 농작업재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협력기반 조성(농촌진흥청)>

담당부서	재해예방공학과	담당자	채혜선
전화번호	031-290-1939	이메일	hyeseon@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농작업 재해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p15)

□ 농작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기반 조성

- 전국 단위 표본 조사를 통해 농작업 재해 현황 통계 작성
 - * 국가통계 승인('09) 후 매 2년마다 통계조사 실시
- 농작업 재해 원인구명 및 건강유해요인 노출 평가를 통해 농작업 안전관리 기준 마련
 - * ('09) 근골격계질환 평가→('10)농약중독→('11~)호흡기질환 등
- 유비쿼터스기반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시스템 구축(U-Safe Farm)
 - 생체정보측정 및 위치추적(RFID)기능이 탑재된 휴대형 단말기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사고(낙상, 일사병, 농약중독 등) 예방
 - 농작업장·시설 등에 대해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을 활용한 유해인자 체크 및 경고시스템 구축
 - 14개 마을 시범 적용후 '13년 이후 전국 확산(1시·군 당 1개소)

□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농작업 환경 개선사업 확대

-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 농작업 환경 개선 추진
 - 농작업재해 모니터링 및 맞춤형 농작업 안전보건 서비스 지원
 - 대상 시범마을 : ('09)36개소 → ('14) 330
 - * 8개 의과대학 및 안전보건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기별 재해 모니터링 실시
- 농작업 환경 개선 기술개발 및 현장보급 확대
 - 농작업 부담경감 기술 : ('09까지) 45종 → ('14까지) 80종
 - 편의장비 지원 : ('09까지) 147개소 → ('14까지) 2,000
- 농작업 안전 가상체험교육 등 재해예방·안전교육 강화
 - * 농촌진흥청 내 가상체험관 신설 및 가상체험 프로그램 개발('10)
- 농업안전보건정보 DB 구축 및 농가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09~'10)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3차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국가통계 제14303호)(7~8월)
 - 조사대상 : 전국 334개 동읍면의 10,000농가 농업인
 - 조사내용 : 농업활동 특성, 농작업 관련 질병 경험, 휴업 기간 등 총 36항목
- 전문가 협력기반 구축 및 연구지원 네트워크 강화
 - 농업인 건강연구회 개최(8회) 및 뉴스레터 발송(8회)
 - 농작업안전 한일공동 심포지엄(11. 1, 일본)
 - 농업안전보건세션 운영 :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공동학술대회(11. 9, 변산)
 - 농업인 현장 교육 지원(15회)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관련 통계 조사(7~8월)
 - 조사대상 : 전국 표본추출에 의한 약 10,000 농가의 농업인
 - 조사내용 : 농업활동 특성,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현황 및 발생 원인 등
- 전문가 협력기반 구축 및 연구지원 네트워크 강화(연중)
 - 농업인 건강연구회 운영 및 농촌현장 지원
 - 학술대회 개최시 농업안전보건 세션 운영 및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작업재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협력기반 조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연구원
 - 사업 규모(사업량) : 1소과제 1세부과제(4억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시험연구사업 예산(국비 100%)
 - 지원조건 : 과제심의 통과
 - 지원내용
 - 전국단위 표본조사를 통한 농작업재해 현황 및 원인 통계 마련
 - 농작업성 질환 예방센터 지원을 위한 전문가 협력기반 구축·운영

- 법적근거

-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 35조, 39조('09. 5. 전부개정)
농어촌 주민 복지 증진, 농어로 안전작업 기술개발, 농어업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에 대한 지원 등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 치료 등 지원
제15조 : 업무상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농촌진흥청 훈령 제802호, 제20조
농작업 안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380/380					380/380
2013			400					400
(증△감)			20					2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농가)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0,000							
'12	10,000농가			380				380
'13	10,000농가			400				400
'14	30,000농가			1,200				1,200
'15	30,000농가			1,200				1,200
'16	30,000농가			1,200				1,200

나. 농작업재해 현황 및 원인조사 연구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촌진흥청
- 사업추진체계 : 시험연구사업 설계 심의(내외부 심의위원) 및 협약 추진 → 방문조사를 통한 연구수행(연구원) → 중간진도관리(내외부 심의위원) → 연구결과 분석 및 평가서 작성 → 연말평가(내외부 심의위원) → 결과활용 제출(내외부 심의위원)
- 법적근거
 -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 35조, 39조('09. 5. 전부개정)
 - 농어촌 주민 복지 증진, 농어로 안전작업 기술개발, 농어업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에 대한 지원 등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14조 : 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 치료 등 지원
 - 제15조 : 업무상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농촌진흥청 훈령 제802호, 제20조
 - 농작업 안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작업재해 조사		6,000호	10,000호	10,000호	10,000호	조사대상 농가수	보고서
대내외 협력건수	20	27	42	20	20	건수	성과등록 및 보고자료

<1-1-4.2.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농촌진흥청)>

담당부서	재해예방공학과	담당자	이경숙
전화번호	031-290-1937	이메일	leeks81@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농작업 재해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p15)

□ 농작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기반 조성

- 전국 단위 표본 조사를 통해 농작업 재해 현황 통계 작성
 - * 국가통계 승인('09) 후 매 2년마다 통계조사 실시
- 농작업 재해 원인구명 및 건강유해요인 노출 평가를 통해 농작업 안전관리 기준 마련
 - * ('09) 근골격계질환 평가→('10)농약중독→('11~)호흡기질환 등
- 유비쿼터스기반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시스템 구축(U-Safe Farm)
 - 생체정보측정 및 위치추적(RFID)기능이 탑재된 휴대형 단말기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사고(낙상, 일사병, 농약중독 등) 예방
 - 농작업장·시설 등에 대해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을 활용한 유해인자 체크 및 경고시스템 구축
 - 14개 마을 시범 적용후 '13년 이후 전국 확산(1시·군 당 1개소)

□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농작업 환경 개선사업 확대

-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 농작업 환경 개선 추진
 - 농작업재해 모니터링 및 맞춤형 농작업 안전보건 서비스 지원
 - 대상 시범마을 : ('09)36개소 → ('14) 330
 - * 8개 의과대학 및 안전보건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기별 재해 모니터링 실시
- 농작업 환경 개선 기술개발 및 현장보급 확대
 - 농작업 부담경감 기술 : ('09까지) 45종 → ('14까지) 80종
 - 편의장비 지원 : ('09까지) 147개소 → ('14까지) 2,000
- 농작업 안전 가상체험교육 등 재해예방·안전교육 강화
 - * 농촌진흥청 내 가상체험관 신설 및 가상체험 프로그램 개발('10)
- 농업안전보건정보 DB 구축 및 농가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09~'10)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업인 개인보호구 및 편이장비 개발 및 산업체 기술이전(연중)
 - 산업재산권 출원(5종) : 농업용 회전식 가위, 속옷 일체형 서열작업복 등
 - 산업재산권 특허등록(8종) : 농약방제복, 전동식 전지가위 등
 - 산업체 기술이전(2종) : 슬림조인트형 3륜 손수레 등
- 작목별 작업단계별 현장 노출평가 : 배, 감귤, 배추 3작목
 - 유기분진, 온열환경,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등
- 발작물 생산 농기계 기술 연구 : 양과 수확기 등

3. 2013년도 추진 계획

- 기능성 농업인 작업화 등 산업재산권 획득 : 3종
- 작목별 작업단계별 현장 노출평가 : 3개 작목
 - 유기분진, 온열환경,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등
- 축산작업자의 안전보건 기술 연구 : 양돈, 양계 등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연구원
 - 사업 규모(사업량) : 3 소과제 8 세부과제(8억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시험연구사업 예산(국비 100%)
 - 지원조건 : 과제심의 통과
 - 사업내용 :
 - 농작업 유해요인 노출조사 및 위험성 평가
 - 고령농업인 농업활동 영향요인에 따른 지원 방안 연구
 - 기능성 농작업화 개발
 - 고령농업인의 상지작업 개선 연구
 - 축산작업자의 보호장비 개발 등

- 법적근거

-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 35조, 39조('09. 5. 전부개정)
농어촌 주민 복지 증진, 농어로 안전작업 기술개발, 농어업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에 대한 지원 등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 치료 등 지원
제15조 : 업무상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농촌진흥청 훈령 제802호, 제20조
농작업 안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900					900
2013			800					800
(증△감)			200					200

* 농특세 전입금 사업은 농특세로 기재하고, 현 회계는 별도 기재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과제)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8			900/900				900/900
'13	8			800				800
'14	13			1,300				1,300
'15	13			1,300				1,300
'16	13			1,300				1,300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나.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안전 연구 등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촌진흥청

- 사업추진주체 : 시험연구사업 설계 심의(내외부 심의위원) 및 협약 추진 → 현장 인터뷰 및 방문 조사를 통한 연구수행(연구원) → 중간진도관리(내외부 심의위원) → 연구결과 분석 및 평가서 작성 → 연말평가(내외부 심의위원) → 결과활용 제출 및 산업재산권 출원(내외부 심의위원)
- 법적근거
 -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 35조, 39조('09. 5. 전부개정)
농어촌 주민 복지 증진, 농어로 안전작업 기술개발, 농어업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에 대한 지원 등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 치료 등 지원
제15조 : 업무상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농촌진흥청 훈령 제802호, 제20조
농작업 안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영농활용 제출	5	6	4	5	5	건수	성과등록자료
산업재산권 획득	6	6	13	5	5	건수	성과등록자료

<1-144.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및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농촌진흥청)>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당자	농촌지도사 유지현
전화번호	031-299-1074	이메일	puppy337@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농작업 재해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p15)

□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농작업 환경 개선사업 확대

-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 농작업 환경 개선 추진
 - 농작업 재해 모니터링 및 맞춤형 농작업 안전보건 서비스 지원
 - 대상 시범마을 : ('11까지) 71개소 → ('14) 330 목표
 - * 8개 의과대학 및 안전보건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기별 재해 모니터링 실시
- 농작업 환경개선 기술개발 및 현장보급 확대
 - 편이장비 지원 : ('11까지) 556개소 → ('14) 2,000 목표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육성을 통한 마을단위 농작업 안전보건 서비스 지원
 - 사업량 : 26개소(2년차 16, 3년차 10개소)
 - 사업효과 :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 향상 및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
 - 농작업 안전보건 실천 증가율 29.7% ↑ : ('10) 49.8% → ('12) 64.6



<기초안전>
농약보관함 활용

<건강관리>
근골격계질환 예방 체조

<토마토 유해작업자세 개선>
구부린 자세 → 보조구 활용

사과 농작업 작업개선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 감소(경북 영주)

- ◇ 사과(위험요인) : 적과, 수확, 제초작업(허리, 목, 어깨, 손/손목)
 - (주요 개선) 근골격계질환 예방 운동, 전동식 운반리프트, 이동식 컨베이어 등 활용,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 *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 감소(2010년 대비 2012 현황)
 - : 목 28.6%, 어깨 28.3%, 허리 22.6%, 손 18.3% ↓

- 인간공학에 기초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 사업량 : 141개소
 - 사업효과 : 농작업위험 부담 해소 및 작업능률 향상에 기여
 - 농작업 효율 개선율 : 33.6%(농가당 연간 작업 단축시간 139.7시간)
 - * (편이장비 도입전) 415.2시간 → (도입후) 275.5
 - 농작업 경제적 효과 : 1,154천원(농가당 연간 인건비 절감액)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사업 추진
 - 사업량 : 33개소(1년차 신규 17개소, 3년차 16)
 - 주요내용 : 안전보건 문제진단·개선방안 컨설팅, 마을·품목별 작업개선, 농약안전 사용, 건강관리·교육 등
- 농작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운영
 - 사업량 : 8개소(도 농업기술원)
 - 주요내용 : 농작업 안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학, 인간공학, 농학 등 지역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지원 및 협력
 - 농작업 안전사업 추진계획 수립 자문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 제시
 - 농작업 안전사업 관련 각종 진단, 측정, 교육, 평가 수행 등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 추진
 - 사업량 : 140개소
 - 주요내용
 - 인간공학에 기초한 지역·작목별 컨설팅 통한 편이장비 개선·개발 및 보급 등
 - * 편이장비 컨설턴트 활용(40명), 담당자 연찬회, 도별 순회교육, 현장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연중)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사업 및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지원대상 : 시설 및 노지원예, 축산 등 주산단지 마을, 농업인 단체 등
 - 사업규모 : 173개소(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33,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40)
 - 사업비
 -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 개소당 50백만원(국비·지방비 각 50%)
 - * 개소당 2년간 1억원 지원(1, 2년차 각 0.5억원)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 개소당 50백만원(국비 50%·지방비 50%)

- 지원내용
 - 농업인의 건강수준 및 농작업유해요인 등 진단 실시 :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현황 파악,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농작업 유해요인 등 진단
 - 현황 진단 결과에 기초하여 마을 및 작목 특성에 맞는 농작업 개선 방안 도출 및 실행 : 농기계·기구의 안전 사용, 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 보관 및 개인보호구 사용, 마을 및 작목 특성에 맞는 농작업 환경, 편이장비 및 시스템 개선, 운동프로그램 및 건강요법 실시, 안전관리교육 실시 등
-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4조 제①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 14조

나. 농작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운영

- 사업 내용
 - 사업규모 : 8개소(각 도 농업기술원)
 - 사업비 : 80백만원(국비·지방비 각 50%)
 - 지원내용
 - 농작업 안전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 제시
 - 농작업 안전사업 관련 각종 진단, 측정, 교육, 평가수행 등
 - 근거규정
 - 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3장. 농작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 농촌진흥청 훈령 933호(2013. 2. 28. 개정)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	소계			
2012	1,160	3,520	400	-	5,080	5,080	-	10,160
2013	785	3,461	-	-	4,246	4,246	-	8,492
(증△감)	△375	△59	-	-	△834	△834	-	△1,668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안전 모델	농작업 안전 원회	편이 장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3	8	140	785	3,461			4,246		8,492
경기	4	1	3	95	75			170		340
강원	4	1	12	95	300			395		790
충북	5	1	14	120	350			470		940
충남	5	1	15	120	375			495		990
전북	5	1	13	120	325			445		890
전남	4	1	24	95	600			695		1,390
경북	3	1	22	70	550			620		1,240
경남	3	1	18	70	450			520		1,040
제주			8		200			200		400
부산			2		50			50		100
인천			2		24			24		48
광주			1		25			25		50
대전			1		22			22		44
울산			2		40			40		80
세종			3		75			75		15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안전 모델	농작업 안전 원회	편이 장비	농작업 안전 예방	농특	균특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12	26/26		141/141	16	1,160/1,160	3,520/3,520	400	-	5,080/5,080	-	10,160/10,160
'13	33	8/8	140		785	3,461	-	-	4,246	-	8,492
'14	34	8/8	150		890	3,750	-	-	4,640	-	9,280
'15	34	8/8	150		890	3,750	-	-	4,640	-	9,280
'16	34	8/8	150		890	3,750	-	-	4,640	-	9,28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작업 안전보건 실천 증가율		26.1 (신규)	29.7	30	30	3차년도 농작업 안전 모델 시범마을 안전 보건 실천 현황 점검	사업 성과분석 연구보고서
농작업 효율 개선을	44.9	33.6	33.6	34	35	편이장비 도입 전후 연간 농가당 농작업 시간 분석	사업 성과분석 연구보고서 (전문가 컨설팅 보고서 기초)

<1-1-4.5. 농작업재해예방 체험매체 개발 및 정보화 지원(농촌진흥청)>

담당부서	재해예방공학과	담당자	김효철
전화번호	031-290-1938	이메일	alf0416@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농작업 재해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p15)

□ 농작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기반 조성

- 전국 단위 표본 조사를 통해 농작업 재해 현황 통계 작성
 - * 국가통계 승인('09) 후 매 2년마다 통계조사 실시
- 농작업 재해 원인구명 및 건강유해요인 노출 평가를 통해 농작업 안전관리 기준 마련
 - * ('09) 근골격계질환 평가→('10)농약중독→('11~)호흡기질환 등
- 유비쿼터스기반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시스템 구축(U-Safe Farm)
 - 생체정보측정 및 위치추적(RFID)기능이 탑재된 휴대형 단말기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사고(낙상, 일사병, 농약중독 등) 예방
 - 농작업장·시설 등에 대해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을 활용한 유해인자 체크 및 경고시스템 구축
 - 14개 마을 시범 적용후 '13년 이후 전국 확산(1시·군 당 1개소)

□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농작업 환경 개선사업 확대

-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 농작업 환경 개선 추진
 - 농작업재해 모니터링 및 맞춤형 농작업 안전보건 서비스 지원
 - 대상 시범마을 : ('09)36개소 → ('14) 330
 - * 8개 의과대학 및 안전보건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기별 재해 모니터링 실시
- 농작업 환경 개선 기술개발 및 현장보급 확대
 - 농작업 부담경감 기술 : ('09까지) 45종 → ('14까지) 80종
 - 편의장비 지원 : ('09까지) 147개소 → ('14까지) 2,000
- 농작업 안전 가상체험교육 등 재해예방·안전교육 강화
 - * 농촌진흥청 내 가상체험관 신설 및 가상체험 프로그램 개발('10)
- 농업안전보건정보 DB 구축 및 농가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09~'10)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작목별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프로그램 5종 개발
- 다문화 농업인용 다국어 안전보건 매뉴얼 개발·보급
· 농작업재해 응급처치 : 베트남어 등 4종
- 농업인 건강안전 정보센터 고도화 사업
- 농기계 운전조작 시뮬레이터 개발 및 정보시스템 연구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다문화 농업인용 다국어 안전보건 매뉴얼 개발·보급
- 농업인 건강안전 정보화 사업 추진 : <http://farmer.rda.go.kr>
- 스마트 폰을 활용한 농업인 안전보건 정보제공 기반 구축
- 농기계 운전조작 시뮬레이터 개발 등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작업재해예방 체험매체 개발 및 정보화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연구원
 - 사업 규모(사업량) : 소과제 2, 정보화 용역 1과제
 - 지원금액 및 형태 : 6억원 (국비 100%)
 - 지원조건 : 과제 심의 통과
 - 지원내용
 - 농작업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작업환경 및 안전관리 요령에 대하여 농업인이 양방향 반응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실제 위험작업에 대한 대응력 확보
 - 농업인, 지자체 공무원이 인터넷 망이 잘 갖추어 있지 않은 농촌, 농업현장(노지 등)에서 효율적으로 안전관리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정보화 기반 구축
 - 다문화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건강안전정보 개발
- 법적근거
 -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 35조, 39조('09. 5. 전부개정)
농어촌 주민 복지 증진, 농어로 안전작업 기술개발, 농어업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에 대한 지원 등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14조 : 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 치료 등 지원
 - 제15조 : 업무상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농촌진흥청 훈령 제802호, 제20조
 - 농작업 안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200					1,200
2013			600					600
(증△감)			△600					△6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과제)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6/6			1,200/1,200				1,200/1,200
'13	3			600				600
'14	5			1,800				1,800
'15	5			1,800				1,800
'16	5			1,800				1,800

나. 농작업 안전관리 정보화 연구 등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촌진흥청
- 사업추진주체 : 시험연구사업 설계 심의(내외부 심의위원) 및 협약 추진 → 현장 인터뷰 및 방문 조사를 통한 연구수행(연구원) → 중간진도관리(내외부 심의위원) → 연구결과 분석 및 평가서 작성 → 연말평가(내외부 심의위원) → 결과활용 제출 및 산업재산권 출원(내외부 심의위원)

- 법적근거

-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 35조, 39조('09. 5. 전부개정)
 - 농어촌 주민 복지 증진, 농어로 안전작업 기술개발, 농어업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에 대한 지원 등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14조 : 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 치료 등 지원
 - 제15조 : 업무상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농촌진흥청 훈령 제802호, 제20조
 - 농작업 안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작업 안전보건 체험프로그램 등 교육 자료 개발	3	5	3	3	3	건수	영농활용 및 교육자료
농업인 건강안전정보 홈페이지 방문자수	180만	2백만	100,000	100,000	100,000	명수	홈페이지 방문자수

< 1-1-5-1 :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어촌사회과	담당자	김병준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4	이메일	kim94@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5) 농어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p16)

- 농부증(農夫症) 예방 등 농어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검진 등 지원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10)
 - 농업인질환센터 지정,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 도입 등 지원방안 수립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업인 질환 전문의, 보건사회연구원, 농진청 전문가 등으로 T/F 구성, 농어업 안전보건센터 설치·운영 방안 마련(2~6월)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안전보건센터 5개소 지정 및 운영

4. 관련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대학병원, 의과대학(한의대 포함)
 - 사업 규모(사업량) : 시·도별 5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개소당 최대 3억원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내용
 - 인건비(용역성 경비), 조사연구비, 예방교육 활동비, 센터 운영경비 등
 - 인건비(용역성 경비) : 60% 이내
 - 조사연구비 : 15% 이상
 - 예방교육 활동비 : 15% 이상
 - 센터 운영경비 등 : 10% 이내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	-	-	-	-	-	-	-
2013	1,505	-	-	-	1,505	-	-	1,505
(증△감)	1,505	-	-	-	1,505	-	-	1,505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없음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10,565						10,565
'12	-	-	-	-	-	-	-	-
'13	5개소	1,505	-	-	-	-	-	1,505
'14	5개소	3,020	-	-	-	-	-	3,020
'15	5개소	3,020	-	-	-	-	-	3,020
'16	5개소	3,020	-	-	-	-	-	3,02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관계부처 협의	-	농어업 안전센터 설치·운영방안 마련 여부	농어업안전보 건센터 5개소지정 및 운영	농어업안전 보건센터 10개소지정 및 운영		농어업 안전센터 지정 및 운영	관련 보고서

1-2.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1) 개관

□ '13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응급의료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하여 농어촌 주민의 생존률 개선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시설 확충 및 운영비 지원(69개소, 199억원)
-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어촌지역 공공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의료장비 현대화 지원
 - 891억원을 지원하여 보건기관(136개소) 신·증축 및 개·보수, 보건장비(보건 의료장비 231개, 보건사업차량 31대) 지원
- 공공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하여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 25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23, 적십자병원 2)에 시설개선·장비보강 지원(498억원)
-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설치·운영비 지원 (신규 4개소, 79억원)
- 지방자치단체별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낙도 등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
 - 농어촌 지역의 '찾아가는 산부인과', '낙도지역 주민을 위한 병원선' 운영 등

□ 예산 내역

< 2013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19,908	19,908			19,908
농어촌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 지원	58,801	.	.	.	58,801	30,282	.	89,08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60,835			52,835		113,670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 확보								비예산
농어촌 보건의료기술지원	572	.	.	.	572	.	.	572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2,000		2,000	2,000		4,000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3,950		3,950	3,950		7,900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사업		.	.	24,783	24,783	24,782		49,565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강화						7,002		7,002
합계	59,373		66,785	44,691	170,849	120,851		291,700

<1-2-1-1.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응급의료과	담당자	홍명진
전화번호	02-2023-7275	이메일	mjk2812@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개선 (기본계획 p17)

□ 농어촌 응급의료 체계 개선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43개 군)에 응급의료시설·장비 지원 및 응급의학과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
 - 보건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13개 군), 병원급 의료기관(25개 군)이 있는 군은 시설지원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육성
 - 공공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군병원(2개 군)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3개 군)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육성
- 취약지 응급진료권(6개 권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 '10년까지 3개소 확충 → '11년까지 6개소 모두 확충
- 농어촌 이송취약지역(이송시간 30분이상 소요)에 119 구급 지원센터(구급대원 최소 2명 이상, 구급차 1대)를 단계적으로 설치
 - 구급지원센터 추가설치 계획(누계) : ('10) 50개 → ('11) 100 → ('12) 175
- 낙도·오지지역은 헬기·선박이용 응급환자이송체계 구축 지원
 -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u-Health 원격의료서비스 도입 병행
 - * 해경·산림청 헬기에 응급의료장비 설치(매년 8대) 및 오백지 헬기 착륙장 건립지원
 - * 해양경찰청 경비선에 응급의료장비 설치(누계) : ('10) 25척 → ('11) 51척 → ('12) 52척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 기존 취약지 운영비 지원 : 35개소
 - 당직의료기관 지원 : 5개소
-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군(郡)지역 단일 응급의료기관 지원) : 21개소
- 신규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센터 육성 지원 : 2개소
- 기존 취약진료권 응급의료센터 지원 : 8개소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집행계획
 - 취약지역 지역기관 운영지원 : 64개소
 - 취약진료권 지역센터 운영지원 : 8개소
 - 취약진료권 지역센터 설치지원 : 2개소
- 집행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월	2013년 사업예산 확정내시	
2~3월	지자체 의견 수렴 및 사업계획서 작성	
4월~5월	사업계획서 검토 및 국고보조금 교부	
9월~10월	취약진료권 신규센터 공모 및 선정	

4. 관련 사업 내용

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 사업 규모(사업량) : '13년 예산 199억원(69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역센터) 시설확충 17억, 운영비 4억
(지역기관) 시설확충 3.8억, 운영비 2.5억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내용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 법적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3조(응급의료의 제공),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응급의료체계의 구축)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2,122	22,122			22,122
2013				19,908	19,908			19,908
(증△감)				△10.0	△10.0			△10.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4				19,890			19,890
인천	2				268			268
경기	6				1,850			1,850
강원	10				2,468			2,468
충북	9				1,568			1,568
충남	6				1,418			1,418
전북	6				1,143			1,143
전남	11				2,318			2,318
경북	12				2,461			2,461
경남	9				2,250			2,250
미통지	3				4,146			4,146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6,350			
'12	73개소				22,122			
'13	74개소				19,908			
'14	82개소				40,460			
'15	82개소				37,020			
'16	82개소				37,020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 응급의료기관이 설치된 군(郡)지역 비율을 2014년 90%로 함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응급의료기관이 설치된 군(郡)지역 비율	56%	72%	80%	85%	90%	(응급의료기관이 설 치된 군(郡)단위 개수 /86개 군(郡)) x 100	응급의료기관 조사

<1-2-1-4.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담당자	오혜영
전화번호	02-2023-7492	이메일	o.hy@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개선 (기본계획 p18)

□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 및 시설·장비 현대화, 서비스 여건 개선

- 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예방적 종합보건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성
 -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관리, 치매조기검진, 보충영양사업,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제공 등
- 지방의료원(34개)을 공공의료서비스 중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
-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병원급 의료기관 지원대책 마련
 - * 중소병원의 특성화(노인성질환, 재활 등)로 지역공공의료 체계와 유기적 관계 형성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지역 보건기관 시설(신·증축, 개보수) 185개소, 보건의료장비 346개소, 전산장비 46대, 차량 51대 지원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면적 추가 지원 (보건소 9개소, 통합보건지소 1개소)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지역 보건기관 시설(신·증축, 개보수) 136개소(52,909백만원), 보건의료장비 231개소(4,620백만원), 차량 31대(472백만원) 지원 예정
- 보건의료원, 보건소의 예방적 건강증진 기능강화를 위한 주민건강센터 면적 반영 등 지원면적 상향하여 지원
- 도서지역 의료취약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선 5척(800백만원)에 대한 운영비 신규 지원 예정

4. 관련 사업 내용

가.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 사업 규모(사업량) : 시설 136개소, 장비 231개소, 차량 31대
- 지원금액 및 형태 : 58,801백만원, 지자체 자본보조/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자본보조 (국비 2/3, 지방비 1/3), 경상보조(국비 1/2, 지방비 1/2)
- 지원내용 :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신·증축, 개보수 및 장비, 차량 지원, 도서지역 병원선 운영비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2항제2호, 「지역보건법」 제19조(비용의보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56,814	-	-	-	56,814	30,903	-	87,717
2013	58,801	-	-	-	58,801	30,282	-	89,083
(증△감)	1,987	-	-	-	1,987	-	-	1,987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6개 지자체	58,801	-	-	-	30,282	-	89,083
대구	1	713	-	-	-	356	-	1,069
인천	3	1,488	-	-	-	824	-	2,312
울산	1	129	-	-	-	113	-	242
세종	1	18	-	-	-	9	-	27
경기	11	1,455	-	-	-	990	-	2,445
강원	7	898	-	-	-	449	-	1,347
충북	9	7,779	-	-	-	3,889	-	11,668
충남	15	10,337	-	-	-	5,297	-	15,634
전북	12	8,606	-	-	-	4,303	-	12,909
전남	18	8,282	-	-	-	4,301	-	12,583
경북	18	11,091	-	-	-	5,669	-	16,760
경남	17	7,484	-	-	-	3,822	-	11,306
제주	3	521	-	-	-	260	-	781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45	302,671	-	-	-	157,323	-	459,994
'12	135/135	56,814 /56,814	-	-	-	30,903 /30,903	-	87,717 /87,717
'13	120	58,801	-	-	-	29,801	-	88,602
'14	125	60,518	-	-	-	31,259	-	91,777
'15	130	62,334	-	-	-	32,197	-	94,531
'16	135	64,204	-	-	-	33,163	-	97,367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이용자 만족도	85 /85.1	90 /90.5	90 /90.4	91	91	설문조사	외부리서치기 관 설문조사
이용자 증가율	0.6 /0.89	1.0 /1.14	1.2 /1.48	1.5	1.8	시설개선 전후 대 비 이용자 증가율	지자체 보고 자료

<1-2-1-5.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공공의료과	담당자	윤대중
전화번호	02-2023-7368	이메일	ydjung119@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개선 (기본계획 p18)

□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 및 시설·장비 현대화, 서비스 여건 개선

- 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예방적 종합보건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성
 -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관리, 치매조기검진, 보충영양사업,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제공 등
- 지방의료원(34개)을 공공의료서비스 중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
-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병원급 의료기관 지원대책 마련
 - * 중소병원의 특성화(노인성질환, 재활 등)로 지역공공의료 체계와 유기적 관계 형성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지역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34개소, 적십자병원 5개소) 국고지원 실적(계속)
 - '05년부터 '12년까지 : 총 3,796억원(시설개선 2,699억원, 장비보강 1,097억원) 지원
 - '12년 486억원(시설개선 218억원, 장비보강 268억원) 지원

3. 2013년도 추진 계획

- '13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 계획
 - 25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23개소, 적십자병원 2개소)에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예산 498억원 지원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각 병원, 시도 경유)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예산 교부 및 집행 점검

4. 관련 사업 내용

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지방의료원 34개소, 적십자병원 5개소

- 사업규모(사업량) : 지방의료원 23개소, 적십자병원 2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지방의료원), 국비 100%(적십자병원)
- 지원조건
 - (신축) 건축경과 연수 20년 이상 이상으로 노후도가 심각한 의료원
 - (증개축) 급성기 2차 진료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병동증축 등 시설 확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개보수) 노후 등으로 시설개보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의료장비) 노후장비 교체 및 의료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장비 필요 등
- 지원내용
 -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신축, 증개축, 개보수, 의료장비 등)
- 법적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48,635		48,635	40,435		137,705
2013			60,835		60,835	52,835		174,505
(증△감)			12,200		12,200	12,400		24,600

* 국비에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비가 '12년 82억원, '13년 80억원 포함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개소			60,835		52,835		113,670
대구	1개소			1,250		1,250		2,500
인천	1개소			6,400		6,400		12,800
경기	3개소			4,625		4,625		9,250
강원	3개소			3,373		3,373		6,746
충북	2개소			10,632		10,632		21,264
충남	3개소			2,300		2,300		4,600
전북	3개소			5,717		5,717		11,434
전남	2개소			2,800		2,800		5,600
경북	4개소			2,630		2,630		5,260
제주	1개소			2,108		2,108		4,216
추경				11,000		11,000		22,0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개소 /121개소			274,130		242,930		517,060
'12	21개소 /21개소			48,635 /48,635		40,435 /40,435		89,070 /89,070
'13	25개소			49,835		41,835		91,670
'14	25개소			54,000		49,000		103,000
'15	25개소			58,980		53,980		112,960
'16	25개소			62,680		57,680		120,36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지방의료원 이용자 만족도	79	79.5	80	80	80	구조화 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면접조사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결과 보고서

<1-2-1-6.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담당자	김현숙 사무관
전화번호	02-2023-7487	이메일	hs3903@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개선 (기본계획 p18)

□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

-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배출 이후 공중보건의 인력을 대체할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방안 마련('10)

* 의학전문대학원 전환비율: 54.4%, 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비율: 70.7%('09.7, 입학 정원기준)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병원선에 공중보건의사를 최우선 배치하여 농어촌 등과 같은 의료취약지 위주로 인력을 적정 배치되도록 하였음

- '12년말 기준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병원선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총 4,046명 중 3,299명(81.5%)으로 전년 대비 6.5% 상향 배치

※ '11년 3,405명 (75.0%) → '12년 3,299명 (81.5%)

구분	2011년				2012년			
	계	의과	치과	한 의과	계	의과	치과	한 의과
합 계	4,543	2,901	613	1,029	4,046	2,528	569	949
보건소	1,066	533	217	316	1,016	510	246	260
보건지소	2,322	1,318	361	653	2,266	1,329	289	648
병원선	17	7	5	5	17	7	5	5
국·공립병원	438	409	3	26	305	282	3	20
이동진료반	12	7	2	3	15	11	2	2
복지시설	43	36	2	5	29	26	0	3
교정시설 등	69	51	18	0	72	53	19	0
보건단체	37	37	0	0	26	26	0	0
국가보건기관	139	116	4	19	121	106	4	11
응급의료센터 등	390	387	1	2	179	178	1	0

- 은퇴의사 활용제도(공공의료과) 및 의대정원할당제도(의료자원과)는 해당 과에서 중장기 과제로 계속 추진

3. 2013년도 추진 계획

- 공중보건의사 효율적 배치(4월)
 - 의료취약지에 대한 인력을 우선 배치하여 농어촌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
 - 농어촌지역 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를 최우선 배치하고, 의사확보가 어려운 농어촌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등에 최소한도 범위내에서 배치
 - 공보의 배치기관 특성 및 지역현황 등 분석(의료취약 등)을 통한 지역적 특성(농어촌, 도농, 도시형 구분 등)에 따른 적정 배치기준 마련

4. 관련 사업 내용

- ※ 공중보건의 인건비 외 예산 수반된 내용이 없어 작성 생략

5. 성과목표

- 해당 사항 없음

<1-2-1-7. 농어촌 보건의료기술지원(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담당자	오혜영
전화번호	02-2023-7492	이메일	o.hy@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개선 (기본계획 p17)

□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 및 시설·장비 현대화, 서비스 여건 개선

○ 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예방적 종합보건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성

-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관리, 치매조기검진, 보충영양사업,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제공 등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지자체 151개 등 533억원 지원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보건소 등 지역보건기관 기능강화 및 사업모델개발을 위한 지속적·체계적인 기술지원 수행
 - 농어촌 등 지역보건기관의 사전예방적 주민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기관 사업모델 개발 및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정비 지원
- 농어촌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전문기술자문 수행
 -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장비 등 인프라 신규설치 및 개선을 위한 지침개발, 선정평가 지원, 건축설계 심의 및 기술자문, 사업 모니터링 수행
-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진단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 보건의료취약지역 지표 구축 및 지역 현황 진단
 - 중장기 농어촌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보건의료기술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도서 오·벽지 공공보건기관 및 지역주민
- 사업 규모 : 농어촌 지자체 151개 등
- 지원금액 및 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비 100%
- 지원내용 : 농어촌 등 지역보건기관의 인프라 확충 및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정책개발·전문기술자문 수행
- 법적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지출), 농어촌 등 보건의료기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2(지역보건사업 지원단의 설치·운영)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533	-	-	-	533	-	-	533
2013	572	-	-	-	572	-	-	572
(증△감)	39	-	-	-	39	-	-	39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2,930	-	-	-	-	-	2,930
'12	-	533/533	-	-	-	-	-	533/533
'13	-	572	-	-	-	-	-	572
'14	-	590	-	-	-	-	-	590
'15	-	608	-	-	-	-	-	608
'16	-	627	-	-	-	-	-	627

5. 성과목표

- 해당사항 없음

<1-2-1-8.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인프라 구축(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임성국
전화번호	2023-8771	이메일	lim38317@mw.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개선 (기본계획 p17)

□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 및 시설·장비 현대화, 서비스 여건 개선

○ 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예방적 종합보건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성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관리, 치매조기검진, 보충영양사업,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제공 등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해당없음('13년 신규사업)

3. 2013년도 추진 계획

○ 강원도 원격건강관리 구축 지원 : 72기관 → 152기관 확대 (신규 80기관)

-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 치매관리를 위한 원격건강관리정보시스템 확충

※ 보건기관(80개소) : 보건소 4, 보건지소 31, 보건진료소 45)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강원도 18개 시·군

- 사업 규모(사업량) : 80개 보건기관

- 지원금액 및 형태 : 2,800백만원/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원격건강관리시스템 설치를 통한 만성질환(고혈압·당뇨)자, 치매 환자 원격건강관리 지원

- 법적근거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0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	소계			
2013			2,000		2,000	2,000		4,000
(증△감)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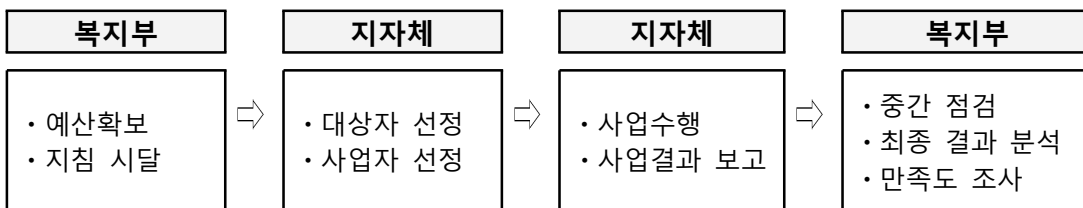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보건기관 80개소			2,000		2,000		4,000
강원	80개기관			2,000		2,000		4,0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보건기관 80개소			2,000		2,000		4,000
'12				0		0		0
'13				2,000		2,000		4,000
'14				0		0		0
'15				0		0		0
'16				0		0		0

○ 사업 추진체계



5. 성과목표 : 해당없음

<붙임>

강원도 보건기관 u-Health(원격건강관리) 설치현황

시군별	설치현황	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비고
계	기관수	248	18	101	129	
	설치수율 (설치율)	68 (27%)	14 (78%)	12 (12%)	42 (33%)	
춘천시	기관수	24	1	10	13	고혈압, 당뇨
	설치수	3		1	2	
원주시	기관수	18	1	9	8	고혈압, 당뇨
	설치수	2	1		1	
강릉시	기관수	17	1	7	9	고혈압, 당뇨, 치매진료, 체력증진
	설치수	9	1	2	6	
동해시	기관수	4	1	3		
	설치수	없음				
태백시	기관수	2	1		1	고혈압, 당뇨
	설치수	2	1		1	
속초시	기관수	1	1			
	설치수	없음				
삼척시	기관수	15	1	8	6	고혈압, 당뇨, 치매
	설치수	6	1	2	3	
홍천군	기관수	27	1	8	18	고혈압, 당뇨, 치매
	설치수	8	1	3	4	
횡성군	기관수	17	1	8	8	고혈압, 당뇨, 치매
	설치수	3	1		2	
영월군	기관수	14	1	8	5	고혈압, 당뇨, 치매
	설치수	2	1		1	
평창군	기관수	23	1	7	15	고혈압, 당뇨, 치매
	설치수	3		1	2	
정선군	기관수	19	1	7	11	고혈압, 당뇨, 치매
	설치수	3	1		2	
철원군	기관수	12	1	4	7	고혈압, 당뇨, 치매
	설치수	4	1	1	2	
화천군	기관수	11	1	4	6	고혈압, 당뇨, 치매
	설치수	4	1		3	
양구군	기관수	8	1	4	3	고혈압, 당뇨, 치매
	설치수	4	1		3	
인제군	기관수	11	1	5	5	고혈압, 당뇨, 치매
	설치수	7	1	1	5	
고성군	기관수	14	1	4	9	고혈압, 당뇨, 치매
	설치수	5	1	1	3	
양양군	기관수	11	1	5	5	고혈압, 당뇨, 치매
	설치수	3	1		2	

- 고혈압, 당뇨관리 :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지)소의 원격자문을 받아 보건진료원이 서비스 제공(16시군)
- 원격치매관리 : 정신과 부족 시군 보건소에서 보건소 의사가 제공 (12시군), 거점병원 3개소 협력 (12 시군 : 홍천, 삼척, 고성, 양양,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협력병원 현황 (4개소)

- 춘천성심병원 원격관리센터(1) : u-Health 운영전반 자문, 교육지원, 운영평가등 모니터링 수행
- 원격치매 거점병원(3) :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연세대 원주기독병원, 강원대학교병원,
- 치매원격진료 (의사-환자간, 약택배시범) : 강릉동인병원
- U-체력증진 (시범운영) 원격지원 : 춘천성심병원(재활의학과) *춘천성심병원은 1개소로 산정(중복)

<1-2-1-9. 분만취약지 지원(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공공의료과	담당자	김주심사무관
전화번호	2023-7385	이메일	jskim01@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개선 (기본계획 p17)

□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 및 시설·장비 현대화, 서비스 여건 개선

- 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예방적 종합보건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성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관리, 치매조기검진, 보충영양사업,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제공 등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7개소 지원(신규4, 기존3)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 신규 4개소 설치를 위해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지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
- 사업 규모(사업량) : 신규 4개소(기존 7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지원
- 지원조건 : 국비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 (분만 산부인과) 신규 1개소당 1,250백만원(시설·장비비, 운영비)/
기존 1개소당 500백만원(운영비)
· (산부인과 외래) 1개소당 200백만원(운영비)
- 법적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13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32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200		2,200	2,200		4,400
2013			3,950		3,950	3,950		7,900
(증△감)			1,750		1,750	1,750		

* 국비 : 일반회계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강원	2			350		350		
충북	1			250		250		
전남	1			250		250		
경북	2			500		500		
경남	1			100		100		
미통지	4			2,500		2,500		

* '13년 사업기관 미확정(분만산부인과4, 3월말 확정예정)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7(신규4)/ 7(신규4)			2,200		2,200		
'13	11(신규4)			3,950		3,950		
'14	30(신규9)			5,815		5,815		
'15	44(신규4)			7,840		7,840		
'16	48(신규4)			7,715		7,715		

5. 성과목표 : 해당없음

< 1-2-2-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담당자	강소정
전화번호	2023-7845	이메일	hepsiba4309@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기본계획 p18)

□ 보건(지)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강화

- 거동불편 노령자·장애인·임산부·영유아 등 취약계층부터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력 확충 및 서비스 질 향상

* 맞춤형 방문관리서비스 인력 : ('08) 2천명 → ('10) 2.7천명

※ 2013년부터 17개 보건소 개별 보조사업(맞춤형 방문건강관리 포함)이 포괄보조방식으로 변경되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됨

-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계획 작성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해당없음

3. 2013년도 추진 계획

○ 기존 개별 건강증진사업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통합 실시

- 기존 17개 내역사업을 1개의 사업으로 통합하고 사업범위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제시한 13가지 사업영역으로 재편성 운영
- 예산을 통합하여 사업간 칸막이를 없애고 지자체 사업 선택 자율성 부여
- 각 지자체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13개 사업분야 범위 내에서 사업을 자유롭게 기획하여 추진

○ 지자체 사업운영 자율성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운영

- 시도 중심의 시군구 보건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 각 시도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및 성과관리 실시

○ 보건소 사업의 체계적인 기술지원 및 교육 실시

- 건강증진 실무능력배양 및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 및 실시

4. 관련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16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
- 지원금액 및 형태 : 91,143백만원, 지자체 자본보조/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지원
- 법적근거 :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 영양관리사업),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41조, 「장애인 복지법」 제35조, 「구강보건법」 제6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건강검진),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영유아보육법」 제33조(건강진단)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	-	-					
2013	-	-	-	24,783	24,783	24,782		49,565
(증△감)	-	-	-	24,783	24,783	24,782		49,565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	-	24,783	24,783		49,565
부산기장군					288	288		577
대구달성군					347	347		694
인천강화군					316	316		631
인천옹진군					154	154		309
울산울주군					338	338		676
경기소계					1,353	1,353		2,706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여주군					398	398		796
연천군					242	242		483
가평군					318	318		636
양평군					395	395		790
강원소계					3,056	3,056		6,112
홍천군					357	357		714
횡성군					263	263		526
영월군					279	279		558
평창군					285	285		571
정선군					272	272		545
철원군					252	252		505
화천군					236	236		472
양구군					323	323		645
인제군					265	265		530
고성군					286	286		573
양양군					237	237		474
충북소계					3,050	3,050		6,101
청원군					460	460		920
보은군					300	300		600
옥천군					361	361		723
영동군					433	433		865
진천군					295	295		589
괴산군					284	284		568
음성군					359	359		719
단양군					323	323		645
증평군					236	236		472
충남소계					2,041	2,041		4,082
금산군					380	380		760
부여군					244	244		488
서천군					310	310		619
청양군					215	215		431
홍성군					291	291		583
예산군					327	327		655
태안군					274	274		547
전북소계					2,244	2,244		4,488
완주군					364	364		728
진안군					324	324		649
무주군					204	204		407
장수군					233	233		466
임실군					274	274		548
순창군					256	256		511
고창군					279	279		558
부안군					310	310		621
전남소계					5,270	5,270		10,540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담양군					295	295		590
곡성군					277	277		553
구례군					221	221		443
고흥군					305	305		610
보성군					273	273		547
화순군					328	328		656
장흥군					382	382		765
강진군					294	294		587
해남군					366	366		732
영암군					326	326		651
무안군					312	312		625
함평군					328	328		656
영광군					300	300		601
장성군					349	349		698
완도군					282	282		564
진도군					296	296		593
신안군					335	335		671
경북소계					3,555	3,555		7,110
군위군					266	266		532
의성군					324	324		648
청송군					233	233		465
영양군					276	276		552
영덕군					301	301		602
청도군					298	298		596
고령군					266	266		531
성주군					308	308		616
칠곡군					332	332		664
예천군					253	253		506
봉화군					257	257		515
울진군					308	308		616
울릉군					134	134		268
경남소계					2,769	2,769		5,539
의령군					244	244		489
함안군					269	269		539
창녕군					263	263		526
고성군					271	271		543
남해군					267	267		534
하동군					354	354		709
산청군					288	288		576
함양군					264	264		529
거창군					266	266		531
합천군					282	282		563

○ 중기재정계획

	'12	'13	'14	'15	'16	'17	연평균 증가율
'12~'16 계획	85,075	91,143	88,939	89,439	89,969	-	1.4
'13~'17 요구		91,143	107,978	111,217	114,554	117,990	6.7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09	'10	'11	'12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체감도	목표					45.0%	- 지역사회 주민 대상 지 역사회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체감도 조사 외부위탁기관 조사결과
	실적					-	

6. 참고자료

구 분	기 존 국 고 보 조 사 업 (특 정 보 조)	지 역 사 회 통 합 건 강 증 진 사 업 (포 괄 보 조)																														
목적	▶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이나, 지역적인 목적 달성만 가능 (예 : 금연클리닉 (금연 실천))	▶ 국가 건강증진 정책방향과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목적 일치시킴 (예 : 금연사업 (흡연 예방 및 금연))																														
구성	▶ 17개 사업 사업간 연계성 없이 운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td></tr> <tr><td>② 지역사회중심재활</td></tr> <tr><td>③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td></tr> <tr><td>④ 영양플러스사업</td></tr> <tr><td>⑤ 보건소 금연클리닉</td></tr> <tr><td>⑥ 모유수유클리닉 운영</td></tr> <tr><td>⑦ 철분제, 엽산제 지원</td></tr> <tr><td>⑧ 구강보건실(센터) 설치운영</td></tr> <tr><td>⑨ 어린이 구강건강관리</td></tr> <tr><td>⑩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td></tr> <tr><td>⑪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지자체 보조</td></tr> <tr><td>⑫ 치매조기검진사업</td></tr> <tr><td>⑬ 치매노인사례관리</td></tr> <tr><td>⑭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td></tr> <tr><td>⑮ 한의약 지역보건사업</td></tr> <tr><td>⑯ 아토피천식 예방관리</td></tr> <tr><td>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td></tr> </table>	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② 지역사회중심재활	③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④ 영양플러스사업	⑤ 보건소 금연클리닉	⑥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⑦ 철분제, 엽산제 지원	⑧ 구강보건실(센터) 설치운영	⑨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⑩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⑪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지자체 보조	⑫ 치매조기검진사업	⑬ 치매노인사례관리	⑭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	⑮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⑯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 1개 사업으로 통합, 포괄적 운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① 금연</td></tr> <tr><td>② 절주</td></tr> <tr><td>③ 신체활동</td></tr> <tr><td>④ 영양</td></tr> <tr><td>⑤ 비만</td></tr> <tr><td>⑥ 구강</td></tr> <tr><td>⑦ 심뇌혈관 예방관리</td></tr> <tr><td>⑧ 한의약 건강증진</td></tr> <tr><td>⑨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td></tr> <tr><td>⑩ 여성어린이 특화 (모자보건)</td></tr> <tr><td>⑪ 치매관리</td></tr> <tr><td>⑫ 지역사회 재활</td></tr> <tr><td>⑬ 방문 건강관리</td></tr> </table> <p>√사업 영역 제시(HP 2020에 맞춤) → 지자체 선택 √사업간 칸막이가 없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 설계 가능</p>	① 금연	② 절주	③ 신체활동	④ 영양	⑤ 비만	⑥ 구강	⑦ 심뇌혈관 예방관리	⑧ 한의약 건강증진	⑨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⑩ 여성어린이 특화 (모자보건)	⑪ 치매관리	⑫ 지역사회 재활	⑬ 방문 건강관리
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② 지역사회중심재활																																
③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④ 영양플러스사업																																
⑤ 보건소 금연클리닉																																
⑥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⑦ 철분제, 엽산제 지원																																
⑧ 구강보건실(센터) 설치운영																																
⑨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⑩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⑪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지자체 보조																																
⑫ 치매조기검진사업																																
⑬ 치매노인사례관리																																
⑭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																																
⑮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⑯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① 금연																																
② 절주																																
③ 신체활동																																
④ 영양																																
⑤ 비만																																
⑥ 구강																																
⑦ 심뇌혈관 예방관리																																
⑧ 한의약 건강증진																																
⑨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⑩ 여성어린이 특화 (모자보건)																																
⑪ 치매관리																																
⑫ 지역사회 재활																																
⑬ 방문 건강관리																																
운영 체계	(중앙) ▶ 총괄·조정 기능 부재 ▶ 사업 부서에서 연계성 없이 개별 운영관리, 교육 실시 (지자체) ▶ 17개 사업 분절적, 획일적, 경직적으로 운영	(중앙) ▶ 건강정책과 : 사업 총괄·조정 ▶ 사업부서 : 중점과제별 보건소사업 전략 제시, 사업운영 및 교육 지원 (지자체) ▶ 사업영역 중 선택하여 지자체 자율적으로 세부사업 설계																														
재원 배분	▶ 국고보조사업별 자원배분 ▶ 사업신청에 따른 예산 배분	▶ 지자체 재정여건, 사업 성과 등과 연동된 자원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평가	▶ 국고보조사업 산출결과 중심 평가	▶ 개별사업 중심이 아닌 HP 2020 목표에 맞춘 평가 도입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지방자치단체)>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기본계획 p18)

□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낙도지역에는 병원선을 이용한 이동진료 제공
 - * 경남, 전남, 인천, 충남 섬 지역 대상으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병원선 운영 중
 - ※ 지자체에서 내과, 한방과, 치과 등 치료·진료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을 말함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이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의미
- 강원(5개군), 충북(2개군), 경북(9개군), 경남(5개군)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임산부를 찾아가 산전점검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추진
- 인천, 충남, 전남, 경남에서 낙도지역 주민을 위해 병원선 운영
- 경북(3개군)에서는 검진차량을 이용하여 독거노인 등에게 무료검진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12.7월 ~)

3. 2013년도 추진 계획

- 기존 사업을 지속하여 운영할 계획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사업구분	실적('12)	계획('13)	'12 예산	'13 예산
합 계				8,725	7,002
강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2,222건 진료	5개군(정선, 양구, 인제, 고성, 양양) 2,300명	430	410

지역	사업구분	실적('12)	계획('13)	'12 예산	'13 예산
충북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2개군 (괴산, 단양) 786명 진료	2개군 (괴산, 단양) 700명	80	80
충남	병원선 도서주민 진료	189일 218,229명 진료	6개 군/ 4,100명	638	664
전남	섬주민 순회진료, 상비의약품 지원	11개 군/ 150개 도서	11개 군/ 150개 도서	2,363	2,754
	병원선 순회진료	11개 군/ 23,802명 진료	11개 군/ 15,608명 진료		
경북	찾아가는 행복병원	3개 군/ 3,506명 검진	3개 군	2,400	360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8개군/ 2,154명 검진	8개군	400	430
경남	찾아가는 산부인과	5개군/2,491명 진료	5/1,270	400	360
	병원선 도서주민 진료	7개시군 2,996명	7/2,849	664	924
인천	병원선 이동진료	7,818명 진료 (옹진군 4개면 11개 도서지역)	7,000명	450	450
울산	한방순회 방문진료	5개소 108명	4개소 8회 170명	1,300	1,000

1-3.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 지원

(1) 개관

□ '13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농어업인의 기초생활보장강화를 위해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추가 인정 및 농어업과 관련되는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기준 완화
 - * 지출요인 추가 인정 : 대상직불금(발농업직불금 등) 확대, 농업관련 대출금 이자액 확대(50%→100%) 등
 - * 소득환산기준 완화 : 농지의 소득환산을 인하, 농촌지역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등
-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농지연금 지급(65세 이상·영농경력 5년 이상·소유면적 30,000㎡ 이하인 농업인)
 - * 농지연금 농가가입률(%) : ('12) 14.7 → ('13) 17.0
- 농어촌 지역의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의 집 고쳐주기(410가구, 주택별 상태에 따라 개·보수 비용 실비 지원)를 통해 영세·고령농어업인의 주거 복지 개선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65세~70세)에게 ha당 연 300만원(매월 25만원)의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
- 농어촌에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15개소,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36개소 지원하여 농어촌의 보육여건 개선
 - * 시설신축(396백만원/개소),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시 리모델링 비용(50백만원/개소) 지원
 - * 보건지소, 마을회관, 유희시설 등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개소당 152백만원, 36개소)

-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44천명)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11만원씩 특별근무수당 지원
- 여성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확대('12년 39개 → '13년 50개)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 및 우수사업 지원 실시
-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농촌건강장수마을 158개소를 조성하여 농촌노인에게 맞는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해 11억원을 투입하여 366명에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훈련과정 개설·운영
-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과 우수여성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600명에게 기초농업교육을 실시하고, 700명의 이주여성농업인에게는 전문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하여 작목별로 1:1 맞춤 농업교육 실시
- 해외에서 이주한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212개소)를 통해 한국어교육, 상담, 정보제공 등 지속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일명 코디네이터, 50명), 언어발달지도사(300명)를 배치하여 서비스 확대
- 농업인의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해 취약농가에게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 고령농어업인, 독거노인 등의 공동취사를 위해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지원경로당수 '12년 930개소, 12일 → '13년 1,400개소, 24일)
 - 취약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 단가 현실화 및 상한연령 상향('12년 일52천원, 75세 → '13년 일60천원, 80세)
 - * 영농도우미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농업인(15천 가구)
 - * 가사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등(10천 가구)

□ 예산 내역

<2013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비예산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				23,669	23,669			23,669
영세·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개선			200		200		1,550	1,750
경영이양 직불제	62,420							62,420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2,451			2,451		4,902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32,724				32,724	31,882		64,606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61,498		261,498	328,477		589,975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95		95			95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4,205			4,205		8,410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819				819	275		1,094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						5,001		5,001
다문화 가정 농업 교육	1,326				1,326			1,32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43,647		21,002		64,649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6,424		2,796		9,220
취약농가 인력지원	7,140				7,140			7,140
농어업인 복지시책 교육·홍보 강화								비예산
합계	104,429		268,449	73,740	327,471	396,089	1,550	844,257

<1-3-1-1.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강슬기 사무관
전화번호	02-2023-8123	이메일	conghui007@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기본계획 p19)

- 빈곤 농어업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기준 재정립
 - 소득평가액 산정시,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는 직불금의 범위 확대
 - * 현재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등은 지출비용에 포함되나 경영이양직불금 등은 미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공제되는 기초재산 공제액 특례 합리화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직불금 범위 확대('10.4월)
 - 1ha 미만 농지를 소유한 자의 경영이양보조금 지출요인 인정 추가
- 농어업인 소득 및 재산산정에 대한 특례 적용(계속)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가구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인정 및 농어업과 관련되는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기준 특례 지속 적용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농어업인 가구
 - 사업 규모(사업량) : 별도 추정 불가
 - 지원형태 : 생계·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특례기준 적용

-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추가 인정
 - 농지 1ha미만 소유한 자의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 농어민가구의 보육료 중 15만원 이내
 -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금융기관 대출금의 상환액 중 이자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농어업과 관련되는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기준 완화
 -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가액과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차감
- 법적근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 예산 : 별도예산 없음(기초생활급여 예산으로 운영)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민가구 특례적용 수급가구 수	281	540	552	500	500	해당없음	행복e음 농어민가구 특례수급자

<1-3-2-1.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

담당부서	농지과	담당자	이창학
전화번호	044-201-1742	이메일	lchak@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고령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기본계획 p19)

□ 농지 외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을 위한 농지연금제 도입

-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경지면적 3ha 이하
 -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연금승계 가능
- 연금운영 시스템개발, 상품설계 등 준비과정을 거쳐 '11년부터 시행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사업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8.4~'08.11)
- 수요예측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로 사업수요 타당성 분석('08.7)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을 통한 농지연금사업 시행근거 마련 ('08.12.29 개정·공포)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시행('09.6.30)
: 농지연금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구체화
- 농지연금 상품모형 개발, 운영시스템 개발, 사업운영지침 마련, 사업홍보 등 사업시행('11년) 준비 완료('10)
- 농지연금 가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12.12)
 - 농지연금 활성화 및 제도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설문내용 : 가입동기 및 결정사유, 만족도, 영농현황 등
- 12년말 가입자 2,202호, 월 평균 연금액 81만원, 총 225억원('11~'12)의 연금액 지급

3. 2013년도 추진 계획

- '13년 농지연금 가입 신청·접수 및 연금지급('13년 목표 : 2,547명)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소유면적 30,000㎡이하 농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2,547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23,669백만원
- 지원조건 : 융자 100%
- 지원내용 : 고령농업인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하고 가입자 사망 등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상속인의 상환 또는 저당권 실행을 통해 채무회수
- 법적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5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5,333	15,333			15,333
2013				23,669	23,669			23,669
(증△감)				8,336	8,336			8,336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 : 해당없음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누계)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000명				207,430			207,430
'12	2,202명/ 2,089명				15,333/ 19,035			15,333/ 19,035
'13	2,547명				23,669			23,669
'14	3,000명				46,310			46,310
'15	3,500명				59,476			59,476
'16	4,000명				72,642			72,642

* '12년 : 년도말 계약유지 및 해약 포함 / '13~'16년 : 년도말 계약유지 건수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지연금 농가가입율(%)	-	6.7	14.7	17.0	20.0	(당해연도 지원농가 수)/(11~25 총 목표 농가수)×100 *농지연금 가입목표 농가수 : 15,000농가	운영시스템 등 가입실적 집계

<1-3-2-2. 영세·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이재식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1554	이메일	sik815@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고령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기본계획 p20)

□ 영세·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

- 영세고령농의 노후주택 개량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우선 지원
- 고령농업인을 위한 집단거주 주택(공동체형 농어민 홈) 조성 추진
 - '10년 도입방안 마련 및 '11년 시범사업 실시
-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등을 활용한 노후주택 고쳐주기 사업 활성화
 - * (재) 다솜동지복지재단, (사) 한국농촌건축학회 등 활용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소외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집 고쳐주기 실시 : 407가구('12.12, 완료)
 - 추진실적(가구) : ('09)113 → ('10)190 → ('11)309 → ('12)407 → ('13)410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발대식 개최('12.6)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12.11)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범국민 캠페인 개최('12.5)
 - 일시·장소 : 2012.5.3(목)~4(금), 광화문 광장
 - 참석자 : 정운찬 고문(전 국무총리), 박재순 사장(농어촌공사), 정영일 이사장(다솜동지),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
-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 홈 시범사업 추진
 - 추진실적 : ('11)1가구 3세대(충북 괴산) → ('12)2가구 6세대(충북 괴산, 전북 익산)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소외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집 고쳐주기 실시 : 410가구('13.12)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발대식 개최('13.6)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13.11)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범국민 캠페인 등 홍보활동 추진('13)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집 고쳐주기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의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 사업 규모(사업량) : '07~'12년까지 4,300백만원, 1,094가구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사업대상 주택별 상태에 따라 개·보수 실비 지원
- 지원내용 : 농어촌 소외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 대상자에게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엌·화장실 등 수리
 - 주택상태에 따라 시급한 부분 개보수(화장실, 부엌, 지붕, 도장, 도배 등)
- 법적근거 : 마사회특별적립금 운용규정

○ 예산

- 사업기간 : 2013년
- 재원형태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추진(비예산) : 1,750백만원(마사회특별적립금 1,550백만원, 기부금 200백만원)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1			200		200		1,000	1,200
2012			200		200		1,500	1,700
2013			200		200		1,550	1,750
(증△감)			0		0			

* 기타금액은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및 (재)다솜동지복지재단의 기부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임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1,750	

* 기타금액은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및 (재)다솜동지복지재단의 기부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임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407			200			1,500	1,700
'13	410			200			1,550	1,750
'14	410			200			1,550	1,750
'15	410			200			1,550	1,750
'16	410			200			1,550	1,750

* 기타금액은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및 (재)다솜동지복지재단의 기부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임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 집 고쳐주기 실시(회)	190	309	407	410	410	(재)다솜동지복지재단 자료 확인	(재)다솜동지복지재단

<1-3-2-3. 경영이양 직불제(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	농가소득안정 추진단	담당자	주무관 박소영
전화번호	044-201-1853	이메일	chachaukr@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고령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기본계획 p19)

□ 경영이양직불제의 내실화로 고령 은퇴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

- 고령농업인(65세~70세)이 대상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경영이양할 경우 최대 75세까지(6년~10년) 월 250천원/ha 지급
 - * 경영이양직불제 참가 농가도 복지지원 등 농업인 관련 각종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0.3ha 이하의 농업경영은 허용

2. 2012년 추진 실적

-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 보전에 기여
 - 경영이양직불제 시행기간인 '97년~'12년도까지 9만7천6백명에게 3,418억원을 지원함으로써 1인당 연간 3,502천원의 소득지원
 - '12년도는 신규 경영이양 고령농 2,929명에게 44억원(1인당 1,516천원) 지원
- 고객지향적 제도 개선 및 만족도 조사·환류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 추진
 -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 대상자를 기존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서 후계농업 경영인까지 확대('12.6.22)
 - 경영이양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한을 '15년까지 3년 연장(조특법 개정)
 - 경영이양직불 사업 고객만족도 조사(10월)를 통한 사업 만족도 제고
 - 기 사업참여 농업인(1,060명)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사항, 사업만족도 등 조사
- 생활 체감형 홍보를 통한 고령 농업인의 사업 참여 촉진
 - 좌담회(928회 21천명) 및 찾아가는 고객센터(1,595회 30천명) 운영
 - 지역케이블방송(15개, 12월), 지역(농업인) 행사 등을 통한 현장 홍보 등
 - 리플릿 239천매, 포스터 10천부, 안내문 486천매, 현수막 419개 제작 배포

3. 2013년도 추진 계획

- '13년도는 고령농업인 2,100명(1,500ha)의 신규 경영이양 추진
- 공사 지역본부별 신규 경영이양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시 인센티브 제공 등 사업관리 강화(연중)
- 온오프 고객접점 매체 활용을 통한 생활체감형 홍보 추진
 - 고령농업인 대상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 등 현장홍보 추진
 - 명절(설, 추석) 전후 귀향객 대상 고속도로, 나들목, 기차역 등 대면 홍보
 - 애니메이션 제작, 지역 유선방송 홍보(영농기 이전)을 통한 사업인지도 향상
 - TV, 라디오 등 매체 이미지광고,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배포
 - 도청 등 유관기관 협조, 지역축제 등을 통한 이벤트 홍보 추진
- 농업인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9월~10월))

4. 관련 사업 내용 '13년도는 고령농업인 3,200명(3,000ha)의 신규 경영이양 추진

가. 경영이양 직불제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고령은퇴 농업인(65세~70세, 보조금 신청일 직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
 - 사업 규모(사업량) : 659억원 22,156ha(신규이양 1,500ha, 분할지급 18,839ha)
 - 지원금액 및 형태 : ha당 3백만원/년,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 지원조건 : 대상 농지를 60세이하의 전업농업인(육성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농업법인 또는 45세이하 농업인(3년이상 농업경영)에게 매도하거나 공사에 임대(임대위탁)
 - * 자가소비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3,000m²이하 소유농지는 경작 허용
 - 지원내용 : 신청연령에 따라 6~10년간 매월 ha당 25만원씩 분할 지급
 - 법적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5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억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619	-	-	-	-	-	-	619
2013	624	-	-	-	-	-	-	624
(증△감)	5	-	-	-	-	-	-	5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 없음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752/ 9,000	3,099/ 3,139	-	-	-	-	-	3,099
'12	2,752/3,000	619/659	-	-	-	-	-	619/659
'13	1,500	624	-	-	-	-	-	624
'14	1,500	628	-	-	-	-	-	628
'15	1,500	619	-	-	-	-	-	619
'16	1,500	609	-	-	-	-	-	609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1인당 경영이양 면적 달성율(%)	118% (계획 0.75ha, 실적 0.89ha)	120% (계획 0.75ha, 실적 0.90ha)	-	-	-	(1인당 경영이양면적 1인당 경영이양목표 면적) × 100	한국농어촌공사 실적보고서
경영이양 목표 면적 달성율(%)	-	-	92% (계획 3,000ha, 실적 2,752ha)	1,500ha (100%)	1,500ha (100%)	(당해년도 경영이양 달성면적/목표면적) × 100	한국농어촌공사 실적보고서

<1-3-3-1. ①농어촌 보육시설 확충(국공립어린이집 확충)(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보육기반과	담당자	박종성 사무관
전화번호	02-2023-8946	이메일	pjsung0127@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p20)

□ 영·유아 보육시설 시설 확충

- 농어촌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20개소씩 확충 (소규모 어린이집 포함)
 - * 전체 농어촌 보육시설('09) 6,504개소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426개
- 아동수가 적지만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 마을회관, 유희공공시설, 보건지소 등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
 - * ('09) 10개소(시범사업) → ('11) 20 → ('14) 50
- 농어촌 보육시설에 영아(0~2세)반 설치를 위한 지원 확대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12년 전체 농어촌어린이집 8,477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555개소 ('12.12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12년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 설치 지원* (신축 11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3개소)
 - * 농어촌지역 소규모보육서비스 제공사업 중 “농어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12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농어촌사회과)로 이관 →해당 실적(목표 10개소)에서 제외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읍면)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15개소 추가 설치 지원 (기능보강 사업비)
 - * 국공립 신축 12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3개소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정인 농어촌 지역(읍·면)
- 사업 규모(사업량) : 15개소 (신축 12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3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신축비 지원 : 396백만원/개소 (지방비 포함)
 - 공동주택리모델링 : 50백만원 (지방비 포함)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고보조금 지원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253			2,253		4,506
2013			2,451			2,451		4,902
(증△감)			198			198		396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신축, 공동주택리모델링)은 어린이집기능보강의 내역사업(일반회계)

** '12년은 집행 실적, 13년은 집행계획 예산임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			2,451		2,451		4,902
..								
..								
..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 대상시설 선정 중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14/13			2,055		2,055		4,110
'13	/15			2,451		2,451		4,902
'14	/10			1,461		1,461		2,922
'15	/10			1,461		1,461		2,922
'16	/10			1,461		1,461		2,922

* '14년이후 국공립 확충은 10개소(신축 7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5개소)임

** '12년부터 농어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확충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농어촌사회과)로 이관됨에 따라 목표치를 제외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6/16	25/22	14/13	/15	/10	농어촌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수	지자체를 통한 자료 취합

* 목표치 23개소 중 10개소는 농어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농림부(농어촌사회과)로 이관되어 실적에서 제외

<1-3-3-1. ②농어촌 보육여건개선(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어촌사회과	담당자	최승묵
전화번호	044-201-1576	이메일	csmuk12@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p20)

□ 영·유아 보육시설 시설 확충

- 농어촌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20개소씩 확충
 - * 전체 농어촌 보육시설('09) 6,504개소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426개
- 아동수가 적지만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 마을회관, 유희공공시설, 보건지소 등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
 - * ('09) 10개소(시범사업) → ('11) 20 → ('14) 50
- 농어촌 보육시설에 영아(0~2세)반 설치를 위한 지원 확대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7개소 지원(충북 1, 전북 1, 전남 4, 경북 1)
-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42,572명 지원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36개소 지원
 - 시설설치비 :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국고 70%)
 - 운영비 : 개소당 최대 17백만원(국고 정책지원)
- 농어촌 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지원 : 44천명(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자체, 시설 위탁운영자
 - 사업 규모(사업량) : 36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시설설치비(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운영비(개소당 최대 17백만원)
- 지원조건 : 시설설치비(국고 70%, 지방비 30%), 운영비(국고 정액지원)
- 지원내용 : 마을회관이나 기타 유휴시설을 리모델링 등으로 통하여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637	-	-	-	637	273	-	910
2013	4,810	-	-	-	4,810	1,642	-	6,452
(증△감)	4,173	-	-	-	4,173	1,369	-	5,542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사업 대상지 미정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6	23,782	-	-	-	7,114	-	30,896
'12	7/10	637/910	-	-	-	273/390	-	910/1,300
'13	36	4,810	-	-	-	1,642	-	6,452
'14	30	4,248	-	-	-	1,368	-	5,616
'15	30	4,578	-	-	-	1,368	-	5,946
'16	30	4,908	-	-	-	1,368	-	6,276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나.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 사업 규모(사업량) : 44천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58,154백만원(지방비 포함)
-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 40~60%
- 지원내용 :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월11만원씩 특별근무수당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6,858	-	-	-	26,858	29,337	-	56,195
2013	27,914	-	-	-	27,914	30,240	-	58,154
(증△감)	1,056	-	-	-	1,056	903		1,959

* '12년부터 우리부 신규사업으로 추진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4,056	32,724	-	-	-	30,240	-	58,154
부산	680	494	-	-	-	404	-	898
대구	1,000	726	-	-	-	594	-	1,320
인천	140	93	-	-	-	92	-	185
광주	100	74	-	-	-	58	-	132
대전	-	-	-	-	-	-	-	-
울산	1,025	717	-	-	-	636	-	1,353
세종	410	254	-	-	-	287	-	541
경기	11,620	7,363	-	-	-	7,976	-	15,339
강원	2,250	1,396	-	-	-	1,574	-	2,970
충북	2,730	1,730	-	-	-	1,874	-	3,604
충남	4,900	3,040	-	-	-	3,428	-	6,468
전북	2,000	1,267	-	-	-	1,373	-	2,640
전남	3,500	2,171	-	-	-	2,448	-	4,619
경북	4,500	2,851	-	-	-	3,089	-	5,940
경남	5,600	3,474	-	-	-	3,918	-	7,392
제주	2,960	1,836	-	-	-	2,071	-	3,907
유보	641	428	-	-	-	418	-	846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1,840	146,894	-	-	-	150,248	-	306,029
'12	41,958	26,585	-	-	-	28,800	-	55,385
'13	44,056	27,914	-	-	-	30,240	-	58,154
'14	46,258	29,309	-	-	-	31,752	-	61,061
'15	48,570	30,774	-	-	-	33,338	-	64,112
'16	50,998	32,312	-	-	-	26,118	-	67,317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 공동아이 돌봄센터(소규모 어린이집 확충)	10/10	10/10	7/10	/15	/20	어린이집 확충개수	지자체 보고

<1-3-3-3.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보건복지부)>

* [1-3-3-2. 농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과 통합

담당부서	보육사업기획과	담당자	오춘수 사무관
전화번호	2023-8933	이메일	ocsoch@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p20)

□ 영·유아 양육비 지원수준 상향 및 중·장기적 무상보육 추진

- 시설이용 지원 : ('09) 70% → (12P) 90% 수준
- 시설미이용 지원 : ('09) 35% → (12P) 60% 수준

* '09년 7월부터 하위 50%에 대하여 보육료 전액 지원(보건복지가족부)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시설 이용아동>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보육료 지원대상 지속 확대
 - 0~2세 및 5세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전액 지원('12.3월~)
 - 3~4세는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보육료 지원
 - 장애아 및 다문화가구('11.3월~) 자녀에 대하여는 소득수준 무관 지원

<시설 미이용아동>

- 양육수당 지원 확대
 - 양육수당 지원연령 확대(24개월→36개월미만) 및 지원금액 인상(10→10~20만원) ('11.1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도입
 - 취학전 등록 장애아동은 소득수준 무관하게 양육수당 전액 지원('12.1월~)

3. 2013년도 추진 계획

<시설 이용아동>

- 부모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보육료 지원 추진
 - 지속적인 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 * '13.3월부터 만0~5세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육료 쏘 계층 지원
 - * 만0~2세 및 만5세에 대하여 '12.3월부터 보육료 쏘 계층 지원
 - 장애아 아동에 대하여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속 지원
 - 맞벌이 등 일하는 부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시설 미이용아동>

- 부모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양육수당 지원 추진
 - 지속적인 양육수당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 * '13.3월부터 만0~5세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 쏘 계층 지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영유아보육료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 사업 규모(사업량) : 1,126천명('13년도 보육료 지원 아동수)
 - 지원금액 및 형태 : 연령별 지원단가
 - 지원내용 : 자녀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보육료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특별법 17, 18, 22조(영유아보육비지원)

나.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가정양육수당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
 - 사업 규모(사업량) : 1,203천명('13년도 양육수당 지원 아동수)
 - 지원금액 및 형태 : 10~20만원, 현금지원
 - 지원내용 : 자녀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양육수당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특별법 17, 18, 22조(영유아보육비지원)

다. 누리과정 보육료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및 내용 : 만 3세~5세 어린이, 보육·교육과정 제공
- 지원금액 및 형태 :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월 22만원), 국공립유치원(월 5.9만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특별법 17, 18, 22조(영유아보육비지원)

< 투자실적 및 계획 >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97,551		197,551	220,186		417,737
2013			261,498		261,498	328,477		589,975
(증△감)			63,947		63,947	108,291		172,238

< '13년 시도별(군지역) 배분내역 >

	시도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총계				261,498		328,477		589,975
영유아 보육료	합계			180,522		175,999		356,520
	부산기장			7,475		7,475		14,950
	대구달성			7,475		7,475		14,950
	인천소계			2,254		2,230		4,484
	울산울주			11,292		11,292		22,584
	경기			12,424		12,425		24,849
	강원			15,909		15,909		31,817
	충북			24,393		24,393		48,786
	충남			15,529		15,529		31,058
	전북			13,459		13,459		26,918
	전남			30,703		30,451		61,155
	경북			23,591		19,343		42,935
	경남			16,017		16,017		32,035
	가정 양육 수당	합계			80,977		79,681	
부산기장				3,228		3,228		6,456
대구달성				3,228		3,228		6,456
인천소계				824		822		1,646
울산울주				3,237		3,236		6,473
경기				4,614		4,614		9,228
강원				7,602		7,602		15,204
충북				7,709		7,709		15,418
충남				5,384		5,384		10,768
전북			9,481		9,480		18,961	

	시도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전남			14,819		14,819		29,638
	경북			6,537		5,245		11,783
	경남			14,313		14,313		28,626
	합계					72,797		72,797
누리 과정 보육료	부산기장					2,300		2,300
	대구달성					970		970
	인천소계					516		516
	울산울주					1,261		1,261
	경기					5,073		5,073
	강원					8,367		8,367
	충북					8,656		8,656
	충남					10,230		10,230
	전북					9,891		9,891
	전남					16,118		16,118
	경북					6,161		6,161
	경남					3,254		3,254

○ 중기재정계획(전국 예산임)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13,589,604		14,102,235		27,691,839
'12	1,351/1,147			2,751,126		2,824,569		5,575,695
'13	1,126			3,479,169		3,614,668		7,093,837
'14	-			2,618,426		2,723,722		5,342,148
'15	-			2,369,743		2,468,953		4,838,696
'16	-			2,371,140		2,470,323		4,841,463

* 14년~16년은 12년~16년 중기재정 예산액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보육료 전액지원 아동 비율(%)	-	70 (신규)	88	100	100	전액지원아동수/ 전체 이용아동수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통계자료
양육수당 수혜율 (%)	-	57.6 (신규)	80.3	100	100	양육수당 수혜아동수/미이용아 동중 차상위아동수	행복e음시스템

<1-3-3-4.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여성가족부)>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담당자	김지수 사무관
전화번호	02-2075-4634	이메일	kchisoo@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p20)</p> <p>□ 농어촌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정책에 여성의 참여 제고 등 농어촌여성의 주류화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 유모차대여 및 수유실 설치, 여성 불편신고센터 운영 등 농어촌 특성에 맞게 개발 -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창출을 위한 지역모델 개발 및 컨설팅 실시(11)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09년 2개 → '12년 39개)
 -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건, 추진계획 내용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12년 9개 지역 신규 지정
 - '11년 전남 장흥군에 이어 '12년 강원 영월군을 지정하여 농촌형 여성친화도시 확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2009년 지정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2010년 지정	(서울) 강남구, (대구) 중구·달서구, (경기) 수원시·시흥시,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
2011년 지정	(서울) 도봉구, (부산) 사상구, (인천) 동구·부평구,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경기) 안산시·안양시, (강원) 동해시, (충남) 아산시, (전북) 김제시, (전남) 장흥군, (경북) 영주시, (경남) 김해시·창원시·양산시,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지정	(서울) 서대문구·마포구, (부산) 연제구, (대구) 수성구, (경기) 의정부시·광명시, (강원) 영월군, (충북) 제천시, (경북) 포항시

-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대상 확대 및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11년 280명→'12년 301명 실시)
- 지역전문가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권역별 여성친화도시 포럼 운영
 - 서울·경기 등 수도권(인천), 강원·충청권(청주), 제주·호남권(광주), 경남권(부산) 등 4회 개최
- 여성친화도시 사업 내실화를 위한 사업 추진 컨설팅 및 이행현황 점검
 - 이행점검 지표 개발, 사업 이행현황 점검 및 컨설팅 실시(3~12월)
- 지역 우수사업 발굴 및 지원(4개 사업, 60백만원)
 -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속적 관심 및 정책 추진 독려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12년 39개 지역→'13년 50개 지역)
-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구축 및 운영지원 강화
 - 여성친화도시 조성 법적근거 마련(여성발전기본법 개정)
 - 여성친화도시 지자체 공무원 및 시민리더 정책형성 교육 지속 추진
 -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및 지역 컨설팅 강화
 - 여성친화도시 간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 지역별 특성화 사업 발굴 및 우수 지자체 지원
 - 우수사업 발굴 예산 지원 및 우수 지자체 포상

4. 관련 사업 내용

가.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여성친화 지정도시 소속 공무원 및 시민리더, 여성친화도시 지정 의지를 가진 도시 소속 공무원
 - 사업 규모(사업량) : 300명 교육
 - 지원금액 및 형태 : 35백만원(위탁사업)
 - 지원내용 : 지자체 공무원 및 시민리더 대상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실시 및 네트워크 구축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	소계			
2012			35					35
2013			35					35
(증△감)								

나.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여성친화 지정도시 39개소
- 사업 규모(사업량) : 60백만원, 4개 도시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보조(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비 100%
- 지원내용 : 공모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사업을 발굴, 사업당 15백만원 이내, 4개 사업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	소계			
2012			60					60
2013			60					60
(증△감)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공모를 통해 시도별 배분내역 결정(하반기)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자체 수	10	30	39	50	-	여성친화도시 지정	관련 공문 등

<1-3-3-5.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농촌진흥청)>

담당부서	농촌자원과(팀)	담당자	농촌지도사 유혁란
전화번호	031)299-2681	이메일	octo@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고령농업인 복지지원 강화(기본계획 p.19)

□ 농지 외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을 위한 농지연금제 도입

-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경지면적 3ha 이하
 -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연금승계 가능
- 연금운영 시스템개발, 상품설계 등 준비과정을 거쳐 '11년부터 시행

□ 은퇴하는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내실있게 운영

-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75세까지 최장 10년에 걸쳐 월 250만원/ha 지급
- * 경영이양직불제 참가 농가도 복지지원 등 농업인 관련 각종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0.3ha 이하의 농업경영은 허용

□ 영세·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

- 영세고령농의 노후주택 개량 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우선 지원
- 고령농업인을 위한 집단거주 주택(공동체형 농어민홈) 조성 추진
 - '10년 도입방안 마련 및 '11년 시범사업 실시
-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등을 활용한 노후주택 고쳐주기 사업 활성화
- * (재) 다솜동지복지재단, (사)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한국해비타트) 등 활용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촌노인의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건강한 노년생활문화조성(완료)
 - 노년기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605마을)
 - * ('10) 150(신규 59) → ('11) 148(신규 82) → ('12) 163개소(신규 23)
 - * '12년 사업량: 163개소(1년차 23, 2년차 82, 3년차 58개소)
 - 사업 수혜자 생활만족도 향상: ('10) 71.5 → ('11) 72.1% → ('12) 74.7%

- 농촌사회활동 프로그램 참여도 증가(1인당): ('10)8.1 → ('11)8.4 → ('12)10.5회
- 지역사회 활력화에 기여: ('10)79.9 → ('11)81.7 → ('12)85.1점
- 농촌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자생적인 상호 돌봄 문화 조성: 16개소
 - 은빛친구도우미 육성 및 긴급대응 물품, 생활안전시설 설치, 돌보미 활동지원 등
- 농촌노인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위한 교육 및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완료)
 - 담당공무원 및 마을지도자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교육 (4월 92명)
 - 비타민 체조 DVD(200개) 및 농촌형 노인 돌봄 운영매뉴얼 보급(100부)
 - 사업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7~10월): 4개소
 - 건강한 노년생활모델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경진 실시(11월)
 - * 건강장수문화 우수실천마을(5개소), 공무원(3명), 마을리더(34명) 시상
 - 2012년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 성과분석(9~11월):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10~'12 선정마을 주민 생활만족도 조사 * 사업대상 마을 74.7 > 인근 마을 68.4('12)

우수사례 : 충북 진천 봉암마을

- 사업기간 및 참여 노인수 : '10~'12년(3년), 83명(고령화율 25%)
- 주요성과
 - (건강한 마을) 요가, 수지침, 국궁, 원예치료, 건강관리 기구 설치
 - (학습하는 마을) 한글, 한자, 미술, 체조, 노래교실 등 5개 과정
 - * 건강관리보험공단 체조강사 지원, 한자급수자격취득 8명, 풍물패 운영
 - (안전한 마을) 공동쉼터, 왕벚나무 산책코스 조성, 생활안전장치 설치
 - * 어르신 보호 비상호출기 60호, CCTV 3개소 설치
 - (활력있는 마을) 유실수 식재, 공동과제포 운영으로 마을기금조성



심신단련 국궁교육



한자교실 운영



비상호출기 설치



노인회 공동과제포

3. 2013년도 추진 계획

-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문화 조성을 위해 농촌건강장수마을 확대 추진
 - 사업량 : ('05~'12) 605개소 → ('13)158 (신규 53, 기존 105)
 - * '16년까지 1,000개 마을 육성 목표

- 농촌노인 특성에 맞는 건강생활 프로그램 지원, 학습·사회활동, 생활환경 정비, 소득·경제활동 등 4영역을 중점 지원
 - 농촌건강장수마을 담당자 업무 협의회 및 연찬회 (3월)
 -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조사(4~9월)
 - 사업 추진 시 발생된 문제점 해결 및 사후관리방안 모색
 -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 평가회 및 건강장수문화 우수실천 경진(11월)
 - 사업완료 마을의 경진 참여로 사후 관리 강화 및 건강장수문화 지속독려
 - 최근 3년간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 성과분석(9~11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마을민간 합의 후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정이 완료된 마을
 - 사업 규모(사업량) : 158개소(1년차 53, 2년차 23, 3년차 82)
 - 지원금액 및 형태 : 7,870백만원, 개소당 연 40~50백만원(3년간 지원)국비/지방비 각 50%
 - 지원조건 : 마을주민 중 65세 이상이 20% 이상인 지역 중 전체 노인의 50% 이상이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마을
 - 지원내용
 -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체력단련 지원
 - 평생학습·사회활동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노인 안전생활 및 건강생활 환경정비 지원
 - 노년에 적절한 소일거리 및 저강도의 소득활동을 위한 기반조성
 - 농촌에 부족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보완하여 노인의 안전 돌봄 체계 구축
 - 우수지역 벤치마킹 및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
 - 농촌전통 문화자원 발굴 및 계승을 위한 지원
 -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13조(국가의 재정적 지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지역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9조(고령농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4,302			4,302		8,604
2013			4,205			4,205		8,410
(증감△)			97			97		194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8			4,205		4,205		8,410
경기	5			155		155		310
강원	38			995		995		1,990
충북	10			280		280		560
충남	7			205		205		410
전북	13			355		355		710
전남	22			595		595		1,190
경북	15			390		390		780
경남	41			1,070		1,070		2,140
부산	2			50		50		100
대구	1			20		20		40
광주	2			50		50		100
대전	1			20		20		40
울산	1			20		20		4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11		21,857			21,857		43,714
'12	163/163		4,302/4,302			4,302/4,302		8,604/8,604
'13	158		4,205			4,205		8,410
'14	151		3,775			3,775		7,550
'15	188		4,700			4,700		9,400
'16	195		4,875			4,875		9,75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수혜자 생활만족도 (점수)	71.5	72.1	74.7	70	70	최근 3년간 사업지역 수혜 노인 생활만족도	외부전문기관 설문조사

<1-3-3-6.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담당자	최상열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7266	이메일	dasalja@moel.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5) 고령·취약농,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 (기본계획 p21)

□ 취약·위기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통합적 복지지원 확대

- 교육·복지 등 통합서비스 제공(농어촌형 드림스타트(0~12세)모델 제시)
- 위기 청소년 상담·보호·의료·자립 등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CYS-net) 구축 및 아동·청소년 발달지원서비스(방과 후 지원) 확대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단위: 명, %)

구분	실시인원	수료인원	취업				중도탈락	중도탈락률
			소계	조기취업	수료후취업	취업률		
'12년	249	135	46	23	23	29.1	21	8.4

※ '12년 12월말 기준임

※ 취업률: (조기취업+수료후취업)/(수료인원+조기취업),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수/실시인원

3. 2013년도 추진 계획

- 훈련목표 및 예산: 366명(819백만원)
- 훈련계획 심사 및 예산 배정: '13.2월
- 지자체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훈련과정 개설·실시: '13.3월~12월(연중)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사업 규모(사업량) : 366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819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국비 대 지방비 매칭비율 80:20)

- 지원내용 : 훈련비(훈련기관), 훈련수당(훈련생)
- 법적근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862				862	216		1,078
2013	819				819	275		1,094
(증△감)	△43				△43	59		16

* 2012년 계획금액(지방비는 80:20 매칭 비율로 작성)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66	819				205		1,024
부산	29	64				16		80
강원	32	72				18		90
충남	146	326				81		407
전북	37	83				20		103
전남	65	146				37		183
경북	29	66				17		83
경남	28	62				16		78

* 사업규모 및 예산은 가안으로 추후 최종 결정 예정(지방비는 매칭비율 기준)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13	4,020				1,032		5,052
'12	249/385	744/862				212		956
'13	366	819				205		1,024
'14	366	819				205		1,024
'15	366	819				205		1,024
'16	366	819				205		1,024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해당 없음

<1-3-3-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지방자치단체)>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p21)</p> <p>□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및 경제활동 역량제고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 등 기능제고 ○ 도시 기업인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경영마인드 제고 - 창업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기법 전수 및 기술적 컨설팅 제공

2. 2012년 말까지 추진 실적

- 제주도 3개소(하원, 안덕, 김녕)에서 여성농어업인센터 개보수 실시,
- 이 외에 여성농어업인센터에서 교육, 문화활동 등 운영 실시

3. 2013년도 추진 계획

- 교육 및 문화활동 소요 경비 등 여성농어업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
- 충남, 제주도에서 각 1개소 추가 지원

< 시도별 여성농어업인센터 현황 >

(단위: 개소수, 백만원)

지역	사업구분	개소수('12)	개소수('13)	'12 예산	'13 예산
합 계				5,664	5,001
경기		3	3 (용인, 이천, 여주)	327	327
강원		2	2 (양구, 횡성)	218	218
충북		3	3 (청주, 청원, 영동)	420	420
충남		3 (서천, 홍성, 예산)	4 (서천, 홍성, 예산2)	360	520
전북		8	8 (남원2, 진안, 임실, 순창, 고창, 부안2)	1,040	1,040
전남		4	4(나주, 고흥, 무안, 장성)	451	451
경북		2	2 (안동, 영양)	226	226
경남		7	7(창원, 진주, 사천, 함안, 거창, 합천, 고성)	870	870
제주	개보수	3(하원, 안덕, 김녕)		1,000	
	운영지원	7	8개소(제주4, 서귀포4)	752	929

<1-3-4-1. 다문화 가정 농업 교육(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어촌사회과	담당자	최승묵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6	이메일	csmuk12@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농어촌 다문화가족 복지 증진 (기본계획 p21)

□ 결혼이민자 영농정착 지원 강화

- 영농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여성농업인(후견인)을 연계한 1:1 맞춤형 영농교육 확대 및 기초농업기술 및 경영교육 추진

* 맞춤형 영농교육/ 기술 및 경영교육 : ('09) 700/500명 → ('14p) 2,500/2,500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 : 712명
 - 한국어 등 기초적응훈련을 마친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농업일반, 농기계 사용법, 현장체험 등 실시
- 이민여성농업인 1:1 맞춤형 농업교육 : 650명
 - 실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와 전문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하여 농장에서 작목별로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정착단계별로 결혼이민여성 기초영농교육(600여명), 멘토와 연계한 1:1 맞춤형 영농교육(700여명) 실시

4. 관련 사업 내용

가.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한국어·생활교육 등 기초적응훈련을 마친 영농의사가 있는 농촌지역 거주 결혼이민자
 - 사업 규모(사업량) : 600여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900백만원(민간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 100%
 - 지원내용 : 농업일반, 농기계 사용법, 현장체험 등 집합교육 실시

- 법적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4조(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750	-	-	-	750	-	-	750
2013	900	-	-	-	900	-	-	900
(증△감)	150	-	-	-	150	-	-	150

- '12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민간보조로 해당사항 없음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312명	4,450	-	-	-	-	-	4,450
'12	712/500	750/750	-	-	-	-	-	750/750
'13	600	900	-	-	-	-	-	900
'14	600	900	-	-	-	-	-	900
'15	700	950	-	-	-	-	-	950
'16	700	950						950

나. 이민여성농업인 1:1 맞춤형농업교육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한국어 소통 가능하고 거주기간 1년 이상으로 실제 영농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 사업 규모(사업량) : 700여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426백만원(민간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를 100%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와 전문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하여 농장에서 작목별로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426	-	-	-	426	-	-	426
2013	426	-	-	-	426	-	-	426
(증△감)	-	-	-	-	-	-	-	-

- '12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50	2,526	-	-	-	-	-	2,526
'12	650/600	426/426	-	-	-	-	-	426/426
'13	700	500	-	-	-	-	-	500
'14	700	500	-	-	-	-	-	500
'15	750	550	-	-	-	-	-	550
'15	750	550	-	-	-	-	-	550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식품부 → 농협중앙회 → 농협 시도 지역본부 → 지역농협

- 추진절차

- 농식품부 : 사업승인, 현지점검
- 농협중앙회 본부 : 사업계획 수립, 국고예산 신청 집행, 현지점검
- 농협 시도 지역본부, 지역농협 : 교육생 모집, 교육현장 지도 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	563/500	581/500	712/500	/600	/600	교육수료인원	교육결과 보고
이민여성농업인 1:1맞춤 농업교육	636/600	655/600	650/600	/650	/650	"	"

<1-3-4.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여성가족부)>

담당부서	다문화가족정책과	담당자	신봉규 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29	이메일	bongbong@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농어촌 다문화가족 복지 증진 (기본계획 p21)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능 확대

- 지역 사회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서비스 제공
 -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녀 언어발달 지원,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센터 접근성이 낮은 다문화가족 대상,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한국어 및 아동양육) 제공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10년 159개소 → '12년 200개소)
 -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교육, 상담 서비스 등 실시('12년 연인원 1,656천명)
 - 방문교육서비스 확대(방문지도사 '12년 2,818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을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화*('12년부터, 단계별 80시간 → 100시간)
- * 센터 한국어교육 사업비 예산 확충(센터당 10백만원 증, '12년 예산안 반영)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12년 200개소→'13년 212개소)
-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율을 높이고, 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자조모임 운영 활성화
-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일명 코디네이터) 배치('13.3월)
 - 결혼이민자의 초기정착 시기부터 안정기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타기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도우미 역할 수행

* 50개소 50명 배치

4. 관련 사업 내용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 사업 규모(사업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2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43,647백만원
- 지원조건 : 자치단체보조 (서울50%, 지방70%)
- 지원내용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상담·정보제공 등 다문화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 정책 모니터링단 및 자조모임의 운영 지속 및 확대
- 법적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40,622		19,484		60,106
2013				43,647		21,002		64,649
(증△감)				3,025		1,518		4,543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2				43,647	21,002		64,649
서울	24				4,019	4,019		8,038
부산	9				1,953	837		2,790
대구	7				1,438	616		2,054
인천	9				2,095	898		2,993
광주	4				814	349		1,163
대전	5				988	424		1,412
울산	5				983	421		1,404
세종	1				176	76		252
경기	30				6,882	2,949		9,831
강원	14				2,807	1,203		4,010
충북	12				2,434	1,043		3,477
충남	14				2,908	1,246		4,154
전북	14				2,989	1,281		4,270
전남	20				4,056	1,738		5,794
경북	23				4,614	1,977		6,591
경남	19				3,984	1,708		5,692
제주	2				507	217		724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200개소				40,623	19,484		60,107
'13	212개소				43,647	21,002		64,649
'14	213개소				51,228	34,323		85,551
'15	213개소				60,276	40,385		100,661
'16	213개소				62,917	42,154		105,071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이용자 수	916천명 (연인원)	1,305천명 (연인원)	1,540천명 (연인원)	1,669천명 (연인원)	1,680천명 (연인원)	평균 이용자 수 추계 및 '13년도 센터 개소 수(212 개) 반영	사업결과보고서

<1-3-4-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여성가족부)>

담당부서	다문화가족정책과	담당자	이은경 사무관
전화번호	02-2075-8727	이메일	nsky83@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농어촌 다문화가족 복지 증진 (기본계획 p21)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능 확대

- 지역 사회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서비스 제공
 -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녀 언어발달 지원,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센터 접근성이 낮은 다문화가족 대상,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한국어 및 아동양육) 제공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방문지도, 언어발달 지원 등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교육 지원
 - * 한국어지도사(온라인 269명, 오프라인 281명), 가족생활지도사(온라인 280명, 오프라인 315명), 언어발달지도사 200명 활동
- 다문화가족 초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200명 배치, 센터내 자체 프로그램 운영 및 인근 보육 시설 파견을 통한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실시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다문화가족 자녀의 생활지원서비스 운영
 - 다문화가족을 방문하여 자녀의 알림장, 준비물 챙겨주기 등 원활한 가족·학교생활 지원('13년 방문교육지도사 1,400명)
- 다문화가족 초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서비스 확대 실시
 - 언어발달지도사 300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 센터 및 보육시설에서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실시('12년 200명 → '13년 300명)

4. 관련 사업 내용

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자녀
- 사업 규모(사업량) : 언어발달지도사 30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6,424(자치단체보조,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자치단체보조(서울 50%, 지방 70%)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의 초등학교 이하 자녀 중 언어발달 진단을 통해 서비스가 필요한 자녀에 대해 센터 자체 프로그램 또는 보육시설 파견 등 언어발달교육 실시
- 법적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 보육·교육)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4,418		1,912		6,330
2013				6,424		2,796		9,220
(증△감)				2,006		884		2,89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00				5,783	2,796		8,579
서울	39				556	556		1,112
부산	15				302	129		431
대구	10				199	85		284
인천	14				278	119		397
광주	10				199	85		284
대전	10				203	87		290
울산	10				199	85		284
세종	1				21	9		30
경기	39				779	334		1,113
강원	19				381	163		544
충북	14				278	119		397
충남	19				385	165		550
전북	23				463	199		662
전남	23				463	199		662
경북	23				460	197		657
경남	26				525	225		750
제주	5				92	40		132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2,105	13,973		46,078
'12	200명				4,418	1,921		6,339
'13	300명				6,424	2,796		9,220
'14	300명				6,745	2,936		9,681
'15	300명				7,082	3,083		10,165
'16	300명				7,436	3,237		10,673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이용자 수	916천명 (연인원)	1,305천명 (연인원)	1,540천명 (연인원)	1,669천명 (연인원)	1,680천명 (연인원)	12년도 이용자 수 및 12년도 센터 개소 수 반영	사업결과보고서

< 1-3-5-1 : 취약농가 인력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어촌사회과	담당자	김병준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4	이메일	kim94@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5) 고령·취약농,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 (기본계획 p21)</p> <p>□ 사고·질병 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확대 및 고령·취약 농가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다양화</p> <p>○ 영농도우미 상한연령 상향(70세 → 75세) 및 지원기간 확대(10일 → 15일) 추진 및 농어촌 경로당 지원 등 가사도우미 다양화</p>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사고·질병 및 고령농 등 취약농가에 대한 영농, 가사활동 지원을 위해 '06년부터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추진
- 취약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영농도우미,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조건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 영농도우미 지원 조건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
 - 지원조건 : ('10) 10일 이상 입원 → ('11) 입원일수(5~10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실적

(단위 : 천호, 백만원)

연도	계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지원 농가수	지원금액	지원 농가수	지원금액	지원 농가수	지원금액
'08	28	5,792	13	4,732	16	1,060
'09	31	5,992	12	4,732	19	1,260
'10	33	6,520	13	5,460	20	1,060
'11	41	6,520	14	5,460	27	1,060
'12	25	6,300	15	5,500	10	800

* 가사도우미 실적 : 경로당 가사도우미 실적 포함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취약농가의 영농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해 도우미 지속 지원(연중)
- 고령농어업인, 독거노인 등의 공동취사를 위해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 취약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가사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추진

4. 관련 사업 내용

가. 취약농가 인력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영농도우미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농업인
 - 가사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등
 - 사업 규모(사업량) : 총 25천 가구(영농 15천 가구, 가사 10천 가구)
 - 지원금액 및 형태 : 민간 보조
 - 영농도우미 : 1일당 60천원
 - 가사도우미 : 1일당 10천원(활동비)
 - 지원조건
 - 영농도우미 : 국고 70%, 자부담 30%, 최대 10일
 - 가사도우미 : 국고 70%, 농 협 30%, 최대 12일(월 1회)
 -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 영농활동 도모
 - 가사도우미 : 취약 농가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 가사활동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5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6,300	-	-	-	6,300	-	-	6,300
2013	7,140	-	-	-	7,140	-	-	7,140
(증△감)	840	-	-	-	840	-	-	84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 없음

* 농가인구 및 이용가구 등을 감안하여 농협에서 지역본부별 배분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48,930	-	-	-	-	20,970	69,900
'12	25천가구	6,300	-	-	-	-	2,700	9,000
'13	25천가구	7,140	-	-	-	-	3,060	10,200
'14	25천가구	10,150	-	-	-	-	4,350	14,500
'15	25천가구	12,670	-	-	-	-	5,430	18,100
'16	25천가구	12,670	-	-	-	-	5,430	18,1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16		
고객 만족도(%)	92	93	93	93	93	5분위 척도 중 상위 2분위까지를 만점으로 환산	전문기관의 만족도 조사 보고서

< 1-3-5-2 : 농업인 복지시책 교육·홍보 강화(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어촌사회과	담당자	김병준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4	이메일	kim94@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5) 고령·취약농,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 (기본계획 p21)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우리부에서 추진중인 농어업인 대상 복지시책을 리플릿, 워크숍 등을 통해 홍보하여 지원대상 누락 등 방지
 - 복지시책 리플릿 작성 배포 : 상·하반기 총 8만부
 - 농어업인 복지지원사업 관계기관 담당자 워크숍 실시(4월, 11월)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인 복지시책 안내를 위한 홍보리플릿 배포 및 워크숍 개최 추진
 - 복지시책 리플릿 작성 배포 : 총 6만부(3월)
 - 공단,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개최(4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업인 복지시책 교육·홍보 강화(별도 사업은 아님)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업인(복지시책 수혜자)
 - 사업 규모(사업량) : 홍보리플릿 6만부
 - 지원내용
 -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등 복지시책 홍보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 공단 및 농협에 배포
 - 복지시책 담당자의 업무전문성 제고,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워크숍 추진
 - 법적근거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1	-	-	-	-	-	-	-	-
2013	-	-	-	-	-	-	-	-
(증△감)	-	-	-	-	-	-	-	-

* 회계명 : 일반회계(경비)

- '12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 없음(직접 수행사업)

○ 중기재정계획 : 해당 없음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워크숍 추진 실적	추진 완료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워크숍 추진 유무	내부 보고 문서

1-4. 농어촌의 능동적 복지기반 강화

(1) 개관

□ '13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지역주민, 귀촌인력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여 공공서비스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농어촌 공동체회사(54개소, 개소당 50백만원) 지원
- 지역문화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맞춤형 농업인 복지사업을 확대('12년 531개소 → '13년 550개소)하고, 농어촌에 찾아가는 문화순회공연사업(농협)을 700회 실시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 예산 내역

<2013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1,485				1,485	675	675	2,835
농어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개선				2,881	2,881			2,881
합계	1,485			2,881	4,366	675	675	5,716

<1-4-1-1.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어촌사회과	담당자	이진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2	이메일	leejh79@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4 농어촌의 능동적 복지기반 강화 (기본계획 p22)

□ 농어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 수요를 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로컬푸드 확산, 도농교류활성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지역교육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

* 연구용역('09.12)을 토대로 농어촌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동체회사 모델을 개발하는 등 중장기 육성방안 마련('10)

4-2. 체험·휴양 기반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

(3) 농어촌 체험·휴양 서비스업 고도화 및 다각화 (기본계획 p47)

□ 체험·휴양사업자가 다양한 경제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도농교류형 '농어촌 공동체 회사'로 발전토록 유도

- 농가 레스토랑, 체험학교, 마을문화공방 등 소규모 경영모델 발굴·육성

* 농업을 근간으로 한 다양한 도농교류형 농어촌 공동체회사 100개소 발굴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 정책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지자체 관계관 회의 개최('11.2월)
- 창업상담, 정보제공, 전문가 컨설팅, 모니터링 등을 위해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센터' 개설('11.2월)·운영

-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대상 54개소를 선정('11.3월)하여 시제품 개발·생산, 마케팅 등 지원
-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11.4월)
- 농어촌 공동체회사 실태조사('11.5월)를 실시하여 조직형태, 유형, 고용, 매출액 등 조사(139개 시·군 443개소)
-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를 위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추진('11.6~12월)
- 농어촌 공동체회사 추진현황 현장점검을 실시('11.7, 11월)하여 사업 추진상황 및 컨설팅 현황 점검,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 농어촌 공동체회사의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전략 컨설팅('11.10~11월) 및 역량강화 교육(12월) 실시
-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수사례 홍보를 위해 사례집 제작·배포('11.12월)
-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선정 공모('12.1월) 및 시도별로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12.2월, 54개소), 예산지원 실시('12.2월)
- 농어촌 공동체회사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12.2월)
- 농어촌 공동체회사 실태조사 실시('12.5월)
- 고용부와 협력하여 “농림수산식품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12.6월)
-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조직, 인재육성 등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 종합계획” 수립('12.10월)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소득 창출 등 농어촌 활력 제고
 - 농어촌공동체회사 대상자 선정('13.2월, 54개소), 예산지원 실시('13.2월)
 - '13년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운영·추진계획 마련('13.2월)
 - 공동체회사 육성 등을 통한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13.4)
 - 정책방향 수립 기초자료 수집 등을 위한 공동체회사 실태조사 실시('13.5월)
 - 농어촌공동체회사 경영전략 컨설팅 실시('13.9), 우수사례 조사·배포('13.12)

4. 관련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공동체회사
- 사업 규모(사업량)
 -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54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1,350백만원(지자체보조 1,350)
- 지원조건
 - 농어촌 공동체회사지원 : 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 지원내용
 -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3(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485	-	-	-	1,485	675	675	2,835
2013	1,485	-	-	-	1,485	675	675	2,835
(증△감)	-	-	-	-	-	-	-	-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4	1,350	-	-	-	675	675	2,700
경기	2	50	-	-	-	25	25	100
인천	1	25	-	-	-	12.5	12.5	50
강원	10	250	-	-	-	125	125	500
충남	7	175	-	-	-	87.5	87.5	350
충북	3	75	-	-	-	37.5	37.5	150
경남	2	50	-	-	-	25	25	100
경북	12	300	-	-	-	150	150	600
전남	12	300	-	-	-	150	150	600
전북	4	100	-	-	-	50	50	200
제주	1	25	-	-	-	12.5	12.5	5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공동체회사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88	9,705	-	-	-	4,852	4,852	19,409
'12	54	1,350	-	-	-	675	675	2,700
'13	54	1,350	-	-	-	675	675	2,700
'14	70	1,755	-	-	-	877	877	3,509
'15	90	2,250	-	-	-	1,125	1,125	4,500
'16	120	3,000	-	-	-	1,500	1,500	6,0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공동체회사 평균 매출액 증가율(%)	-	-	- (기준년도)	10	15	$[(\text{당년도 총 매출액} - \text{기준년도('12) 총 매출액}) / \text{기준년도('12)}] \times 100$	농어촌 공동체회사 성격의 조직을 행정기관을 통하여 행정조사 실시

< 1-4-3-1 : 농어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담당부서	농어촌사회과	담당자	김병준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4	이메일	kim94@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4 농어촌의 능동적 복지기반 강화 (기본계획 p22)

□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지원

- 취약 및 소외지역에 복지시설 우선 설치 또는 시설 다기능화 유도
- 농·수협 등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를 통해 농어촌 지역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 농협은 2005년부터 지역문화복지센터 운영(현재 446개), 지역농협에서 건강교실, 치매예방프로그램, 농촌사랑자원봉사단, 여성 및 청소년취미교실 등 진행

2. 2012년 말까지 추진 실적

- 지역문화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맞춤형 농업인 복지사업 실시(계속)
 - 조합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정기준이상의 관련시설을 확보하고 문화·복지사업관련 프로그램 운영
 - ('10년실적) 484개소 → ('11실적) 500개소 → ('12실적) 531개소
- 농어촌 찾아가는 문화순회공연사업 실시
 - 문화로부터 취약한 농어촌지역에 문화향유 기회 제공
 - 50개 공연단체, 620회 공연 실시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지역문화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맞춤형 농업인 복지사업 실시(계속)
 - ('12년실적) 531개소 → ('13계획) 550개소
- 농어촌 찾아가는 문화순회공연사업
 - ('12년실적) 620회 → ('13년계획) 700회
 - 사업기간 : '13. 2월 ~ 12월
 - 사업추진 기관·단체
 -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예술단체

- . 협력 : 농림수산물부, 농협
- 읍면단위 지역농협에서 장소 및 관객 모집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찾아가는 문화순회공연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조합원 및 주민
- 사업 규모(사업량) : 50개 공연단체, 700회 공연
- 지원금액 및 형태 : 간접지원
- 지원내용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선정한 공연단체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	-	-	2,400	2,400	-	-	2,400
2013	-	-	-	2,881	2,881	-	-	2,881
(증△감)	-	-	-	481	481	-	-	481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 없음

○ 중기재정계획 : 해당없음

나. 지역문화복지센터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조합원 및 주민
- 사업 규모(사업량) : 지역문화복지센터 550개소 지정 및 운영
- 지원내용 : 현지실태조사 및 설문지 전수조사 등
- 법적근거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예산(농협자체자금)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	-	-	-	-	-	-	-
2013	-	-	-	-	-	-	-	-
(증△감)	-	-	-	-	-	-	-	-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 없음

○ 중기재정계획 : 해당없음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지역문화복지센터 (개소)	500	531	550	570	580	시설, 프로그램운영 기준을 충족한 지역 문화복지센터 개소	지역본부 평가 보고서
농어촌찾아가는문 화순회공연 (공연횟수)	600	620	700	750	750	한국문화예술 회관 공연 실적	한국문화예술 회관 공연 실적

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2-1.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1) 개관

□ '13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지원기간(3년)이 남아 있는 학교는 계속 지원 및 성과평가 후 인센티브(5~10%) 지원하고, 면·도서·벽지 소재 일정규모(학생수 61~200명 이하) 초·중 학교를 대상으로 신규 공모 선정
- 농어촌 지역의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여 농어촌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145개 시군)
 - 방과후학교 종합포털사이트 구축, 순회강사 및 지역연합을 통해 소규모 학교간 공동운영 활성화, 지역사회 우수 인적 자원 활용
- 기숙형 고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연구·모델학교 운영 등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지원(150교, 160억원)
- 농어촌지역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도서관 개방 등 학교시설 이용과 평생학습관 신규 설치 및 운영 지원
- 우수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이론 및 실습 교육 강화와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농어업인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내실화 추진
 - 현장실습교육 내실화, 졸업생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지도활동 강화를 위해 145억원 지원

□ 예산 내역

<2013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13,370		13,370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73,746		73,746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16,000		16,000
농어촌 평생교육 기반 확충						6,032		6,032
한국농수산대학 개편·운영			14,451		14,451			14,451
시·군 교육발전 협의회 설치								비예산
합계			14,451		14,451	109,148		123,599

<2-1-1-1.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	학생복지과	담당자	라은종 사무관 김종일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517 02-2100-6527	이메일	eun47@mest.go.kr kji1103@mest.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1) 학생이 돌아오는 학교조성을 위한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기본계획p25)
- 자연친화적 환경과 첨단 e-러닝 시스템을 바탕으로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율학교로 육성
 - 자연체험 학습장, 생태연못, 산책로 등 자연친화적 시설과 전자칠판 IPTV 등 e-러닝 교실 구축
 - 110개교(초77, 중33)를 선정, '09~'11년까지 총 1,393억원 지원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독서교육, 작가와의 만남, 에너지교육 및 텃밭가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자율 운영
 - 유치원생·저학년생의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소하고,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K-2학교를 전원학교 프로그램으로 통합·운영
- (2) 교육·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연중 돌봄학교 육성
- 농어촌 취약지역 학생의 학력신장과 기초안전망 제공을 위해 교육·복지 종합서비스 연중 지원
 - (학기 중) 학업성취도 향상 및 도농간 학력·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 후에 다양한 교육·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지원
 - (주말 및 방학)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대신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습·문화·보건의료 등 지원
 - 378개 유·초·중·고교(유 24, 초 222개 등)에 '09~'11년간 총 894억원 지원
 - 학교간 시설·프로그램 공동 활용 및 학교·지역간 인적·물적 자원 연계 추진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12년도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계획 수립·추진('12.3월)
 - 농어촌 교육지원 사업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전원학교 사업에 연중돌봄학교 사업을 통합·운영('11.2월~)
 - 전원학교 핵심과제 중심 프로그램(학력증진, 특기·적성 계발, 맞춤형 돌봄 등) 편성·운영 지원
 - ※ 농어촌 전원학교 지정
 - * 전원학교 : ('09) 110교→('10) 140교→('11) 570교(신규48, 돌봄382)→('12) 289교
·'12년 공모형은 3년간 지원된 학교 중 성과 우수교에 대해서 1년 연장 지원
 - * 연중돌봄학교 : ('09) 378교→('10) 383교→('11) 전원학교로 통합
 - ※ 사업비 지원
 - * 전원학교 : ('09) 790억원→('10) 513억원→('11) 405억원(돌봄 278억원)→('12) 143억원
 - * 연중돌봄학교 : ('09) 298억원→('10) 230억원→('11) 전원학교로 통합
- 파스텔*시스템 기능 개선 고도화 및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12.3월)
 - 전원학교 교수·학습지원시스템(파스텔*)의 기능개선, 연수 지원**, 유지·보수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 및 이용자 확대
 - * 파스텔(FASTEL : For All Students and Teachers in E-Learning Space) : 교사의 수업준비와 수업시간에 교사-학생간 상호작용(토론, 과제수행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 ** 교수학습모형 및 연수교재 개발·보급, 파스텔 활용 수업사례 및 사용방법 동영상 제공 등을 통해 파스텔 기능 이해 및 활용 능력 제고
- 농어촌 전원학교 성과평가·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12.10월~)
 - 농어촌 학교 규모·지리적 여건 등의 특성과 연계된 우수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운영 모델을 제시
 - ※ 특기적성계발 프로그램 사례
 - 충남 당산초 '행복을 찾아 떠나는 당당한 산골소년소녀들의 음악행진' 프로그램 :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해 농어촌 학생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초청 연주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연주회 개최 등 지역사회와 연계·협력

※ 인성함양 프로그램 사례

- 전북 고산초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자연과 함께하는 SMART-world' : 학교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실시(스쿨팜 운영 등 텃밭 가꾸기, 팜스테이 등 농촌 체험 프로그램, 김장 나누기 행사 등)

3. 2013년도 추진 계획

○ '13년도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계획 수립·추진

- (계속지원) 지원기간(3년)이 남아 있는 학교는 계속 지원하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센티브(5~10%) 지원
- (신규지원) '13년 신규 공모형 학교는 면, 도서·벽지 소재 일정규모(학생수 61~200명 이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선정

※ 기 지원한 학교의 경우 30%~50%로 선정하여 신규학교 진입기회를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 '보통(A등급)'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사업운영의 질 관리 추진. (단, 신규지원은 '13년 특별교부금 확정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교수·학습지원시스템 운영 내실화 지속 추진

- 농어촌 학교 수업효과 제고를 위해 e-러닝 교수·학습지원시스템(Fastel) 활성화
- 파스텔시스템 기능개선 및 교원 연수 강화를 통한 활성화 지속 추진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선정·운영

- (공주대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 컨설팅, 연수 워크숍, 성과관리, 우수사례 홍보, 연구 등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파스텔시스템 기능개선, 교수학습모형 개발 등

4. 관련 사업 내용 :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면, 도서·벽지 소재 61~200명 이하 초·중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250교 내외
- 지원금액 및 형태 : 특별교부금 9,415백만원*
* '13년 특별교부금 예산 미확정으로 계획에 따른 금액임
- 지원조건 : 시·도교육청 대응투자 5:5
- 지원내용 : 농어촌의 불리한 교육여건 해소를 위해 농어촌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한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 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4,260		14,260
2013						13,370		13,370
(증△감)						△ 890		△ 89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370		13,370

* '13년 특별교부금 예산 미확정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289/78					14,260/5,560		14,260/5,560
'13	250					13,370		13,370
'14	250					11,840		11,840
'15	250					12,200		12,200
'16	250					12,500		12,500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학교수)	140	570	289	250	250	당해 지정 운영하는 전원학교수	교과부 또는 교육청 지정현황

* 학교수는 당해 사업비 지원기준

<2-1-2.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	방과후학교(팀)	담당자	김경화
전화번호	02-2100-6415	이메일	sara7232@mest.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농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여 농어촌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 양질의 방과후 교육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 제고 및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추진 경과 >

- 2006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모델 개발 및 지원 사업' 시범 실시(19개 군, 8,475백만원 지원)
- 2007년 공모를 통해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군 또는 도·농 복합도시 69개 추가 지정 예산 지원(88개 지역, 49,700백만원 지원)
- 2008년부터 농어촌 지역 전체로 예산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방과후학교 사업이 지방 이양되면서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 ※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으로 예산 지원
- 201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 지원학급을 학년당 2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서 전체학교로 확대
 - ※ '11년) 17,162학급 → '12년) 45,998학급
- 지방교육재정 예산지원 현황('08~'12)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원금액(억원)	528	382	421	515	845
지원학급 수(개)	14,645	14,605	16,210	17,162	45,998

< 추진 성과 >

- 농어촌 학교에 대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 학생의 특기적성 및 소질 계발 기여
 - 2010년 '방과후학교의 사교육 대비 특기적성 및 소질계발 효과'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농어촌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2%p 높게 나타남
 - ※ 2010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 농산어촌 지역(56.6%), 도시지역(54.6%), 전체(55.1%)
- 농어촌 학교에 대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 참여학생의 성적향상에 기여
 - 2010년 '방과후학교의 사교육 대비 성적 향상 효과'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농어촌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1%p 높게 나타남
 - ※ 2010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 농어촌 지역(53.4%), 도시지역(52.4%), 전체(52.7%)
- 2012년 농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큰 폭으로 상향
 - ※ 농어촌(10.4% ↑) : '11) 72.4% → '12) 82.8%, 도시(8.8% ↑) : '11) 61.1% → '12) 69.9%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사업 추진근거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도교육청별 방과후학교 기본계획
- 사업추진주체 : 시·도교육청
- 사업추진절차
 - ① (교과부)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교부시,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한 기준재정 수요 산정 → ② (시도교육청) 농어촌 방과후 지원계획 수립, 예산지원 → ③ (단위 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 추진방향
 - 방과후학교 종합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한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

- 순회강사 및 지역연합을 통해 소규모 학교간 방과후학교 공동운영 활성화
- 지역사회의 우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운영

○ 지원계획

- 농어촌 지역(군, 읍·면이 있는 도·농복합시) 소재 학교 대상
-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총액으로 지원(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 46,323개 학급 737억원 예산 반영('13년)

4. 관련 사업 내용

가.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 대상 : 군 및 읍·면이 있는 도·농복합시 전체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737억원*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제외 금액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도 기준에 의해 일괄 교부)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지원내용

- 농어촌 지역은 지리적 여건, 학생 수 부족 등으로 수익자 부담에 의존한 방과후학교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강사비 또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컴퓨터, 문화·예술 등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각종 기자재 및 학교 간 연계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비·운영비 지원
- 방과후학교 업무 전담 계약직 인건비 지원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84,527		84,527
2013						73,746		73,746
(증△감)						△10,781		△10,781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학급)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 계	46,323					73,746		73,746
서울	-					-		-
부산	443					705		705
세종	438					697		697
대구	889					1,415		1,415
인천	434					691		691
광주	-					-		-
대전	6					10		10
울산	1,132					1,802		1,802
경기	9,872					15,716		15,716
강원	3,823					6,086		6,086
충북	3,020					4,808		4,808
충남	5,648					8,992		8,992
전북	3,198					5,091		5,091
전남	5,610					8,931		8,931
경북	5,613					8,936		8,936
경남	6,197					9,866		9,866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3,704					383,581		383,581
'12	46,948					65,727		65,727
'13	46,948					73,746		73,746
'14	46,323					77,433		77,433
'15	46,323					81,305		81,305
'16	46,323					85,370		85,37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참여율	72.4	82.8	83	83	참여학생수/전체학생 수×100	전수조사

<2-1-3-1. 기숙형고교 지정·육성(교육과학기술부)>

* 2-3-2-3(농어촌고교생 기숙사 이용료 경감) 과제 통합

담당부서	학교선진화과	담당자	오신중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53	이메일	ohsj615@mest.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기숙형 학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기본계획 p26)

□ 150개 기숙형 고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등 지원
- 기숙사내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 기숙형 고교현황(150개) : '08년 82개교(공립), '09년 68개교(공·사립)

* 지원금액 : ('08) 3,173억원, ('10) 2,720억원, ('11이후) 정책연구 후 사업 확대 여부 검토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기본계획 p31)

□ 농산어촌 지역 기숙형고교생 기숙사 이용 부담 경감 추진

-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협의하여 저소득 농어업인 자녀의 기숙사 이용료 (급식비, 프로그램이용료 등)를 지원하도록 권장

* 농촌지역 고교생 22만여명 중 3만 3천여명이 기숙사 이용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09년까지 기숙형고교 150교 선정(시설비 5,551억원 지원)

※ '08년 82교(3,173억원), '09년 68교(2,378억원)

☞ 국정과제를 2년차에 완료하여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 이명박 정부 대선 공약으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발표
 - 자율형 고교 100교, 기숙형고교 150교, 마이스터고 50교 설립
 -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및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 기숙사 수용여건 확대로 농어촌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여건 조성

※ 기숙형고교 기숙사 수용능력 확대: 14,157명 ('10년) → 25,894명('12년)

- 기숙형고교 연구·모델학교 운영(모델학교 25개교, 연구학교 40개교)
 -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간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기숙형고교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 기숙형고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변화에 따른 지원 확대**
 - 지역사회 장학금 지급 및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으로 기숙사비 경감
 - ※ 학생 1인당 월 평균 기숙사비: 151천원('10) →113천원('11)→104천원('12)
 -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기숙형고교 지원 조례 제정 확산 및 기숙형고교와 더불어 발전하는 지역사회 모형 모색
 - ※ 시·도교육청의 기숙형고교 지원조례 24개 지자체 제정 (광역시 2개, 기초자치단체 22개)
- '13년부터 기숙사 운영비를 지방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에 포함하여 지원
 - 기숙사 운영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농산어촌 지역 기숙형고교생 기숙사 이용 부담 경감 추진**
 - ※ 지방재정교부금법시행령('12.10.15) 및 시행규칙('12.11.14) 개정
- 기숙형고교 운영성과 평가(우수학교 65교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12.12)
 - ※ A등급 3천만원(10교), B등급 2천5백만원(15교), C등급 2천만원(40교)

3. 2013년도 추진 계획

- 기숙형고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현장 컨설팅** 추진 ('13. 1~2월)
- '12년 기숙형고교 정책연구학교 **성과보고회** ('13.1.15~1.16)
- 기숙형고교 **우수사례 확산** 공유를 위한 교직원 워크숍, 직무연수 등 추진
- 기숙형고교 운영성과 평가 및 컨설팅 **정책연구** 추진 ('13. 3~12월)
- 기숙형고교 **영문 브로슈어** 제작·배포를 통한 홍보 ('13. 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군 및 도농복합도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기숙형고교 150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15,850백만원(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150백만원(특교)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기숙사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비정규직 인건비, 공공요금, 급식비 등)
- 법적근거 : 법적근거 없음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1,325		21,325
2013						16,000		16,000
(증△감)						△5,325		△5,325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0교					16,000		16,000
부산	1교					191		191
대구	2교					800		800
인천	3교					1,726		1,726
울산	1교					211		211
세종	1교					0		0
경기	14교					917		917
강원	18교					2,130		2,130
충북	13교					852		852
충남	16교					1,853		1,853
전북	13교					1,653		1,653
전남	23교					2,348		2,348
경북	25교					1,178		1,178
경남	20교					1,991		1,991
-						150*		150

※ '13년 시·도교육청에서 기숙형고교 운영비로 확보한 당초 예산으로 추경 등의 사유로 증감 될 수 있으며, *150백만원은 특교로 주관교육청이 지정 되지 않았음(2월중 지정 예정)

○ 중기재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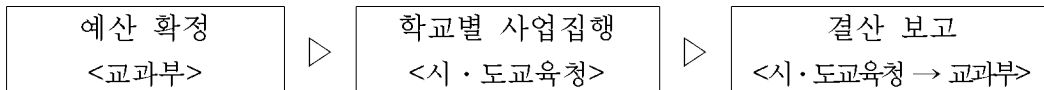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0교					97,325		97,325
'12	150교	실적/계획				21,325		21,325
'13	150교					16,000		16,000
'14	150교					20,000		20,000
'15	150교					20,000		20,000
'16	150교					20,000		20,000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나. 기숙형고교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기숙형고교 교육만족도(%)	51.8	63.2	65	68	70	기숙사생 대상 설문 조사	내부자료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지방자치단체)>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5)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강화 (기본계획 p27)

□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운영내실화

-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이용 접근성 제고

* 평생학습도시 지정 76개 지자체 중 군지역은 13개

* 진안군은 「농촌 창업을 위한 평생학습 경제공동체 리더 양성」 프로그램 실시 중

□ 농어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능력 함양

-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고령농어업인,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만족도 제고

*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 8.8억('09)

□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휴일·방과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설 인프라 구축 및 운영지원 등을 실시
 - 강원(355개교), 충남(75개기관), 전북(29개교), 경남(20개교), 대구(47개교)에서는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운영 실시
 - 전북(7개소)은 평생학습관 운영

3. 2013년도 추진 계획

-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지원의 지속 유지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설 인프라 구축 및 운영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평생학습 여건의 지속적 확대 추진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사업구분	개소수 ('12)	개소수 ('13)	'12 예산	'13 예산
합 계				5,870	6,032
강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2개기관	22개기관	3,018	3,518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355개교 (초,중,고등학교)	284개교		
충북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	3개분야 * 프로그램 공모 : 4개분야, 35개	60개소	92	90
충남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운영	75개 기관	60개 기관	724	362
전북	평생학습관 운영	7개관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7개관	140	140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29개교	15개교	69	36
전남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19관 / 31,404명	19관	859	855
경북	성인문해교육지원	16개소	16개소	160	160
	도민참여교육	27회 6,390명	25회 5,400명	115	102
	평생학습마을 지정	8개 읍면동	13개	260	260
경남	주민개방형 학교마을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지원	20개교	20개교	110	110
대구	학교평생학습관 사업 추진	47개교	47개교	156	228
울산	농어촌지역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53기관 16,530명	53기관	92	90
세종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11월	4~11월	75	81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	5~'13.5월	5~'14.5월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	1~12월	1~12월		
	토요프로그램 운영	4개기관, 226명	4개기관		

<2-1-5-2. 한국농수산대학 개편·운영(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	기획조정팀	담당자	한 소 자
전화번호	031-229-5161	이메일	h0079240@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1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교육의 내실화 및 전문 후계농업인 육성 교육을 통한 우수 농어업인 배출
 - 2012년 졸업생 13년차 2,758명 배출 및 의무영농이행률 91.3%
-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하는 농촌현실 및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학과 개설
 - 말산업학과, 산림조경학과 신설 및 신입생 선발(학과당 30명씩)
-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 3개학과 60명 모집 및 운영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우수 신입생 선발을 위한 대학 홍보 강화 및 찾아가는 입시 홍보
 - 수시·정시 모집 기간 중 전 교직원 지역별 고등학교 방문 홍보
- 우수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이론 및 실습 교육 강화
- 졸업생의 영농정착률 증대 및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농어업인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

4. 관련 사업 내용

가. 한국농수산대학 개편·운영(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 사업 규모(사업량) : 재학생 1,050명(10개학과, 3년제), 졸업생 3,088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14,451백만원(국비 100%)
 - 지원조건 : 수업연한의 2배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영농 또는 영어종사

- 지원내용

- 우수 신입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대학홍보와 면학분위기 조성 및 실습 기자재 확충 등 교육인프라 확대 : 한국농수산대학 어플리케이션 개발, 신설학과 실습장 마련 및 실험 기자재 도입
 - 재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및 학생 수요를 반영한 학생 맞춤형 교과목 개설 : 전문교과에 대한 책임교육 교수 지정 운영
 - 졸업생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영농·영어 정착을 위한 다양한 졸업생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영농정착 애로사항 해결 전담반 운영, 농가경영 컨설팅 실시, 졸업생 영농정착 사례집 및 졸업생 우수농산물 안내책자 발간, 졸업생 농산물 홍보품목별·과제별 소그룹 연찬회 지원 영농정착 아이디어 과제 지원사업 등
 - 창업 후계농 및 졸업생 중심의 농어업인 전문 교육 강화
- 법적근거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및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3,315		13,315			13,315
2013			14,451		14,451			14,451
(증△감)			1,136		1,136			1,136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없음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308			78,426			78,426	
'12	3,748			13,315			13,315	
'13	4,138			14,451			14,451	
'14	4,528			18,101			18,101	
'15	4,918			15,928			15,928	
'16	5,308			16,631			16,631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졸업생 영농정착률	92/90	92/92.5	92/91.3	92	92	(영농정착 졸업생 수 / 영농 대상 졸업생 수) × 100	한국농수산대학 학비지원조건과 상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졸업생 영농 이행상황 보고서
졸업생 농기 평균 소득률	235/235	235/229	230/220	231	231	(졸업생농가 평균소득 / 일반농가 평균소득) × 100	졸업생 농가 영농 이행상황 보고서 일반농가: 농촌경제조사
교육만족도	75/75.6	80/78.4	78.5/73.3	80	80	5점척도 조사 후 1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전문조사기관 의뢰 재학생: 자기입식 졸업생: 이메일, 우편

< 2-1-6-1.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지방자치단체) >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6) 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활성화</p> <p>□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협의를 위해 시·군 단위에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운영</p> <p>○ 지자체, 교육청, 주민, 전문가 등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농어촌 학교 지원방안, 교육환경 개선 방안, 교육투자 활성화 방안 등 논의</p>
--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시·군별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 실시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지역교육정책 토론회 및 협의회를 실시하고, 협의회가 미설치된 시·군은 협의회 구성·운영을 지속적으로 권고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현황>

지역	사업구분	설치현황 ('12)	설치현황 ('13)
강원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17개 교육지원청	17개 교육지원청
충북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시·군별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정례화
충남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14개 교육지원청 지역교육발전지원단 협의회 52회 개최	지역교육정책토론회 및 협의회 개최
전북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14개 시·군 중 4개 설치	14개 시·군 중 4개 설치
전남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22개 교육지원청 교육미래위원회 구성	정기회 3회 및 임시회 개최

지역	사업구분	설치현황 (12)	설치현황 (13)
경북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13개 교육지원청에 협의회 구성	협의회 운영
경남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유도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유도
부산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기장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협의회 운영
대구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달성군 교육발전위원회 1회 운영	협의회 운영(5월, 12월) 15개교 설치
울산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17명	정기회 개최
세종	시 교육행정협의회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2-2. 우수 공교육프로그램 확충 및 교원 확보

(1) 개관

□ '13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TaLK) 10, 11기 배치사업 지속 추진(500명)과 원어민 원격 영어 화상수업 지원 등 농어촌 영어교육 프로그램 지원
 -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학생(졸업생 포함) 등 원어민 자원봉사자를 초청하여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 후에 영어를 가르쳐 영어교육격차 해소
- 글로벌 선도학교(50개교)를 통해 농어촌 다문화가족 학생(1,500명)의 한국어·교과보충수업을 지원하고, 1:1멘토링 실시로 상담 및 학습지도
- 농어촌 학교에 우수교원을 유치하기 위해 학교·지역 단위 교원임용제도를 실시하고,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 대상으로 농어촌 관련 연수지원 확대 및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권고
- 사이버가정학습 중앙센터 운영, 사이버가정학습 관련연구 등 초·중학생 3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개발로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

□ 예산 내역

<2013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우수 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19,500		19,500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2,000		2,000	500		2,500
농어촌우수교원 유치방안								비예산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						6,452		6,452
합계			2,000		2,000	26,452		28,452

<2-2-1-1. 우수 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	영어교육정책과	담당자	배효진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8634	이메일	hjbae@mest.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1) 우수 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 (기본계획p28)</p> <p>□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영어교육 여건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을 선발하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LK(Teaching and Learning in Korea)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08년 380명, '09년 543명 선발 배치 <p>□ 원어민 원격 영어 화상강의 확대 및 국내 거주 원어민을 활용한 방학 중 무료 영어캠프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년 56개교(2,882명 학생 수혜), '09년 531개교(33,855명) 참여 * 학생 117천명(비수도권 9만명) 및 3천명의 원어민 강사 참여, 학생 만족도가 최하 88%이상의 높은 만족도 실현('08)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TaLK) 농어촌 초등 방과후학교에 국내·외 영어봉사장학생 배치('12, 493명)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기수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인원	380	374	543(441)	596(303)	596(343)	521(230)	502(306)	496(224)	493(290)	

* 괄호 안의 인원은 신규로 선발된 장학생 수

○ 원어민 원격 영어 화상강의 실시('12, 907교, 110천명)

구분(명, 시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원어민 원격화상 강의	3,462(6)	33,855(12)	35,039(12)	42,643(13)	110,000(13)

○ 국내 체류 원어민을 활용한 방학 중 단기 영어캠프 운영('12.상, 116천명)

구분(명, 시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상반기
방학중 단기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116,535(15)	162,104(16)	188,606(16)	202,486(16)	116,000(16)

* 외국 현직교사 초청 방학 중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12, 900여명)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10, 11기 배치 사업 지속 추진(500명)
 - 원어민 장학생 선발(10기:완료, 11기:13.3~6)하여 사전연수 실시(10기:13.2, 11기:13.8)
- 원어민 원격 영어화상강의 및 방학 중 단기 영어캠프 운영
 - '13년부터 시도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4. 관련 사업 내용

가.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TaLK) 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초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496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특별교부금 9,225백만원
 - 지원조건 :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50 : 50(특교) 투자
 - 지원내용 :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학생(졸업생 포함) 등 원어민 자원봉사자를 초청하여 한국인 국내 대학생과 함께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 후에 영어를 가르치고(teach), 원어민 장학생들이 한국문화체험 등을 통해 한국을 배우게 함으로써(learn) 미래 친한·지한 인재 육성
 - 법적근거 : 현재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나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 발의)”에 반영 추진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8,800		18,800
2013						19,500		19,500
(증△감)						700		700

* 특교:시도 대응투자=50:5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91					19,110		19,110
강원	42					1,635		1,635
경남	36					1,401		1,401
경북	99					3,852		3,852
부산	17					662		662
전남	60					2,335		2,335
전북	65					2,530		2,530
제주	32					1,246		1,246
충남	65					2,530		2,530
세종	4					156		156
충북	60					2,335		2,335
인천	11					428		428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은 시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특교:시도 대응투자=50:5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00					96,800		96,800
'12	500/493					18,800		18,800
'13	500					19,500		19,500
'14	500					19,500		19,500
'15	500					19,500		19,500
'16	500					19,500		19,500

나. 농산어촌 학생들의 방학 중, 방과 후 영어교육프로그램 지원

→ '13년부터 특교 지원 없이 시도 자율 운영

다. 해외 현직교사 초청 방학 중 영어교육프로그램 지원

→ '13년부터 특교 지원 없이 시도 자율 운영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원어민 영어수업 기회확대(학교수)	3,000	3,250	3,500	3,750	4,000	원어민 교사 배치 농산어촌 학교수	원어민교사 통계자료

<2-2-2-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	학생복지정책과	담당자	장인영 연구관
전화번호	2100-6522	이메일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지원 강화 (기본계획 p28)

□ 농어촌 다문화 가족 학생의 한국어·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 취학전 다문화가정 유아 등을 위한 수준별 발달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 한국어 등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보충 프로그램 등 지원
-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초·중등 예비교사 등을 활용하여 방과후 멘토링 (교과지도·숙제지도) 지원

* 학생 중 읍·면지역 국제결혼 가정 자녀 : 8,180명(초 7,274, 중 718, 고 188)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글로벌 선도학교를 통한 한국어 및 기초학력 향상 지원(계속)
 - '12년 농어촌지역의 50개 학교를 글로벌 선도학교(거점형)*로 지정하여 한국어 및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 * 글로벌 선도학교(농어촌 거점형) : ('11) 34교 → ('12) 50교
- 다문화가정 학생의 기초학습·상담·문화체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연결한 1:1 멘토링 사업 지원(계속)
 - 대학생 농어촌 멘토링 참여 실적 : ('11년) 1,000명 → ('12년) 1,241명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계획」 수립('13.2월)
- 2013년도 대학생 멘토링 추진계획 수립('13.3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다문화가정 학생 및 글로벌 선도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농어촌 다문화학생(1,500명), 글로벌 선도학교(50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방비 500백만원(글로벌 선도학교 50교*10백만원)
국고 2,000백만원(1,500명*1.2만원*120시간)
- 지원조건 : 글로벌 선도학교, 다문화학생
- 지원내용 :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및 교과보충수업 지원 및 일반학생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 학생을 위한 1:1 멘토링(상담 및 학습
지도, 문화체험 등) 참여 대학생에게 근로장학금 지급
- 법적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000		2,000	500		2,500
2013			2,000		2,000	500		2,500
(증△감)			0		0	0		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경기								
충북								
충남								
인천								
..								
..								

- * 시도별 배분내역은 미정('12년 특별교부금 미확정)
- * 멘토링 장학금은 각 참여 대학에 교부하는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실적/계획	실적/계획		2,000/2,000		500/500		2,500/2,500
'13				2,000		500		2,500
'14				-		500		500
'15				-		500		500
'16				-		500		500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글로벌선도학교 수	19	34	50	50		글로벌 선도학교 거점형) 운영 수의 합	시도교육청 보고서
대학생 멘토링 참여 학생수			1,241	1,500		농어촌 다문화학생 멘토링 참여 학생수의 합	장학재단 사업 보고서

<2-2-3-1. 농어촌학교 우수교원 유치방안 마련(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팀)	담당자	김병윤(주무관) 정성훈(사무관) 김광식(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686 02-2100-6650 02-2100-6685	이메일	bykim@mest.go.kr caesar3@mest.go.kr kks98009@mest.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3) 농어촌 학교 우수교원 유치방안 강구 (기본계획 p29)</p> <p><input type="checkbox"/>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제도 도입('11년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임용절차와 별도로 근무예정학교나 지역을 미리 공고하여 교원을 채용하고,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여 교원의 안정적 확보 <p><input type="checkbox"/> 농어촌 학교 교사 업무부담 경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 처리 전담모형 개발 등을 통한 농어촌 학교 교사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마련 <p><input type="checkbox"/> 교원연수원 등에 농어촌 연수프로그램 개설·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연수 과정에 '농어촌 교육' 관련 강좌 등을 편성하여 농어촌에 대한 이해도 제고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학교·지역 단위 교원임용제도 도입(완료)
- 농어촌 학교의 교사 업무부담 경감
 -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방안」 발표('12.3월)
 - ※ 교사의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교육지원전담팀 운영 모델 제시 등
 -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에 대한 연구 실시('12. 6 ~ 12월)
 - 업무경감에 대한 교사 만족도가 낮거나 희망하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권역별 컨설팅 실시('12.11월)
 - ※ 부산·대구·경북·경남(11.1) / 대전·충북·충남·전북(11.6)
 - 교육청 업무 담당자 대상 포럼형 컨설팅 및 우수사례 발표('12.11.9)

○ 농어촌 관련 연수프로그램 개설·운영

- 농어촌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교원 직무연수 과정에 '농어촌 교육' 관련 강좌 등 편성 권고('12.2월)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학교의 교사 업무부담 경감

-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를 '2013 시도교육청 평가' 시 반영('13.5~7월)
-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지속 추진(계속)
- 교육청별 교사 행정업무 부담 경감 우수사례 발굴·공유('13.1~2월)

○ 농어촌 관련 연수프로그램 개설·운영

-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 대상으로 농산어촌 관련 연수지원 확대 및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농산어촌 연수프로그램 개발 권고('13.1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학교 우수교원 유치방안 마련

○ 농어촌 학교의 교사 업무부담 경감

- 사업 지원대상 : 시·도교육청
- 사업 규모(사업량) : 17개 시·도교육청
- 지원금액 및 형태 : 해당없음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학교의 각종 위원회 정비, 교육청 등으로 업무이관 등 학교의 불필요한 업무폐지 및 간소화 지속
 - 업무경감 우수사례 발굴·공유 지속

○ 예산 : 해당 없음

○ 중기재정계획 : 해당 없음

○ 농어촌 관련 연수프로그램 개설·운영

- 사업 지원대상 : 시·도교육청
 - 사업 규모(사업량) : 17개 시·도교육청
 - 지원금액 및 형태 : 해당없음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교원 직무연수에 농어촌 연수프로그램 개설·운영 권고
 - 농산어촌으로 찾아가는 연수, 원격 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적 제한을 벗어나 최신(선진교육)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 특별연수, 해외연수 등에 농산어촌 교사가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예산 : 해당없음
- 중기재정계획 : 해당없음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완료)	-	2건	-	-	-	법령개정여부	국회 등
행정업무전담체계 모형연구·개발 (완료)	-	1건	1건	-	-	정책연구보고서	내부자료
'농어촌 교육' 관련 연수 편성 권고	16개	16개	16개	17개	17개	권고한 교육청 수	공문

<2-2-4-1.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	이러닝과	담당자	이사라 연구관 박수경 연구사
전화번호	2100-6426 2100-6424	이메일	sarahlee42@mest.go.kr soogyong@mest.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지원

□ 주5일수업제 지원을 위한 실시간 멘토링서비스 시범 운영

- 교사를 멘토로 활용한 화상상담시스템기반의 서비스 운영
- 주5일수업제 지원을 위한 토요 프로그램 운영
-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의 사업계획서와 사이버가정학습 운영현황 등 평가를 통하여 시·도교육청을 선정·예산지원

□ 시·도교육청과의 공동사업 추진, 시·도 교육청 서비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센터운영 지원

- 우수활용사례 공모전 개최 및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운영 지원 등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실시
- 시·도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지원을 위한 추진/분과협의회 개최, 만족도 조사 및 통계·배포 시스템 운영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주5일수업제 지원을 위한 실시간 멘토링서비스 시범 운영
 - 사업계획서와 사이버가정학습 운영현황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4개 시·도 교육청(강원, 경북, 부산, 충남) 중심 운영
 - 담임형 사이버교사를 활용하여 주5일 수업제의 토요일을 활용한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서비스로 교육격차해소에 기여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수요자 및 사업 관계자의 의견 수렴
 - 사이버가정학습 추진협의회 및 중앙센터운영 등을 통한 운영 지원으로 운영의 내실화 추구

- 집중이수제 지원을 위한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개발완료
 - 중3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개발(12. 3완료)

(단위: 차시)

교과	중3			
	기본	심화	핵심	합계
국어	70	35	20	125
사회	100	50	20	170
과학	80	40	20	140
합계	250	125	60	435

- 중학교 기술·가정 콘텐츠 개발(13. 2 완료예정, 175차시)
 - ※ 학력평가문항개발사업(시·도 교육청 공동사업) 잔여금 활용
-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력 평가문항 및 진단 처방 문항 개발(12. 2완료)
 - 학력평가: 초4~중3, 4개 교과(사회, 수학, 과학, 영어), 총 29,940문항
 - 진단처방: 초4~중3, 5개 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총 9,000문항
-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의 활용도 및 질적 수준 제고 방안 마련
 -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별 콘텐츠 개발 및 체계적 품질관리 절차 정립
 - 품질인증제도 및 전문검토위원 확인체제로 개발 절차 강화
- 콘텐츠 관리시스템 구축 완료로 16개 시·도교육청 업무 경감
 - 중앙에서 콘텐츠 업데이트 시 16개 전 시·도 시스템 자동 적용
 - 콘텐츠 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시스템 증설 완료

3. 2013년도 추진 계획

- 교과부(특교) 및 16개 시·도교육청(지방비)의 예산분담을 통한 2009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고 스마트교육 플랫폼에서 연계되어 활용 가능한 초-중학생용 우수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으로 현장 적합도 높은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체제 정착
-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기반으로 한 시·도 중심 자율 서비스 체제 구축으로 서비스 활성화 도모

- 지역적 특색을 살린 사이버학습 운영 교육청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여, 16개 시·도 중심 서비스 운영의 자율성을 신장과 지역 중심 서비스로 정착하는 계기 마련

4. 관련 사업 내용

○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초·중학생
- 사업 규모(사업량) : 총 6,452백만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특별교부금: 3,001,891백만원), (시도교육청 사업비: 3,450백만원)
- 지원조건 : 특교 : 지방비 = 1 : 1.15
- 지원내용
 - 2009개정교육과정과 연계되는 초4 중3대상 교과용 콘텐츠개발
 - 활성화 사업비(지방비)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 회계	기금	소계			
2012						13,857		13,857
2013						3,450 (3,002)		6,452
(증△감)						3,450 (3,002)		6,452

※ ()는 특별교부금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

· 2009개정교육과정 콘텐츠개발비는 2012년 집행잔액으로 확보 후 배정완료

구 분	특별교부금(A)	지방비(B)	합계(A+B)	대응투자 비율(B/A)
서울	351,604	404,000	755,604	1.15
부산	185,151	213,000	398,151	1.15

구 분	특별교부금(A)	지방비(B)	합계(A+B)	대응투자 비율(B/A)
대 구	171,247	197,000	368,247	1.15
인 천	177,392	204,000	381,392	1.15
광 주	146,942	169,000	315,942	1.15
대 전	143,704	165,000	308,704	1.15
울 산	131,468	151,000	282,468	1.15
경 기	477,094	548,000	1,025,094	1.15
강 원	138,978	160,000	298,978	1.15
충 북	141,873	163,000	304,873	1.15
충 남	156,529	180,000	336,529	1.15
전 북	151,604	174,000	325,604	1.15
전 남	149,581	172,000	321,581	1.15
경 북	167,961	193,000	360,961	1.15
경 남	197,103	226,000	423,103	1.15
제 주	113,660	131,000	244,660	1.15
세 종	충남과 연계	--	-	-
합 계	3,001,891	3,450,000	6,451,891	

○ 중기재정계획

※ ()는 특별교부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6,224		66,224
'12	실적 계획	실적/계획				13,857/13,212		13,857/13,212
'13						3,450/(3,002)		6,452
'14						14,565		14,565
'15						15,293		15,293
'16						16,057		16,057

* 2009개정교육과정 콘텐츠개발비 확보로 '13-'14 시·도공동개발 후 '14-'15년까지 점진적 적용완료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교과부)→세부계획 수립 및 예산요구(특별교부금 사업수행기관)→예산 배정 및 사업관리(교과부)→사업추진 및 결과 보고(특별교부금 사업수행기관)→사업평가 및 환류(교과부)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사이버가정학습 만족도	-	75.74점	시·도 자율목표	76.2점 및 시·도 자율목표	76.5점 및 시·도 자율목표	'12 농어촌지역사이버 가정학습을 이용하는 담임형 학생의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목표치 100.5%달성) '13이후 : 시·도교육청 산출보고	내부자료 시·도교육청 자료 '11-'12'전문기관 '13이후 : 시·도
1일 평균 로그인수	-	228만명	· 시·도 자율	· 230만명 · 시·도 자율	· 230만명 · 시·도 자율	사이버가정학습에 로그인한 횟수의 1일 평균값 서비스대상확대	'11-'12중앙통계시 스템(내부자료) '13 시·도교육청 자료
지역특화모델운영 다양한 평가 지표	-	-	시도자체 목표치	시도자체 목표치	시도자체 목표치	사이버학습 참여도 (참여 학급 수/전체 학급수)×100), 게시판활용도, 모바일 하행수, 가온 이용율, 자체개발 설문 및 세분화된 이용자중심 콘텐츠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 사이버학습 이수율	시·교육청 자료

※ '13년 콘텐츠 개발 사업은 '14년-'15년에 점진적으로 보급되며 '13년에는 시·도
특색과 수요를 살려 자율적으로 운영됨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1) 개관

□ '13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어업인 학부모에게 교육비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 경감
 - 농어촌 지역에 고교생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69,572명에게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농어촌지역에 거주(6개월 이상)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32천명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무이자 용자 지원(졸업 후 2년 거치, 1학기분 용자금을 1년 이내에 상환)
- 농림수산계열학과 재학생인 농어업인 자녀 또는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학금을 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부터 마련·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후계농업인 양성(6,282명, 11,748백만원)
- 초·중·고등학교(8,600개교)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수농산물 소비기반 확보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
- 농과계 고등학교 자영농과 재학생, 수산계 고등학교 자영수산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 및 농어촌정착 유도
 - 농과계교 2,880명 2,702백만원(지방비)지원, 5개 수산계교 357명 351백만원(지방비) 지원
- 농어촌지역의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어촌학교 노후 통학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운영 등 지원
- 개별 대학이 해당 대학의 특성 및 교육방침에 적합한 방식으로 독자적인 선발 기준을 설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의 전형 유형 파악 및 선발 인원 통계관리를 하도록 하여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

□ 예산 내역

<2013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63,057		63,057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31,100				31,100			31,100
농어촌 대학생 장학금 지원							11,748	11,748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78,700		178,700
자영농수산고교 급식비 지원						2,878	176	3,05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63,598		63,598
합계	31,100				31,100	308,233	11,924	351,257

< 2-3-1-1 :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어촌사회과	담당자	김병준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4	이메일	kim94@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업인 자녀 등 학자금 지원·용자 확대 (기본계획 p30)

□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현황('09) : 81,705명/801억원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교육 여건이 불리한 농어업인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90년부터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에게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전액 지방비로 매년 고교생 약 8만여명을 대상으로 800억원 수준 지원
 - * '05년에 지자체로 이양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인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속 지원(연중)
 - 지원 규모 : 69,572명, 63,057백만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고교생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69,572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지원내용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게 고교생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	-	-	-	-	69,546	-	69,546
2013	-	-	-	-	-	63,057	-	63,057
(증△감)	-	-	-	-	-	△6,489	-	△6,489

*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액 지방비로 운영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9,572	-	-	-	-	63,057	-	63,057
서울	30	-	-	-	-	57	-	42
부산	665	-	-	-	-	931	-	931
대구	500	-	-	-	-	816	-	700
인천	603	-	-	-	-	747	-	689
광주	214	-	-	-	-	267	-	234
대전	70	-	-	-	-	120	-	96
울산	387	-	-	-	-	526	-	591
경기	5,667	-	-	-	-	6,572	-	6,572
강원	5,000	-	-	-	-	4,000	-	4,000
충북	3,706	-	-	-	-	3,671	-	3,671
충남	10,489	-	-	-	-	6,176	-	8,103
전북	6,720	-	-	-	-	6,050	-	6,988
전남	14,105	-	-	-	-	12,000	-	12,000
경북	11,000	-	-	-	-	10,384	-	7,962
경남	7,740	-	-	-	-	7,400	-	7,400
제주	2,676	-	-	-	-	3,340	-	3,340

○ 중기재정계획

* 지자체 이관 사업('05년부터)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중기 재정 파악 곤란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계획대비 지원율(%)	90	90	90	90	90	집행실적 ÷ 집행계획 × 100	지자체 자료

< 2-3-1-2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어촌사회과	담당자	김병준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4	이메일	kim94@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업인 자녀 등 학자금 지원·용자 확대 (기본계획 p30)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 농과계 대학생 등에 대한 학자금 보조(장학금 등) 지원 확대
 - *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인원/지원금액 현황('09) : 농촌희망재단(2,300명/54억) 농협문화복지재단(1,205명/35억원)
-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용자지원 지속 확대 및 상환부담 경감
 - 졸업후 1년 유예 후 상환 → 상환 유예기간 연장 추진
 - * 학자금 무이자 용자 지원 현황('09) : 29천명/929억원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UR 이후 어려움을 겪게된 농어민의 후생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94년도부터 농특회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지원
- 농어업인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1인당 용자지원 규모 확대
 - 지원확대 : ('94~'00) 학기당 100만원 → ('01~'02) → 학기당 150만원 → ('03) 학기당 200만원 → ('04이후) 등록금 범위내
 - * '04년에 교육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업무 이관
 - 지원 실적

구분	연도별		
	'10	'11	'12
예산(출연 기준)	505	605	355
지원 인원(천명)	31	33	34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속 지원(연중)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6개월 이상)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 사업 규모(사업량) : 32천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용자(국고 출연)
- 지원조건
 - 지원 조건 : 국고 100%
 - 용자 학기 : 재학대학의 정규 학기 수까지 지원
 - 상환 조건 : 졸업 후 2년 거치, 1학기분 용자금을 1년 이내에 상환
- 지원내용 :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무이자 용자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35,507				35,507			35,507
2013	31,100				31,100			31,100
(증△감)	△4,407	-	-	-	△4,407	-	-	△4,407

* 국가장학금의 수혜자 확대에 의해 지원 규모 감소

* 총용자규모 : ('12년) 92,496 → ('13년) 94,500백만원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 없음(한국장학재단에서 일괄 용자)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111,007	-	-	-	-	-	111,007
'12	34천명	35,507	-	-	-	-	-	35,507
'13	32천명	31,100	-	-	-	-	-	31,100
'14	34천명	21,600	-	-	-	-	-	21,600
'15	34천명	11,400	-	-	-	-	-	11,400
'16	34천명	11,400	-	-	-	-	-	11,4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수혜자 만족도	89	87	88	88	89	5분위 척도 중 상위 2분위까지를 만점으로 환산	전문기관의 만족도 조사 보고서

<2-3-1-3. 농어촌 대학생 장학금 지원(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한철수(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8	이메일	cs0353@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업인 자녀 등 학자금 지원·용자 확대 (기본계획 p30)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 농과계 대학생 등에 대한 학자금 보조(장학금 등) 지원 확대
 - *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인원/지원금액 현황('09) : 농촌희망재단(2,300명/54억) 농협문화복지재단(1,205명/35억원)
-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용자지원 지속 확대 및 상환부담 경감
 - 졸업후 1년 유예 후 상환 → 상환 유예기간 연장 추진
 - * 학자금 무이자 용자 지원 현황('09) : 29천명/929억원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2012년 대학장학금 총 8,337명에게 14,465백만원 지원(완료)
 - '12.1학기 : 2,938명에게 5,304백만원 지원('12.2월)
 - '12.2학기 : 5,399명에게 9,161백만원 지원('12.8월)

3. 2013년도 추진 계획

- 2013년 대학장학금 총 6,282명에게 11,748백만원 지원 예정
 - '13.1학기 : 3,131명에게 5,896.5백만원 지원 예정('13.2월 선발)
 - '13.2학기 : 3,151명에게 5,851.5백만원 지원 예정('13.8월 선발)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대학생 장학금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업인의 자녀, 농어업인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림수산계열학과 재학생

- 사업규모 : 연간 6,282명, 11,748백만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1인당 연간 300~460만원 무상지원
- 지원조건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평균성적이 70점(80점)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전국 대학(교) 재학생 장학금 지원
- 법적근거 : 한국마사회법 제 42조 및 동법 시행령 2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	-	-	-	-	-	14,468	14,468
2013	-	-	-	-	-	-	11,748	11,748
(증△감)	-	-	-	-	-	-	△2,720	△2,720

* 재원 :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 없음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8,337/7,512	-	-	-	-	-	14,465/14,468	14,465/14,468
'13	6,282	-	-	-	-	-	11,748	11,748
'14	6,300	-	-	-	-	-	12,000	12,000
'15	6,300	-	-	-	-	-	12,000	12,000
'16	6,300	-	-	-	-	-	12,000	12,0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지원계획인원 대비 실적인원	99.8%	99.8%	110%	99%	99%	(연간 총 지원실적인원÷ 당초 지원계획인원) × 100	-
지원계획금액 대비 지원금액	99.8%	99%	99.9%	99%	99%	(연간 총 지원실적금액÷ 당초 지원계획금액) × 100	-

<2-3-2-1.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	학생건강총괄과	담당자	박진욱/김동로
전화번호	2100-6543	이메일	kim5092@mest.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기본계획 p30)

□ 지자체 여건에 맞게 농어촌 초·중·고생 급식비 지속 지원

-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활용 권장
 - * 전남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활용('09 소요예산: 595억원)
- 자영 농고·수산고 급식비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 * '09년 지원인원 : 808천명, 지원 예상 : 992억원(분권교부세)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 사용확대를 통한 급식의 질 향상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확대 지침 시달 및 시·도교육청과 자치단체에 지역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협조 요청('12.1월)
 -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회 개최
 -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방안'을 주제로 학교급식 연수회 개최 ('12.6월, 학교장 등 160명)
- ⇒ '12년도 자치단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목표치(8,600개교) 대비 369개교 더 많은 8,969개교에 1,787억원 지원

3. 2013년도 추진 계획

- 학교급식 기본방향 수립·시달('13.1월)
-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회 개최('13.6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용 확대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8,969개교(추정)
 - 지원금액 및 형태 : 1,787억원(추정), 지방비 100%
 - 지원조건 :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 지원내용 : 우수농산물(현물 또는 현금)
 - 법적근거 : 학교급식법 제5조 및 제8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78,700		178,700
2013						178,700		178,700
(증△감)						0		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8,969개교					178,700		178,700
'13	8,969개교					178,700		178,700
'14	8,969개교					178,700		178,700
'15	8,969개교					178,700		178,700
'16	8,969개교					178,700		178,7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학교수)	8,389	8,578	8,969	8,969	8,969	지자체의 우수농산물 지원 학교수	우수농산물 지원현황 통계조사 (교육청 제출자료)

< 2-3-2-2 : 자영농수산고교 급식비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어촌사회과	담당자	김병준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4	이메일	kim94@korea.kr

[자영 농업계고 급식비 지원]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기본계획 p30)

□ 지자체 여건에 맞게 농어촌 초·중·고생 급식비 지속 지원

-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활용 권장
 - * 전남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활용('09 소요예산: 595억원)
- 자영 농고·수산고 급식비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 * '09년 지원인원 : 808천명, 지원 예상 : 992억원(분권교부세)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영세농업인에 대한 부담경감과 젊고 유능한 농업인 후계자 육성을 위해 자영 농과생 급식비 지원('86~)
 - 전액 지방비로 매년 자영농과생 약 3천여명을 대상으로 30억원 수준 지원
 - * '05년에 지자체로 이양

3. 2012년도 추진 계획

- 영세농업인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속 지원(연중)
 - 지원 규모 : 2,870명, 2,745백만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자영농수산고교 급식비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과계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영농과생
 - 사업 규모(사업량) : 2,88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급식비 일부 지원, 보조
 - 지원조건 : 자영농과생
 - 지원내용 : 자영농과생 재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의 일부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	-	-	-	-	2,452	-	2,452
2013	-	-	-	-	-	2,702	-	2,702
(증△감)	-	-	-	-	-	250	-	250

*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액 지방비로 운영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83	-	-	-	-	2,702		2,702
경기	450	-	-	-	-	729		729
강원	370	-	-	-	-	268		268
충북	280	-	-	-	-	166		166
충남	250	-	-	-	-	142		142
전북	418	-	-	-	-	368		368
전남	435	-	-	-	-	386		386
경북	225	-	-	-	-	217		217
경남	235	-	-	-	-	329		329
제주	220	-	-	-	-	97		97

○ 중기재정계획

* 지자체 이관 사업('05년부터)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중기재정 파악 곤란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15		
계획대비 지원율(%)	93.5	100	100	100	100	100	집행실적 ÷ 집행계획 × 100	지자체 자료

[자영 수산계고 급식비 지원]

담당부서	수산개발과	담당자	이명준 사무관
전화번호	201-2641	이메일	lmj1010@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기본계획 p30)

□ 지자체 여건에 맞게 농어촌 초·중·고생 급식비 지속 지원

-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활용 권장
 - * 전남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활용('09 소요예산: 595억원)
- 자영 농고·수산고 급식비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 * '09년 지원인원 : 808천명, 지원 예상 : 992억원(분권교부세)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우수한 어업후계인력을 육성 및 어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수산계고등학교(5개교) 자영수산과 학생(404명)의 식비 일부를 보조
 - * 충남도(충남해과고) 77명, 전남도(완도수고, 압해고, 여수해과고) 222명, 경북도(포항해과고) 105명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자영수산과가 설치된 5개 수산계고에 대한 급식비 지원 계속 추진
 - * 지원인원 357명 / 지원금액(도비) 215백만원
- 수산 전문계고교 특성화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입학생의 증가와 급식 질의 개선을 위한 지원단가 상향 등 지원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 필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자영수산고교 급식비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자영수산과 학생(충남해양과학고, 전남 완도수고·압해고·여천실고, 경북 포항해양과학고)
 - 사업 규모(사업량) : 5개 고교 자영수산과 재학생 357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도비(분권교부세 포함) 50%, 교육인적자원부 30%, 자부담 20%

- 지원조건 : 시·도비 보조금 지급
- 지원내용 : 해당학교별 자영학교 재학생 급식비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25	225	450
2013						175.5	175.5	351
(증△감)						△49.5	△49.5	△99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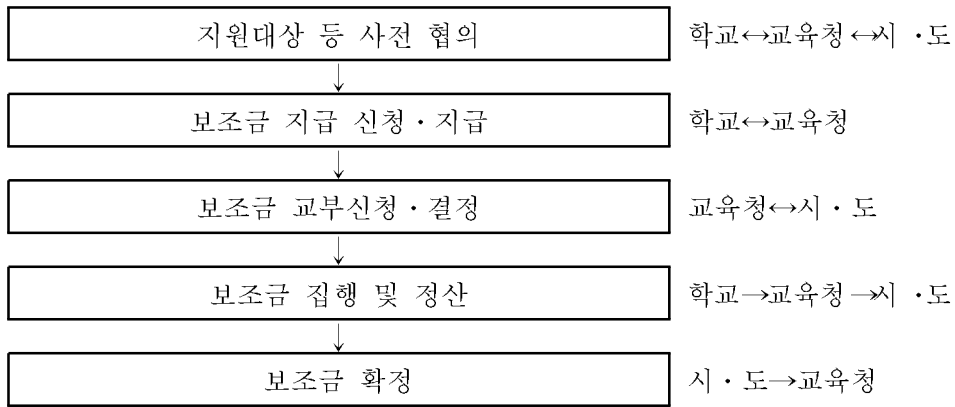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41, 5개교					175.5	175.5	351
충남	77, 1개교					27.5	27.5	55
전남	190, 3개교					108	108	216
경북	90, 1개교					40	40	8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832					927	927	1,854
'12	404, 5개교					225	225	450
'13	357, 5개교					175.5	175.5	351
'14	357, 5개교					175.5	175.5	351
'15	357, 5개교					175.5	175.5	351
'16	357, 5개교					175.5	175.5	351

나. 자영수산고교 급식비 지원

○ 사업 추진체계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급식비지원 인원수(명)	710	710	710	710	710	지원계획 대비 실적	시·도 보고자료

<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지방자치단체) >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기본계획 p31)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 노후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현실화 추진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학교의 통학차량지원(강원 17개교, 충남 51개교, 전북 265개교, 경남 242개교, 부산 10개교, 대구 8개교, 인천 18개교)을 실시하였고,
- 노후 통학차량의 교체(충북 10대, 전남 43대), 통학버스 안전도우미(전남 303명) 운영, 통학버스 임차비 지원(경북 16개소) 실시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어촌학교 통학차량지원, 노후 통학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무료통학버스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사업구분	개소수 ('12)	개소수 ('13)	'12 예산	'13 예산
합 계				52,162	63,598
강원	교통여건 불편지역 고등학교 방과후 차량지원	14개교 지원	17개교	291	327
충북	농촌학교 통학차량지원	노후차량교체 8대, 직영차량운영 등 225대 등	7/232	5,071	5,763
충남	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	340대	330대	10,853	9,673
전북	통·폐합학교 및 통학여건이 불편한 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	252개교	300개교	10,962	13,169

지역	사업구분	개소수 ('12)	개소수 ('13)	'12 예산	'13 예산
전남	노후 통학차량 교체	노후차량교체 45대	17	4,212	2,598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지원	안전도우미 297명	305		
경북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487개교	724	7,414	16,979
경남	통학버스 지원	248개교	251	10,131	11,562
	통학비 및 하숙비 지원	362명	310명	7	3
부산	농어촌 원거리 통학학교 통학버스 지원	15개교 지원	24개교	635	1,059
대구	원거리 통학학생 무료 통학버스 지원	10개교	11개교	260	288
인천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21개교	23개교	1,199	1,271
울산	노후 통학차량 교체 및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교체 1대 운영 9개교	운영 10개교	380	150
세종	노후 통학차량 교체 및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교체 3대 운영 22대	운영 29대	747	756

<2-3-3-1.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	대입제도과	담당자	구본억사무관 김건섭주무관
전화번호	2100-6364 2100-6362	이메일	koobu@mest.go.kr icandoit@mestg.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3)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 (기본계획 p30)</p> <p>□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균등한 대학진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추진</p> <p>○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립대학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균형 선발제확대 권장</p> <p>* 선발인원: ('09) 4,964명→ ('10 예정) 6,248명</p>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
- 선발규모(2013학년도 7,894명(모집인원 기준))

3. 2013년도 추진 계획

- 개별 대학 단위로 사업 추진
 - 개별 대학이 해당 대학의 특성 및 교육방침에 적합한 방식으로 독자적인 선발 기준 설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의 전형 유형 파악 및 선발 인원 통계 관리

4. 관련 사업 내용

가.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개별대학 및 학생·학부모
 - 사업 규모(사업량) : 6,500명 내외
 - 지원금액 및 형태 : 비예산
- 예산 : 비예산
- 사업 추진체계 : 대학의 특성 및 교육방침에 적합한 방식으로 독자적 추진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학년도	'12학년도	'13학년도	'14학년도	'15학년도		
모집인원	7,304	6,792	7,894	2,000	2,500	2014학년도 선발학생 수	대교협 통계 ('14.2월)

3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3.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3-1. 지역주도의 개발체계 정착지원

(1) 개관

□ '13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하에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있게 집행하도록 '10년도에 개편된 포괄보조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 지원
 - 포괄보조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포괄보조사업 총괄 및 담당부서를 시도/시군구별로 지정·운영하고, 지역개발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계획보완 컨설팅 지원
 - '12년 포괄보조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13년 포괄보조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연중 추진
 - 지역개발 전문가 포럼 구성과 지역리더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로 지역개발 조직 및 전문가 등의 지역개발 역량 강화
- 권역단위 총괄계획가 제도를 확대하여 시·군 단위의 지역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운영 등 민간참여 확대와 파트너십에 의한 지역개발 추진
- 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7억원) 및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지원(375억원)

□ 예산 내역

<2013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일반농어촌개발 관리	3,690	918,246			921,936	398,271		1,320,207
일반농어촌(포괄 보조) 관리	3,690				3,690			3,690
일반농어촌개발		918,246			918,246	398,271		1,316,517
연계협력사업			30,000		30,000	7,500		37,500
지역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270				270			270
합계	3,960	918,246	30,000		952,206	405,771		1,357,977

<3-1-1-1. 일반농어촌개발(포괄보조) 관리(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안완기(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56	이메일	okan@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1) 지역사회 주도 개발을 뒷받침하는 포괄보조제도 도입 (기본계획 p34)
-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 하에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 있게 집행
 -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시, 모니터링, 컨설팅 지원을 하고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부여
 - * 일반농산어촌개발(포괄보조사업, 국비) : ('11) 9,312억원 → ('12) 9,304 → ('13) 9,182
 - 지자체는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주거, 교통, 정보통신 등 분야별 농어촌 서비스기준이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지역발전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법 제38조의2 신설, 2010.7.23)
 - 계획수립, 사업추진, 자체평가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도출,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위한 공공·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011년 실적 부처 자체 평가 추진
 - 전국 9개도, 1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 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지구 대상 순회 교육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지구 공무원, 추진위원, 컨설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콘서트 형식으로 3회 추진
- 총괄계획가 운영방안 마련(7개지구, 도별 1개소)
-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 사업 사업성 검토 추진(3~4월)
- 포괄보조사업 예산 편성 및 신청(5~6월)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현장점검(557개소 권역대상, 6~9월)
- 농산어촌개발사업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메뉴얼 및 선진사례 동영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모니터링(마을개발사업 지원단 운영)
-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지역개발사업 D/B 구축 등)

3. 2013년도 추진 계획

- 2012년 포괄보조사업 추진실적 평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12년도 추진실적을 평가(120개 시군)
-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지구 활성화 대책 마련 추진(연중)
 - 농어촌인성학교, 로컬푸드제도 등 도입
- 총괄계획가 확대 운영방안 마련 및 연구용역 추진
 - 권역사업 총괄계획가, 지역 총괄계획가 운용 및 현장활동가, 현장 포럼 운용을 통해 지역주도의 마을개발 추진
- 2014년 신규사업성 검토 추진
 - 읍면정비사업, 권역정비사업, 신규사업 및 창의아이디어 사업 등
- 일반농산어촌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용
 - 예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완공 지역의 사후관리 분야까지 사업관계자 지원
- 농산어촌 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D/B 구축 확대 등 추진
 - D/B 및 다양한 타 시스템과의 연계, 회계 및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 지역개발조직 및 전문가 등의 지역개발 역량 강화 지원(연중)
 - 지역개발 전문가 포럼 구성, 지역리더 등 교육지원 강화
- 농산어촌마을개발사업 다양한 홍보
 - TV 및 중앙일간지, 잡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4. 관련 사업 내용

가. 일반농어촌개발(포괄보조) 관리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일반농산어촌 시군(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 규모(사업량) : 117개 시군
 - 지원금액 및 형태 : 3,690백만원, 민간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내용 : 포괄보조계획 컨설팅 및 검토, 신규사업성 검토,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역량강화 등
 -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3,884	-	-	-	3,884	-	-	3,884
2013	3,690	-	-	-	3,690	-	-	3,690
(증△감)	△194	-	-	-	△194	-	-	△194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7개 시군	20,060	-	-	-	-	-	20,060
'12	120개 시군	3,884	-	-	-	-	-	3,884
'13	117개 시군	3,690	-	-	-	-	-	3,690
'14	117개 시군	4,038	-	-	-	-	-	4,038
'15	117개 시군	4,224	-	-	-	-	-	4,224
'16	117개 시군	4,224	-	-	-	-	-	4,224

나. 일반농어촌개발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일반농산어촌 117개 시군
- 지원금액 및 형태 : 918,246백만원, 지자체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소득기반시설,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930,447			930,447	398,763		1,329,210
2013		918,246			918,246	398,271		1,316,517
(증△감)	-	△12,201	-	-	△12,201	△492	-	△12,693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7개 시군		4,772,045			2,049,899		6,821,944
'12	120개 시군	-	930,447			398,763		1,329,210
'13	117개 시군	-	918,246	-	-	398,271	-	1,316,517
'14	117개 시군	-	945,793	-	-	405,340	-	1,351,133
'15	117개 시군	-	974,167	-	-	417,500	-	1,391,667
'16	117개 시군		1,003,392	-	-	430,025	-	1,433,417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인구유입(%)	104.8	113.4	100	100	100	지자체 조사	지자체 조사
주민 만족도(%)	82.2	78.8	79.8	80.3	81.1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 3-1-1-2. 연계협력사업(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안완기(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56	이메일	okan@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지자체 연계협력 사업 확대 추진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협력 증진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발전 제고
 - 지역발전위원회와 농식품부는 사업가이드라인 마련,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간 연계사업 모색기회 제공
 - 지자체는 지역특화, 문화, 관광, 보건복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 2개 이상의 기초 지자체간 또는 2개 이상의 기초광역 지자체 연계협력사업 발굴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없음

3. 2013년도 추진 계획

- 2013년 사업추진계획 및 시행지침마련 (1월 초)
- 지역위, 농식품부 합동 사업 순회설명회 개최 : '13. 1. 9 ~ 1. 11
- 연계협력사업 신청(공모) : '13. 2. 8일까지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중복성 등 검토 : '13. 2. 14 ~ 2. 28
- 지원 대상사업 선정 : '13. 3. 8 ~ 3. 15
- 선정사업 통보 및 예산지원 : '13. 4월초
- 사업계획 수립, 승인 및 추진 : '13. 4월부터

4. 관련 사업 내용

가.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역특화, 문화, 관광, 보건·복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모두 가능하며, 시설투자·인프라(HW)사업도 가능하나 기존 시설 등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사업 우선
 - 사업규모(사업량) : 300억원

- 지원금액 : 사업당 총 사업비(최대 60억원) 80%~90%를 국고 지원하며, 총 사업비에서 민간투자비용은 제외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매칭펀드로 지원
- 지원내용 : 지역특화, 문화, 관광, 보건·복지, 교육 등에 관여된 사업으로 R&D, 기업지원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 수행되는 비용 지원
-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목적), 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조(지역발전투자협약), 39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광특회계	기금	소계			
2012								
2013			30,000		30,000	7,500		37,500
(증△감)			30,000		30,000	7,500		37,50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경기								
충북				심사중				
충남								
인천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실적/계획	실적/계획						
'13			30,000					
'14			60,000					
'15			90,000					
'16			100,000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연계협력사업 예산 집행률				100		집행액/예산액*100%	예산집행실적

<3-1-2-1. 지역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안완기(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56	이메일	okan@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민간참여 확대와 파트너십에 의한 지역개발 추진 (기본계획 p34)

- 농어촌 마을건설·재개발사업 시행자를 민간까지 확대
 - (기존)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 (개선) 마을정비조합
 - 마을정비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가능
- 생활편의시설, 마을조성 등 다양한 지역개발관련 사업에 BTL(임차방식) 확대 등을 통해 민간 투자활성화 유도
 - 세부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방안은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수립
 - 민자유치를 포함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 우대
 - 성과 평가 시, 민간 주체·자본의 참여수준을 주요사항으로 고려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민간 투자활성화 유도를 위한 법령개정 완료('09.6)
 -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보조 사업을 선 시행토록 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상환(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4항) 마련
-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 '11년도 포괄보조사업 성과평가지 가점부여로 실질적 인센티브 혜택부여('11.3)
 - '12년 신규사업 평가('11.4~5월) 시 민자 유치사업 선정 우대
- 민간참여 확대와 파트너십에 의한 지역개발 추진
 - 민간전문가가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추진('12.1~12월)
 - * 총괄계획가 : 시·군·구의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진행·조정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말함
 - 시범대상 사업지구 7개소 선정('12.1월), 총괄계획가 활동('12.2~12월)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총괄계획가 제도 확대 운용
 - 권역단위 총괄계획가 제도를 확대하여 시·군 단위의 지역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운영('13.2~1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지역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일반농산어촌 120개 시·군
- 사업 규모(사업량) : 8개소(시범사업)
- 지원금액 및 형태 : 민간경상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내용 : 총괄계획가와 전담인원 보수 지급
-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53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5항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50	-	-	-	150	-	-	150
2013	270	-	-	-	270	-	-	270
(증△감)	120	-	-	-	120	-	-	120

- '12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미확정”

○ 중기재정계획('13년까지 시범사업)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5	150	-	-	-	-	-	150
'13	8	270	-	-	-	-	-	270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민간사업자 참여비율	73.6	67.1	69.1	71.1	72.1	(민간사업자 사업장수/전체사업장 수)×100% *전원마을조성사업대상	조사자료

3-2. 정주계층별 선도거점 개발

(1) 개관

□ '13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은퇴자·슬로우푸드(slow food)·예술인마을 등 특색있는 모델제시와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주차장 등 마을기반 조성
 - 신규마을조성시 마을의 규모(주택신축기준)에 따라 12~36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낙후된 농어촌마을의 기반시설정비, 슬레이트 및 빈집철거, 노후주택 개량, 취약 계층을 위한 공동생활형 홈 등을 통합적 지원하는 농어촌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 지역특성을 감안한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마을을 권역화하여 전략적으로 개발
 - 기초생활기반확충, 소득기반시설,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 인근 도시와 농어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읍·면소재지 역할 강화를 위해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을 적정수준으로 확충함으로써 서비스 기능 향상 도모(읍면소재지 종합정비 217개 지구 추진)
 -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중심가로 경관개선, 문화복지 등 서비스 기능 확충 시설 등 거점지역 육성

□ 예산 내역

<2013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신규마을 조성 및 마을재개발		16,884			16,884	7,236		24,120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4,200				4,200			4,200
소생활권 종합정비 등								
지역거점 기능향상								
합계	4,200	16,884			21,084	7,236		28,320

<3-2-1-1. 신규마을 조성 및 마을재개발(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박종훈(서기관)
전화번호	044-201-1558	이메일	kimuk@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신규마을 조성 및 기존마을 재개발로 인구유입 유도 (기본계획 p35)

□ 해당 지역의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신규마을 조성

- 은퇴자·슬로우푸드(slow food)·예술인마을 등 특색 있는 모델 제시
*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 ('09) 108개소 → ('20P) 200
- 상하수도, 마을진입로·안길, 마을공동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노후주택개량 등 기본생활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 경관개선활동, 도시학생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체험휴양사업 등 마을 공동사업 추진으로 공동체 활성화

□ 기존마을 주민과 이주 희망 도시민이 공동으로 마을 재개발 추진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정보제공, 교육 및 자금지원을 연계하여 지자체별 귀농·귀촌사업 활성화 유도
- 마을기반 정비,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농외소득 창출방안, 마을공동체 강화, 교육·복지·문화·친교프로그램 등을 결합하여 추진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해당 지역의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신규마을 조성 131지구 추진(계속)
* 131지구 선정 : ('04~'09)80, ('10)16, ('11)15, ('12)20
-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문제점 발굴·해소 및 발전방안 강구(계속)
- 학계, 연구원, 전문가 등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 문제점 발굴
- 전원마을 현황을 웰촌(포털)에 게시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정보제공(계속)
- '12년 신규지구부터 기반시설 지원금 상향 조정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소규모 마을조성(시범사업) : '13년 대상사업 선정 '14년 시행(38개소)
- 공공기관 주도형 분양촉진
- 사후관리 강화 등

4. 관련 사업 내용

가. 신규마을 조성 및 마을재개발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시장·군수
- 사업 규모(사업량) : (신규마을조성, 38개소) 마을의 규모(주택신축기준)에 따라 12~36억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 * 20~29호 12억원 이내, 30~49호 18억원 이내, 50~74호 24억원 이내, 75~99호 30억원 이내, 100호 이상 36억원 이내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부족한 기반시설비등은 지방비, 입주자 부담
- 지원내용
 -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주차장 등 마을기반 조성
-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62조(농어촌마을조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	16,463	-	-	16,463	7,056	-	23,519
2013	-	16,884	-	-	16,884	7,236	-	24,120
(증△감)	-	421	-	-	421	180		601

○ 중기재정계획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7개 시군		4,772,045			2,049,899		6,821,944
'12	120개 시군	-	930,447			398,763		1,329,210
'13	117개 시군	-	918,246	-	-	398,271	-	1,316,517
'14	117개 시군	-	945,793	-	-	405,340	-	1,351,133
'15	117개 시군	-	974,167	-	-	417,500	-	1,391,667
'16	117개 시군		1,003,392	-	-	430,025	-	1,433,417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도시민농어촌유치 (명)	3,174	3,312	3,525	3,900	4,275	'04년부터 신규마을 조성 도시민 유치자 수(누계)	지자체 도시민 유치실적 조사

* 지구당 평균 25세대

<3-2-1-2.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팀)	담당자	김운기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52	이메일	kimuk0714@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신규마을 조성 및 기존마을 재개발로 인구유입 유도 (기본계획 p35)

□ 해당 지역의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신규마을 조성

- 은퇴자·슬로우푸드(slow food)·예술인마을 등 특색 있는 모델 제시
 - *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 ('09) 108개소 → ('14P) 200
- 상하수도, 마을진입로·안길, 마을공동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노후주택개량 등 기본생활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 경관개선활동, 도시학생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체험휴양사업 등 마을공동사업 추진으로 공동체 활성화

□ 기존마을 주민과 이주 희망 도시민이 공동으로 마을 재개발 추진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정보제공, 교육 및 자금지원을 연계하여 지자체별 귀농·귀촌사업 활성화 유도
- 마을기반 정비,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농외소득 창출방안, 마을공동체 강화, 교육·복지·문화·친교프로그램 등을 결합하여 추진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해당없음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추진(4개소)
- 리모델링 사업 모델 개발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추진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시장·군수
 - 사업 규모(사업량) : 시범사업 4개소(총 156억원(2년간) - 국비 81, 지방비 35, 용자 40)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국비 70%, 지방비 30%), 행정경비(국비 100%)
- 지원내용 : 낙후되고 노후된 농어촌마을의 기반시설정비, 슬레이트 및 빈집철거, 노후주택 개량,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생활형 홈 등을 통합적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62조(농어촌마을조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	-	-	-	-	-	-	-
2013	4,200	-	-	-	4,200	-	-	4,200
(증△감)	4,200	-	-	-	4,200	-	-	4,20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미정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4	144,990						144,990
'12								
'13	4	4,200						4,200
'14		8,100						8,100
'15	30	44,250						44,250
'16	30	88,440						88,44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17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주민 만족도(평균값)	-	75	76	77	78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주민 만족도	지자체 행정조사

※'13년은 리모델링 1차년도(시행계획 수립) 추진으로 주민만족도 조사가 어려움

<3-2-2-1. 소생활권 종합정비 등(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안완기(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56	이메일	okan@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소생활권 종합 정비 (기본계획 p35)

- 영농·생활권 단위로 권역화(3~5개마을) 하여 소득기반확충, 생활환경정비, 경관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주민참여와 파트너십(주민-기업-공공), 지역역량 향상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의 대표 모델로 정착
 - * ('10) 310개 → ('11) 471 → ('12) 557 → ('13) 642 [사업추진누계]
 - * 마을종합개발 : 지역주민 22만여명, 컨설팅업체 55개, 전문가 130여명 등 참여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577개 권역 추진
 - 136개 권역 준공, 421개 권역 사업추진
 - 권역 실태조사 및 조치사항 지시('12.6~9월)
 - 권역사업 모니터링 추진('12.7~11월)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지역특성을 감안한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마을을 권역화하여 전략적으로 개발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기간 : 사업규모에 따라 3~5년
 - 지원규모 : 권역규모에 따라 25억원~50억원
- 권역단위 종합정비 395개 권역 추진(계속시행 310개, 신규착수 85개)
- '1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실적 평가(1월)
-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지원시스템 구축 및 지원
 - 헬프데스크, 현장활성화 센터 등 운영
- 마을권역 활성화 대책 추진
 - 농어촌인성학교 지정, 로컬푸드제 운영 등

4. 관련 사업 내용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권역단위 종합정비)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일반농산어촌 117개 시군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 지원대상 : 일반농산어촌 117개 시군
- 지원금액 및 형태 : 918,246백만원, 지자체자본보조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소득기반시설,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	930,447			930,447	398,763		1,329,210
2013		918,246			918,246	398,271		1,316,517
(증△감)	-	△12,201	-	-	△12,201	△492	-	△12,693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7개 시군		4,772,045			2,049,899		6,821,944
'12	120개 시군	-	930,447			398,763		1,329,210
'13	117개 시군	-	918,246	-	-	398,271	-	1,316,517
'14	117개 시군	-	945,793	-	-	405,340	-	1,351,133
'15	117개 시군	-	974,167	-	-	417,500	-	1,391,667
'16	117개 시군		1,003,392	-	-	430,025	-	1,433,417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권역주민 만족도 조사	82.2	78.8	79.8	80.3	81.1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3-2-3-1. 지역거점 기능 향상(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안완기(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56	이메일	okan@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거점읍·면의 기초생활서비스·농어촌 경제 거점 기능 향상 (기본계획 p36)

- 정주체계별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거점읍·면 소재지를 기초서비스의 중심지 및 경제활동 다각화 선도거점으로 활성화
 - 복지시설 등 주민 편익기반확충, 시장 및 주거단지 환경개선
 - 다양한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지원 등 커뮤니티 사업 확대
- 농어촌지역과 인근 중소도시의 동반 발전을 추구하는 도·농 통합적 접근을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재정비
 - 거점지역과 배후마을 및 인근 중소도시 간 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제공 방식 다양화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추진(144개 추진, 2012년 예산지원)
-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지구 전수조사 추진
 - 서류심사 : 173개소, 현지실사 64개소(37% 수준)
 -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등에 대한 실태 조사('12.11.27-12.14)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인근도시와 농어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공간으로 읍면소재지 역할강화를 위하여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을 적정수준으로 확충함으로써 서비스 기능 향상을 도모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기간 : 4년
 - 지원규모 : 70~100억원 범위에서 사업성에 따라 차등지원
- 읍면소재지종합정비 217개 지구 추진(계속시행 137개, 신규착수 80개)
- '1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실적 평가(1월)
- 신규사업 추진지구 사업성 검토(4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일반농산어촌 117개 시군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및 형태 : 918,246백만원, 지자체자본보조
- 지원내용 :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중심가로 경관개선, 문화복지 등 서비스 기능 확충 시설 등 거점지역 육성에 관한 사업
-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	930,447			930,447	398,763		1,329,210
2013		918,246			918,246	398,271		1,316,517
(증△감)	-	△12,201	-	-	△12,201	△492	-	△12,693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7개 시군		4,772,045			2,049,899		6,821,944
'12	120개 시군	-	930,447			398,763		1,329,210
'13	117개 시군	-	918,246	-	-	398,271	-	1,316,517
'14	117개 시군	-	945,793	-	-	405,340	-	1,351,133
'15	117개 시군	-	974,167	-	-	417,500	-	1,391,667
'16	117개 시군		1,003,392	-	-	430,025	-	1,433,417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권역주민 만족도 조사	82.2	78.8	79.8	80.3	81.1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3-3.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1) 개관

□ '13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농어촌지역에서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과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출지원
 - 1만동의 농어촌지역 불량주택에 대하여 5천억원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연리 3%) 조건으로 대출실시(신·개축 동당 5,000만원, 부분개량 동당 2,500만 이내)
- 석면비산 및 건강 위해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영세 농어가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지원
 - 노후 슬레이트 거주자를 위한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사업(환경부, 15천동)과 연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물량 중 농어촌지역의 건축연식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3천동의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 농어촌면지역, 도서지역의 생활용수 개발 지속 추진으로 상수도 보급률 확대(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 지방상수도 설치 비용 지원)
 - 농어촌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 183개소에 국고 2,539억원 지원
 - 도서지역 상수도 미보급지역 33개소에 국고 253억원 지원
- 저소득 농어촌 거주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실시(1,000가구, 가구당 3,800천원 지원)
- 농어촌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노폭 협소구간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실시(11.5km, 145억원(국비 72.5, 지방비 72.5))
- 벽지노선 운행손실,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용 지원
 -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업체에 대해 손실금의 일정액 지원
 -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용 지원 : 시·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공영버스)의 구입비용 일부 금액을 국비지원

- 낙도 도서주민에게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목포지역(향화~낙월 항로) 노후여객선 1척(신해5호) 신조 대체투입(16억원)
-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을 위해 국가재정운영계획('14~'17)에 '14년도부터 지원을 위한 추가 소요재원 반영('13.4월)
 - 현행 지원내용 : 연간 예산범위 한도내에서 내항여객선 기본운임의 20%을 정률 지원, 본인부담액이 5천원 초과시 5천원만 부담토록 지원
-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전국 정보화마을 361개소에 주민 대상 역량강화 교육, 전자상거래 및 인건비 지원
- 농어업인 및 경영체, 농어촌주민 등을 대상으로 농림수산정보망 운영 및 농어업인정보화교육 실시, 농어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81억원 지원
- 도·농간 정보격차해소 및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해 50세대 미만 소규모 농어촌 13,217개 마을을 대상으로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지원(127억원 지원)

□ 예산 내역

<2013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 회계	기금	소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500,000	500,000
농어촌주택 스트레이트 철거처리지원			19,200		19,200	19,200	9,600	48,000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79,226	50,750		329,976	122,418		452,394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1,900				1,900	1,900		3,800
농어촌 도로정비		7,252			7,252	7,252		14,504
교통서비스강화			7,851		7,851	79,844		87,695
국고여객선건조			800		800			800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9,015		9,015	9,015		18,030
정보화마을 조성			5,197		5,197	1,948	352	7,497
농어촌정보이용 활성화	5,940				5,940	1,440	720	8,100
농어촌광대역 통합망 구축				3,435	3,435	3,100	6,200	12,735
합계	7,840	286,478	92,813	3,435	390,566	246,117	516,872	1,153,555

<3-3-1-1. 농어촌주거환경 개선(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이재식서기관
전화번호	044-201-1554	이메일	sik815@mifaff.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주택개량 및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p37)

□ 농어촌 주택개량 확대

- 농어촌주택을 보다 쉽게 신·개축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을 위한 융자금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물량 확대
 - 지원물량(동) : ('09) 7천동 → ('14P) 10천동
 - 농어촌 특성과 전통을 살린 다양한 주거모델(환경친화형, 고령자 편의형, 에너지절약형 등) 개발·보급
- 노후주택 고쳐주기 캠페인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주택개량 등 생활여건 개선에 지자체·민간 참여 확대
 - * (재)다솜동지복지재단,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사회복지단체를 중심으로 매년 4천여 가구 개량 지원중
- 마을경관개선 등을 위해 농어촌 빈집 정비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
 - * 지자체 농어촌 빈집정비 현황('97~'09) : 91천동/452억원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주택개량사업 세대별 융자 한도액 및 지원물량 : 50백만원, 8,000동(계속)
- 농어촌 생활형주택 표준설계도 8종 개발·보급 완료('12.12)
- '12년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확대 추진('12.12, 완료)
 - 지원가구 : ('11) 309호 → ('12) 407
- 마을경관개선 등을 위해 농어촌 빈집 정비 추진('97년~, 계속)
 - 농산어촌개발사업(포괄보조)으로 빈집정비시 동당 지원규모 확대('12.12)
 - 슬레이트 주택 : ('12)300만원 이내 → ('13)350
 - 일반주택 : ('12)100만원 이내 → ('13)150
 - 빈집 정비 실적('12) : 6,412동(10,014백만원)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통보('13.1)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개발 : ('12)기본설계 → ('13)실시설계 및 승인·공고
- 농어촌 지역의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확대
 - 추진실적(가구) : ('09)113 → ('10)190 → ('11)309 → ('12)407 → ('13)410
- 농어촌 빈집정비 : ('12)6,412동(10,014백만원) → ('13)7,154(11,542)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과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 사업 규모(사업량) : 10,000동('76~'12년까지 468천동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5,000억원(농협자금 100%)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신·개축 동당 5,000만원, 부분개량 동당 2,500만 이내
 - 상환조건 및 대출금리 :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연리 3%
 -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내용)6항, 제67조(농어촌 주택개량자금의구성), 제108조(자금지원),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기초생활 여건개선)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80,000	320,000	400,000
2013						-	500,000	500,000
(증△감)						△80,000	180,000	100,000

* 기타금액은 정부에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농협에서 조달하는 자금임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500,000	

* 기타금액은 정부에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농협에서 조달하는 자금임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8,000					80,000	320,000	400,000
'13	10,000					-	500,000	500,000
'14	10,000					-	500,000	500,000
'15	10,000					-	500,000	500,000
'16	10,000					-	500,000	500,000

* 기타금액은 정부에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농협에서 조달하는 자금임

나. 슬레이트 주택 처리

○ 사용실태

- 농가 본채건물 중 슬레이트 지붕재 약 37.9% 점유('08년 환경부 표본조사)
- 농어촌 지역(86개군) 건축물(1,980천동) 중 슬레이트 지붕재 약 28.9%(574천동) 차지('10년 환경부 조사)
- 슬레이트 건축물(573,506동) 중 주택용 건물이 약 72.7%(415,376동) 차지

○ '13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사업안(환경부)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물량을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지원조건 : 동당 국비 96만원 정액지원(동 당 처리비 200만원 적용)
 - 신청대상 :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중 노후 슬레이트 거주자 우선

○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사업과의 연계·지원 방안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물량 중 30%를 슬레이트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특별물량 배정('13)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불량주택정비율(%)	79.7	80.9	82.1	83	84	불량주택 정비실적 (응지원 대상주택 개량 실적 누계치/전체 주택개 량 목표치×100)	· 지자체 사업추진 실적 · 농협 대출실적

<3-3-1-2.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환경부)>

담당부서	환경보건관리과	담당자	배철호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6813	이메일	bch5910@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주택개량 및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p37)

□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10)

- 농어촌 슬레이트주택 개량 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우선지원
 - * 표본조사 결과, 농가 건물의 약 38%가 슬레이트 지붕재 사용
- 농어촌 슬레이트 처리 지원방안 검토('10)
 - 농어촌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용(제거, 수립·운반, 매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 * 농어촌 슬레이트 현황 조사('09-'10) 및 '슬레이트 관리 및 처리 매뉴얼' 개발·보급('10)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피해구제법」('10), 「석면안전관리법」('11) 제정
- 대표적 석면건축자재인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10.12월) 수립
- '11년 시범사업을 거쳐 '12년까지 슬레이트 지붕철거 본격 지원 중
 - * ('11년) 2,500동 목표, 2,372동 철거, ('12년) 10,000동 목표, 8,290동 철거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슬레이트 처리사업 물량 확대('13년 15,000동 처리)
- 서민층의 사업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국고 40%, 가구당 96만원정액)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소유자
 - 사업 규모(사업량) : 15,000동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 144억원
- 지원조건 : 국고 40%(가구당 96만원 정액), 지방비 40%, 자부담 소요비용차액
- 지원내용 : 주택의 지붕재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처리 비용
- 법적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 및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억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환특세)	기금	소계			
2012			40		40	80	25	145
2013			192		192	192	96	480
(증△감)			152		152	112	71	335

* 12년 정산처리중으로 계획으로 작성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동)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환특세)	기금등			
합계	15,000			19,200		19,200	9,600	48,000
서울	345			331		331	168	828
부산	1,000			960		960	480	2,400
대구	150			144		144	72	360
인천	124			119		119	60	298
광주	59			57		57	28	142
대전	184			177		177	88	442
울산	20			19		19	10	48
경기	1,174			1,127		1,127	564	2,818
강원	1,643			1,577		1,577	789	3,943
충북	954			916		916	458	2,290
충남	1,288			1,236		1,236	619	3,091
전북	1,162			1,116		1,116	557	2,789
전남	2,557			2,455		2,455	1,227	6,137
경북	1,800			1,728		1,728	864	4,320
경남	1,891			1,815		1,815	808	4,438
제주	550			528		528	264	1,320
세종	99			95		95	48	238
추경				48		48	24	12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동)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환특세)	기금등			
합계								
'12	8,290/10,000	실적/계획		6,000		6,000	8,000	20,000
'13	15,000			14,400		14,400	7,200	36,000
'14	25,000			24,000		24,000	12,000	60,000
'15	30,000			28,000		28,000	16,000	72,000
'16	40,000			38,400		38,400	19,200	96,000

* '12년 예산실적은 정산처리중으로 계획으로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처리율(%)			7,000동 (8,290동 철거)	8,000동		처리물량/사업물량× 100 (%)	실적보고자료

<3-3-1-3. 농어촌생활용수개발(환경부)>

담당부서	수도정책과	담당자	고희석
전화번호	044-201-7122	이메일	hill7472@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주택개량 및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p38)

□ 상수도 보급률 증대 및 수질관리 강화

-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을 '14년까지 75%로 제고('10~'14간 11,361억원 투자)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자연마을 중 30호 이상 마을은 간이(마을)상수도를 설치하되, 지자체에서 관련 기준에 따라 수질 관리
 - 면단위 지역 생활용수의 안정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 농업·생활용수가 부족한 지역은 암반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정수시설, 송·배수관, 물탱크 등) 설치 지원
 - '09~'12년 간 1,218개소 개발('94~'08년까지 5,842개소 개발)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도서지역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 향상(계속)
 - '12년 예산 3,446억원 지원, 보급률 향상 기대(67%/'12년말)
 - 농어촌(179개) 2,594억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17개) 353억원, 소규모수도 시설개량(121개) 499억원 지원
 - ※ 총 6,910억원 지원('11년 3,464억원, '12년 3,446억원)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도서지역 상수도 보급률 향상(계속)
 - '13년 예산 3,295억원 지원, 보급률 향상 기대(67.6% 계획/'13년말)
 - 농어촌(183개) 2,539억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33개) 253억원, 소규모수도 시설개량(183개) 503억원 지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전국 농어촌 면단위 이하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
- 사업 규모(사업량) : 농어촌 지방상수도 553개소(농어촌·도서지역 상수도 확충
수정 계획, '10, 환경부)
- 지원금액 및 형태 : 총사업비 28,443억원(12년까지 19,012억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80%('09년까지 80%, 이후 70%)
- 지원내용 :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 지방상수도 설치 비용
- 법적근거 : 「수도법」 제2조(책무), 제56조(국고보조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지역개발계정)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59,405			259,405	83,032		342,437
2013		253,945			253,945	89,833		343,778
(증△감)		△5,460			△5,460	6,801		1,341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83		253,945			89,833		343,778
대구	1		602			151		753
세종	4		2,261			879		3,140
경기	16		10,970			4,107		15,077
강원	11		39,977			10,940		50,917
충북	14		14,970			5,145		20,115
충남	22		33,886			12,686		46,572
전북	17		20,488			7,944		28,432
전남	37		50,957			17,590		68,547
경북	40		45,744			16,921		62,665
경남	20		30,373			11,877		42,250
제주	1		3,717			1,593		5,31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22,310			562,419		1,984,729
'12	179개소		259,405			83,032		342,437
'13	183개소		253,945			89,833		343,778
'14	242개소		261,894			112,240		374,134
'15	140개소		323,557			138,667		462,224
'16	140개소		323,509			138,647		462,156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나.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전국 도서지역 상수도 미보급 지역
- 사업 규모(사업량) :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264개소(농어촌·도서지역 상수도 확충 수정 계획, '10, 환경부)
- 지원금액 및 형태 : 총사업비 8,269억원(12년까지 6,221억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 지원내용 :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 지방상수도 설치 비용
- 사업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
- 법적근거 : 「수도법」 제2조(책무), 제56조(국고보조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지역개발계정)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35,348			35,348	15,134		50,482
2013		25,281			25,281	10,835		36,116
(증△감)		△10,067			△10,067	△4,299		△14,366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3		25,281			10,835		36,116
인천	1개소		2,551			1,093		3,644
충남	1개소		105			45		150
전북	1개소		3,540			1,517		5,057
전남	23개소		13,285			5,695		18,980
경북	1개소		792			339		1,131
경남	6개소		5,008			2,146		7,154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8,078			46,305		154,383
'12	37개소		35,348			15,134		50,482
'13	33개소		25,281			10,835		36,116
'14	35개소		27,726			11,883		39,609
'15	33개소		9,017			3,864		12,881
'16	33개소		10,706			4,589		15,295

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전국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
- 사업 규모(사업량) : 소규모수도시설 7,764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총사업비 9,399억원(12년까지 4,098억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 지원내용 : 암반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정수시설, 송·배수관, 물탱크 등) 설치 비용
- 사업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
- 법적근거 : 「수도법」 제2조(책무), 제56조(국고보조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지역개발계정)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49,910		49,910	21,356		71,266
2013			50,750		50,750	21,750		72,500
(증△감)			840		840	394		1,234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2			50,750		21,750		72,500
광주	1			42		18		60
세종	1			556		238		794
대전	1			12		5		17
울산	1			490		210		700
인천	1			980		420		1,400
경기	98			1,326		568		1,894
강원	12			5,532		2,373		7,905
경남	17			7,396		3,169		10,565
경북	22			4,928		2,110		7,038
전남	87			10,923		4,679		15,602
전북	8			4,847		2,078		6,925
충남	14			9,918		4,251		14,169
충북	10			2,800		1,202		4,002
제주	9			1,000		429		1,429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900		347,300			148,809		496,109
'12	688		49,910			21,356		71,266
'13	542		50,750			21,750		72,500
'14	773		68,700			29,443		98,143
'15	915		81,420			34,894		116,314
'16	982		96,520			41,366		137,886

5. 성과목표

- '제2차 기본계획 주요내용'에 '14년 농어촌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이 75%이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 집행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함에 따라 '14년도 보급률을 70%로 하향 조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55.9	58.8	67.0	67.6	70.0	(농어촌·도서지역 급수 인구/농어촌 도서지역 인구)*100	지방상수도확충 사업 추진성과 보고자료 활용

<3-3-14.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	문인근
전화번호	2023-8649	이메일	muhningun@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주택개량 및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p37)

□ 농어촌 주택개량 확대

- 농어촌주택을 보다 쉽게 신·개축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을 위한 용자금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물량 확대
 - 지원물량(동) : ('09) 7천동 → ('14P) 10천동
 - 농어촌 특성과 전통을 살린 다양한 주거모델(환경친화형, 고령자 편의형, 에너지절약형 등) 개발·보급
- 노후주택 고쳐주기 캠페인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주택개량 등 생활여건 개선에 지자체·민간 참여 확대
 - * (재)다솜동지복지재단,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사회복지단체를 중심으로 매년 4천여 가구 개량 지원중
- 마을경관개선 등을 위해 농어촌 빈집 정비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
 - * 지자체 농어촌 빈집정비 현황('97~'09) : 91천동/452억원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연도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추진 실적 ('06~'12년)

연도	추진계획 (가구수)	추진실적 (가구수)	세부지원내역 (지원 가구수, 복합 지원 포함)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설 치 등	싱크대 설치	기타
합 계	7,000	7,551	3,423	702	788	831	3,362
2006	1,000	1,091	544	76	102	95	466
2007	1,000	1,037	477	72	80	77	425
2008	1,000	1,075	491	111	193	160	590
2009	1,000	1,088	552	94	143	111	435
2010	1,000	1,091	487	128	151	137	444
2011	1,000	1,115	449	114	61	128	513
2012	1,000	1,054	423	107	58	123	489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저소득장애인주택개조사업 지원 : 1,000가구 x 3,800천원 x 50%(보조율) = 1,900백만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저소득 농어촌 거주 재가 장애인
- 사업 규모(사업량) : 매년 1,000가구
- 지원금액 및 형태 : 가구당 3,800천원/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의 보급)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900				1,900	1,900		3,800
2013	1,900				1,900	1,900		3,800
(증△감)	0				0			0

- * 농특세 전입금 사업은 농특세로 기재하고, 현 회계는 별도 기재
- * 마사회 적립금 등 기금 성격이 높은 재원은 기금으로 기재하고, 자원명을 별도기재
- * 2012년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계획금액을 기재하고 계획임을 표시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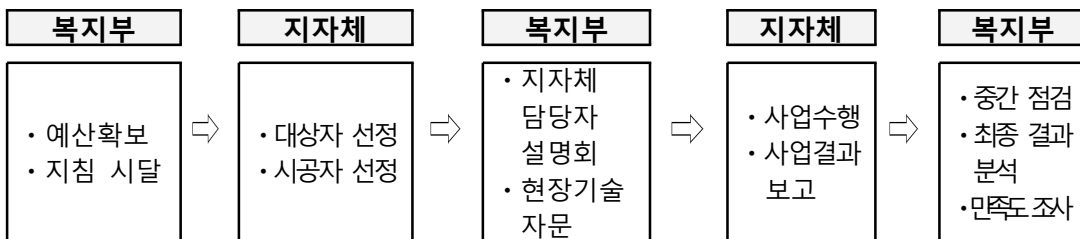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00	1,900				1,900		3,800
대구	5	9.5				9.5		19
인천	8	15.2				15.2		30.4
광주	5	9.5				9.5		19
대전	2	3.8				3.8		7.6
울산	5	9.5				9.5		19
세종	10	19				19		38
경기	60	114				114		228
강원	85	161.5				161.5		323
충북	120	228				228		456
충남	90	171				171		342
전북	145	275.5				275.5		551
전남	170	323				323		646
경북	140	266				266		532
경남	135	256.5				256.5		513
제주	20	38				38		76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000가구	9,849				9,849		19,698
'12	1,054가구 1,000가구	1,900/1,900				1,900/1,900		3,800
'13	1,000가구	1,900				1,900		3,800
'14	1,000가구	1,957				1,957		3,914
'15	1,000가구	2,016				2,016		4,032
'16	1,000가구	2,076				2,076		4,152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 사업 추진체계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장애인 주택개조 수급자 만족도(점)	-	-	90	90	90	10점 척도 조사 후 100점 환산	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저소득농어촌 장애인가구 커버리지(%)	-	3.2	3.5	3.8	4.1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지원 가구(누적)/농어촌 저소득 장애인 가구수 * 100%	○ 장애인 주택 개 조사 사업 지원 가구수 : 지자체 보고 실적 ○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가구수 : 기초 및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중 농어촌 가구 수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 3-3-2-1. 농어촌 도로정비(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지역발전과	담당자	임원빈
전화번호	2100-3856	이메일	sin8875@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농어촌 도로·교통망 정비

- 농어촌 주민 교통편의 및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도로정비 지속 추진 및 교통시스템 개선
 - 농어촌 지역의 교통편의와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농어촌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노폭 협소구간 등 위험구간의 개선을 통한 도로 기능향상과 교통사고 예방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노폭 협소구간 등 위험구간의 개선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04~'11) : 72.3km, 743억원(균특 371.5, 지방비 371.5)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도로의 급커브, 급경사, 노폭 협소구간 등 위험구간의 개선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 20개소 11.5km, 145억원(균특 72.5, 지방비 72.5)

4. 관련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중 도로의 급커브, 급경사, 노폭 협소 등 위험구간의 개선
 - 사업규모 : 217.2km, 2,418억원(국비 1,209 지방비 1,209)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지원조건 : 지자체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보통교부서)	기금			
2012		6,053			6,053		12,106
2013		7,252			7,252		14,504
(증△감)		증1,199			증1,199	△1,199	증2,398

- '13 시도별 계획(안)

	사업규모 (km)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5		7,252			7,252		14,504
강원	1.5		1,175			1,175		2,349
충남	1.3		664			664		1,327
전북	1.1		897			897		1,794
전남	5.1		2,629			2,629		5,258
경북	1.3		867			867		1,734
경남	1.2		1,021			1,021		2,042

<3-3-2-2. 교통서비스강화(국토해양부)>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건호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3826	이메일	enp301@mltm.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농어촌 도로·교통망 정비 등 교통서비스 개선 (기본계획 p38)

- 농어촌 주민 교통편의 및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도로정비 지속 추진 및 교통시스템 개선
 - 지자체의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비용 지원, 순환버스 운행 지원 또는 수요 대응형 교통수단 제공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단 강구
 - * 사례) 전남 신안군은 13개 버스노선 공영버스화로 주민만족도 제고
 - 도보왕래가 많은 농어촌 도로 및 지방도 등을 정비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유도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벽지노선 운행손실 및 공영버스 구입비용 지원
 - 2012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정한 한도액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배분기준에 각 시·도별 예산 배분 완료
 - 각 시·도별로 사업시행 완료
 - 시·도별 사업시행 내역은 현재 시·군에서 정산을 절차를 밟고 있는 중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벽지노선 운행손실, 공영버스 운행지원 등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방안 강구
- 추진절차 및 일정
 - 분권교부세에 대한 시·도 수요조사 및 소요액 통보(국토부→행안부) : 완료
 - 버스재정지원(행안부→시·도) ⇒ 사업시행(시·도)

4. 관련 사업 내용

가. 교통서비스강화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노선(시내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사업 규모(사업량)
 -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
 - 개선명령으로 운행하는 벽지노선 25,367km에 대한 운행손실금 보전
 - 농어촌 벽·오지노선에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시·군의 공영버스 1,566대 중 매년 평균 169대에 대한 일부 구입비용 지원(1대/1,800만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매년 약 848억원, 매칭펀드
- 지원조건 : 벽·오지의 기피운행 노선 버스운행(최소한의 교통이용권 확보)
- 지원내용 : 이용객이 줄어 버스운행을 기피하는 농어촌 지역에 최소한의 교통 서비스 확보를 위해 운행손실 및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및 제50조,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훈령)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 (분권교부세)	소계			
2012			7,236	7,236	73,165		80,401
2013			7,851	7,851	79,844		87,695
(증△감)			615	615	6,679		7,294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851		79,844		87,695
부산	벽지노선			3		177		180
광주	벽지노선 공영버스			14		334		348
인천	"			78		2,320		2,398
울산	"			37		249		286
경기	"			265		8,262		8,527
강원	"			414		3,093		3,507
충북	"			842		11,954		12,796
충남	"			545		2,335		2,880
전북	"			1,366		18,740		20,106
전남	"			1,356		12,315		13,671
경북	"			788		7,368		8,156
경남	"			854		7,443		8,297
제주	"			350		2,895		3,245
세종	"			55		336		391

○ 중기재정계획

(단위: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 (분권교부세)			
합계							
'12	실적/계획			6,967/7,287	77,821/70,219		84,788/77,506
'13	계획			7,148	79,844		86,992
'14	계획			7,334	81,919		89,253
'15	계획			7,524	84,048		91,572
'16	계획			7,719	86,233		93,952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예산확보율	6,329 /6,000	6,809 /6,000	6,967 /7,287	7,148 /	7334 /	예산확보실적/목표치	- 분권교부세 배정내역 - 시·도 예산집행내역

<3-3-2-3. 국고여객선건조(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당자	김기훈 사무관
전화번호	044-200-5734	이메일	kingihun@mltm.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농어촌 도로·교통망 정비 등 교통서비스 개선 (기본계획 p38)

□ 낙도 도서주민에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제공 및 교통비 부담 완화

- 전국 26개 낙도보조항로*에 운항하는 국고여객선 26척에 대해 노후선 대체 건조 또는 차도선으로 개조 지원

* 보조항로 : 국가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해운법 제15조)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인천지역(인천~풍·육도) 노후여객선 대체 건조 완료('12.10)
 - 서해누리호, 차도선, 106톤, 정원 97명
- 목포지역(북강~북강 항로) 노후여객선 대체 건조 완료('12.11)
 - 섬사랑11호, 차도선, 109톤, 정원 60명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목포지역(향화~낙월 항로) 노후여객선 1척(신해5호) 신조 대체투입

4. 관련 사업 내용

가. 국고여객선 건조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낙도보조항로 운영선박 중 노후선 등 대체필요 선박
 - 사업 규모(사업량) : 매년 여객선 1척 신조
 - 지원금액 및 형태 : 1,600백만원, 국고 100%
 - 지원조건 : 해당 없음

- 지원내용 : 해당 없음
- 법적근거 : 해운법 제15조의2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600		1,600			1,600
2013			800		800			800
(증△감)			△800		△800			△80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 없음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척)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			9,300				9,300
'12	1/1			1,600/1,600				1,600/1,600
'13	1			800				800
'14	1			2,500				2,500
'15	1			2,200				2,200
'16	1			2,200				2,2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국고여객선 건조공사 공정률	100	56	100	100	100	집행금액/계약금액 ×100	디지털예산회 계시스템

<3-3-2-4. 내항여객선운임보조(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당자	권기정(사무관)
전화번호	044-200-5734	이메일	kgj2232@mltm.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농어촌 도로·교통망 정비 등 교통서비스 개선 (기본계획 p38)

□ 낙도 도서주민에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제공 및 교통비 부담 완화

-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여객선 운임 지원
 - 도서민에 한해 여객선 운임의 20%를 지원하되, 본인부담액이 5천원 이하가 되도록 지원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12년도 도서민 운임지원 지자체 보조금 교부결정('12.3월)
 - 인천시, 경기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 '12년도 도서민 운임지원 국비 부족분 예산전용 지원('12.12월)
 - 백령도 대형여객선 투입 등으로 국비 부족분이 과다 발생한 인천광역시에 2.9억원 추가 교부
- '13년도 도서민 운임지원 예산 증액 확보
 - 인천광역시 부족분 해소를 위해 국회 예결위 심의시 6억원 추가
 - * (당초 정부안) 84억원 → (최종안) 90억원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을 위해 국가재정운영계획('14~'17)에 '14년도부터 지원을 위한 추가 소요재원 반영('13.4월)
- 도서민 운임지원 기준의 적정성 도모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편 추진
 - 연구용역을 통한 제도개편방안 마련('13.1~5월) 후 「도서관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개정('13.6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내항여객선운임보조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도서(연륙도서 및 제주도 본도 제외)에 거주하는 도서민
- 사업 규모(사업량) : 180억원, 전국 20개소 지원(개소당 9억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자체보조(일반, 광특)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연간 예산범위 한도내에서 내항여객선 기본운임의 20%를 정률 지원하되, 본인부담액이 5천원 초과시 5천원만 부담토록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	-	8,702	-	8,702	8,702	-	17,404
2013	-	-	9,015	-	9,015	9,015	-	18,030
(증△감)	-	-	313	-	313	313	-	626

* 2012년 실적은 전용 지원예산(287백만원) 포함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개 시군	-	-	9,015	-	9,015	-	18,030
인천	2	-	-	2,304	-	2,304	-	4,608
경기	1	-	-	10	-	10	-	20
충남	4	-	-	160	-	160	-	320
전북	2	-	-	230	-	230	-	460
전남	7	-	-	3,820	-	3,820	-	7,640
경북	1	-	-	1,916	-	1,916	-	3,832
경남	1	-	-	260	-	260	-	520
제주	2	-	-	315	-	315	-	63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개 시군	-	1,575/1,575	50,607/50,320	-	52,182/51,895	-	104,364/103,790
'12	20/20	-	315/315	8,387/8,100	-	8,702/8,415	-	17,404/16,830
'13	20	-	315	8,700	-	9,015	-	18,030
'14	20	-	315	10,600	-	10,915	-	21,830
'15	20	-	315	11,180	-	11,495	-	22,990
'16	20	-	315	11,740	-	12,055	-	24,110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보조금 교부율(%)	100	100	100	100	100	(지자체 교부액 / 목표 보조금 예산액)×100	내부자료

<3-3-3-1. 정보화마을 조성(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정보문화과	담당자	유수열
전화번호	02-2100-2937	이메일	oksy@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2) 농어촌 지역 생산품에 대한 수요확대 지원(기본계획 p43)</p> <p>□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지역생산품에 대한 수요확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정보화마을('08년까지 358개소) 등의 상품 품질관리, 지도자 및 운영역량 강화,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 <p>* 정보화마을 운영비 지원('10안) : 110억원</p>
--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주민 역량강화 교육(정보화, 운영) 및 e-Commerce를 통한 직거래 추진으로 마을 공동수익 신장(계속)
- ※ 매출 : ('06년)29억→('12년)412억
- ※ 운영전문가 양성교육 : ('06년)25천명→('12년)49천명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주민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연중)
- 트위터(@okinvil) 등 뉴미디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 추진(연중)
- 주민 정보화교육, 전자상거래 지원 등을 위해 인건비 지원(마을당 1명)

4. 관련 사업 내용

가.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전국 정보화마을 361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52억 / 직접수행(40억), 지자체보조(12억)
 - 지원조건 : 운영평가 결과 마을별 수준구분, 차등관리
 - ※ 인건비지원의 경우 마을자부담 10%(전국 361개소 중 231개소 지원)
 - 지원내용 : 주민 대상 역량강화교육, 홍보, 전자상거래 및 인건비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5,197		5,197	1,948	352	7,497
2013			5,197		5,197	1,948	352	7,497
(증△감)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1			1,219		1,948	352	3,519
부산	2			11		17	3	31
대구	1			5		8	2	15
광주	4			21		34	6	61
울산	1			5		8	2	15
세종	1			5		8	2	15
경기	32			169		270	49	488
강원	37			195		312	56	563
충북	10			53		84	15	152
충남	25			132		211	38	381
전북	21			111		177	32	320
전남	39			206		329	59	594
경북	22			116		186	33	335
경남	23			121		194	35	350
제주	13			69		110	20	199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61/361			41,648		9,740	1,760	53,148
'12	361/361			5,197		1,948	352	7,497
'13	361/361			5,197		1,948	352	7,497
'14	361/361			10,060		1,948	352	12,360
'15	361/361			12,997		1,948	352	15,297
'16	361/361			8,197		1,948	352	10,497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단위 : 건)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4		
일반국민·주민참여도	7,981	8,500	9,400	10,000	10,500	마을홈페이지 총 게시글수/마을수	정보화마을 운영관리시스템

<3-3-3. 농어업정보이용 활성화(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	정보통계담당관실	담당자	도재규(주무관)
전화번호	044-201-1409	이메일	jkdo@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농어촌 특성에 맞는 정보화기반 구축 및 교육 추진 (기본계획 p39)

□ 농어촌 정보화교육 등을 통한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 '14년까지 농어업인 20만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및 영농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이용 등 생활체감형 교육 강화
 - 컴퓨터 활용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농어업인에게는 소득창출로 연결가능한 프로그램 제공
 - 농어업정보서비스 및 농어업인정보화교육 투자('10안) : 72억원

□ 농어업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개발

- u-IT 기술 등을 활용한 생산·유통·경영정보시스템 개발·보급
 - u-IT 기술 활용 농업생산기반 지능화 투자('10안) : 35억원
 - * (전남 신안군) RFID(전자태그) 기술을 활용한 천일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업정보서비스(Okdab), 농식품 지식정보서비스(OkdabCEO) 운영
- TED형 농식품 지식공유 프로그램 "위러브팜" 추진(총 8편)
- '12년도 농식품 IT융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사업 추진(5개 과제)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정보서비스(Okdab), 농식품 지식정보서비스(OkdabCEO) 지속 운영
- 농식품 인터넷방송 "스마트팜 TV" 운영 및 모바일 통합 서비스
- '13년도 농식품 IT융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사업 추진(6개 과제)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업정보이용 활성화

○ 사업 내용

- 사업지원대상 : 농어업인 및 경영체, 농어촌주민, 도시소비자
- 사업규모(사업량) : 농어업정보서비스 및 경영체정보시스템 보급
- 지원금액 및 형태 : 5,940백만원(민간보조,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국고 40%(농식품 IT융합 모델화사업, 지자체보조)
- 지원내용 :
 - 농림수산물정보망을 통한 농어업관련 정보콘텐츠 제공으로 도농간 교류촉진 및 정보격차 감소에 기여
 - RFID, USN등 IT융합 기술을 농어업에 접목시켜 생산비 절감 및 경영효율화 지원
 - 농어업경영체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경영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등
- 법적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2조(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제11조의2(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7,994	-	-	-	7,994	1,000	500	9,494
2013	5,940	-	-	-	5,940	1,440	720	8,100
(증△감)	△2,054	-	-	-	△2,054	440	220	1,394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공모사업으로 진행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8,534	-	-	-	140,200	93,060	491,834
'12	정보서비스	7,994/7,994	-	-	-	1,000/1,000	500/500	9,494/9,494
'13	정보서비스	5,940	-	-	-	1,440	720	8,140
'14	정보서비스	64,900	-	-	-	36,120	24,080	125,100
'15	정보서비스	86,600	-	-	-	48,960	32,640	168,200
'16	정보서비스	93,100	-	-	-	52,680	35,120	180,900

* '14~'16년은 중기재정계획 부내 요구 규모임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이용자만족도	80.4	82.8	80.2	84.4	85.0	7등급 최도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100점만점으로 환산	설문조사
업무처리절감율	32.5	36.0	40.4	42.8	46.2	업무처리시간(구축전 구축후)/업무처리시간 (구축전)*100	설문조사

<3-3-3-4. 농어촌광대역 통합망 구축(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네트워크기획과	담당자	이주식(사무관)
전화번호	02-750-2718	이메일	jooshik.lee@kcc.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농어촌 특성에 맞는 정보화기반 구축 및 교육 추진 (p39)

- 농어촌 어디에서나 IPTV 시청이 가능하도록 광대역통합망 구축
 - '10년 실태조사를 거쳐 '14년까지 80% 구축('15년까지 구축 완료)

2. 2012년까지 추진실적

- 2012년까지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BcN) 확충 실적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농어촌 인터넷 가입자	1,812,511	2,033,567	2,254,736	2,286,438
농어촌 BcN 가입자	1,147,680	1,547,299	1,930,246	2,025,067
농어촌 BcN 가입률(%)	63.3	76.1	85.6	88.6

- 50세대 미만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추진('12년)
 - 전국 8개 광역지자체 농어촌지역 망 구축 대상 행정리 선정(4월)
 - 농어촌지역 971개 행정리(마을)에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완료(9월)
 - 정부, 지자체 합동 구축마을 이행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10월)
 - 전국 망구축 결과보고회 개최 및 사업평가(12월)
-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범서비스 제공('12년)
 - 농어촌지역 시범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발굴(5월)
 - 완주군, 포항시 지역 관광명소(고산자연휴양림, 구룡포, 보경사)에 WiFi 무선 서비스,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서비스, 지역정보제공 서비스 등 4종 제공(12월)

3. 2013년도 추진계획

- 50세대 미만 농어촌지역에 지속적으로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확대 추진
 -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지역 구축 예산 배분 및 구축물량 선정
 - 정부, 지자체, 사업자간 매칭펀드를 통해 농어촌 마을에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확대
- 농어촌지역 광대역망 시범서비스 제공
 - 농어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특화서비스 발굴 및 시범제공

4. 관련 사업내용

가.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활성화

- 사업 내용
 - 사업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 50세대 미만 규모의 행정리(마을)
 - 사업규모(사업량) : 전국 13,217개 마을 지원(마을당 1,650만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 억원(12년까지 기 투자액 : 106억원), 출연(일반회계)
 - 지원조건 : 100%(망구축은 국비 25%, 지방비 25%, 민간 50%)
 - 지원내용 : 도·농간 네트워크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50세대 미만 농어촌 지역에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및 농어촌 특화서비스 제공
 - 법적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51조(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13조(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무선망의 고도화)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3,435		3,435	3,000	6,000	12,435
2013				3,435	3,435	3,100	6,200	12,735
(증감)			-		-	100	200	30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52개 마을				3,100	3,100	6,200	12,400
경기	17				70	70	140	280
강원	38				155	155	310	620
충북	84				346	346	692	1,384
충남	130				538	538	1,076	2,152
전북	128				527	527	1,054	2,108
전남	128				527	527	1,054	2,108
경북	137				566	566	1,132	2,264
경남	83				341	341	682	1,364
세종	7				30	30	60	120

※ '13년 국비 3,435백만원 중 망구축비(3,100백만원)는 정부, 지자체, 사업자간 1:1:2의 매칭펀드를 통해 수행됨에 따라, 시도별 배분액(안)을 표시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632							
'12	971/728			3,435/3,435		3,000/3,000	6,000/6,000	12,435/12,435
'13	752				3,435	3,100	6,200	12,735
'14	2,303				10,000	9,500	19,000	38,500
'15	2,303				10,000	9,500	19,000	38,500
'16	2,303				10,000	9,500	19,000	38,5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 유선BcN 가입율(%)	76	86	89	92	95	(농어촌 지역 BcN 유선 가입자수 / 농어촌 지역 초고속인터넷가입자 수)×100	통신사업자연합 회 제출자료

4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4.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4-1. 농어촌산업 고도화

(1) 개관

□ '13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지자체가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에 따라 지자체의 전략적·체계적 투자 촉진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12년도 추진사업 실적평가 및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생산·유통 기반 구축, 농어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 조성, 농어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등 추진
- 농어촌지역 생산품에 대한 수요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5회 농어촌산업박람회를 개최('13.8~9월)하여 계약체결 확대를 유도하고 유통관로 확보 추진
-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농어촌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보육 지원센터 운영지원
 - 지원내용 : 시제품생산·품질개선·기술교육 등 기술지원, 전문 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 농어촌산업의 규모화·광역화와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계·협력 강화
 - 광역 연계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시범 추진(한방약초 신시장 창출을 위한 광역적 연계협력 기반조성 사업, 천일염 생산자·소비자 직거래체계 운영 지원 사업)
- 지역특화 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구축, 가공·유통시설, 공동브랜드 개발 등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으로 지역 주도의 농어촌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개선방안 수립 및 '14년 예비사업단(8개소) 컨설팅, '15년 예비사업단(5개소) 선정('17년까지 100개소 선정·육성)

□ 예산 내역

< 2013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복합산업화지원 (포괄보조) 관리		271,823			271,823	271,823		543,646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			440		440			440
농어촌지역 창업 기업성장 지원	2,251				2,251			2,251
소규모농업인 창업 소득화 지원		3,974	2,000		5,524	4,589		10,563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1,100			1,100	1,100		2,200
농산물종합가공기 술 지원			2,000		2,000	2,000		4,000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450				450		900
지역농업특성화 농식품 가공분야		2,424			2,424	1,039		3,463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			450		450			450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			14,840			14,680		29,520
합계	2,251	279,771	17,730		280,488	291,092		586,870

< 4-1-1-1. 복합산업화지원(포괄보조) 관리(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어촌산업팀	담당자	박정미(주무관)
전화번호	044-201-1587	이메일	ogyogh22@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지역 주도의 농어촌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기본계획 p.42)

□ 향토자원 산업화를 위한 지자체의 전략적·체계적 투자 촉진

- 농어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통합(13 → 1개 포괄보조금)하고, 지자체가 계획수립·시행토록 자율성 확대
 - 지역 산업화 역량강화, 상품 생산·유통기반 구축,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가공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관리 등 추진
 -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포괄보조, 지방비포함) : ('09) 3,916억원 → ('10) 4,738
 - * (사례) 전북 부안 : 병·오디의 산업화를 통해 병재배 농가 확대('05년 45농가 → '08년 697농가) 및 농가소득 증대로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
- 지역별 핵심자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투자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단위 R&D 투자 확대 및 지원체계 구축

- 새로운 제품 발굴·자원화, 제품·공정 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등 지역 단위 R&D 투자 확대 유도
 - * 향토산업육성지원 등 지역 R&D 분야 지원('10안) : 313억원
- 농어촌산업에 대한 종합적·다층적인 지역 R&D 지원체계 구축
 - 중앙(농식품부, 농촌진흥청) - 도(농업기술원, 지역협력단) - 시·군(지역협력단,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단계로 기능분담 체계 정비
 - 지역 특성화 연구과제를 신설하고 지역개발 사업과 연구사업간 연계를 강화(특성화 연구기관의 참여 권장)

□ 농촌 입지 제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내실화 추진(p44)

- 농공단지 2차 계획기간까지 약 400개소('08년까지 330개소) 조성을 완료하고, 노후단지 리모델링 등 인프라 보강 및 소프트웨어 지원에 역점
 - * 지역 식품산업, 향토자원 활용형 기업을 위한 특화산업단지 활성화 유도
 - ※ 4-1-3-1 : 농어촌지역 창업, 기업성장 지원(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관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가. 향토자원 산업화를 위한 지자체의 전략적·체계적 투자 촉진

- 향토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부처·기관관 연계·협력 강화
 - 농식품부-지경부간 MOU 체결 및 공동기획단 구성('11.2.21), 협력업무 시행지침 수립('11.3.2), 농식품부·지경부 공동 『농어촌 산업정책 추진지원단』 회의를 통해 12개 시군별 연계협력 시행계획 검토·승인('11.7.18), 시군연계협력사업 모니터링('11.10월)
- 지역별 산업화자원 일제조사 완료('12.1~2월)
- 농어촌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 활성화 방안관련 연구용역 추진('11.7~12월) 완료
 - 농어촌산업화지원사업(향토, 복합) 추진체계 개편방안 마련('12.1월) 완료
 - 향토산업육성사업 제2기 추진방안 마련('12.9월) 완료
- 지원대상사업 사전사업성 검토 및 예산편성
 - '11년도 지원대상사업 사전사업성 검토 및 예산편성 완료('10.4~12월)
 - '12년도 지원대상사업 사전사업성 검토 및 예산편성 완료('11.4~12월)
 - '13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및 예산편성 완료('12.4월~12월)
- 농어촌산업육성사업 업무편람 제작 보급 완료('12.1~2월)
 - '13년도 농어촌산업화사업(향토, 복합) 업무편람 제작보급('13.1월)
- '11년도 추진사업 실적평가(지역발전위 주관, 부처 자체평가 '12.1~3월) 완료
- 향토산업육성사업 11년도 추진실적 평가('12.1~3월) 완료

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단위 R&D 투자 확대 및 지원체계 구축

- '10년 도입 시행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포괄보조) 추진체계의 안정적 정착
 - 11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및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 추진('11.5~12월) 완료
 -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등 추진 완료('12.5~12월)
 - 총리실 주관으로 우리부 등 4개부처 공동 농공단지 통합지침 개정('11.6.29)
- 시·군 주도의 농어촌 산업 활성화 추진체계 확립을 위한 시·군단위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 보완('11.11~12월) 완료
 - 지역별 특화자원의 1·2·3차 산업 융복합화를 위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계획」 ('10년+'11~'14년) 수립(161개 시·군)
-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지원대상사업 컨설팅
 - 향토산업육성사업 12년도 지원대상사업 컨설팅 완료('11.4~12월)
 - 향토산업육성사업 13년도 지원대상사업 컨설팅 완료('12.4~12월)

다. 농촌 입지 제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내실화

-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농공단지 조성 추진
 - 지역특화단지('12년 시범 4개소) 등 농공단지 신규조성 추진('11.4월) 완료
 -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지원비율 35%까지 확대 추진 완료
 - 농공단지 통합지침 개정 및 지자체 농공단지 관리매뉴얼 마련('11.6.29) 완료
 - 농어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화농공단지 8개소 조성지원 ('12년)
 - * '14년 목표 400개소중 '12년 상반기까지 373개소 조성완료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및 활성화 방안 마련('12.3~12월)

3. 2013년도 추진 계획

- 향토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컨설팅 및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13년도 지원대상 사업 컨설팅(4~12월) 추진
- 향토산업육성사업 완료지구 모니터링(4~12월)
- 농어촌산업화사업 사업성 검토 및 예산편성(4~12월)
- 농어촌산업화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 추진('13.3~12월)
- 농산업전문가 인력풀 보완 정비('13.1~2월) 및 지역별 산업화자원 보완조사('13.1~2월)
- 농어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화농공단지 9개소 조성지원 ('13년)

4. 관련 사업 내용

가. 복합산업화지원(포괄보조) 관리(사업명 기재)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시·도 및 시·군·구
 - 사업 규모(사업량) :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시도의 예산한도 내에서 사업배정
 - 지원금액 및 형태 : 2,031억원, 지자체 보조(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지원조건 : 지자체 예산한도내에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는 예산신청을 하여 사업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
 - 지원내용 : 농어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R&D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농어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농어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농공단지 조성지원 등
- ※ 농공단지 조성지원은 '10년부터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내역사업에 편입됨

-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 제52조,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35조,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73조, 제74조, 제77조, 제7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 어촌어항법 제49조의2,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8조, 제9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64,500			164,500	164,500		329,000
2013		228,023			228,023	228,023		456,046
(증△감)		63,523			63,523	63,523		127,046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8,023			228,023		456,046
부산			500			500		1,000
대구			950			950		1,900
인천			852			852		1,704
광주			1,838			1,838		3,676
울산			1,598			1,598		3,196
세종			700			700		1,400
경기			3,518			3,518		7,036
강원			8,517			8,517		17,034
충북			8,173			8,173		16,346
충남			34,972			34,972		69,944
전북			64,993			64,993		129,986
전남			40,935			40,935		81,870
경북			25,377			25,377		50,754
경남			26,500			26,500		53,000
제주			8,600			8,600		17,2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실적/계획		203,095			203,095		406,190
'13			228,023			228,023		456,046
'14			239,424			239,424		478,848
'15			246,607			246,607		493,214
'16			254,006			254,006		508,012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나. 향토산업육성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시·군·구
- 사업 규모(사업량) : '13년 82개 사업 438억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사업당 총사업비 30억원,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지원내용 : 사업체계 구축 및 네크워킹, 산업화 및 마케팅 등 S/W + H/W 포괄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농어촌정비법 제72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40,300			40,300	40,300		80,600
2013		43,800			43,800	43,800		87,600
(증△감)		3,500			3,500	3,500		7,00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3,800			43,800		87,600
부산			700			700		1,400
세종			700			700		1,400
경기			2400			2400		4,800
강원			5900			5900		11,800
충북			1600			1600		3,200
충남			5500			5500		11,000
전북			5600			5600		11,200
전남			7500			7500		15,000
경북			4600			4600		9,200
경남			4600			4600		9,200
제주			2300			2300		4,600
유보			2400			2400		4,8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1,400			211,400		429,922
'12			40,900			40,900		81,840
'13			43,800			43,800		87,613
'14			42,700			42,700		85,414
'15			46,900			46,900		93,815
'16			37,100			37,100		81,240

5. 성과목표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실적)	'11 (실적)	'12 (실적)	'13 (목표)	'14 (목표)		
지원대상업체 매출액 증가율(%)	42	28.6	28.1	28.4	28.7	$\frac{\text{당해년도 매출액} - \text{전년도 매출액}}{\text{전년도 매출액}} \times 100$	행정조사
농공단지 고용인원 수	129,806	135,577	140,000	143,000	145,000	-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한국 산업단지공단)

○ 향토산업육성사업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실적)	'11 (실적)	'12 (목표)	'13 (목표)	'14 (목표)		
참여기업매출액 증 가율(사업단 평균 (%))	20.5	△10.6	△27.1*	13	14	$\frac{\text{((당해년도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text{전년도매출액}} \times 100$	행정조사

* 향토산업육성사업 참여기업매출액(사업단 평균)[12년도중 향토산업육성사업 참여
기업 매출액(사업당 평균) 4,019백만원 - 11년도중향토산업육성사업 참여기업 매출액
(사업당 평균) 5,512백만원] ÷ 5,512백만원 × 100 = △27.1%

< 4-1-1-2. 향토자원 발굴 및 D/B구축(농촌진흥청) >

담당부서	농촌환경자원과	담당자	정명철
전화번호	031-290-0285	이메일	jmc6807@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지역 주도의 농어촌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기본계획 p.42)

□ 향토자원 산업화를 위한 지자체의 전략적·체계적 투자 촉진

- 농어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통합(13 → 1개 포괄보조금)하고, 지자체가 계획수립·시행토록 자율성 확대
 - 지역 산업화 역량강화, 상품 생산·유통기반 구축,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가공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관리 등 추진
 -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포괄보조, 지방비포함) : ('09) 3,916억원 → ('10) 4,738
 - * (사례) 전북 부안 : 뽕·오디의 산업화를 통해 뽕재배 농가 확대('05년 45농가 → '08년 697농가) 및 농가소득 증대로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
- 지역별 핵심자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투자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단위 R&D 투자 확대 및 지원체계 구축

- 새로운 제품 발굴·자원화, 제품·공정 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등 지역 단위 R&D 투자 확대 유도
 - * 향토산업육성지원 등 지역 R&D 분야 지원('10안) : 313억원
- 농어촌산업에 대한 종합적·다층적인 지역 R&D 지원체계 구축
 - 중앙(농식품부, 농촌진흥청) - 도(농업기술원, 지역협력단) - 시·군(지역협력단,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단계로 기능분담 체계 정비
 - 지역 특성화 연구과제를 신설하고 지역개발 사업과 연구사업간 연계를 강화(특성화 연구기관의 참여 권장)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스토리텔링 및 팜파티를 위한 향토자원 발굴(계속)
 - 사업 대상 지역 : 3개 지역(순천, 해남, 화순)
 - 사업 결과 : 스토리텔링 및 팜파티 향토자원 256건 발굴

○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현장 적용(계속)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 : 3지역(금산, 순천, 영광 / 4종)



스토리북 제작(4종)

이야기 그림지도 개발

체험 스토리 개발

- 팜파티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2지역(해남, 화순 / 10농가)



팜파티 운영 지원(해남)

팜파티 운영 지원(화순)

농가 스토리북 개발(4종)

- 장소마케팅을 위한 전통지식 활용 프로세스 개발 : 2지역(태백, 여주)

○ 향토상품 디자인 개선방안 도출 및 디자인 개선안 제작(완료)

- 향토상품 가치 제고를 위한 디자인 개선안 개발 : 3지역(3종)



초락도약썩(패키지 개선)

참한솔(브랜드 개선)

나무공예농장(체험상품 개발)

○ 향토자원 활용 증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서비스(완료)

-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DB 국제화 : 국제특허분류 및 영문화 2,000건
- 향토자원 DB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 특허청 한국전통지식포털 연계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사업목적 및 추진내용

비전	향토자원 발굴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목적	지역의 유망 향토자원 발굴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	산업화 모델 개발 및 향토산업 육성 기반조성
추진 내용	▶ 향토자원 보전 및 DB 구축을 위한 발굴조사 ▶ 지역마케팅을 위한 향토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 향토자원 활용 콘텐츠의 현장 적용		

○ 농촌 전통지식 유망자원 발굴 및 활용 콘텐츠 개발

- 세시풍속 유망자원 발굴 및 지역마케팅 활용 프로그램 개발 : 3지역
- 교육관광 콘텐츠를 개발을 위한 마을숲 관련 전통지식 조사 : 3지역

○ 전통생태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마을 사업화 전략 개발

- 전통생태자원 활용 체험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생태체험 사업화 방안 : 농장·마을단위 규모, 운영방안 등
- 전통생태자원 평가체계 개발 : 3유형(습지, 노거수, 마을소하천)

○ 강소농 육성을 위한 팜파티(Farm party) 현장 지원

- 팜파티 문화콘텐츠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컨설팅 : 2지역
- 팜파티 운영 성과 분석 및 단계별 운영 매뉴얼 제작

4. 관련 사업 내용

가. 향토자원 발굴 및 콘텐츠 개발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향토자원 발굴 및 활용 관련 연구과제 추진 연구부서
- 사업 규모(사업량) : 향토자원 발굴 및 활용 관련 3개 과제
 - 세시풍속과 마을숲을 활용한 축제·체험 콘텐츠 개발
 - 전통생태자원 활용콘텐츠 및 사업화 전략 개발
 - 팜파티(Farm party) 문화콘텐츠 및 마케팅 수익모델

- 지원금액 및 형태 : 4.4억, 국비 100%
- 사업 주요내용
 - 향토자원 보전 및 DB 구축을 위한 발굴조사
 - 지역마케팅을 위한 향토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 향토자원 활용 콘텐츠의 현장 적용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	-	440	-	440	-	-	440
2013	-	-	440	-	440	-	-	440
(증△감)	-	-	0	-	-	-	-	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 : 해당 없음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0	-	-	1,240	-	-	-	1,240
'12	10/11	-	-	440/440	-	-	-	440
'13	10	-	-	200	-	-	-	200
'14	10	-	-	200	-	-	-	200
'15	10	-	-	200	-	-	-	200
'16	10	-	-	200	-	-	-	2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유망 향토자원 발굴조사	504	288	256	100	100	산업화유망 향토자원 조사 및 발굴 건수	문헌 및 현지조사
향토자원 활용 문화콘텐츠 개발	3	11	11	10	10	문화콘텐츠별 상품 시개발 건수	문헌 및 현지조사

< 4-1-3-1 : 농어촌지역 창업, 기업성장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어촌산업팀	담당자	박상호(주무관)
전화번호	044-201-1585	이메일	mito@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농어촌 지역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체계 정비 (기본계획 p44)

□ 소규모 사업체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형 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도입·운용('11)

- 공동 가공시설 설치·이용, 가공·마케팅 지원, 자금조달 개선, 기술개발 지원, 규제완화 등 종합 지원

* '09년 농어촌기업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10년중 과제 확정

- 농업기술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협력단 등의 기능을 연계하여 지역 단위 농상공 상생협력기구 설치 유도

□ 국내외 시장 개척활동 및 전략적 수요처 발굴 지원(기본계획 p.43)

- 박람회 개최, 마케팅 전략 컨설팅 등을 통해 시장 접근기회 다양화
 - 농어촌산업박람회를 대표적인 지역생산품의 판촉·상담 장으로 육성
 - 대형 마트, 농수협 매장 등 주요 판매처와 지자체를 연결하고, 지역 생산품 전문코너 개설 유도 등 마케팅전략 컨설팅 지원
- 해외 박람회, 국외바이어 초청 품평회 등 수출시장 개척활동 지원
- 시장성을 감안한 최적의 R&D, 마케팅 전략, 자금조달방식 선택을 돕고 민간펀드 등 투자 유도

※ 4-1-2-1 : 농어촌생산품 수요확대 지원(농림수산식품부)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소규모 사업체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형 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도입·운용

- 자금·정보·기술지원·창업보육 등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원활한 기업 경영 지원을 위해 '10년에 이어 '농어촌기업 사업추진 매뉴얼 II' 제작('11.12)
 - 기업 발전 단계에 맞춰 농어촌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시장분석·고객관리·조직진단 분야에 대한 '농어촌기업 사업추진 매뉴얼 III' 제작('12.12)

* 매뉴얼은 시·군 및 농어촌기업을 대상으로 배포 완료

농어촌기업 사업추진 매뉴얼 I	농어촌기업 사업추진 매뉴얼 II	농어촌기업 사업추진 매뉴얼 III
농어촌기업 설립 및 사무절차, 공장 설립, 홍보·마케팅 분야로 구성	유통 관리에 중점	시장분석·고객관리·조직진단 분야 중점

- 향토기업(제품) 수출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출매뉴얼 제작 보급('12.12월) 완료
- 시도, 시군구 사업담당자 및 향토기업체 등에 배포(500부)

□ 국내외 시장 개척활동 및 전략적 수요처 발굴 지원

-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여 개발된 우수 제품을 전시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요창출 촉진하고자 “농어촌산업박람회” 개최
- 제3회 농어촌산업박람회 개최('11.9.5~9.8, aT센터)
· 유통전문가 교육(7.26~27), 유통품평회(8.2~3), 유통역량강화 컨설팅(8.4~31) 을 박람회 사전 프로그램으로 실시
· 54개 시·군 및 139개 업체('10년 76개 시·군 290개 업체)
- 대한민국 향토제품대전(제4회 농어촌산업박람회:'12.8.30~9.2, 킨텍스) 등을 통해 전략적·잠재적 수요처 발굴 지원
· 계획수립(5.15, 장관방침), 순회설명회(6월), 품평회(3~4월), 유통바이어 컨설팅(5~6월), 우수제품 선정(7월) 등 사전 실시로 내실화
· 76개 지자체 및 176개 농어촌기업체 참여, 우수제품 특별전시관운영

<산업박람회 추진결과>

구분	전체 매출액 (백만원)	계약 상당(건)	계약 체결(건)	홍보(건)	바이어 상당(건)
2012	2,015	192	13건	237	589
2011	1,783	43	9	512	45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제5회 농어촌산업박람회 개최('13.8~9월)
- 참여 기업체 및 바이어간 계약체결 확대를 유도하여 유통판로 확보 및 수출촉진에 노력
· 농기업 수출컨서팅, 품평회, 농어촌기업 유통·수출 등 체계 구축 및 지원(3~11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촌활력정착지원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시·군 및 참여 업체
- 사업 규모 : -
- 지원금액 및 형태 : 총 백만원('12년까지 12,2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 100%(직접수행, 민간보조)
- 지원내용 : 농어촌산업육성사업(향토산업육성사업,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사·평가, 컨설팅,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지역연계발전시스템 구축, 농어촌산업박람회 등 지원장소 임대료, 홍보비, 심포지엄, 시상식 등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347				2,347			2,347
2013	2,251				2,251			2,251
(증△감)	△96	-	-	-	△96	-	-	△96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943	-	-	-	-	-	11,943
'10		2,758	-	-	-	-	-	2,758
'11		2,314	-	-	-	-	-	2,314
'12		2,369	-	-	-	-	-	2,369
'13		2,251	-	-	-	-	-	2,251
'14		2,251	-	-	-	-	-	2,251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산업박람회 방문객 증가율(%)	64.8	△40.8	35.1	-	-	(금년도 방문객 - 전 년도 방문객) / 전년도 방문객 * 100	행사 결과 보 고서
농어촌산업박람회 계약상담건 증가율(%)	-	-	-	10	10	(금년도 계약상담건 - 전 년도 계약상담건) / 전 년도 계약상담건 * 100	행사 결과 보 고서
농어촌산업박람회 계약체결건 증가율(%)	-	-	-	10	10	(금년도 계약체결건 - 전 년도 계약체결건) / 전 년도 계약체결건 * 100	행사 결과 보 고서

* '11년 박람회(방문객 수 : 63,000명)보다 홍보 등의 노력을 통해 방문객이 상당수 증가('12: 85,131명)

* '13년 이후 성과지표 변경 : 박람회 개최목적에 맞는 성과지표(계약상담건) 및 계약체결 증가율로 변경

< 4-1-3-2. 소규모 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농촌진흥청) >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당자	농업연구사 윤종탁
전화번호	031-299-1071	이메일	jongtag@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3) 농어촌 지역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체계 정비 (기본계획 p44)
- 소규모 창업 및 소득증대 활동 지원을 통한 농어촌형 微小기업 (micro-business) 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고양
 - 농외소득법 제정·시행을 계기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하고 농어촌형 중소기업의 창업보육 종합 지원센터로 정립
 - * ('10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기술지원 10억원(4개소)
 - 마을단위, 가족단위, 여성·노인층 등 고용취약계층의 단체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 소규모 사업체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형 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도입·운영('11)
 - 공동 가공시설 설치·이용, 가공·마케팅 지원, 자금조달 개선, 기술개발 지원, 규제완화 등 종합 지원
 - * '09년 농어촌기업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10년중 과제 확정
 - 농업기술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협력단 등의 기능을 연계하여 지역 단위 농상공 상생협력기구 설치 유도
 - 농촌 입지 제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내실화 추진
 - 농공단지 2차 계획기간까지 약 400개소('08년까지 330개소) 조성을 완료하고, 노후단지 리모델링 등 인프라 보강 및 소프트웨어 지원에 역점
 - * 지역 식품산업, 향토자원 활용형 기업을 위한 특화산업단지 활성화 유도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업인 소규모 창업 사업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완료)
 - ('06~'11)135개소, 59.8억원 → ('12)21, 10.5억원
 - * 농업인 창업지원사업장 소득 : ('11) 57 → ('12) 76백만원(평균 매출 33%↑)
 - * 일자리 창출 : ('11) 612 → ('12) 623명(비상시 고용)

- 농업인 가공 사업장에 대한 창업에서 자립단계까지 체계적인 기술지원 실시
 - *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5월, 104명), 농업인 CEO 경영개선교육(7월, 74명), 홍보 책자 발간(팔도미품, 창업 Q&A 모음집), 유관기관 업무 협력(농식품부, 유통공사, 중기청), 마케팅 지원(직거래장터 지원, 우먼팜 운영, 가공경진 시상), 사업장 컨설팅(연중, 21개 시군 123회), 현장애로과제 발굴 및 연구연계(2과제)

○ **공동가공이용 시설 설치 및 창업보육을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 추진 (완료)**

- ('10~'11)12개소(신규 8개소, 2년차 4), 30억원 → ('12)8, 20억원
 - * 가공매니저 양성교육(3월, 2기 70명), 사업담당자 워크숍(10월, 35명),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매뉴얼 제작(12월), 현장기술지원(12시군, 5~12월)
 - * '12~'17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정부 정책수립에 협력

○ **향토음식자원화사업을 통한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가치 증진(완료)**

- 「농가맛집」 조성 : ('07~'11)64개소, 29억원 → ('12)10, 5억원
 - *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장 소득 : ('11) 76.4→ ('12) 100.4백만원(평균 매출 22%↑)
- 향토음식자원화사업 현장 컨설팅 및 농가맛집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
 - * 업무 협의회(3월), 신규자 교육(5월, 60명), 품질관리교육(11월, 100명), 식문화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2회), 모니터링(7~8월, 4개소), 유관기관 업무협력(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 우수 공무원 선발(12월, 6점)

○ **지역 특화품목을 1·2·3차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가가치 창출(완료)**

- 시군센터 연계 농식품 가공 인프라 확대 : ('11) 8개소, 21억 → ('12) 12, 30
 - * 지역농업특성화 시군담당자 워크숍(2. 28, 80명) 및 업무 협의회(3월, 20명)
 - *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유형별 우수사례집 제작·배부(3월, 500부)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농업인 제품 전시>



<홍보 책자발간>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업인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소규모 창업 활성화

-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 ('06~'12)156개소 → ('13) 22
- * 담당자 기술교육(5월), 경영개선교육(7월), 현장기술지원(년중), 가공경진(11월)

○ 시군센터를 통한 농업인의 가공기술력 향상 활동 강화 및 창업보육기반 확립

- 공동이용 및 기술습득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설치: ('10~'12) 1년차 12개소 → ('13) 4
- * 개소당 5억원씩 2년간 지원되는 사업임
- * 가공매니저교육(3월), 담당자 교육·워크숍(4월), 가공장비 활용매뉴얼 제작(6월)
- 농식품 가공·창업·보육 등 기반조성 : ('10~'12) 29개소 → ('13) 10
- * 특성화 우수사례집 제작·배부(3월), 시군센터 워크숍(4월), 현장 기술지원(연중)

○ 지역식자재와 문화를 연계한 향토음식소득 자원화

- 지역별 향토음식 체험공간 「농가맛집」 조성 : ('07~'12) 74개소 → ('13) 9
- * 농가맛집 지도제작(5월), 품질 관리교육(9월), 전문가 현장 컨설팅(연중),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 사업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2인 이상의 농업인 공동사업체 등
- 사업 규모(사업량) : 22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2,200백만원(국비·지방비 각 50%, 개소당 1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가공 작업장 및 시설설치, 가공장비 구입 및 설치, 포장개발, 유통개선, 상표등록 및 출원, 홍보,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및 우수 지역 벤치마킹,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등
- 법적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제50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1조, 농촌진흥법 제2조·제1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050			1,050	1,050		2,100
2013		1,100			1,100	1,100		2,200
(증△감)		△50			△50	△50		△10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		1,100			1,100		2,200
경기	3		150			150		300
강원	2		100			100		200
충북	2		100			100		200
충남	2		100			100		200
전북	2		100			100		200
전남	2		100			100		200
경북	3		150			150		300
경남	2		100			100		200
제주	1		50			50		100
부산	1		50			50		100
인천	1		50			50		100
세종	1		50			50		1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9		5,450			5,450		10,900
'12	21/21		1,050/1,050			1,050/1,050		2,100/2,100
'13	/22		/1,100			/1,100		/2,200
'14	/26		/1,300			/1,300		/2,600
'15	/20		/1,000			/1,000		/2,000
'16	/20		/1,000			/1,000		/2,000

나.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규모(사업량) : 8개소(1년차 4개소, 2년차 4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40억원(국비·지방비 각 50%, 개소당 단가 5억원씩, 2년간 지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농외소득 개발을 위한 종합지원, 공동 이용 공간 확보, 기자재·장비 시설 설치 및 운영 인력 확보, 상품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가공 기술이전,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 가공기술 개발·표준화·상품화·컨설팅 보급에 따른 운영, 지역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및 컨설팅 지원 등
- 법적근거 :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및 시행령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농촌진흥법 제2조제2항제4호(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 농촌진흥법 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2012			2,000		2,000	2,000	4,000
2013			2,000		2,000	2,000	4,000
(증△감)			-		-	-	-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			2,000		2,000		4,000
강원	3			750		750		1,500
충북	1			250		250		500
충남	1			250		250		500
전북	1			250		250		500
전남	1			250		250		500
경남	1			250		250		5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4			16,000		16,000		32,000
'12	8/8			2,000/2,000		2,000/2,000		4,000/4,000
'13	/8			/2,000		/2,000		/4,000
'14	/16			/4,000		/4,000		/8,000
'15	/16			/4,000		/4,000		/8,000
'16	/16			/4,000		/4,000		/8,000

다.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및 농가공동 참여자
- 사업 규모(사업량) : 9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9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비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향토음식 자원화 기반조성을 위한 향토음식 솜씨 보유자 발굴, 향토음식 자료화, 향토음식 자원화를 위한 사업자 역량 개발, 농가맛집 조성, 향토음식 상품화 등
- 법적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제50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농촌진흥법 제13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2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500				500		1,000
2013		450				450		900
(증△감)		△50				△50		△10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		450			450		900
경기	1		50			50		100
강원	2		100			100		200
충북	1		50			50		100
충남	1		50			50		100
전남	1		50			50		100
경북	1		50			50		100
경남	1		50			50		100
제주	1		50			50		1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4		2700			2700		5400
'12	10/10		500/500			500/500		1000/1000
'13	/9		/450			/450		/900
'14	/15		/750			/750		/1500
'15	/10		/500			/500		/1000
'16	/10		/500			/500		/1000

라. 지역농업특성화 농식품 가공분야 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농업경영체 등
- 사업 규모(사업량) : 10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3,463백만원(국비·지방비 각 50%, 개소당 192~312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내용 : 농식품 센터의 가공창업 보육에 필요한 단계별 기반조성, 농식품 가공기술 보육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지원, 지역 주산작목에 적합한 가공기술 표준화 및 품질향상 기술 지원 등
- 법적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제50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1조, 농촌진흥법 제2조·제1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983			2,983	1,278		4,261
2013		2,424			2,424	1,039		3,463
(증△감)		△559			△559	△239		△798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2,424			1,039		3,463
경기	1		312			134		446
강원	2		480			206		686
충북	2		480			206		686
전북	1		240			103		343
전남	3		672			288		960
경남	1		240			103		343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12/12		2,983/2,983			1,278/1,278		4,261/4,261
'13	/10		/2,424			/1,039		/3,463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업인 창업사업 장 매출액 증가율	20	21	33	20	20	(지원후 3년차 사 업장의 당년 매 출액 - 동 사업 장의 전년 매출 액 / 동 사업장 의 전년 매출액) × 100	해당 농업기술 센터 담당자
향토음식자원화율 (%)	128	125.4	147.5	120	120	향토음식 발굴·개발 및 자료화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 (①+②)/2 ①(향토음식 발굴· 개발 실적/계획) ×100 ②(향토음식 자료화 보급 실적/계획) ×100	해당 농업기술 센터 담당자

<4-1-3-3.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농촌진흥청)>

담당부서	농촌환경자원과	담당자	조록환
전화번호	031-290-0270	이메일	tryjohl@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지역간 농어촌산업 활성화 연계·협력 프로그램 지원 (기본계획 p45)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촌관광 수익성 향상을 위한 농가민박 경영개선 방안 개발
 - 농가민박接客서비스 매뉴얼 및 동영상교재개발
 - 농가민박이 농촌관광의 핵심적인 비즈니스로 정착
 - 농가민박 단독사업(40.6%), 농가민박+기타사업(82.2%)
 - 농가민박 인지도 향상을 위한 농가민박 공동브랜드 개발(시안) : 4종



- 농가민박 시설/환경 및 체험 아이콘 개발: 시설/체험(12종), 체험(12종)



○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촌관광 비즈니스 모델 개발

- 농가 오토캠핑장 운영 방안 및 조성모델 개발

- 오토캠핑장 이용객 선호조사 분석 : 오토캠핑객 491명
- 오토캠핑장 이용객이 선호하는 오토캠핑장 유형별 특성분석 : 3유형
- 농가에서 개설가능한 소규모 오토캠핑장 모델개발: 3종



- 기술개발 효과 : 텐트 40동 규모 조성시 월 300만원 수익창출

- 농촌관광마을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농촌관광마을개발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3,568억원, 고용유발효과 40,200명, 소득유발효과 2,80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690억원임.

○ 농촌교육농장 경영개선 및 제도 개선 연구

- 농촌교육농장 경영주의 애로사항 및 경영활동 개선방안

- 농촌교육농장 운영실태 분석결과 : 단순체험(8.9%), 교과연계 체험(55.6), 체험+민박(16.0%), 체험+식당(6.7%)

- 농촌교육농장 평균가동율(15.0%), 매출액 2천만원 이하(58.9%)

- 농촌교육농장 운영에서 애로사항

→ 투자에 비해 단순하고 낮은 수익구조(3.57), 적절한 홍보수단 부족(3.55), 정부의 보조금 및 재정적 지원이 적음(3.52), 법적 규제(3.31), 시장관련 정보 부족(3.27), 사업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 부재(3.25)

- 농촌교육농장 경영주의 경영개선을 위해 우선시되는 경영활동

→ 시장분석 및 상품개발, 마케팅 활동 등이 우선시되는 경영활동임

- 농촌교육농장 체험학습 안전관리 요령 개발

- 농촌체험관련 보험적용 사례수집 분석 : 133건

- 보험적용 사례수집 분석을 통한 위험성이 높은 체험학습 선발

→ 물놀이, 썰매/얼음체험, 승마, 농기계체험, 안전보행 등

- 주요 체험학습을 위한 안전관리요령 개발
→ 체험시설, 승마, 물놀이, 썰매타기, 농기계 체험 등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특산물 부가가치제고를 위한 푸드투어리즘 개발
 - 푸드투어리즘 유형별 목표시장 설정 및 서비스 개선방안 도출
 - 푸드투어리즘을 통한 지역농산물 활용 증진 방안 개발
 - 지역 특산 향토음식을 활용한 맛기행 루트 개발: 2종
 - 한국형 푸드투어리즘 외래관광객 유치 및 서비스방안 개발
- 농촌교육농장 운영 및 법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농촌교육농장 목표고객 및 유형별 운영방안 도출 : 1종
 -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장애가 되는 법과제도 개선 : 2종
 - 농촌교육농장 보험상품 개발 및 관련법 정비 제안
- 농어촌관광마을 판매상품 디자인 실태 조사 및 디자인 요소 분석
 - 농어촌관광마을 판매상품 디자인 실태조사 및 디자인 요소 분석 : 3유형
 -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실태조사 및 시설 유형 분석 : 2유형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 기술개발 연구 추진 부서
 - 사업 규모(사업량) :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 기술 8과제
 - 지원금액 및 형태 : 4.5억원(기타회계)
 - 지원조건 : 국비 100%
 - 전문가 등의 심의와 사전 중복과제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하여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관리를 위한 총체적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과제
 -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 관련 연구
 - 지원내용(연구과제지원)
 - 푸드투어리즘 시장세문화 및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푸드투어리즘에서 지역농산물 활용증대방안연구
 - 지역 특산음식을 활용한 맛기행 루트 개발

- 푸드투어리즘을 활용한 외래관광객 증대방안 연구
- 농촌교육농장 경영 및 마케팅 전략개발
- 농촌교육농장 제도 연구
- 농어촌관광마을 판매상품 디자인 실태조사 및 디자인 요소 분석
-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실태조사 및 디자인요소분석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제13조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390		390			390
2013			450		450			450
(증△감)			60		60			60

* 농특세 전입금 사업은 농특세로 기재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							
'12	8/5			390/400				390/400
'13	5			400				400
'14	5			400				400
'15	5			400				400
'16	5			400				4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촌관광상품 개발건수	8	8	8	5	5	현지조사	보고서 농촌관광현장확인

< 4-1-4-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담당자	조안태
전화번호	044-201-2185	이메일	call118800@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지역 주도의 농어촌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기본계획 p.42)

□ 향토자원 산업화를 위한 지자체의 전략적·체계적 투자 촉진

- 농어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통합(13 → 1개 포괄보조금)하고, 지자체가 계획수립·시행토록 자율성 확대
 - 지역 산업화 역량강화, 상품 생산·유통기반 구축,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가공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관리 등 추진
 -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포괄보조, 지방비포함) : ('09) 3,916억원 → ('10) 4,738
 - * (사례) 전북 부안 : 병·오디의 산업화를 통해 병재배 농가 확대('05년 45농가 → '08년 697농가) 및 농가소득 증대로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

- 지역별 핵심자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투자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단위 R&D 투자 확대 및 지원체계 구축

- 새로운 제품 발굴·자원화, 제품·공정 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등 지역 단위 R&D 투자 확대 유도
 - * 향토산업육성지원 등 지역 R&D 분야 지원('10안) : 313억원
- 농어촌산업에 대한 종합적·다층적인 지역 R&D 지원체계 구축
 - 중앙(농식품부, 농촌진흥청) - 도(농업기술원, 지역협력단) - 시·군(지역협력단,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단계로 기능분담 체계 정비
 - 지역 특성화 연구과제를 신설하고 지역개발 사업과 연구사업간 연계를 강화(특성화 연구기관의 참여 권장)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중앙정부 평균적 농어가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특화 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주도하는 기술과 경영이 융합된 농식품산업 지원 시스템구축
 - 지역 가용자원을 통합적·유기적으로 결집하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추진방안 마련 및 20개소의 지역클러스터활성화사업 시범사업단 선정·지원('05~'07)
 - 시범사업 종합평가 및 본사업 추진방안 마련('07) 및 2011년까지 67개소로 사업확대 추진중
- * 선정현황 : 67개소('05, 20 → '08, 22 → '09, 12 → '11, 13)
- 광역클러스터활성화사업으로 명칭변경 및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정책영역 구분('09)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기초 시군단위 클러스터 육성, 광역클러스터활성화 사업은 복수 시군 및 도단위 클러스터 육성 및 고도화 지원 담당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 명칭변경 및 식품산업과의 연계 강화('10)
 - 단순 생산·유통 중심의 사업단은 선정배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 유도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추진방안 개선(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개정, '11.2)
 - 일정금액 이상 집행시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여 투명성 확보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개선방안 보고(제2차관, '12.9)
 - '14년부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식품산업정책관) 및 향토산업육성사업(농어촌정책국)간 사업통합 추진
- * 현행 3년 지원(향토산업 30억, 지역전략 5년 50억) → 통합 5년 지원(기초 30억 ~ 광역 60억 지원), 지역전략 추가지원은 본 사업비로 전환
 - 지역전략사업 신규사업단 선정은 사업 전전년도 선정 전년에는 사업계획 컨설팅 후 자립화가 가능한 사업단은 본 사업비지원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지역전략 '14년 예비사업단 8개소 사업계획수립 등 컨설팅 실시('13. 3~11월)
- 중간평가 및 추가지원 점검기준 방안 개선('13.1/4) 및 사업성과 평가
 - 점검을 통해 사업비 차등지원 등 우수사업단 추가지원

- 사업성과 우수사례 전파 및 노하우 공유를 위한 사업단, 지자체, 전문가 참여 워크숍 개최('13.상반기)
- 지역전략 '15년 예비사업단 평가를 통하여 5개소 정도 선정('13, 4/4)

4. 관련 사업 내용

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클러스터사업단
- 사업 규모(사업량) : '17까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 100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개소당 50억원+추가지원,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지역특화 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 가공·유통시설,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통 산업화 및 마케팅 등
-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 제16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추진), 제51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8,220			18,060		36,280
2013			14,840			14,680		29,520
(증△감)			△3,380			△3,380		6,76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840		14,680		29,520
부산				1,000		1,000		2,000
광주				1,000		1,000		2,000
경기				2,000		2,000		4,000
충북				2,000		2,000		4,000
충남				1,000		1,000		2,000
전북				2,000		2,000		4,000
전남				1,000		1,000		2,000
경북				1,000		1,000		2,000
경남				1,000		1,000		2,000
제주				1,000		1,000		2,000
기타유보'				1,840		1,680		3,520

*기타유보 : 사업추진 성과 점검 후 추가지원 자금 및 시·도 경비(점검 후 배분 예정)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9			70,440		69,100		139,540
'12	28/28			18,220/17,912		18,060/17,752		36,280
'13	18			14,840		14,680		29,520
'14	12			8,420		8,080		16,500
'15	13			14,020		13,680		27,700
'16	18			14,940		14,600		29,54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클러스터특화품목 매출액증가율(%)	34.9	23.3	19.1	16.5	17.0	(측정년도매출액 전 년도매출액)×100	사업단의매출액 지차제 조사자료

4-2. 체험, 휴양기반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

(1) 개관

□ '13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농가·마을·거점별로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 경관시설·진입도로·상하수도·화장실 등 체험·휴양시설 기반시설, 학습전시관·산책로·탐방로 등 체험·휴양시설 인프라 구축 확대
 - 어촌관광안내센터, 해안산책로, 특산물 판매장, 낚시공원 조성 등 어촌관광시설 확충
 - 낙농체험관광목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체험시설 설치비, 환경개선비, 체험프로그램 개발비 용자 지원
- 산림을 휴양과 연계된 공간으로 조성
 - 자연휴양림 조성(16개소)·보완(67개소), 산림욕장 조성(5개소)·보완(6개소),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계획·조성(8개소) 실시
 - 식물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전하고 증식에 필요한 서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공립수목원과 산림박물관 지속적 조성(공립수목원 32개소, 산림박물관 6개소)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시행
 - 도농교류 촉진 : 2013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개최('13.7월), 도농교류 정부포상 실시
 - 도농교류 협력사업 : '13년 사업시행을 위한 단체·체험마을 공모 및 선정(3월)
 -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지원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389명 지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마을대표 역량강화 교육
- 초·중·고등학교의 농어촌 체험·교류확대를 위해 농어촌 유학지원 사업 실시(5개소),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팜스쿨(50개소) 지원

□ 예산 내역

< 2013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촌 체험·휴양 기반 확충								
산림휴양공간 조성		38,119	20,979		59,098	38,119		97,217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18,133			18,133	18,000		36,133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13,759				13,759	3,620		17,379
슬로시티 녹색관광 자원화				2,400	2,400	2,250	150	4,800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3,230	350		1,380	2,791		6,371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 사업		750				750		1,500
농촌교육농장 육성		900				900		1,800
농촌체험 명품화		200				200		400
농촌체험프로그램 기술보급시범사업			100			100		200
농촌체류형 민박기술 보급			250			250		500
어메니티 유형 지역농업특성화		1,380			1,380	591		1,971
초중등학생의 농어촌체험 교류확대								
합계	13,759	59,482	21,329	2,400	94,770	64,780	150	161,900

< 4-2-1-1. 농가-마을-거점별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어촌산업팀 축산경영과 수산개발과	담당자	유재중(사무관) 박재화(사무관) 우만수(사무관) 김지혜(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2 044-201-1590 044-201-2340 044-201-2639	이메일	yujj8610@korea.kr nanaimo@korea.kr wooms@mifaff.go.kr jeehyekim19@mifaff.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가-마을-거점별로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 기반 확충(기본계획 p46)

□ (거점) 농어촌 테마공원, 어촌관광단지, 산림휴양시설 등 다양한 농어촌 체험·휴양 거점 지속 확충 및 연계 운영

- * 농어촌테마공원: ('11까지) 45개소 → ('14p) 82
- * 산림휴양시설: ('09까지) 281개소 → ('14p) 363

○ 문화교류를 위한 지역밀착형 신문화 공간, 생태·문화·역사자원 등과 연계한 산림문화체험숲길 등을 확대 조성하고 상호 연계

- * 신문화공간조성 시범사업 완료(6개 지역), '13년부터 마을공동문화조성 22개 지역 신규 조성, 산림문화체험숲길 1,000km

□ (마을) 농어촌의 경관과 문화·역사, 생태자원, 농어업 자원·활동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조성

- 체험기반 조성,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지원을 통해 운영 내실화
- * 농어촌체험마을 : ('11까지) 594개소 → ('14까지) 817

□ (농가) 체험과 산업, 교육 등을 연계한 다양한 농가형 체험관광 조성

- * 낙농체험관광사업 : ('09까지) 18개소 → ('14까지) 38
- * 교육농장 : ('09까지) 176개소 → ('14까지) 680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

- '12년도 사업도 기본방침 충실히 이행 : 예산신청 전 기본계획수립 등 행정 절차 의무이행, 총사업비 규모 30억원이상 사업 사업성검토 실시, 조성규모는 시·군당 1개 지구 조성 원칙 등

- '12년도 신규지구 사업성 검토 ('12.3)
 - 검토결과 7개도 13개 시·군·구 중 9개 타당성 확인 및 결과 통보
- '12년 신규 지구 예산신청(안) 적정성 검토('12.6)
-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서면 모니터링 실시('12.5~6)
 - '07~'12년까지 조성 중인 56개 지구
- '12년 신규 및 계속지구 예산신청 및 반영('12.6, 기재부)
 - 신규 : 73억원, 계속 355억원
- '12년 말 기준 57개 지구가 기본계획 수립, 세부설계 및 공사중으로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음

< 마을공동문화 조성 >

- '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이 '11년에 종료됨에 따라 6개 시범지구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 실시('12.4)
- 성과평가 결과를 피드백하여 사업방향 재설정
 - 재원 : 농특 → 광특(포괄보조사업 :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 사업명칭 변경 : 신문화공간조성사업 → 농어촌 마을공동문화조성사업
 - 사업규모 : 권역단위 → 마을단위
 - 사업방식 : 3년간 최대 30억(국고·지방비 각50%) → 2년간 최대 2억(국고 70%, 지방비 30%)
- '13~'14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22개 마을 선정 지원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조성 >

- 녹색농촌체험마을 신규조성 50개소(1~12월)
- 농촌체험마을사무장(350명) 지원(1~12월)
- 농어촌체험마을 상해보험 253개 마을 지원(1~12월)
- 관광명소 개발로 외국인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Rural-20 프로젝트 대상지역 20개소 선정심사 및 개발(3~6월)
- 농어촌체험마을 지역리더와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계획 수립(1월) 및 교육 실시(3~12월)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평가 및 결과 후속조치(4~9월)
 - 492개 마을에 대한 평가결과 관리대상마을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체험마을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종합진단 컨설팅 지원(4~9월)
- 방문객 편의를 위한 농어촌관광 “웰촌포털” 기능 개선(1~12월)
 - 스마트 전용 앱을 활용한 농어촌관광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예약 기능 등

<어촌관광개발사업>

- '0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8개소 중 해군기지 건설 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한 4개소를 제외한 14개소를 '12년까지 조성완료
- '12년 말 기준 22개소를 선정하여 16개소를 완료하고, 6개소를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성 중에 있음
 - '12년 : 7개소 83억원 지원(국비50%, 지방비50%)
 - * 신규사업 4개소, 계속사업 3개소 지원
- 어촌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리더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실시 ('12.3.7~3.9)
- '13년 예산신청 및 예산안 반영('12.6, 기재부)
 - 계속사업 6개소 6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낙농체험관광조성>

- 낙농체험관광사업 '12년 사업대상자 3개소 선정(3월~4월)
 - 청원목장(충북 청원), 성동목장(충남 부여), 내화목장(경남 양산)
 - 개소당 135백만원 용자 지원
- 낙농체험목장 방문객 지속 증대
 - 낙농체험목장 지역현황 ('12년 사업대상자 포함 총 24개소)
 - 경기(9), 강원(1), 충북(1), 충남(3), 전북(2), 전남(3), 울산(1), 경남(3), 제주(1)
 - ('04)1개소 → ('06)5개소 → ('08)12개소 → ('10)18개소 → ('12)24개소
 - 체험객 현황
 - ('04)0.4천명 → ('06)15천명 → ('08)78천명 → ('10)91천명 → ('12)280천명
- 낙농체험목장 2개소 추가 인증(12월)
 - 인증 대상목장 : 크로바목장(충남 홍성), 대한목장(전북 임실)

- 낙농체험 교육목장 홍보 책자 제작 보급(2월)
 - 제작목적 : 교육목장의 교육효과 향상 및 홍보 강화
 - 전국 199개 시·군·구 교육청에 배포
 - 낙농체험목장운영협의회 워크숍 개최 지원
 - (1차) : '12.1월, (2차) : '12.3월, (3차) : '12.7월
- ⇒ 체험 운영방안 및 현안과제 논의, 모니터링 결과 공람 및 교양강좌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테마공원조성 >

- '13년도 농어촌테마공원 개장 예정지구 현황 파악(1월)
 - '12년말 기준,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한 공원명칭, 운영·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
- '14년도 신규지구 사업성 검토 계획 수립·시행(4월초)
- '14년도 신규·계속지구 예산 적정성 검토(6월)

< 마을공동문화조성 >

- '13~'14년 사업추진 22개 마을의 사업계획서 점검(1월중)
- 신규사업계획서(예비계획서) 작성 및 입력(1월)
- 신규사업계획서 사업성 검토 및 결과 제출(지자체 → 농식품부, 2월)
-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성검토(4월) 및 검토결과 통보(5월)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조성 >

- 녹색농촌체험마을 45개소 신규조성(1~12월)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389명 지원(1~12월)
- 관광명소 개발로 외국인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Rural-20 프로젝트 대상지역 20개소 선정(3월)
- 농촌체험마을(335개 마을) 상해보험지원 (1~12월)
- 시·군, 시·군 담당자 및 도협의회 연찬회 개최(2월)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600개소 평가(3~9월)
- 농어촌관광 웰촌포털 및 종합관리시스템(RUCOS) 기능개선(3~12월)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마을대표 등 역량강화 교육(2~12월)

<어촌관광개발사업>

- 6개소에 65억원(국비50%, 지방비50%) 사업 추진(1~12월)
- 어촌관광개발사업 지역리더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실시('12.4)
- 어촌관광개발사업 리더 등에 대한 워크숍 개최('13.4)
- '14년도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4월초)
- '14년도 신규·계속사업 예산 적정성 검토(6월)

<낙농체험관광조성>

* 12년까지 일몰 사업임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시장·군수
 - 사업 규모(사업량) : '12년까지 총 57개 지구가 조성 중, 착수시점에 따라 단계별 추진 중
 - 지원금액 및 형태 : 50~100억원, 자치단체자본보조 (4년에 걸쳐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 지원내용 : 테마공원의 기반시설, 체험·휴양시설 지원, 경관시설·진입도로·상하수도·화장실 등과 같은 기반시설, 학습전시관·산책로·탐방로·주말농원 등과 같은 체험·휴양시설
 -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56조, 제58조 내지 제61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광특회계	기금			
2012			32,111		32,111	32,111	64,222
2013			42,814		42,814	42,814	85,628
(증△감)			10,703		10,703	10,703	21,406

* 2010년도부터 광특회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내역사업임(중복체크)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

	사업규모 (지구)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광특회계	기금등			
합계	47			42,814		42,814		85,628
광주	1			300		300		600
울산	1			500		500		1,000
경기	2			1,475		1,475		2,950
강원	1			650		650		1,300
충북	7			5,265		5,265		10,530
충남	5			7,160		7,160		14,320
전북	6			7,991		7,991		15,982
전남	6			6,520		6,520		13,040
경북	10			7,624		7,624		15,248
경남	8			5,329		5,329		10,658

○ 중기재정계획

* 테마공원조성사업은 광특회계 시·도 자율편성 예산으로 중기계획 산출 불가

나. 마을공동문화조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시장·군수
- 사업 규모(사업량) : '13년 22개소 신규 추진
- 지원금액 및 형태 : 2년간 마을당 2억원 이내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광특회계)
- 지원내용 : (소프트웨어) 운영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문화행사 개최, 홍보 지원,
(휴먼웨어) 주민교육, 동호회 구성 등 비용 지원,
(하드웨어) 문화자원 리모델링, 구조물 설치, 경관정비 등 시설비 지원
- 법적근거 : 어촌·어항법 제49조2(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도농교류촉진법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육성 및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광특회계	기금	소계			
2012	-	-	-	-	-	-	-	-
2013	-	-	1,540	-	1,540	660	-	2,220
(증△감)	-	-	1,540	-	1,540	666	-	2,220

* 광특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군자율편성) 내역사업임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 : '13년 대상지역 확정 후 계상 가능

○ 중기재정계획

* 광특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군자율편성)의 내역사업으로 중기계획 산출 불가

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조성

○ 사업 지원대상 : 시장·군수

○ 사업내용

- 마을공동 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 지역단위 체험·휴양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 농어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주민교육, 홍보, 마케팅 지원

* 이미 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법적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 지원부문

- 체험·휴양 기반조성 시설비, 체험·휴양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비용, 교육·견학·마케팅비 등
- 폐교나 고가(古家)를 활용하여 마을 공동의 체험기반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그 리모델링 및 활용 프로그램개발 등의 비용지원
- 사무장 활동비 : 별도지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단위사업별 3억원 이하)

○ 지원대상 : 농어촌관광 추진을 위해 마을협정을 체결한 농어촌지역의 단일 (20호 이상) 또는 둘 이상(30호 이상)의 마을

<농어촌지역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에 의한 농어촌 지역, 마을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동(洞)·리(里) 또는 행정 동·리>

* 지원받은 마을에 대하여는 사업종료와 동시에 도농교류촉진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함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광특회계	기금	소계			
2012			6,873		6,873	2,946		9,819
2013			7,117		7,117	3,051		10,168
(증△감)			244		244	105		349

- '13 시도별 배분내역

	사업규모 (지구)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광특회계	기금등			
합계	45			7,117		3,051		10,168
경기	4			840		360		1,200
강원	10			1,330		570		1,900
충북	2			420		180		600
충남	8			1,500		643		2,143
전북	5			580		249		829
전남	8			1,360		583		1,943
경북	4			553		237		790
경남	2			203		87		290
제주	2			331		142		473

○ 중기재정계획

* 광특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시군자율편성)의 내역사업으로 중기계획 산출 불가

라. 어촌관광개발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시·도지사(시·군·구)
- 사업내용 : 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사업,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 등
 - 생태·문화체험 등 각종 체험장, 어촌마을 정비, 관광안내센터, 해안산책로, 수산물 판매장, 해안 공원조성, 전망대, 낚시공원 조성, 상징조형물, 해상콘도, 주차장, 친수시설, 낚시터조성 등 관광기반시설
-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1)호
어촌어항법 제49조의2(어촌·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 지원부문 : 시설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지원대상 : 어촌계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광특회계	기금	소계			
2012			4,300		4,300	4,300	-	8,600
2013			3,250		3,250	3,250		6,500
(증△감)			△1,050		△1,050	△1,050		△2,100

- '13 시도별 배분내역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광특회계	기금등			
합계	6			3,250		3,250		6,500
경기								
강원	1			450		450		900
충북								
충남								
전북								
전남	2			600		600		1,200
경북								
경남	3			2,200		2,200		4,400
제주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7		18,350			18,350		36,700
'12	7		4,300			4,300		8,600
'13	6		3,250			3,250		6,500
'14	7		3,450			3,450		6,900
'15	8		3,600			3,600		7,200
'16	9		3,750			3,750		7,5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웰촌포털 활용도(%)	신규	83.1	84	85	86	설문조사기관을 통한 설문지 작성 및 설문	설문조사(웰촌포털 방문객)
체험마을 평균 매출액 증가율(%)	9.2	11.5	10.6	10.8	11.0	(당년도 체험마을 평균 매출액/전년도 체험마을 평균 매출액)*100	행정조사(지자체, 녹색농촌체험마을)

< 4-2-1-2. 산림휴양공간 조성(산림청) >

담당부서	산림휴양문화과	담당자	박상춘(주무관)
전화번호	042-481-4212	이메일	yeseul@forest.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가-마을-거점별로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기본계획 p46)

□ (거점) 농어촌 테마공원, 어촌관광단지, 산림휴양시설 등 다양한 농어촌 체험·휴양 거점 지속 확충 및 연계 운영

* 산림휴양시설: ('12까지) 322개소 → ('15까지) 420

2. 2012년 말까지 추진 실적

- 자연휴양림 조성(완공) : ('12까지) 152개소(국유 39, 공유 96, 개인 17개소)
- 산림욕장 조성(완공) : ('12까지) 173개소(공유)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계속) : 8개소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84개소
- 산림욕장 조성·보완 : 11개소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 8개소

4. 관련 사업 내용

가. 자연휴양림·산림욕장·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각 시·도 및 시·군·구)
 - 사업 규모(사업량)
 - 자연휴양림 : 조성 16개소(국가 2, 지자체14), 보완 67개소(국가 37, 지자체 30)
 - 산림욕장 : 11개소(조성 5, 보완 6개소)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 8개소(설계 2, 조성1년 1, 조성2년 2, 조성3년3)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유자연휴양림 조성(50억) : 국가 100%
- 국유자연휴양림 보완(4억) : 국가 100%
-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50억) : 국고보조 50%, 지자체 50%
- 지자체자연휴양림 보완(4억) : 국고보조 50%, 지자체 50%
- 지자체 산림욕장 조성(4억) : 국고보조 50%, 지자체 50%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300억) : 국고보조 50%, 지자체 50%
- 지원조건 :
 - 국유자연휴양림 조성 : 국가 100%
 - 국유자연휴양림 보완 : 국가 100%
 -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 : 국고보조 50%, 지자체 50%
 - 지자체자연휴양림 보완 : 국고보조 50%, 지자체 50%
 - 지자체 산림욕장 조성 : 국고보조 50%, 지자체 50%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 국고보조 50%, 지자체 50%
- 지원내용
 - 숲속의집 등 숙박시설, 주차장 등 편익시설, 화장실·음수대 등 위생시설
 - 자연관찰원·목공예실 등 체험·교육시설, 다목적잔디구장 등 체육시설
 - 전기·통신시설, 화재 및 재해경보기·사방댐 등 안전시설 등
- 법적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33,377	46,692		80,069	33,377		113,446
2013		38,119	20,979		59,098	38,119		97,217
(증△감)		4,742	△25713		△20,971	4,742		△16,229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8		38,119	20,979		38,119		97,217
부산								
대구								
인천								
대전	2		515			515		1,030
경기	5		2,057			2,057		4,114
강원	9		2,200	500		2,200		4,900
충북	7		4,471	500		4,471		9,442
충남	8		3,040	400		3,040		6,480
전북	3		4,890			4,890		9,780
전남	14		4,985			4,985		9,970
경북	12		11,871	960		11,871		24,702
경남	7		3,350			3,350		6,700
제주	3		740			740		1,480
국가	39			18,619				18,619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98		33,377	46,692		33,377		113,446
'13	108		38,119	20,979		38,119		97,217
'14	128		28,533	44,685		28,533		101,751
'15	128		28,533	46,955		28,533		104,021
'16	128		28,533	46,955		28,533		104,021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국립자연휴양림 가동률(%)	51	55	57	58	60	(연간 실 운영 객실수 연간 운영 가능 객실 수) ×100	자연휴양림 가동실적 보고서(분기보고)
지자체자연휴양림 가동률(%)	37	38	40	42	45	(연간 실 운영 객실수 연간 운영 가능 객실 수) ×100	자연휴양림 가동실적 보고서(분기 보고)

< 4-2-1-3.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산림청) >

담당부서	산림환경보호과	담당자	장영택(주무관)
전화번호	042-481-4249	이메일	dx0106@forest.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가-마을-거점별로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 기반 확충(기본계획 p46)

□ (거점) 농어촌 테마공원, 어촌관광단지, 산림휴양시설 등 다양한 농어촌 체험·휴양 거점 지속 확충 및 연계 운영

- * 농어촌테마공원: ('09까지) 22개소 → ('14p) 82
- * 산림휴양시설: ('09까지) 281개소 → ('14p) 363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식물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전하고 증식에 필요한 서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립수목원·산림박물관 조성·운영
 - 공립수목원 : 2012년까지 총 42개소 조성·운영(조성완료 23, 조성중 19)
 - 산림박물관 : 2012년까지 총 12개소 조성·운영(조성완료 11, 조성중 1)

3. 2013년도 추진 계획

- 공립수목원·산림박물관의 지속적 조성
 - 공립수목원 조성 : 32개소(신규설계 1, 연차별조성 15, 보완 16)
 - 산림박물관 건립 : 6개소(연차별조성 1, 보완 5)

4. 관련 사업 내용

가.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공립수목원 : 10ha이상의 조성부지와 지방비를 확보한 지자체
- 산림박물관 : 산림박물관 건립부지와 지방비를 확보한 지자체

- 사업 규모(사업량)

- 공립수목원 : 2013년 전국 32개소 조성(시·도별 2~3개소)
- 산림박물관 : 2013년 전국 6개소 조성(시·도별 1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공립수목원 : 개소당 총사업비 60억원(국비 50%·지방비 50%)
- 산림박물관 : 개소당 총사업비 40억원(국비 50%·지방비 50%)

- 지원조건

- 「타당성심사위원회」에서 부지확보 및 입지여건 등을 종합심사하여 적합한 지자체에 한하여 사업 지원
- 조성기간 : 공립수목원 4년(설계 1, 조성 3), 산림박물관 3년(설계 1, 조성 2)

- 지원내용

- 공립수목원 : 증식 및 재배시설, 관리 및 전시시설, 편익시설 등 조성
- 산림박물관 :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의 보존·전시관 등 건립

- 법적근거

- 「산림기본법」제19조(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재정지원)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3,776			23,776	23,610		47,386
2013		18,133			18,133	18,000		36,133
(증△감)		△5,643			△5,643	△5,610		△11,253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7개소		18,133			18,000		36,133
부산	1		3,600			3,600		7,200
대구	1		200			200		400
대전	1		288			288		576
경기	3		1,490			1,490		2,980
충북	3		750			750		1,500
충남	7		4,635			4,635		9,270
강원	4		1,100			1,100		2,200
전북	3		1,600			1,600		3,200
전남	4		1,920			1,920		3,840
경북	3		550			550		1,100
경남	5		1,750			1,617		3,367
제주	1		250			250		5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6		113,271			113,105		226,376
'12	34		23,776/23,776			23,610/23,610		47,386/47,386
'13	37		18,133			18,133		36,266
'14	35		23,323			23,323		46,646
'15	35		24,021			24,021		48,042
'16	35		24,018			24,018		48,036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공립수목원의 식물 자원 누적 평균 확보량(중)	1,904	1,950	2,000	2,150	2,200	식물종 확보량조사	조사보고서

< 4-2-2-1 :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어촌산업팀	담당자	유재중(사무관) 박재화(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2 044-201-1590	이메일	yujj8610@korea.kr nanaimo@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2) 도시형 도농교류 인프라 구축(기본계획 p.46)</p> <p><input type="checkbox"/> 대도시 입지 도농교류 거점으로 '도농교류 안테나 숲' 네트워크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체험·휴양정보, 농어촌유학, 전원생활 정보·상담, 문화교류정보, 도농교류 기업의 제품 전시·판매 등 서비스 제공 <p><input type="checkbox"/> 녹색성장의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한 도시농업모델 발굴·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농업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모델개발 및 교육, 기술지도,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10)을 거쳐 도시농업 정착 유도 * 도시근교 체재형 주말농장, 시민(또는 상자)텃밭, 옥상정원 등 <p>(3) 농어촌 체험·휴양 서비스업 고도화 및 다각화</p> <p><input type="checkbox"/>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등급제 도입('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품질향상 유도 * 프랑스(지트), 영국(팜스테이) 등 해외사례를 참조, 서비스 수준 등 평가 ○ 한식 세계화와 연계, 외국인이 농어촌에서 다양한 한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 특색 있는 음식과 문화·역사 등을 외국어로 소개 <p>(4) 도농교류·1사1촌운동 심화를 위한 도농교류 문화운동 저변확대</p> <p><input type="checkbox"/> 도시민,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농어촌 환경·문화·경관 보전활동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장, 정미소, 가공공장 등 근대의 농어업·농어촌 역사가 담긴 자원을 발굴하여 보전 및 활용 * (유사 사례) 일본 시라가와촌·일본환경교육포럼·도요타 자동차(주)가 '도요타 시라가와 자연학교'를 설립하여 환경교육, 자연보전활동 추진

- 중앙정부·지자체는 알선·상담,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지원시스템 마련('10)

□ 1사1촌 운동을 1사다촌, 다사1촌으로 다양화하고 농산물 소비, 자원보전활동과 연계 발전

-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산물 소비운동 전국 확산
 - * (유사사례) 미국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프랑스 아마프(AMAP)협회 활동
- NGO 협력활동 확대 및 500여개 우수 활동 모델 발굴·확산('14년)
 - * (예) 오창농협과 SK그룹과의 결연(1촌다사), 1사1군, 도농 창업, 1가족1농가 등

□ 도농교류 수요 창출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도농교류 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시행
 - * 여름휴가 페스티벌 개최('05~), 도농교류 정부포상('04~), 농어촌 축제('08~), 도농교류 협력사업('99~) 등
 - *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 ('09) 10개 시·군 → ('13이후) 30개

□ 農商간 자율적 신뢰협력 사업을 통한 새로운 시장문화 형성유도

- 전통시장 상인, 농어민간 현장 교차방문 및 체험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 (전국상인연합회와 농협 공동 추진)
- 전통시장 내 빈점포 등을 농상간 정보교류, 도시민에 대한 정보 제공, 만남의 장 등으로 활용
- 우수 도농교류 중소기업에 '1사 1촌 사회공헌 인증'을 수여하고 기업홍보 (농촌사랑운동범국민본부, 농식품부 지원)

□ 농어촌 체험관광 확대, 도농교류·지역축제, 한식세계화 등과 연계한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 강화

- 지역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지역 전통시장·5일장 활성화 및 파머스마켓, 직거래장터, 소비자단체, 택배를 활용한 직거래 활동 등 촉진
- 『한식문화체험관』을 통해 한식 관련 전시, 체험상품 개발·제공('11)

※ 4-1-2-1 : 농어촌생산물 수요확대 지원(농림수산식품부)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도농교류 촉진>

- 2012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개최 계획 수립('12.3월)
- 2012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개최('12.6월)
 - 206개 체험마을 및 지자체(11) 참석, 방문객 총 83천명
- 관광명소 개발로 외국인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Rural-20프로젝트 대상지 20개소 선정심사 및 개발(3~6월)
- 도농교류 정부포상 추진('12.12월 : 32점)
 - 훈장 1, 포장 1, 대표3, 국표 5, 장관표창 22
- 1사1촌 우수기업, 단체, 기관 사회공헌인증 등을 통해 농어촌 마을과 결연 확대
 - 1사1촌 결연기업 : ('11) 8.7천개 → ('12) 9.6천개

<농어촌축제>

- 농어촌축제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12.1월)
- 지원대상 시·군(마을)에 대한 선정 공모 및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
 - 지원실적 : ('11) 27개 축제 → ('12) 33
- 농어촌 소규모마을 축제 정산 및 종합평가('14.1)

<도농교류협력사업>

- 도농교류협력사업 사업자 선정, 지원조건 등 공모방식의 내실화와 사후관리 강화
- 전문가 서류심사 실시('12.3)
 - 74개 민간단체 및 초등학교, 체험마을 선정(163개 응모 중)
- 전문가 2차 심사회 실시('12.3)
 - 최종 60개 민간단체 및 초등학교, 체험마을 선정
- 도농교류협력사업 정산 및 종합평가('12.11)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350명 지원(1~12월)
- 농어촌체험마을 상해보험 253개 마을 지원(1~12월)
 - '11년에는 체험보험만 지원, '12년에는 체험 및 화재보험 지원

- 농어촌체험마을 리더, 주민 등의 역량강화 교육계획 수립(1월)
- 체험마을 평가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회의 개최('12.2월)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평가 및 결과 후속조치(4~9월)
 - 계획 수립 및 평가(492개 마을, 4~8월), 관리대상마을 워크숍 개최(9월)
- 체험마을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종합진단 컨설팅 지원(4~9월)
- 농어촌체험마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자체·농어촌공사·마을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체험마을관리시스템(RUCOS) 기능개선(3~12월)
 - 체험휴양마을 통합관리, 문서수발, 교육관리, 메신저 연계 등
- 방문객 편의를 위한 농어촌관광 "웰촌포털" 기능 개선(12월)
 - 스마트 전용 앱을 활용한 농어촌관광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숙박 사전 예약 등 기능 개선
- 농어촌체험마을 대표·사무장 역량강화 교육(1,281명, 2~12월)

3. 2013년도 추진 계획

<도농교류 촉진>

- 2013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개최('13.7월)
- 도농교류 정부포상 추진('13.12월)

<농어촌축제>

- 농어촌축제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13.1월)
- 지원대상 시·군(마을) 선정 공모 및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사 선정·지원
 - 지원실적 : ('12) 33개 축제 → ('13) 35개소(계획)
- 지원대상 축제 선정공모 및 전문가 심사 선정결과 통보(2월) 및 사업추진
- 농어촌축제사업 정산 및 종합평가('14.1월)

<도농교류 협력사업>

- '13년도 도농교류 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12.12월)
- 지원대상 단체 선정공모 및 전문가심사 선정결과 통보(1월)
 - 211개 단체가 응모하였고, 이중 86개 단체 최종 선정
- '13년도 도농교류협력사업 지원대상 단체 워크숍 개최(2월)
- 도농교류협력사업 중간점검 실태조사(6월)
- 도농교류 협력사업 정산 및 종합평가(11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389명 지원(1~12월)
- 농촌체험마을(335개 마을) 상해보험지원 (1~12월)
- 시·군, 시·군 담당자 및 도협의회 연찬회 개최(2월)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600개소 평가(3~9월)
- 농어촌관광 웰촌포털 및 종합관리시스템(RUCOS) 기능개선(3~12월)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마을대표(1,000명) 역량강화 교육(2~12월)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마을대표 등 역량강화 교육(2~1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도시민, 농어촌주민
 - 지원금액 및 형태 : 민간보조(농특), 지자체보조(농특)
 - 지원조건 : 민간보조(국고100%), 지자체보조(국고·지방비 각 50%)
 - 지원내용 : 도농교류촉진, 체험·휴양마을육성, 도농교류인적역량강화, 도농교류센터 운영, 도농교류협력, 도농교류종합정보지원,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 농어촌축제지원, 신문화공간조성, 업무지원경비 등
 - 사업추진절차
 - 도농교류활성화(민간보조) :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농식품부) → 사업시행 및 사후보고(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비 검정(농식품부)
 - 도농교류활성화(지자체보조) : 사업신청(지자체) →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 시행계획 수립 보고(지자체) → 사업추진 및 정산요청(지자체) →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정산(농식품부)
 - 지원근거 : 도농교류촉진법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5,785				15,785	5,116	504	21,405
2013	13,759				13,759	3,620	-	17,379
(증△감)	△2,026				△2,026	△1,496	△504	△4,26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축제/농어촌유학/사무장채용지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620				3,620		7,240
인천		22				22		44
대전		14				14		28
울산		28				28		56
경기		287				287		574
강원		502				502		1,004
충북		197				197		394
충남		384				384		768
세종		22				22		44
전북		292				292		584
전남		304				304		608
경북		327				327		654
경남		357				357		714
제주		64				64		128
유보		820						82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1,439				28,432	2,775	122,646
'12		15,785 /15,754				5,116 /5,116	504 /504	21,405 /21,374
'13		13,759				3,620		17,379
'14		16,543				4,210		20,753
'15		16,142				4,570		20,712
'16		18,088				5,420		23,508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웰촌포털 활용 도(%)	신규	83.1	84	85	86	설문조사기관을 통한 설문지 작성 및 설문	설문조사(웰촌포털 방문객)
체험마을 평균 매출액 증가율(%)	9.2	11.5	10.6	10.8	11.0	(당년도 체험마을 평균 매출액/전년도 체험마을 평균 매출액)*100	행정조사(지자체, 녹색농촌체험마을)

< 4-2-3-1. 슬로시티 녹색관광 자원화(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녹색관광과	담당자	소향섭
전화번호	02-3704-9916	이메일	shs63@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농어촌 체험·휴양 서비스업 고도화 및 다각화(기본계획 p.47)

□ 슬로시티를 국제적인 농어촌 관광상품으로 발전 유도

- 아시아 최초로 인증된 슬로시티(담양, 장흥, 신안, 완도, 하동, 예산)를 국제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한국 고유문화를 전파
- 방문자센터, 체험장 등 기초인프라 구축과 통합 홍보·마케팅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별 휴양·체험프로그램과 연계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2012년도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1개 지역, 18억)
 - * 국내 슬로시티 인증지역 현황(12개소, 2012년 말 현재)
 - : 신안(증도), 완도(청산), 장흥(유치), 담양(창평), 하동(악양), 예산(대흥, 응봉), 전주(한옥마을), 남양주(조안), 상주(이안), 청송(파천), 영월(김삿갓), 제천(수산)
- 슬로시티관련 운영 프로그램 지원(계속)
 -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협의체 운영 등
- 2012 국제슬로시티연맹 한국 슬로시티 본부총회 및 인증지역 확대지정(영월,제천)
- 소년소녀가장 슬로시티 팸투어(2회), 언론인 대상 팸투어(2회)
- 슬로시티 인증지역 등 홍보 및 동영상 제작 지자체 배포
- 슬로시티 지역 공무원대상 워크숍(12.6~7/전주)
-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3. 2013년도 추진 계획

- 2013년도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13. 3월/계속)
 - ※ 지역별 집행실적 등을 고려, 차등·단계별 배분 예정

- 슬로시티 지역 인프라 조성(계속)
 - 자동차 없는 섬(전남 신안 증도) 예산지원 등(계속)
- 슬로시티관련 운영 프로그램 지원(계속)
 -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협의체 운영 등

4. 관련 사업 내용

가. 슬로시티 녹색관광 자원화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국내 슬로시티 인증지역
 - 사업 규모(사업량) : 12개 슬로시티 인증지역
 - 지원금액 및 형태 : 24억원(지자체교부 22억5천/국비 50%, 지방비 50%) * 민간 1억5천
 - 지원조건 : 슬로시티 인증지역 사업계획 검토 후 지역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 슬로시티 지역 향토자원 조사 및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교육 및 협의체 운영 지원 등
 - 법적근거 : 관광기본법 제9조, 관광진흥법 제48조4항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850	1,850	1,850	150	3,850
2013				2,400	2,400	2,250	150	4,800
(증△감)				550	550	400		95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2250	2250		4,500
경기	1				165	165		330
경북	2				330	330		660
경남	1				165	165		330
충북	1				150	150		300
충남	1				165	165		330
전북	1				165	165		330
전남	4				960	960		1,920
강원	1				150	150		3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350	13,350		26,700
'12	10/10				2,100	2,100		4,200
'13	12/12				2,250	2,250		4,500
'14	12/12				3,000	3,000		6,000
'15	12/12				3,000	3,000		6,000
'16	12/12				3,000	3,000		6,0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슬로시티 관광자 원화사업지 방문 객 증가율	1	3	3	3	3	관광객 방문통계 확인	한국관광지식 정보시스템 및 지자체 관 광객 통계

< 4-2-4-1.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농촌진흥청) >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당자	행정주사보 박안나
전화번호	031-299-2678	이메일	iamkawai@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도농교류·1사1촌 운동심화를 위한 도농교류 문화운동 저변확대
(기본계획 p.48)

□ 농촌체험관광 품질관리 및 브랜드 가치 증진

- 농촌관광 활동의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 네트워크 형성 및 관광상품의 품질관리, S/W개발 등 명소·명품화
- 농촌관광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
 - * 농촌체험네트워크 및 체험프로그램 기술보급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보완

□ 학교교과과정(창의·인성교육)과 연계한 체험 학습장 조성

- 창의적 체험활동 확대에 따른 체험학습 인프라 구축 및 품격 높은 교육서비스와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농촌교육농장 육성
 - * 교육농장주 자질향상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환경 조성 등

2. 2012년 말까지 추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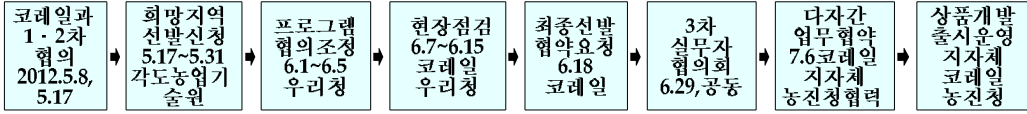
- 농촌전통테마마을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지원 : ('02~'09) 163개소
 - 농촌전통테마마을 협의회 임원 교육 및 회의(3. 7) 및 연찬회(11.22)
 - 농촌전통테마마을 평가 및 현장모니터링 분석(9~12월)
- 농촌체험활동활성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추진
 - (업무협력)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한국철도공사·8개 시군 협력

【농촌체험프로그램활성화 다자간 업무협력】

- 농촌진흥청, 한국철도공사·8개지자체(MOU체결 2012. 7. 6)협력 공정여행개발
- (한국철도공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차여행 상품 운영관리, 홍보
 - (지자체)지역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지원, 상호 홍보
 - * 경기 용인, 강원 철원, 양구, 충북 충주, 충남 홍성, 경북 김천, 경남 산청, 전남 순천

- (프로그램)우리청, 코레일, 8개 지자체 공정여행 “레일그린” 운영: 7,164명(12.31)

- ‘산골짜 옛날숨씨 여행’(김천시)
- ‘이색 맛 vs 이색체험’(용인시)
- ‘약초향기 따라 행복 따라’(산청군)
- ‘자연으로 로그인’(홍성군)
- ‘美 - 순천만 느낌여행’(순천시)
- ‘일단 와 봐유~ 봐 봐유~’(충주시)
- 청춘양구 배꼽잡는 여행’(양구군)
- ‘청정보고 DMZ체험’(철원군)



- 농촌전통테마마을 및 우수지도자 경진 및 시상(11~12) 6개마을 12명
- 농촌전통테마마을 홈페이지 개편 : 10개소(포털 1, 마을 홈페이지 9개소)
- * 홈페이지 관리자 교육(2,24, 25명), 웹진발간 12회(월 1회), Help Desk 운영
- 교육과학기술부와외의 농촌체험활성화와 농어촌교육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 마련

농촌진흥청과 교육과학기술부 간의 업무협력 체결(7.18)

○(업무협력)농촌체험관광 콘텐츠 상호활용 및 재능교류(교육기부·재능기부

- 기 개발된 농촌체험학습 콘텐츠를 학교 교육과 연계, 새로운 수요 창출
- (교과부·우리청)지방 농촌지도기관 및 교육청 연계 근거 및 제도마련
- (학교)농촌현장활용, 마을리더 또는 농장주 명예교사 위촉 등
- (농장 또는 마을)명예교사 활동 및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학교교육지원
- ※ 협력을 위한 유관기관연찬회(2.19), 상호기관 방문협약(11.12.23, 28, 2012.5.9 4.4. 4 회 시도교육청 워크샵(6.20)학교장 담당교사 워크샵 교육연계협력 특강 및 토론회(9.19)

○(후속조치) 농촌지도기관 및 시도교육청 대외협력 확산 지속추진

- 학교교원대상 농촌어메니티체험연수과정 운영 : 7.25~8.8(3기, 120명)
- 체험학습프로그램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확산, 교육계 연계협력추진 (8.13 ~계속)

<지방농촌지도기관 교육계 대외협력 현황(~ 10.20일 현재)>

업무협약체결 42건, 교원연수·팸투어 등 공동주최 57회 24,627명
학생·학교대상사업 72건 339학교, 45,755명, 1교-1촌·1농장 결연 25건 등



<협약서 조인식>



<기념촬영>



<업무협약서>

-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교육농장 육성 ('06~'11) 305농장 → ('12)52농장
 - 체험학습시설, 교육프로그램·워크북개발 및 전문능력배양교육
 - 농촌교육농장 전국협의회 임원 워크숍 및 임원회의(5.21~22)
 - ※ 경상북도농촌교육농장협의회 '2012 경북평생학습축제' 참가 홍보(10.5~7): 8시군, 32농장
 -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교육과정 운영(6.27~12.10, 4회 180명) : 기초, 심화 단계별 추진
 - 농촌교육농장 교육프로그램 경진(11~12월) : 6농장 시상, 학교교사 공동참여 유도
 - 농촌교육농장 품질관리제 시행을 위한 체계정립: 품질관리기준, 운영매뉴얼 및 훈령(안) 작성
 - * 프로그램운영 · 안전성 · 고객관리, 농장주역량 평가 등 운영 등 지표 설정
 - 학교교육과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네트워크협력추진
 - * 농촌교육농장 홍보책자 "살아숨쉬는 자연에서 배우는 농촌교육농장" 제작 : 10,000부
농촌교육농장소개, 학년별 연계 교육프로그램 소개 등 교육계 및 유관기관배부
- 우수마을 대상 농촌체험명품화 : ('12) 2년차마을 2개소(이천자채방아마을, 남사예담촌)
 - 마을자원조사 및 마을 활성화, 마을 브랜드개발, 주민역량강화, 지속가능한 경영·추진체계 구축 등
 - * 유형별 차별화를 위한 체험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보완, 품질관리 등 지원
 - * 도농교류촉진법, 농어촌체험마을사후관리지침('09)에 의거 우수마을 명소화
- 농촌체험관광 서비스 체계화 및 콘텐츠 다양화로 경쟁력 강화, 저변 확대
 -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지원('06~'12, 69개소), 지역별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기술보급('08~'12, 91개소), 농촌체험용 발효액 보급기술('10~'12, 36개소), 아메니타관광개발 지역특성화('09~'12, 17개소)
 -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협조 및 홍보(6.28~7.1, 18개 농촌전통테마마을)
 - ※ 농촌전통테마마을 및 농촌관광협의회 전시부스 홍보, 공동체험장 운영, 리후렛 및 알림장 배부
 - 청주 MBC-R "농촌테마여행" 고정코너 신설(7.28 첫방송): 주 1회(19회 진행)
 - 초·중등교사 농촌아메니티 체험연수과정 운영(7.25~8.8, 3회 120명)
 - 농촌아메니티의 개념, 농어촌 체험을 통한 학교교육 연계방안
 - 농촌체험용 발효액 기술보급 사업대상자 역량강화 연찬 교육(11.16)
 -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실천 공무원 경진 및 시상(11~12월)으로 공무원 사기진작
 - 농촌자원 콘텐츠 구축을 통한 감동 있는 농촌테마여행 10선 투어맵 제작 : 4만부
 - * 농촌체험마을(농촌관광)+농촌교육농장(체험학습)+창업사업장(생산)+농가맛집(생산,가공)등을 연계 도별 대표 '오감만족 농촌테마여행 10선' 개발

○ 지역의 농업기반과 농촌자원의 특성을 살린 어메니티 활성화(완료)

- 농촌어메니티 기반 조성 : ('10~'11) 19개소, 47억 → ('12) 6, 16
- * 지역농업특성화 시군담당자 워크숍(2. 28, 80명) 및 업무 협의회(3월, 20명)
- *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유형별 우수사례집 제작·배부(3월, 500부)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지속가능하고 품격 높은 농촌체험관광육성

- 농촌체험형 관광상품의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개발을 통한 새로운 수요 확대
- * 한국철도공사·8개지자체 농촌체험상품개발 MOU 결과 출시된 “레일그린” 상품 확산
- 농촌관광 조직 관리(농촌전통테마마을·농촌교육농장 전국협의회)
- * 수준별 교육 등 경영역량강화, 분과별 전문특기강화 : 2개회, 9개분과 520명
- 전통테마마을 품질관리(163개소) 및 ‘농촌체험명품화’(2개소)
- * 유형별 차별화를 위한 체험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보완, 품질관리 등 지원

○ 학교 교과과정(창의·인성교육)과 연계 강화

- 농촌교육농장 육성 : ('06~'12) 357농장 → ('13) 72농장
- 농촌교육농장교사 및 담당공무원 전문역량강화 : 6회, 240명
- 단계별(기초→심화→연수) : ('06~'12) 40회, 1,607명 → ('13) 6회, 240명
- 농촌교육농장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및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제 시범시행
- * 품질관리기준 지표 : 농업자원, 교육운영자,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 등

○ 농촌체험 관광서비스 체계화 및 콘텐츠 다양화

-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지원 : ('06~'12) 69개소 → ('13) 15(신규 9, 기존 6)
- * 지역협의체운영, 공동품질관리, 마케팅·관광대학, S/W개발 등
-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기술보급('08~'12) 91개소 → ('13) 10개소
- 농촌체류형 농가민박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보급: ('12) 4개소 → ('13) 10
- 농촌자원 활용 어메니티 특성화 기반조성 : ('10~'12) 25개소 → ('13) 5
- * 특성화 우수사례집 제작·배부(3월), 시군센터 워크숍(4월), 현장 기술지원(연중)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규모(사업량) : 15개소(신규 9, 기존 6)
- 지원금액 및 형태 : 1,500백만원(국비, 지방비 각 50%), 개소당 100백만원

※ 개소당 1억원씩 2년간 지원

- 지원조건

- 지역 내에 농업인이 운영하는 농촌관광 경영체가 많으며, 농업관광에 대한 지자체나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
- 농촌관광 관련 농업인 조직을 이미 조직화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금후 운영 계획이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와 도 농업기술원 내의 인력 조직 배치와 기능이 시범사업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센터 및 도원

- 지원내용

- 농산어촌체험관광지역 협의체 구성 및 one stop service 지원체계 구축
- 농촌관광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
- 농촌관광 활동의 공동 브랜드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역간 네트워크 형성 및 관광상품의 품질관리 기술 개발 등

- 법적근거: 농촌진흥법 제4조,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 제50조, 제51조, 제5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8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제25조, 농어촌정비법 제81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050				1,050		2,100
2013		750				750		1,500
(증△감)		△300				△300		△60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		750			750		1,500
경기	2		100			100		200
강원	2		100			100		200
충북	2		100			100		200
충남	3		150			150		300
전북	2		100			100		200
전남	1		50			50		100
경북	1		50			50		100
경남	1		50			50		100
제주	1		50			50		1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6		8,800			8,800		17,600
'11	21/21		1,050/1,050			1,050/1,050		2,100/2,100
'12	/21		/1,050			/1,050		/2,100
'13	/15		/1,500			/1,500		/3,400
'14	/30		/3,000			/3,000		/3,000
'15	/40		/4,000			/4,000		/4,000

나. 농촌교육농장 육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업인 자격을 갖춘 농가 또는 영농법인체
- 사업 규모(사업량) : 72농장(시군당 2 또는 4농장)
- 지원금액 및 형태 : 1,800백만원(국비, 지방비 각 50%), 농장당 25백만원
- 지원조건
 - 농업과 농촌교육농장 활동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농가(법인)
 - 체험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보유한 농가(법인)

- 지원내용 :

- 전문가 컨설팅,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워크북 제작
 - 농장교사의 운영·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 교육환경 조성 및 정비, 교육 시설 및 장비 설치, 교구·교재 및 홍보물 제작 등
- 법적근거: 농촌진흥법 제4조, 제13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활동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제50조, 제51조, 제54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8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조, 제25조, 농어촌장비법 제81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650				650		1,300
2013		900				900		1,800
(증△감)		250				250		50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2		900			900		1,800
세종	4		50			50		100
경기	8		100			100		200
강원	8		100			100		200
충북	8		100			100		200
충남	8		100			100		200
전북	8		100			100		200
전남	8		100			100		200
경북	8		100			100		200
경남	8		100			100		200
제주	4		50			50		1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72		5,900			5,900		11,800
'11	60/60		750/750			750/750		1,500
'12	/52		/650			/650		1,300
'13	/72		/1,800			/1,800		1,800
'14	/100		/2,500			/2,500		2,500
'15	/120		/3,000			/3,000		3,000

다. 농촌체험 명품화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촌전통테마마을
- 사업 규모(사업량) : 2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400백만원(국비, 지방비 각 50%), 개소당 200백만원
- 지원조건 : 우수 농촌전통테마마을로써 시도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을
- 지원내용 : 조성된 마을의 현재 수준의 진단분석을 통한 콘텐츠 보완 및 경영혁신
 - (상품혁신) 환경친화적 시설정비 마을갤러리 등 H/W, 명품체험 S/W
 - (운영체계) 커뮤니티 비즈니스체계 구축 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화
 - (인적자원) PBL 문제중심학습교육, 어메니티자원 활용 기술능력 배양
- 법적근거: 농촌진흥법 제4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무총리실 농어촌 체험마을조성 운영실태 평가결과(평가관리관-76, '09. 12. 17.)에 의거 향후 개선 조치계획 수립 시행 권고
 - ※ 기 조성된 마을에 대한 수준별 진단, 향후 차등적 지원·관리 계획 수립 시행 지시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00				200		400
2013		200				200		400
(증△감)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		200			200		400
강원	1		100			100		200
전북	1		100			100		2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4		10,400			10,400		20,800
'11	2/2		200/200			200/200		400
'12	/2		/200			/200		400
'13	/2		/200			/200		400
'14	/5		/500			/500		1,000
'15	/6		/600			/600		1,200

라.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술보급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및 규모 : 농촌전통테마마을, 10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100백만원(국비, 지방비 각 50%), 개소당 20백만원
- 지원조건 : 농촌전통테마마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사업추진 및 관리가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마을
- 지원내용 :
 - 농촌전통테마마을 사후관리에 필요한 체험학습 환경조성 및 정비
 - 체험 상품 프로그램 및 브랜드 개발, 컨설팅 지원
 -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구 및 교재, 홍보물 제작 등
- 법적근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제51조,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농촌진흥법 제1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90			90		180
2013			100			100		200
(증△감)			10			10		2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			100		100		200
경기	1			10		10		20
강원	1			10		10		20
충북	1			10		10		20
충남	1			10		10		20
전북	1			10		10		20
전남	1			10		10		20
경북	1			10		10		20
경남	2			20		20		40
제주	1			10		10		2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0			1,000		1,000		2,000
'11	22/22			220/220		220/220		440
'12	/9			/90		/90		180
'13	/10			/100		/100		200
'14	/25			/250		/250		500
'15	/24			/240		/240		480

마. 농촌체류형 민박기술 보급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민박등록이 되어 있거나 기존 농가민박 운영자
- 사업 규모(사업량) : 10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500백만원(국비, 지방비 각 50%), 개소당 50백만원
- 지원조건 : 농어촌체험마을에 위치하여 농가민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농가
- 지원내용 :
 - 농가민박품질인증 평가지표 적용을 통한 고품격 농촌공간조성
 - 주변환경, 서비스, 시설수준 등 기반시설 정비
 - 농가민박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숙박 여건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

- 법적근거: 농촌진흥법 제13조,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제51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5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00			100		200
2013			250			250		500
(증△감)			150			150		30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250		250		500
경기	1			25		25		50
강원	2			50		50		100
충북	1			25		25		50
충남	1			25		25		50
전북	1			25		25		50
전남	1			25		25		50
경북	1			25		25		50
경남	1			25		25		50
제주	1			25		25		5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0			1,000		1,000		2,000
'11								
'12	/4			/90		/90		180
'13	/20			/200		/200		400
'14	/30			/250		/250		500
'15	/40			/240		/240		480

바. 어메니티 유형 지역농업특성화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경영체 등
- 사업 규모(사업량) : 5개소(신규 3, 기존 2)
- 지원금액 및 형태 : 1,971백만원(국비, 지방비 각 50%), 개소당 국비 240~312백만원
- 지원조건 : 시군별 어메니티 특성화를 위한 추진 의욕이 강한 지역으로 시군별 사업계획서를 1, 2차 평가를 통해 선정
- 지원내용
 - 지역 단위 농산업 관광 인프라(마을, 농가, 마을리더 등) 조성
 - 중앙, 도, 시군 전문가 네트워크로 컨설팅 협력 클러스터 구축 지원
 - 농촌관광 핵심리더 양성 및 시군간 관광 네트워크 구성 등
- 법적근거: 농촌진흥법 제4조,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 제50조, 제51조, 제5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8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제25조, 농어촌정비법 제81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589			1,589	681		2,270
2013		1,380			1,380	591		1,971
(증△감)		△209			△209	△90		△299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80			591		1,971
경기	2		588			252		840
강원	1		312			134		446
경북	1		240			103		343
인천	1		240			103		343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9		5,076			2,175		17,600
'11	8/8		2,107/2,107			903		3,010
'12	/6		/1,589			681		2,270
'13	/5		/1,380			591		1,971
'14								
'15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수혜자 만족도 (%)	90.1/78	89.9/78	89.1/79	79	80	3개 분야별 만족도 조사결과 (꺾 척도)를 백분율로 환산한 평균값 - 대상자만족도 당해년도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사업대상자) - 방문객만족도 당해년도 농촌체험 방문객) - 교육생만족도 당해년도 농촌교육 농장 교사양성과정 교육생)	조사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

< 4-2-4-2 : 초·중·고등학교의 농어촌 체험·교류 확대(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어촌산업팀	담당자	박재화
전화번호	044-201-1590	이메일	nanaimo@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도농교류·1사1촌운동 심화를 위한 도농교류 문화운동 저변확대(기본계획 p.48)

□ 초·중·고등학교의 농어촌 체험·교류 사업 확대

- 도시학생이 한 학기 이상 농어촌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농어촌 유학제도 활성화
 - 유학프로그램·매뉴얼개발과 시범사업 실시('10) 후 단계적으로 확대
 - * 유학센터 대표·지자체·교육청·학교 등이 참여하는 '가칭'농어촌 유학 추진단 구성
- 농어촌체험 시범학교 '팜 스쿨(Farm-School)' 운영('10년)
 - 도시학교와 농어촌체험마을 간의 1교1촌 결연을 맺어, 초등교과 과정과 연계된 농어촌체험학습 운영
 - * (사례) 서울 당현초등학교와 화천군 토고미 마을
-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간 농어촌 현장체험교육 공동협력추진 확대
 - * '충남교육청-서천군'은 농어촌현장체험교육을 위한 협약을 체결('09.7)
- 초등학교 기간 중 최소 1회, 3~5일간 농어촌 장기 체류형 체험교육을 유도하는 장기간 교류사업 추진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12년도 농어촌 유학사업 추진
 - 기본 계획 수립, 유학센터 7개소 지원
 - * 사업계획서 및 현장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개소당 15~30백만원)
 - 농어촌유학 활성화 워크숍 개최(10.12~13, 전북 장수, 126명 참석)
 - 농촌유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및 일본 산촌유학 관계자의 일본 산촌 유학과 지역발전과의 관계 등 강의
 - 농촌유학 사례 발표 3건, 종합 토론회, '13년도 농어촌유학 지원사업 추진 방향 논의 등

- '12년도 팜스쿨 사업 완료
 - 교과부와의 협조를 통해 각 시도 교육청에서 대상학교 30개교 선정('12.3월)
 - 학교 수요에 맞는 체험마을(30개소)을 지자체 추천과 심사를 통해 선정('12.4월)
 - 사업설명회 개최('12.4월)
 - 학교별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및 보조금 지급('12.4월, 1교당 10백만원)
 - 팜스쿨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7~8월)
 - '12 팜스쿨 사업 최종평가('12.11월)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유학 지원 사업
 - 예산 지원체제 변경 : ('10~'12) 민간경상보조 → ('13)자치단체경상보조 (국비 5 : 지방비 5)
 - 지원예산 확대 : ('10~'12) 1~2억원 → ('13) 6.4억원
 - * 농어촌유학센터사업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촌 유학법인체에 지원
- 팜스쿨 사업을 도농교류 협력사업과 통합 운영
 - 청소년들의 농어촌체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팜스쿨 사업을 도농교류 협력사업과 통한 운영
 - 지원대상 학교를 기존 30개에서 50개로 확대('13년)
- '13년도 도농교류 협력사업 추진
 - 시행계획 공고('12.12월)
 - 지원대상 단체 선정공모 및 전문가심사 선정결과 통보(1월)
 - '13년도 도농교류협력사업 지원대상 단체 워크숍 개최(2월)
 - 도농교류협력사업 중간점검 실태조사(6월)
 - 도농교류 협력사업 정산 및 종합평가(11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초·중·고등학교의 농어촌 체험·교류확대(농어촌 유학)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1년 이상 농어촌유학 운영실적과 경험이 있는 농어촌 유학센터 또는 법인격을 갖춘 단체

- 지원금액 및 형태 : 320백만원(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내용 :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농어촌 유학 활동가 인건비, 농어촌 유학 홍보 등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제36조(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37조(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60				160	-		160
2013	320				320	320		640
(증△감)	160				160	320		48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7	160				-		160
'13	16	320				320		640
'14	21	420				420		840
'15	21	420				420		840
'16	25	500				500		1,000

나. 초·중·고등학교의 농어촌 체험·교류확대(도농교류협력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초등학교, 민간단체 및 체험마을
- 지원금액 및 형태 : ('13) 1,978백만원(민간경상보조, 농특) 중 초등학교 지원 5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 70%, 참가자부담 30%
- 지원내용 : 농어촌 체험마을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제36조(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37조(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300							300
2013	500							500
(증△감)	200							2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0	2,300						2,300
'12	30	300						300
'13	50	500						500
'14	50	500						500
'15	50	500						500
'16	50	500						5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 유학 지원 개소 수	3	5	5	5	5	지원 개소 수	내부자료
초등학교 농어촌체 협사업 지원개소 수	20	20	30	50	50	참여학교 수	내부자료

5

문화·여가여건 개선

5. 문화·여가여건 개선

5-1. 생활친화형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1) 개관

□ '13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농어촌지역에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농어촌공공도서관 10개관, 지방테마과학관 4개소 건립 지원
- 농어촌지역의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5개소(개소당 6억원) 조성 지원
-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15개소) 지원
 - 서가 열람공간 모임공간 등을 포함한 통합공간 조성 자료, PC·프린터 등 적정 소요 물자 구입경비 지원
-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전문가 및 문화기반시설 관계자가 참여하는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지역내 정책현안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예산 내역

<2013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0,005			10,005	5,631		15,636
지방테마과학관 건립 지원				1,400	1,400	2,272		3,672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				3,000		750		3,750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			932		932	541		1,473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 구축			408		408	408		816
합계		10,005	1,340	4,400	12,745	9,602		25,347

< 5-1-1-1.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도서관진흥과	담당자	최명옥
전화번호	02-3704-2758	이메일	ogii@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촌 공공도서관, 테마과학관 등 정보인프라 구축(기본계획 p.52)

□ 읍·면단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을 '13년까지 총 260관으로 확대(현재 243관)하여
도·농간 정보인프라 격차 완화
- * '13년까지 전국에 OECD 국가 평균 도서관 인프라(인구 5만명 당 1관) 수준인 900개
공공도서관 건립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지원('12. 1월 ~ 12월)
 - 6개 시도, 11개관, 5,995백만원
 - ※ '94년부터 '12년까지 136개관, 1,206억원 지원(개관 : '12년까지 276개관)
- 신규 건립 예정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12. 3월 ~ 12월)
 - 전문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설계·시공·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대구시 달성군 달성군립도서관 등 읍면지역 9개관)

3. 2013년도 추진 계획

- '13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및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계획 수립·
통보('13. 1월)
- 국고보조금 교부('13. 2~12월)
-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 신규 건립 예정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실시('13년 상반기)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 사업 규모(사업량) : 10,005백만원, 5개 시·도 10개관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조건 : 총 건립비의 80%까지 국고 지원(최대 16억원), 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내용 : 읍면지역 건립하는 공공도서관에 국고 지원
-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설치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5,995				4,286		10,281
2013		10,005				5,631		15,636
(증△감)		4,010				1,345		5,355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10,005			5,631		15,636
경기	2		3,100			1,700		4,800
강원	2		2,000			790		2,790
충남	1		130			525		655
전북	2		2,120			662		2,782
전남	3		2,655			1,954		4,609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9		44,800			34,817		79,617
'12	11		5,995			4,286		10,281
'13	10		10,005			5,631		15,636
'14	6		9,600			8,300		17,900
'15	6		9,600			8,300		17,900
'16	6		9,600			8,300		17,900

※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세부 사업 내에 통합되어 있어 국가에서 사업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 공공도서관 개관수(관)	15	7	8	6	6	읍면지역 공공도서관 신규개관 수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 전화조사

※ 공공도서관 건립은 평균 2~3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원관수와 신규 개관수에 차이가 있음

< 5-1-1-2. 지방테마과학관 건립 지원(미래창조과학부) >

담당부서	과기인재기반과	담당자	김인
전화번호	02-2110-2565	이메일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촌 공공도서관, 테마과학관 등 정보인프라 구축 (기본계획 p.52)

□ 과학·생태·역사 등 테마별 과학관 건립 지원

- 우주·천문, 조류·곤충·공룡·갯벌, 역사 인물 등의 테마를 선정하여 과학·문화 정보접근 및 생태체험기회 확대
- 지자체 수요 및 준비상황 등을 고려, 현행 13개인 과학관을 '14년 34개 이상으로 확충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제2차 과학관 육성기본계획('09~'13)」을 수립하고, 전국의 과학관의 수 확대 추진
 - 과학문화시설이 부족한 지방에 테마과학관 건립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과학문화 체험 기회 확대
 - '12.12월 말 기준, 전국의 과학관 수는 104개이며, 이 중 공립과학관은 66개로 크게 증가함('09년, 49개)
 - 정부에서 지방과학문화시설확충사업을 통해 건립·지원한 테마과학관은 39개이며, 이 중 28개가 개관
 - '12년부터 신규 과학관 건립은 최소화하도록 하고, 신규 사업(1개), 계속 사업(5개)에 20억원 지원
- ※ 신규 사업 : 안성, 계속 사업 : 장흥, 영주, 포천, 거창, 순창

< 지방테마과학관 지원 현황('04 ~ '12) >

연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지원금액	34억원	44억원	60억원	54억원	40억원	39억원	40억원	30억원	20억원
지원수	계	6	10	10	11	12	10	9	6
	신규	6	6	7	5	6	3	2	1
	계속	-	4	3	6	6	7	7	5

3. 2013년도 추진 계획

- 건립 중인 테마과학관의 원활한 개관 지원
 - 영주, 포천, 거창, 순창 등 4개 과학관에 대해 국비 14억원 지원
 - ※ 심의위원회를 구성, 추진현황 및 '13년 계획 등을 점검·평가하고 최종 지원 규모 결정
 - 국비 지원은 종료되었으나, 개관하지 못한 과학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컨설팅
 - ※ 화천, 목포, 완주 등 7개 과학관으로 '13년 내 개관 목표
- 운영 중인 공·사립과학관의 운영 활성화 지원
 - '13년부터 신규 과학관 건립 지원 대신 과학관 간 교류·협력 체계 구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제3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14~'18)」 수립 추진

4. 관련 사업 내용

가. 지방테마과학관 건립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인구 20만 이하의 기초지자체
 - ※ 과학관이나 천문대가 없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지역별·시설별 균형 고려, 주변관광·문화시설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관람객 유치가 용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 선정
 - 사업 규모(사업량) : '13년 예산(기금) 14억원(계속 4개)
 - 지원금액 및 형태 :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 이내(2~3년간 단계적 지원)
 - 지원조건 : 지방자치단체 매칭 50% 이상
 - 지원내용 : 지방테마과학관 건립
 - 법적근거 : 과학관육성법 제4조의2, 제17조,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제30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	-	-	2,000	2,000	7,500		9,500
2013	-	-	-	1,400	1,400	2,272		3,672
(증△감)	-	-	-	△600	△600	△5,228		△5,828

* '13년 지방비는 계획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개	-	-	-	1,400	2,272	-	3,672
경기	1개	-	-	-	200	1,072	-	1,272
전북	1개	-	-	-	500	200	-	700
경북	1개	-	-	-	200	-	-	200
경남	1개	-	-	-	500	1,000	-	1,500

* 지방비는 계획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6/6	-	-	-	2,000/2,000	7,500	-	9,500
'13	4	-	-	-	1,400	2,272	-	3,672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테마별 과학관 확충(개)	21	24	28	33	34	개관운영중인 과학관	과학관 등록 확인

< 5-1-2-1.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담당자	홍의석
전화번호	02-3704-9857	이메일	kkakkong@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농어촌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기본계획 p.52)

□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

- 학교, 등산로, 약수터, 마을 공터 등에 주민이 선호하는 시설 위주 설치
 - * 학교 내 야간체육시설, 농구장·게이트볼장 등 간이운동시설, 휴게시설,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 및 조깅로 등

□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

- 유사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목적 체육·문화시설 설치
 - 레크레이션 센터, 다목적 구장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로 지원
 - * '10년 7개소('06~'10년 간 총 35개소) 설치 후 사업규모 확대 검토

2. 2012년 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지원사업 선정('12. 2월)
 - 개소당 6억 정액지원 * 5개소 선정
- “농어촌복합체육시설” 효과성 분석을 통한 향후 지원 방향 설정(4월)
 - 수혜기관 필요성 및 이용자 타당성 분석을 통한 사업 지속여부 결정
 - 의견수렴을 통한 신규지원방향 모색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지원사업 선정('13. 2월)
 - 개소당 6억 정액지원 * 5개소 선정 예정
- “농어촌복합체육시설” 효과성 분석을 통한 향후 지원 방향 설정(4월)
 - 수혜기관 필요성 및 이용자 타당성 분석을 통한 사업 지속여부 결정
 - 의견수렴을 통한 신규지원방향 모색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기초자치단체
- 사업 규모(사업량) : 5개소 지원('12년도 까지 43개소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30억원
- 지원조건 : 자치단체자본보조(개소당 6억원 정액지원)
- 지원내용 : 공공 체육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의 읍·면 단위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을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35조
·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이 거주지 인근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3,000		750		3,750
2013				3,000		750		3,750
(증△감)				-		-		-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				3,000	750		3,750
전국	6				3,000	750		3,750

※ 공모사업으로 '13년 2월 중 선정예정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25				15,000/15,000	3,750/ 3,750		18,750/ 18,750
'12	5/5				3,000/3,000	750/750		3,750/ 3,750
'13	5/5				3,000/3,000	750/750		3,750/ 3,750
'14	5/5				3,000/3,000	750/750		3,750/ 3,750
'15	5/5				3,000/3,000	750/750		3,750/ 3,750
'16	5/5				3,000/3,000	750/750		3,750/ 3,75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지원 개소수 (개소)	5	5	5	5	5	지원 결정 사업 수	문화부의 지원 결정 내역

< 5-1-3-1.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도서관진흥과	담당자	김정희
전화번호	02-3704-2739	이메일	kid940331@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지원(기본계획 p.53)

□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

-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문화취약지역에 유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 조성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작은도서관 154개관 조성('04~'12년)
 - '13년 15개관(932백만원) 조성 계획

3. 2013년도 추진 계획

- '13년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계획 수립('12. 9월)
-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공모('12. 10~11월)
- 농어촌 작은도서관 선정 통보('12. 12월)
- 국고보조금 교부('13. 3월)
-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시행('12. 3~1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작은도서관 조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 사업 규모(사업량) : 15개관 내외
 - 지원금액 및 형태 : 최대 50~70백만원 지원(지자체자본보조)
 - * 지원금액은 전용면적 33㎡당 25백만원 산정(최대 40평/1억)하여 총액을 산출하며 매칭비율을 적용
 - 지원조건 : 국비 50% 지원(재정자립도 30%미만 70% 지원)

- 지원내용 : 서가 열람공간 모임공간 등을 포함한 통합공간 조성 및 자료, PC, 프린터 등 적정 소요 물자 구입경비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143		1,143	687		1,830
2013			932		932	541		1,473
(증△감)			△211		△211	△146		△357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관)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			932		571		
울산	1			30		30		
세종	1			70		30		
경기	2			117		50		
강원	2			140		190		
충북	1			70		30		
충남	2			114		50		
전북	3			210		90		
전남	1			41		41		
경북	2			140		6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7			3,635		2,038		5,673
'12	22			1,143		687		1830
'13	15			932		571		1503
'14	10			520		260		780
'15	10			520		260		780
'16	10			520		260		78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 작은도서관 개관 수	14	19	22	15	10	읍면지역 작은도서관 신규 개관 수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 문서

< 5-1-4-1.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 구축(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지역민족문화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번호	02-3704-9454	이메일	skydreami@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 구축(기본계획 p.53)

권역별 지역문화서비스센터*를 활용하여 농어촌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선정 및 컨설팅 제공

- 시설, 인력, 프로그램을 연계, 문화컨텐츠 및 여가활용 정보를 집적하여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 전주권 문화정보114, 원주·횡성 문화정보센터, 경북북부권문화정보센터 운영 중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제도 활성화

- 지역문화정책, 지역문화시설의 운영개선, 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 ('09년 17개 시군 컨설팅 지원)

* 예) 보성군-한영대 : 보성분청차사발의 확산 및 보성녹차와 연계한 문화상품 개발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전국 8개 시·도, 총 13개 컨설팅 과제 선정·수행('12년, 429백만원 지원)
- 지역문화재단 건립 증가 추세 반영 주관 기관을 지역대학에서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등 범위 확대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7개 시·도, 14개 과제)
- 추진일정
 - 신규과제 착수 보고 및 국고보조금 교부 : '13. 1~2월
 - 중간평가 워크숍, '14년 과제 공모 및 선정 : '13. 7~10월
 - 최종평가 워크숍 및 인센티브 지원 결정 : '13. 11~1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 구축(지역문화컨설팅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자체(지역문화재단, 지역 대학 등)
- 사업 규모(사업량) : 7개 시·도, 14개 과제
- 지원금액 및 형태 : 4.08억원/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정률지원(5:5)
- 지원내용 :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전문가 및 문화 기반시설 관계자가 참여하는 컨설팅팀 구성, 지역내 정책현안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
- 법적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429		429	429		858
2013			408		408	408		816
(증△감)			△21		△21	△21		△42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			408		408		816
광주	1			25		25		50
경기	4			123.5		123.5		247
강원도	2			80		80		160
충남	3			85.5		85.5		171
전북	2			50		50		100
경북	1			21		21		42
제주	1			23		23		46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13/12			429/429		429		858
'13	14			408		408		816
'14	12			408		408		816
'15	12			408		408		816
'16	12			408		408		816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결과 활용도(점)	81	81	82	81	81	민간평가위원의 활용도평가 (\sum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 척도)}x20/전체응답자)	평가위원의 평가결과 조사

5-2. 농어촌 주민 문화향유 지원

(1) 개관

□ '13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국립예술단체의 우수공연 및 지역맞춤 프로그램을 소외지역 문예회관(70개소)에 공연하는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으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
- 전국 보육원, 저소득층 결손·조손가정 등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으로 안정적 독서기반 제공과 정보문화 격차 해소
- 어르신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365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157개), 찾아가는 어르신문화학교(37개),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62개), 어르신 문화동아리 활성화(35개), 생활문화전승(14개)
-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있는 관광축제 45개 내외를 등급에 따라 구분, 차등 지원하여 국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 및 농어민 소득 창출

□ 예산 내역

<2013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2,883		2,883			2,883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운영			937		937			937
찾아가는 도서관			733		733			733
찾아가는 박물관			119		119			119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85		85			85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4,053		4,053			4,053
문화나눔				34,946	34,946	14,400		49,346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1,180	1,180			1,180
문화 관광축제 육성				6,700	6,700	6,700		13,400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연계	380			400	780		300	1,080
합계	380		7,873	43,226	51,479	21,100	300	72,879

< 5-2-1-1.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공연전통예술과	담당자	황순헌
전화번호	02-3704-9507	이메일	heart2@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1)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기본계획 p.54)</p> <p>□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지역 문예회관을 거점으로 국립극단 등 국립예술단체('09년, 11개 단체 참여)의 우수프로그램 순회 활동 강화 ○ 우수 민간예술단체를 선정, 농어촌에 파견 또는 순회공연 등을 통해 우수 공연·전시프로그램 관람기회 제공
--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시/군	시 : 5지역 군 : 15지역	시 : 32지역 시 : 28지역	시 : 21지역 군 : 29지역	시 : 30지역 군 : 49지역	시 : 30지역 군 : 44지역
참여단체	11개 단체	13개 단체	10개 단체	15개 단체	8개 단체
문예회관	20개	61개	51개	80개	75
공연횟수	25회	90회	123회	160회	153
관객수	12,000명	53,000명	55,000명	67,068명	65,920명
예산규모 (백만원)	550	2,000	2,500	3,375	3,035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사업기본방향 : 재정자립도 40% 미만 지역에 위치한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국립예술단체의 우수레퍼토리 및 지역맞춤 프로그램을 소외지역 문예회관과 연계소외시설을 대상으로 공연 실시

- 소요예산 : 2,883백만원(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 사업주관 : (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추진일정
 - 사업기본계획 수립 (2월 중)
 - 국립예술단체 프로그램 협의 및 문예회관 대상 사업공지 (3월 중)
 - 문예회관 사업 신청 및 배정(4월 중)
 - 사업 실행 및 평가(4월~1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재정자립도 40%미만지역 문예회관
 - 사업 규모(사업량) : 9개 국립예술단체 참여 70개 지역 134회 공연
 - 지원금액 및 형태 : 공연당 40~80백만원 지원(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지원내용 : 국립예술단체의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전국 문예회관 및 연계된 소외시설 등을 통한 공연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소외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 법적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3,035		3,035			3,035
2013			2,883		2,883			2,883
(증△감)			△152		△152			△152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공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 단계에서 시도별 배분내역 파악 불가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6.84				156.84
'12	75개 지역 (65,920명)			30.35				30.35
'13	75개 지역 (66,000명)			28.83				28.83
'14	80개 지역 (68,000명)			28.83				28.83
'15	80개 지역 (70,000명)			28.83				28.83
'16	100개 지역 (100,000명)			40.00				40.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수혜자수	55	67천명	66천명	66천명	68천명	관람객 조사	문예회관 및 참여단체 결과보고

< 5-2-1-2. 찾아가는도서관, 박물관 운영(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담당자	김영란
	국립중앙박물관		양평석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김형준
전화번호	02-3413-4756	이메일	keaijin@korea.kr
	02-2077-9304		yangps62@korea.kr
	02-3704-4522		csc0189@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기본계획 p.54)

□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 확대

* ('09) 도서관(40개관, 24회), 박물관(77회), 미술관(10회)

2. 2012년 말까지 추진 실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개요

- 추진기간 : 2012. 2 ~ 11(10개월)

- 내 용 :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저소득층 결손·조손가정 어린이, 보육원 어린이 등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독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지원

- 추진실적 : 4,320회, 135개 기관, 2,700명 참여

- 지원대상 : 전국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등 소외계층 어린이

- 지원내용 : 도서지원 총4,810종 43,835책과 독서프로그램 4,320회 운영, 책읽기, 동화구연, 독후활동 등 독서프로그램 운영

○ 주요 성과

- 책읽기 프로그램을 통한 어린이들의 변화

· '책읽기', '책읽어주기' 독서프로그램 참여로 어린이들의 독서습관 형성 및 책에 대한 관심 증가, 도서관 방문 횟수 증가

· 어린이들의 심적 안정감 및 발표력 향상

-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에서 사회성, 자아존중감, 문해력 향상
- 어린이들이 개인도서를 소장하게 됨으로써 책과의 친밀감 형성
- 보육원 등 참여기관의 변화
 - 보육원 등 기관에 도서관이 생기고, 지역민들과의 유대관계 형성
 - 기관의 도서관 활성화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 제공
- 공공도서관 등 참여기관의 변화
 -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 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관심 증가, 지역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
 - 지역의 보도 자료를 활용하여 책읽기 사업에 대해 홍보

< 국립중앙박물관 >

- 추진기간: 2012. 04. 06~11 .25
- 추진실적: 80회, 28개 지역(장소)), 37,163명 참여
- 2012년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결과 현황

연번	지역명	행사 장소(보명)	운영기간	참여자	비고
1	용산구	용산시립청소년회관	04.06(금)~07(토)/2일	1,480	
2	달성군	강정고령보문화관	04.21(토)~22(일)/2일	1,500	
3	나주시	죽산보홍보관	04.28(토)~29(일)/2일	850	
4	여주군	한강문화관	05.12(토)~13(일)/2일	1,600	
5	공주시	공주보홍보관	05.19(토)~20(일)/2일	1,100	
6	울산시	태화강둔치공원	06.09(토)~10(일)/2일	1,800	
7	거제시	해양문화전시관	06.16(토)~17(일)/2일	1,650	
8	여주군	이포보홍보관	06.23(토)~24(일)/2일	1,550	
9	연천군	석장리미술관	06.30(토)~7.1(일)/2일	102	
10	달성군	달성보홍보관	07.07(토)~08(일)/2일	1,450	
11	나주시	영산강문화관	07.14(토)~15(일)/2일	1,200	
12	부산시	영화의 전당	07.21(토)~22(일)/2일	2,021	
13	여주시	흥천친수공원	07.27(금) / 1일	670	
14	부여군	금강문화관	07.28(토)~29(일)/2일	1,230	
15	부산시	을숙도문화관	08.03(금)~05(일)/3일	1,120	
16	여주군	여주보홍보관	08.17(금)~19(일)/3일	1,350	
17	대전시	대전엑스포공원	08.24(금)~25(토)/2일	820	
18	세종시	세종보홍보관	08.26(일)~27(월)/2일	260	
19	구미시	구미보홍보관	09.01(토)~9.2(일)/2일	890	
20	여주군	한강문화관	09.07(금)~09(일)/3일	1,150	
21	상주시	상주보홍보관	09.14(금) / 1일	300	
22	의성군	낙단보홍보관	09.15(토)~16(일)/2일	850	
23	나주시	영산강문화관	09.22(토)~23(일)/2일	1,570	
24	안동시	시립민속박물관	10.06(토)~07(일)/2일	1,205	
25	부산시	을숙도문화관	10.12(금)~13(토)/2일	240	
26	함안군	함안창녕보홍보관	10.14(일) / 1일	120	
27	전주시	전주월드컵경기장	10.18(목)~20(토)/3일	2,430	
28	나주시	죽산보홍보관	10.26(금) / 1일	135	
29		농업박람회장	10.27(토)~28(일)/2일	1,300	
30	달성군	강정고령보문화관	11.03(토)~04(일)/2일	1,520	
31	창녕군	창녕합천보홍보관	11.09(금) / 1일	150	
32	진주시	진주종합경기장	11.10(토)~11(일)/2일	1,700	
33	칠곡군	칠곡보홍보관	11.17(토)~18(일)/2일	950	
34	부여군	금강문화관	11.24(토)~25(일)/2일	900	
28개 지역(장소), 67회, 37,163명 참여					

< 국립민속박물관 >

○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교육기간 : 2012. 3. 20 ~ 12. 7
- 운영기관 및 인원 : 전국 초등학교, 도서관 총 54개 기관, 5,217명 참여
- 내용 : 다문화꾸러미 체험, 세계의 민속악가악기야 안녕? 전시 관람 및 관련 교육

<참가학교 및 인원>

차수	교육일	지역	학교	참여인원 (단위:명)
1차	3.20(화)	충북 괴산	보광초등학교	106
2차	3.21(수)	충북 청원	강내초등학교	104
3차	3.22(목)	충북 옥천	증약초등학교	69
4차	3.28(수)	경남 남해	이동초등학교	95
5차	3.29(목)	경남 통영	산양초등학교	109
6차	3.30(금)	경남 고성	동해초등학교	53
7차	4.4(수)	충남 예산	용동초등학교	59
8차	4.5(목)	충남 천안	천동초등학교	69
9차	4.6(금)	경기 안성	마전초등학교	89
10차	4.25(수)	충북 청원	상봉초등학교	102
11차	4.26(목)	충북 증평	도안초등학교	91
12차	4.27(금)	충북 괴산	칠성초등학교	101
13차	5.9(수)	경북 문경	산북초등학교	95
14차	5.10(목)	경북 포항	기계초등학교	167
15차	5.11(금)	경북 봉화	물야초등학교	97
16차	5.23(수)	충북 음성	부윤초등학교	111
17차	5.24(목)	충북 옥천	청산초등학교	112
18차	5.25(금)	충북 음성	맹동초등학교	110
19차	6.13(수)	충남 논산	황화초등학교	68
20차	6.14(목)	충남 공주	효포초등학교	80
21차	6.15(금)	경기 화성	장안초 석포분교	60
22차	6.27(수)	경기 포천	관인초등학교	83
23차	6.28(목)	경기 포천	노곡초등학교	115
24차	6.29(금)	경기 연천	화진초등학교	60
25차	7.4(수)	경남 의령	용덕초등학교	53
26차	7.5(목)	경남 창녕	장천초등학교	56
27차	7.6(금)	경남 합천	쌍채·덕곡초등학교	38
28차	7.11(수)	충북 영동	추풍령초등학교	93
29차	7.12(목)	충북 충주	단월초등학교	95
30차	7.13(금)	충북 충주	엄정초등학교	97
31차	8.7(화)	충북 제천	제천 기적의도서관	189
32차	8.8(수)	충북 제천	시립도서관	235
33차	8.9(목)	충북 증평	증평도서관	135

34차	8.21(화)	경남 창원	의창도서관	212
35차	8.22(수)	경남 창원	마산도서관	196
36차	8.23(목)	경남 통영	통영도서관	168
37차	8.29(수)	충북 제천	덕산초등학교	89
38차	8.30(목)	충북 제천	송학초등학교	85
39차	8.31(금)	충북 단양	영춘초등학교	78
40차	9.12(수)	전북 임실	마암초등학교	84
41차	9.13(목)	전북 익산	왕궁초등학교	84
42차	9.14(금)	전북 익산	용안·용북·용남초등학교	95
43차	11.7(수)	충북 진천	학성초등학교	84
44차	11.8(목)	충북 옥천	안남초등학교	48
45차	11.9(금)	충북 진천	문백초등학교	92
46차	11.21(수)	경북 예천	남부초등학교	82
47차	11.22(목)	경북 안동	북후초등학교	67
48차	11.23(금)	경북 영덕	원황초등학교	51
49차	11.28(수)	충북 괴산	문광초등학교	65
50차	11.29(목)	충북 충주	수회초등학교	91
51차	11.30(금)	충북 청원	동화초등학교	85
52차	12.5(수)	경남 합양	수동초등학교	81
53차	12.6(목)	경남 양산	용연초등학교	91
54차	12.7(금)	경남 거제	송정초등학교	93

※ 지역별 운영 횟수

충북	경남	경북	충남	경기	전북
24	12	6	4	5	3

※'2012 충북민속문화의해' 사업과 연계하여 충북 지역 초등학교에 집중함

3. 2013년도 추진 계획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사업기간 : 2013년 2월~11월
- 사업횟수 : 총 4,320회(135개관/각32회 독서프로그램운영)
- 사업대상 : 전국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등 소외계층 어린이
- 사업내용 :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찾아가 책읽기 등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이용의 활성화 및 독서습관 형성

○ 사업추진체계

- 절차 :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 운영도서관 공모 ('13.1월) → 운영도서관 선정('13.2월) → 전국 보육원 및 지역아동센터 등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지원('12.2월~11월) → 운영 평가('12.12월)

< 국립중앙박물관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국립중앙박물관
- 사업추진절차
 - 중앙박물관: 계획 수립 · 확정 - 사업 운영 - 사업 평가

○ 사업추진 일정

- 운영기간: '13. 5~12월(8개월)
- 운영계획: 16회, 640명

< 국립민속박물관 >

가.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 사업기간 : 2013년 2~11월
- 사업횟수 : 총 60회(예정)
- 대상 : 지역 초등학교 1~6학년
- 사업추진체계
 - 운영계획안 보고('13.1월) → 상반기 운영 기관 신청 접수 및 선정('13.2월) →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13.2~7월) → 하반기 운영 기관 신청 접수 및 선정('13.6월) →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13.8~12월)

4. 관련 사업 내용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가. 찾아가는 도서관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전국 보육원 및 지역아동센터 등 소외계층어린이 대상
- 사업 규모(사업량) : 747억원, 전국 135개관 지원(관당 464만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보조금
- 지원조건 : 국비 100%
- 지원내용 :
 - 책 크게 읽어주기, 동화구연·독후활동 등 독서프로그램 4,320회 운영 등
 - 우수 신간 어린이도서 지원 : 총 40,500책(1개관 300책)
- 법적근거 :
 - 도서관법 제17조(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제19조(업무) ①항 제8호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진흥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 도서관법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③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시행령 제12조(독서진흥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제2호 제21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 도서관법시행령 제21조(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제4호 농산어촌의 주민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747		747			747
2013			733		733			733
(증△감)			△14		△14			△14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2,700명/135개관			747				747
'13	2,700명/135개관			733				733
'14	2,700명/135개관			733				733
'15	2,700명/135개관			733				733
'16	2,700명/135개관			733				733

< 국립중앙박물관 >

가. '모셔오는 박물관' 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불우청소년, 다문화가족 등
- 사업 규모(사업량) : 16회(2회/월)
- 지원금액 및 형태 : 119,812천원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전액국고
- 사업 주요내용
 - 지자체 및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대상자 선정
 - 선정된 대상자를 박물관차량으로 직접 모시고 박물관 방문
 - 박물관 견학 및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체험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	소계			
2012			179		179			179
2013			119		119			119
(증△감)			△60		△60			△6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해당사항 없음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12	37,163명, 28개소			179				
'13	640명, 16개소			119				
'14	800명, 20개소			157				
'15	960명, 24개소			173				
'16	1,120명, 28개소			190				

< 국립민속박물관 >

가.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역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기관
- 사업 규모(사업량) : 연 60회, 5,40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85,000천원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100%
- 지원내용 :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버스 전시 관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법적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제10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80		80			80
2013			85		85			85
(증△감)			5		5			5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60/54			80/80				
'13	62			85				
'14	64			90				
'15	66			95				
'16	68			95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지원도서관수	75	90	135	135	135	운영계획서, 성과실적	공문
	참여어린이수	1500	1800	2700	2700	2700	참가자 통계	자체통계
국립중앙 박물관	횟 수	71회	65회	67회	16회	20회	1회(1일)×운영일수	실 운영일
	참가인원(명)	39,946	40,000	37,163	640	800	회당 실참여 인원	회당 실참여 인원 합산
국립민속 박물관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참여자 수	2,352	4,855	5,217	5,400	5,500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참여자 수 합계	박물관 참여자 수

< 5-2-1-3. 지방문화원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지역민족문화과	담당자	임현정
전화번호	02-3704-9435	이메일	hylim8@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1)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기본계획 p.54)</p> <p>□ 지방문화원을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문화활동의 거점기관으로 활성화</p> <p>○ 은퇴 및 귀향전문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향토문화 발전과 청소년 창의성 계발에 기여토록 운영</p> <p>- 역사문화유적탐방,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향토문화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 문화활동 등 지원 ('09년 150개원)</p> <p>* 프로그램 수/예산 : ('09) 137개/19억원 → ('10) 150/23 → ('14)170/25</p>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사업추진기간 : 2012. 1 ~ 12월
- 진행상황 : 계속
- 추진실적 :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341개 프로그램)
 -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157개), 찾아가는 어르신문화학교(37개),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62개), 생활문화전승프로그램(14개), 어르신 문화동아리(35개), 어르신 문화축제(6개), 어르신 신바람 놀이문화 프로그램(29개 마을) 등 지원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추진일정
 - 2013년 사업계획 확정 및 예산교부(1월)
 - 사업 공모 및 선정심사(2~3월)
 - 1차 : 서류심사 / 2차 : 사업계획서 보완컨설팅

- 사업 운영(3~11월)
 - 국고보조금 재교부(문화부→한국문화원연합회→지방문화원), 해당 문화원 교육 및 컨설팅 상시운영, 사업 발대식 개최, 사업중간평가, 단위사업·권역별 워크숍 외
- 사업완료(12월) 및 정산보고("14.2월)
 - 사업평가보고회 및 2014년 사업설명회 외
- 추진계획 :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365개 프로그램)
 -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157개), 찾아가는 어르신문화학교(37개),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62개), 생활문화전승프로그램(14개), 어르신 문화동아리(35개), 어르신 문화축제(6개), 세대공감 프로그램(29개), 어르신 신바람놀이문화 프로그램(25개) 등 지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지방문화원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60세 이상 어르신
- 사업 규모(사업량) : 8개 단위사업 총 365개 프로그램
- 지원금액 및 형태 : 4,053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내용 :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찾아가는 어르신문화학교,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생활문화전승프로그램, 어르신 문화동아리, 어르신 문화축제, 세대공감 프로그램, 어르신 신바람놀이문화 프로그램 등 8개 단위사업 지원
- 법적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한국문화원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3,453		3,453			3,453
2013			4,053		4,053			4,053
(증△감)			600		600			60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없음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05			22,506				22,506
'12	340/150	실적/계획		3,453/2,400				3,453/2,400
'13	365			4,053				4,053
'14	500			5,000				5,000
'15	500			5,000				5,000
'16	500			5,000				5,0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프로그램수(개)	170	202	340	365	170	지원사업수	사업평가보고서

< 5-2-1-4. 문화나눔 사업(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문화여가정책과	담당자	김지영
전화번호	02-3407-9420	이메일	hijyk@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기본계획 p.54)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나눔' 사업을 농어촌 특성에 맞게 집중 추진
- 문화바우처(전시·공연), 스포츠바우처(체육센터 이용), 복지관광, 사랑티켓(전시·공연) 사업 등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저소득층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향유 기회 제공(총 160만명 수혜)
 - 자발적 관람 지원하는 문화카드 농어촌 지역 10만여매 발급 20만여명 수혜
 - 근린 문화시설 부족한 농어촌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5만여명 수혜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저소득층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향유 기회 제공
 - 고령층 비율이 높고 근린 문화시설 부족한 농어촌 지역 여건 감안하여 기획바우처 사업 확대

4. 관련 사업 내용

가.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 규모(사업량) : 160만명 지원(농어촌 지역 25만여명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연간 5만원 이내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비용 지원
- 지원조건 : 지자체경상보조(매칭, 7:3), 민간경상보조(정액)
- 지원내용 : 문화카드 가구당 1매 발급(청소년 대상자의 경우 개인당 발급),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모셔오는 서비스, 찾아키는 서비스 등)
- 법적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34,300	34,300	14,400		48,700
2013				34,946	34,946	14,400		49,346
(증△감)				646	646	-		646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3,600	14,400		48,000
서울		-	-	-	4,351	2,405	-	6,756
부산		-	-	-	3,266	1,360	-	4,626
대구		-	-	-	2,414	1,001	-	3,415
인천		-	-	-	1,609	733	-	2,342
광주		-	-	-	1,482	559	-	2,041
대전		-	-	-	1,071	450	-	1,521
울산		-	-	-	385	176	-	562
경기		-	-	-	4,448	2,064	-	6,512
강원		-	-	-	1,453	591	-	2,043
충북		-	-	-	1,243	500	-	1,744
충남		-	-	-	1,504	579	-	2,083
세종		-	-	-	74	28	-	102
전북		-	-	-	2,455	913	-	3,368
전남		-	-	-	2,324	829	-	3,153
경북		-	-	-	2,663	1,061	-	3,724
경남		-	-	-	2,292	941	-	3,232
제주		-	-	-	567	209	-	776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160만명/160만명	-	-	-	34,300	14,400	-	48,700
'13	160만명	-	-	-	34,946	14,400	-	49,346
'14	65만가구	-	-	-	49,600	21,250	-	70,850
'15	81만가구	-	-	-	65,700	28,150	-	93,850
'16	90만가구	-	-	-	73,800	31,620	-	105,42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자 수 (명/가구)	470,219명	130만 (68만가구)	160만명	160만명	-	문화이용권 사업 연간 사업 이용자 수 집계	사업실적 보고서

※'14년 목표치 미확정

< 5-2-2-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지역민족문화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번호	02-3704-9454	이메일	skydreami@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지역 문화활동 활성화 기반 구축(기본계획 p.55)

□ 농어촌지역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추진

- 자생적 문화클럽을 조성하고 맞춤형 프로그램·강사 지원
 - 농어촌지역 등을 중심으로 '12년까지 80개소 조성
- 농요, 세시풍속 등 전통 생활문화·예술 발굴 및 창작 지원
 - 지역별 세시풍속 및 민속놀이 관련 자료 및 지도서 개발
 - 지역주민의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 사업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행단체
- 추진실적
 - 지원현황 : 24개소 ('12년도)
 - 예산 : 12억 원(복권기금)
 - 내용 :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한 공동체 형성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대상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관련 단체 및 기관
- 수혜대상 : 문화소외지역(임대아파트단지, 서민단독주택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주민
- 지원규모 : 20개소 내외
 - 연속지원 : '12년 기 수행단체 중 사업성과평가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신규지원 : 지역의 문화환경 및 시행단체 역량 등 심사 선정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행단체
- 사업추진절차 : 사업설명회(보조사업자)→사업추진단체 공모(보조사업자)→추진단체 심의·확정(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자)→사업계획 보완·협의(보조사업자·선정단체)→보조금 교부신청(선정단체→보조사업자)→사업비 교부(보조사업자→선정단체)

4. 관련 사업 내용

가.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문화소외지역(임대아파트 단지, 노안어촌 지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한 문화예술단체
- 사업 규모(사업량) : 20개 단체 내외
- 지원금액 및 형태 : 1,18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지원내용 :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한 공동체 형성 조성 지원
- 법적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200	1,200			1,200
2013				1,180	1,180			1,180
(증△감)				△20	△20			△2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공모 진행 후 확정(공모 : '13. 3~5월)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4				5,920			5,920
'12	24/20				1,200/ 1,200			1,200
'13	20				1,180			1,180
'14	20				1,180			1,180
'15	20				1,180			1,180
'16	20				1,180			1,18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문화예술단체 지원 (개소)	19	25	24	20	20	지원 단체 수	추진실적 자료

< 5-2-2. 문화 관광축제 육성(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관광진흥과	담당자	강순호
전화번호	02-3704-9760	이메일	ksunho@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지역 문화활동 활성화 기반 구축(기본계획 p.55)

□ 지역의 향토문화 관광축제 지원

- 전국의 주요 축제를 단계별(대표, 우수, 유망 등)로 구분, 차등지원
 -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 확대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2012년도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
 - 대표축제(2개, 각 8억) : 강진청자문화제, 남강유등축제
 - 최우수축제(8개, 각 3억) : 금산인삼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문경찾사발축제, 양양송이축제, 얼음나라화천산천어축제, 천안홍타령축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함평나비축제
 - 우수축제(12개, 각 1.5억) : 강경발효젓갈축제, 광주7080충장축제, 남원춘향제, 담양대나무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부산갈갈치축제, 영동난계국악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춘천국제마임축제, 풍기인삼축제
 - 유망축제(23개, 0.42억) : 가고파 국화축제, 괴산고추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광주김치대축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부산해운대축제, 보성다향제녹차대축제, 봉화은어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순창장류축제, 서귀포칠십리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영암왕인축제, 울산고래축제, 인천펜타포트축제,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 지리산한방약초축제, 태백산눈꽃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평창효석문화제, 포항국제별빛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함양산삼축제

3. 2013년도 추진 계획

- '12. 12월 2013년도 문화관광축제 선정(42개)
- '13. 1월, 5월 2013년도 문화관광축제 보조금 신청 및 교부(1차, 2차)

- '13. 3월 2012년도 문화관광축제 평가보고서 제작, 송부
- '13. 1월 ~ 12월 2013년도 문화관광축제 현장평가 실시

4. 관련 사업 내용

가.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문화관광축제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있는 관광축제
 - 사업 규모(사업량) : 42개 문화관광축제
 - 지원금액 및 형태 : 6,70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 정률, 50%
 - 지원내용 : 문화관광축제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6,700	6,700	6,700		13,400
2013				6,700	6,700	6,700		13,400
(증△감)				-	-	-		-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696	6,696		13,392
부산	2				152	152		304
대구	1				150	150		300
인천	1				76	76		152
광주	2				226	226		452
울산	1				76	76		152
경기	3				600	600		1,200
강원	5				902	902		1,804
충북	2				152	152		304
충남	6				904	904		1,808
전북	3				976	976		1,952
전남	6				828	828		1,656
경북	5				752	752		1,504
경남	4				902	902		1,804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3,500	33,500		67,000
'12	45개/45개				6,700	6,700	-	13,400
'13	42개/42개				6,700	6,700	-	13,400
'14	45개/45개				6,700	6,700	-	13,400
'15	45개/45개				6,700	6,700	-	13,400
'16	45개/45개				6,700	6,700	-	13,400

나. 문화관광축제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각 지자체
- 추진절차 : 문화관광축제 추천요청(문화부→시·도) → 사업신청(시·군·구) → 문화관광축제 추천(시·도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관광축제 선정(문화부) → 예산지원(문화부 → 지자체) → 사업시행 및 축제 개최(지자체) → 현장평가(문화부 등) → 평가결과 다음해 선정시 반영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문화관광축제 당 관람객수(천명)	707	690	710	702	701	문화관광축제 관광객 통계	지자체 보고

< 5-2-2-3. ①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계(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지역민족문화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번호	02-3704-9454	이메일	skydreami@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지역 문화활동 활성화 기반 구축(기본계획 p.55)

□ 농어촌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

- 문화예술 프로그램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 현지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 우선 추진
- 농촌지역개발 교육과정에 문화예술 강좌를 설치하고 문화예술관련 교육에 지역개발전문가, 마을리더, 담당공무원 등 참여 확대
- 농어촌개발정책과 문화예술 정책의 협력강화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간 MOU 체결 추진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주민 대상 농어촌문화리더, 농어촌 문화매개 인력 양성(209명 수료)
- 농어촌 문화 활동가 양성으로 한 마을의 주요자원의 가치발견 및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촌 주민 대상 기초, 심화, 실습지원을 통한 농촌문화 인력 양성(350여 명)
- 1단계 지역 거점별 기초학습, 2단계 심화학습, 3단계 실습지원(컨설팅 병행)

4. 관련 사업 내용

가.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계(문화이모작)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산어촌 주민 및 지역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

- 사업 규모(사업량) : 지역 거점별 인력 야성(350여 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4억 원 / 민간경상보조(* 예산 반영 진행 중)
- 지원조건 : 정액 지원
- 지원내용 : 농촌 주민 대상(일반인 포함) 기초, 심화 교육 및 실습지원 교육 지원
- 법적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00	200		40	240
2013				400	400			400
(증△감)				200	200		△40	160

* 2013년 예산은 '공익사업 적립금'으로 반영 진행중임(미확정)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209/300				200/300		40	
'13	350				400			400
'14	350				400			400
'15	350				400			400
'16	350				400			4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교육인원 수(명)	320	331	209	350	350	교육인원 수	사업추진실적 자료

< 5-2-2-3. ②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계(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어촌산업팀	담당자	박재화
전화번호	044-201-1590	이메일	nanaimo@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지역 문화활동 활성화 기반 구축(기본계획 p.55)

□ 농어촌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

- 문화예술 프로그램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 현지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 우선 추진
- 농촌지역개발 교육과정에 문화예술 강좌를 설치하고 문화예술관련 교육에 지역개발전문가, 마을리더, 담당공무원 등 참여 확대
- 농어촌개발정책과 문화예술 정책의 협력강화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간 '업무협약' 체결 추진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전국 시·군단위 10개 지역 문화공연 실시(4~5월)
 - 청소년, 소외계층 대상 단체공연 경험이 풍부한 공연단을 선정하여 지역별 2회 이상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
 - 해당 시·군의 적극적 협조로 공연소식을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전달 및 참석 유도
 - 농촌 청소년의 흥미 유발 가능한 '사운드 오브 뮤직' 공연으로 많은 참석 및 호응 유도
 - 농촌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촌지역 문화공연 실시로 청소년, 농업인 관람(4~5월)
 - 전국 시·군단위 10개 지역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촌지역 문화공연 실시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3~계속
 - 사업 지원대상 : 전국 시·군 단위 10개 지역 공연
 - 지원금액 및 형태 : ('13) 680백만원(380 : 민간경상보조, 농특, 300 : 농협 중앙회 별도)
 - 지원조건 : 국비 100%
 - 지원내용 : 농촌지역 문화공연 실시로 청소년, 농업인 관람
 - 법적근거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380				380		300	680
2013	380				380		300	680
(증△감)	-							-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0	1,900					1,500	3,400
'12	10	380					300	680
'13	10	380					300	680
'14	10	380					300	680
'15	10	380					300	680
'16	10	380					300	680

5-3. 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및 교육강화

(1) 개관

□ '13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국악, 연극, 영화 등 분야별 전문 예술강사를 전국 초.중.고교에 파견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지원
 - '13년도 7,254개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술강사 4,488명 파견
- 1인 1예능활동이 가능하도록 농어촌 등 소외/취약 지역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씨앗학교' 운영(26개교)을 위한 전문 예술강사 배치, 교육프로그램, 교육기자재 지원 실시

□ 예산 내역

<2013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41,921		39,421	31,101		73,022
학교 문화예술 교육사업			39,421		39,421	31,101		70,522
예술꽃 씨앗학교			2,500					2,500
합계			41,921		39,421	31,101		73,022

< 5-3-1-1.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문화예술교육과	담당자	최성훈
전화번호	02-3704-9417	이메일	free7501@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마을문화시설 등에 문화예술 전문인력 파견(기본계획 p.56)
 - 농어촌 작은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에 사서 또는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파견(순회)하여 주민의 문화 및 여가활동 확산 지원
- 농어촌 초·중·고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 청소년의 감수성 함양 및 창의력 개발을 위해 농어촌 지역 '문화예술교실' 운영 등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강화
 - 방과 후 교육(교과부)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도모
 - *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의 연계협력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08.10))
 - 초·중·고교 예술 강사(연극, 무용 등) 지원 확대
 - * ('09) 전국적으로 4,700개교 150만명 학생 수혜
 - 전교생에게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예술꽃 씨앗학교'를 농어촌 지역에 확산
 - * ('09) 시범학교 10개소 중 농어촌학교 6개소 포함
- 창의적인 지역문화 개발을 위한 인적역량 강화
 - 지역문화 활동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과 지역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지역 문화창조 교육기회 확대
 - 다양한 분야의 지역문화예술 인력 간 교류를 통한 협력네트워크 형성 유도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12년도 전국 초·중·고 6,531개교에 예술강사 4,263명 파견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 지원(수혜학생 190만명)
- 문화예술교육 집중지원을 위한 예술꽃씨앗학교 운영(26개교)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청소년의 감수성 함양 및 창의력 개발을 위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 농·산·어촌 소외계층 대상 1인 1예능활동을 하는 예술꽃씨앗학교 운영

4. 관련 사업 내용

가.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13년도 7,254개교(수혜학생 약 200만명), 예술강사 4,488명 파견
- 지원금액 : 총 사업비 705억원(국고394억원 지방비 58억원 지방교육재정 253억원)
- 지원조건 : 신청학교 심사를 통해 강사파견 학교 선정
- 지원내용 : 국악, 연극, 영화 등 분야별 전문 예술강사를 전국 초·중·고교에 파견시켜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	-	32,247	-	32,247	29,570	-	61,817
2013	-	-	39,421	-	39,421	31,101	-	70,522
(증△감)	-	-	7,174	-	7,174	1,531	-	8,705

*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예산을 지방비에 포함함(지방비 : 시도비 + 시도교육청 예산)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교)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588, 7,254)	-	-	39,421	-	31,101	-	70,522
서울	(810, 897)			5,892		4,649		10,541
부산	(378, 456)			2,666		2,103		4,769
대구	(214, 275)			1,520		1,199		2,719
인천	(185, 297)			1,710		1,349		3,059
광주	(225, 223)			1,362		1,074		2,436

	사업규모 (명,개교)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대전	(189, 205)			1,373		1,083		2,456
울산	(127, 158)			1,436		1,133		2,569
세종	(6, 28)			116		92		208
경기	(529, 1,057)			3,611		2,849		6,460
강원	(166, 423)			2,302		1,816		4,118
충북	(167, 294)			1,835		1,448		3,283
충남	(235, 493)			2,258		1,781		4,039
전북	(373, 557)			3,350		2,643		5,993
전남	(258, 578)			3,228		2,547		5,775
경북	(296, 505)			3,301		2,604		5,905
경남	(239, 661)			2,693		2,125		4,818
제주	(91, 147)			768		606		1,374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6,531/6,000	-	-	32,247		29,570		61,817
'13	6,200	-	-	33,000		33,000		66,000
'14	6,300	-	-	35,000		35,000		70,000
'15	6,300	-	-	35,000		35,000		70,000
'16	6,400	-	-	36,000		35,000		71,000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나.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농산어촌 등 소외/취약 지역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씨앗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계발과 예술교육의 선도적 모델 제시
- 사업 규모 : '13년도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씨앗학교 26개교
- * 예술교육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선정된 학교 4년간 지원
- 지원금액 : 총 사업비25억원(국고25억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	-	2,500		-	-	-	2,500
2013	-	-	2,500		-			2,500
(증△감)			-					-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8	-	-					
'12	26	-	-	2,500	-	-	-	2,500
'13	26		-	2,500	-	-	-	2,500
'14	26	-	-	2,500	-	-	-	2,500
'15	26	-	-	2,500	-	-	-	2,500
'16	26	-	-	2,500	-	-	-	2,5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예술강사 수혜자 만족도(점)	76	77	78	79	80	{Σ매우만족,만족, 보통,불만,매우불만 (5점 척도)X20} / 전체응답자	전문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6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6.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6-1.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활용

(1) 개관

□ '13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경관보전직불제를 작물 보조금 중심에서 마을을 포함한 생활·자연경관, 역사·문화자원 보전활동에 대한 포괄적 지원으로 확대
 - 농지를 활용한 경관작물의 재배관리 및 마을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경관가꾸기 등 마을경관보전활동에 200억원 지원
- 조건불리지역 법정리 내의 농지 및 초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밭·과수원 500천원/ha, 초지 250천원/ha)
- 지역생태숲(19개소), 자생식물원(13개소) 조성을 통해 향토·자생식물의 체계적 보전과 함께 식물교육 등 자연학습 및 환경교육의 공간으로 제공
 - 전문전시원 및 산림생태관찰원, 교육·탐방·체험시설, 연구기반시설, 자생식물 전시원, 생태관찰원·탐방로, 편익시설 등 조성
- 독창적이고 고유한 농법 및 생태경관지역, 농업생물다양성의 보전지역을 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농어업농어촌유산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촌다원적자원 보전·활용계획' 수립
 - 경관우수마을 선발전 및 농어촌 경관사진 공모전 등 추진

□ 예산 내역

<2013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경관보전직불제	13,968				13,968	5,986		19,954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38,635				38,635	9,659		48,294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8,893	3,250		12,143	12,143		24,286
농어촌경관조성 관리기반 기술 구축			300		300			300
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	1,050				1,050	450		1,500
합계	53,653	8,893	3,550		66,096	28,238		94,334

< 6-1-1-1. 경관보전직불제(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경두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60	이메일	dooo@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를 마을경관 개선활동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착(기본계획 p.58)

□ 작물 보조금에 편중된 경관보전직불제를 마을을 포함한 생활·자연경관, 역사·문화자원 보전활동에 대한 포괄적 지원으로 확대

○ 마을과 시·군간 협약기간을 연장하는 등 경관협약 내실화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개정(완료)
 - 대상작물중 유사품목을 통폐합 및 재배량 미미작물 제외(기존 32종 → 변경 18종)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조성 유도를 위해 대상작물 이외 작물(화초류)도 신청 및 대상작물간 혼작·사이재배 가능토록 하여
 - 대상지구 선정기준중 직불금 지원목적과 부합하도록 미관성, 지역적 특색 등의 배점을 강화하고, 집단화기준은 완화
 - 마을경관보전활동비에서 축제비용 집행가능토록 하여 축제 등 관광활성화 유도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경관관리 보전활동 우수마을 선발 및 경관사진 공모전 추진 및 홍보
-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한 농어촌 경관 형성계획 및 개선방안 수립

4.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내용

- 사업 개요
 - 사업 지원대상 : 농업인, 농어촌 마을
 - 사업 규모(사업량) : '12년 기준 13,786ha
 - 지원금액 및 형태 : 14,072백만원('13 예산)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내용 : 농지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마을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경관가꾸기 등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 법적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7,475				7,475	3,204		10,679
2013	13,968				13,968	5,986		19,954
(증△감)	6,493				6,493	2,782		9,275

- * 농특세 전입금 사업은 농특세로 기재하고, 현 회계는 별도 기재
- * 마사회 적립금 등 기금 성격이 높은 재원은 기금으로 기재하고, 자원명을 별도기재
- * 2012년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계획금액을 기재하고 계획임을 표시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7,964,674	13,968				5,986		19,954
부산	22,071	2				0.9		2.9
인천	781,598	101				43.3		144.3
광주	1,834,948	183				78.4		261.4
대전	591,907	61				26.1		87.1
울산	430,530	45				19.3		64.3
강원	1,075,564	116				49.7		165.7
충북	154,548	15				6.4		21.4
충남	12,773,944	1,619				693.9		2,312.9
전북	36,908,000	3,935				1,686.4		5,621.4
전남	62,240,518	6,690				2,867.1		9,557.1
경북	3,468,451	346				148.3		494.3
경남	6,175,795	673				288.4		961.4
제주	1,506,800	182				78		26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ha)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1,105	71,105				30,475		101,580
'12	13,786/13,786	7,475/7,475				3,204		10,679
'13	12,796	13,968				5,986		19,954
'14	13,937	16,554				7,095		23,649
'15	13,937	16,554				7,095		23,649
'16	13,937	16,554				7,095		23,649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지역축제 등 도농 교류프로그램과 연계한 방문객 증 가율(%)	-	5	3	3	3	당해연도 방문객수/전년도 방문객수*100-100	지자체에서 보고한 방문객 조사결과자료

< 6-1-1-2. 조건불리지역직불제(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담당자	이석기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856	이메일	lsk1670@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를 마을경관 개선활동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착(기본계획 p.58)

□ 조건불리직불제는 대상지역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경관유지 효과 제고

- '10년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밭 40만원/ha → 50), '11년 오지면의 경지 경사율 요건 완화(14%→7%) 등 추진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10년도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밭: 40만원/ha → 50만원/ha, 초지: 20만원/ha → 25만원/ha
- '11년 조건불리지역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재조사를 통해 대상지 재선정
 - ('11년) 3,137개 법정리 → ('12년) 3,550개(413개, 9천ha 증가)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방비를 '12년부터 부담 완화(30 → 20%)
 - 지급대상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지방비 부담 경감
- ※ 경지경사도 재조사에 따른 대상면적 증가, 지방비 부담 완화로 '12년 국비 예산 5,388백만원을 추가 확보함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정책환경 변화 반영 및 조건불리지역 주민 복지향상 등을 위해 마을공동 기금 사용 다양화 추진
- '13년부터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완화하여 조건불리직불금 실제 농가수령액 상향(35만원 → 40) 조정
 - * 마을공동기금 조성(20%)에 따라 농가 수령액 400천원/ha
- 지자체 담당공무원들과의 연찬회를 통해 개선방안 의견 수렴 검토

4. 관련 사업 내용

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조건불리지역 법정리 내의 농지 및 초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해당 농지소재 읍·면에 거주하는 자
 - * 도서지역(제주 포함)은 조건불리지역 선정지표인 경지율(22%이하) 및 경지경사도(14%이상 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와 상관없이 대상에 포함
- 사업 규모('13년 사업량) : 조건불리지역 법정리의 농지 및 초지 98천ha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원금액 : 밭·과수원 500천원/ha, 초지 250천원/ha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국고 80%, 지방비 20%),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 지원조건 : 농지관리 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마을활성화 실천 등 지급요건 이행
- 지원내용 : 조건불리 법정리의 농지 및 초지에 대해 직불금 지급
- 법적근거 :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WTO농업협정문 부속서2의3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40,358				40,358	8,770		49,128
2013	38,635				38,635	9,659		48,294
(증△감)	△1,723				△1,723	889		△834

* 예산 중 교육 홍보비, DB관리비 및 지자체 행정비는 제외된 순수한 사업비임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ha)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8,175	38,635				9,659		48,294
대구	35	14				3		17
울산	39	16				4		20
인천	1,830	731				183		914

	사업규모 (ha)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경기	805	321				80		401
강원	19,047	7,375				1,844		9,219
충북	6,625	2,652				663		3,315
충남	1,767	696				174		870
전북	3,332	1,320				330		1,650
전남	16,409	6,540				1,635		8,175
경북	18,143	7,217				1,804		9,021
경남	7,098	2,889				722		3,611
제주	23,036	8,861				2,215		11,076
세종	9	4				1		5

* 사업규모는 '13 보조금 교부액을 기준으로 산출임

* '12년 예산 중 교육·홍보비, DB관리비 및 시·군 행정비를 제외한 순수한 사업예산임

* 지방비는 국비 80%에 대한 지방비 20% 부담액임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천ha)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103 /108	40,358 /42,503				8,770/ 10,626		49,129 /53,129
'13	108	42,503				10,626		53,129
'14	108	42,503				10,626		53,129
'15	108	42,503				10,626		53,129
'16	108	42,503				10,626		53,129

* '11년과 '12년에 국비와 지방비 예산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재원분담 비율이 ('11년) 국비 70%, 지방비 30% → ('12년~) 국비 80%, 지방비 20%로 조정되었기 때문임

5. 성과목표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해당지역 과소화 예방 등 지역활성화로 '13년 조건불리지역 정주농비율 98.5% 유지
 - * 사업시작 당시 5년간('01~'06년) 농가수 평균 감소율은 1.7%(이탈농 지지율 98.3%)이나, 직불금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정주농 비율 목표치를 5개년 평균치보다 높은 98.5%로 설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정주농비율(%)	100.5	100.9	98.5	98.5	98.5	지원대상 법정리의 당해연도 정주농 비율 / 최근 5년간 평균 정주농 비율 × 100 *당해연도 정주농 비율: 금년 농가수 /작년 농가수×100	agrix입력 자료 확인

< 6-1-2-1.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산림청) >

담당부서	산림환경보호과	담당자	장영택(주무관)
전화번호	042-481-4249	이메일	dx0106@forest.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지역별 고유한 식물경관 및 생태숲 조성 지원(기본계획 p.59)

- 자생식물원 조성을 확대하여 향토 자생식물의 체계적인 보전 및 식물교육 등 자연학습 기회 강화
 - '14년까지 10개소의 자생식물원 조성('08까지 4개소)
- 산림생태계가 보전된 숲 조성 및 복원 추진
 - 지역, 기후, 생태천이 등을 종합 고려한 생태숲 조성을 확대하여 건강한 여가 생활·자연학습 공간 제공
 - '14년까지 48개소의 생태숲 조성('08년까지 33개소)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산림환경의 연구 및 교육·탐방·체험 등을 위한 지역생태숲 조성 등 자생 식물 서식기반 확충
 - 지역생태숲 : 2012년까지 총 44개소 조성·운영(조성완료 26, 조성중 18)
 - 자생식물원 : 2012년까지 총 8개소 조성·운영(조성완료 8, 조성중 13)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지역생태숲 및 자생식물원의 지속적 조성
 - 지역생태숲 조성 : 19개소(연차별조성 15, 보완 4)
 - 자생식물원 조성 : 13개소(신규설계 5, 연차별조성 3)

4. 관련 사업 내용

가.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역생태숲 : 산림생태계가 안정되고 산림생물의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 내 보존·관리가 필요한 산림면적 30ha(휴양림 등과 연접하여 교육·탐방·체험 등의 기능을 높이는 경우 20ha)이상의 부지와 지방비를 확보한 지자체

- 자생식물원 : 3ha이상의 부지와 지방비를 확보한 지자체

- 사업 규모(사업량) :

- 지역생태숲 : 2015년까지 전국에 50개소 조성(시·도별 3개소 이상 조성)
- 자생식물원 : 2015년까지 전국에 40개소 조성(시·도별 3개소 이상 조성)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역생태숲 : 개소당 총사업비 30억원(국비 50%·지방비 50%)
- 자생식물원 : 개소당 총사업비 15억원이내(국비 50%·지방비 50%)

- 지원조건

- 타당성심사위원회에서 부지확보 및 입지여건 등을 종합심사하여 적합한 지자체에 한하여 사업 지원
- 조성기간 : 지역생태숲 4년(설계 1, 조성 3), 자생식물원 3년(설계 1, 조성 2)

- 지원내용 :

- 지역생태숲 : 전문전시원 및 산림생태관찰원, 교육·탐방·체험시설, 연구 기반시설, 편익시설 등 조성
- 자생식물원 : 자생식물 전시원, 생태관찰원·탐방로, 편익시설 등 조성

- 법적근거

- 지역생태숲 : 「산림보호법」 제18조(생태숲의 지정 등)
- 자생식물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8,793	2,000		10,793	10,793		21,586
2013		8,893	3,250		12,143	12,143		24,286
(증△감)		100	1,250		1,350	1,350		2,70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2		8,893	3,250		12,143		24,286
부산	1		800			800		1,600
대구	1			250		250		500
강원	1			250		250		500
충북	3		450	250		700		1,400
충남	2		50	250		300		600
전북	6		698	500		1,198		2,396
전남	8		2,620	750		3,370		6,740
경북	3		860	250		1,110		2,220
경남	7		2,815	500		3,315		6,630
제주	2		600	250		850		1,7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80		44,020	22,500		66,520		133,040
'12	32		8,793/8,793	2,000/2,000		10,793/10,793		21,586/21,586
'13	34		8,893	3,250		12,143		24,286
'14	34		8,625	4,750		13,375		26,750
'15	38		8,860	5,750		14,610		29,220
'16	42		8,849	6,750		15,599		31,198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생태숲 누적 조성 개소(개소)	42	44	44	46	48	생태숲 누적 조성개 소수 조사	조사보고서

< 6-1-3-1. 농어촌형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기반 구축(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경두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60	이메일	dooo@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농어촌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기본계획 p.60)

-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경관을 고려하도록 사업별 '경관관리계획' 수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 지역개발 사업 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경관지표와 경관계획 수립 요령을 마련하여 보급
- 지자체 단위의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을 적극 유도
 - 주민 참여형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시, 인센티브 부여 추진

(4) 지역주민 주도의 마을·경관 가꾸기 활동 촉진

- 주민의 자발적인 경관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컨설팅 강화
 - 주민들이 경관 관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 프로그램(경관맵, 경관가이드라인 등) 개발·보급
 - 마을·경관 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 컨설팅 체계 구축
- 어메니티 자원도를 구축하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13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을 대상으로 어메니티 자원도를 작성,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농어촌 경관 가꾸기 운동 확산
 - 「우수 경관 컨테스트」 등을 통해 농어촌 경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컨테스트에서 입선한 우수작품은 달력 제작, 포털사이트 콘텐츠 제공 등 파생상품으로 활용하여 홍보효과 제고
 - 경관가꾸기 활동을 물·흙·바다 살리기 국민운동으로 발전 유도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총괄계획가’제도 도입으로 마을개발사업전 마을의 생태·환경·문화 등에 대해 사전 분석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계획중심의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하고 시범운영 추진(‘12)
 - ‘12년 7개 권역 시범운영 및 시범사업결과 분석후 ‘13년 8개 권역 추가시행
- 제1회 경관직불 우수마을콘테스트 추진(‘12.10)
 -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해 개선된 아름다운 농어촌마을을 발굴 홍보함으로써 경관보전직불제의 홍보 및 참여 유도
 - 대상(하동 북천 코스모스마을), 우수상(고창 선동마을, 제주 우도, 장흥 선학동마을)
- 제6회 『농어촌 경관사진 콘테스트』 개최(‘12.10)
 - 도시민에게 농어촌에 대한 관심과 이주계기를 부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농어촌 사진 콘텐츠 발굴·시상(76점, 대상:농식품부장관상)
- 『농어촌 경관사진 콘테스트』 선정작품을 통한 ‘한국의 농어촌’ 카렌다 제작 배포하여 농어촌 홍보(4,000부, ‘12.12)
 - 아름답고 매력적인 우리의 농어촌 모습을 오피니언 리더와 외국인 등에게 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어촌에 대한 관심유발 및 방문동기 부여
- 농촌마을개발사업 신규 시행시 『농어촌 경관계획수립』 의무화토록 지침 개정(‘12.12)
 - ‘경관계획수립’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시 반영

3. 2013년도 추진 계획

-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를 경관작물재배 이외 다양한 경관요소를 포괄할 수 있는 “농촌환경문화직불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검토 추진 (‘13~‘14)
- 농업유산제도를 통한 농업유산자원 발굴 지정 및 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추진
- 총괄계획가 제도를 통한 계획중심의 경관시범사업 추진(8개 지구)
- 경관우수마을 선발전 및 농어촌 경관사진 공모전 추진

4.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경관계획수립비율 (%)	-	-	70	75	80	경관계획수립비율 지역개발사업신규시행마을*100	내부자료

< 6-1-3-2. 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경두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60	이메일	dooo@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3) 농어촌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기본계획 p.60)</p> <p><input type="checkbox"/>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경관을 고려하도록 사업별 '경관관리계획' 수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 사업 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경관지표와 경관계획 수립 요령을 마련하여 보급 <p><input type="checkbox"/> 지자체 단위의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을 적극 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참여형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시, 인센티브 부여 추진

2. 2012년 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업·농어촌 유산 지정제도 도입(완료)
 - 전통적 농어업활동 시스템(생산기술, 토지이용, 물관리 등)의 결과로 나타난 다양한 범위의 경관 및 전통농법·어법 등을 '농어업유산'으로 지정
 - 제1회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에서 '청산도 구들장 논(국가농업유산 제1호)' 및 '제주도 돌담밭(제2호)'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 지정 절차, 보전 및 활용 원칙 등 지정제도에 대한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고시 제정(12.6)
 - 농어촌의 토지이용을 통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경관 및 전통생태농법 등 전통문화가 깃든 농어촌 고유의 자원을 복원·발굴하여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신규사업)” 확보
 - '생태문화자원' 및 '농촌다움 유지'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 우선지원(청산도 구들장논, 제주 돌담밭)

-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시 경관을 고려하도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 ‘경관계획수립’을 의무화
 - 지역개발사업 추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경관계획수립요령’ 개정·보완 시달(‘12.5.31)
 - ‘1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 ‘경관계획수립’ 실적 :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농어촌 다원적자원 발굴 및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지구 ‘농어촌다원적자원 보전·활용계획’ 수립
-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지역에 대한 브랜드가치 제고를 높이기 위하여 FAO 세계중요농어업유산(GIAHS) 등재 추진

4. 관련사업 내용

가. 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13~’10, 287억원(‘13:12억)
 - 사업규모 : 7년간 25개소(‘13년 3개소)
 - 대상지역 : 농어촌 다원적 자원 및 농어업과 관련된 전통적인 유산자원 보유 지역(국가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 우선 선정)
 -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국고70%, 지방비 30%), 민간경상보조 100%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내용 : 농어업유산자원 발굴·정비 및 관리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5조(전통 농경·어로문화의 계승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				-	-		
2013	1,050				1,050	450		1,500
(증△감)	1,050				1,050	450		1,50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	1,050				450		1,500
전남	1	350				150		500
제주	1	350				150		500
유보	1	350				150		5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8	6,300				2,700		9,000
'13	3	1,050				450		1,500
'14	5	1,750				750		2,500
'15	5	1,750				750		2,500
'16	5	1,750				750		2,500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 사업진도 률(%)	-	-	-	100	100	사업실적/사업계획 × 100	다원적자원활용 사업 추진실적

* 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계획

< 6-1-4-1. 농촌경관조성 관리기반 기술 구축(농촌진흥청) >

담당부서	농과원 농촌환경지원과	담당자	김상범
전화번호	031-290-0265	이메일	landlife@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3) 농어촌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기본계획 p.60)</p> <p><input type="checkbox"/>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경관을 고려하도록 사업별 '경관관리계획' 수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 사업 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경관지표와 경관계획 수립 요령을 마련하여 보급 <p><input type="checkbox"/> 지자체 단위의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을 적극 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참여형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시, 인센티브 부여 추진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촌마을의 자원발굴 및 DB 구축 00 : 125읍면 31,978건

지역 (읍면수)	총 계	수자원	지형	식물	동물	환경 관리	전통	특산	경관	시설물	공동체
경남 (33)	8,576	684	128	495	6	466	427	225	1,697	3,692	756
경북 (39)	11,559	631	106	781	166	309	612	894	937	3,732	3,391
전남 (34)	8,740	631	111	446	5	96	1,062	45	1,457	3,979	908
전북 (19)	3,112	202	13	205	7	131	140	78	793	1,230	313
총 계	31,987	2,148	358	1,927	184	1,002	2,241	1,242	4,884	12,633	5,368

- 경관, 전통지식, 농업체험 등 정보 제공 (<http://rural.rda.go.kr>)



<농촌어메니티자원정보GIS서비스>



<농촌어메니티 경관 100선 웹서비스>

- 농촌마을 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4건
 - 농촌마을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디자인 항목 체계 개발 : 125요소
 - 농촌마을 경관개선을 위한 유형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4유형
 - 자연경관, 농업생산경관, 생활경관, 역사·문화경관의 유형별 적용방안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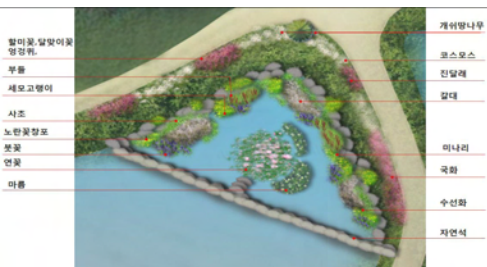


<생활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사례>



<리모델링사업의 경관지침 적용 공동작업장 >

- 농촌경관조성 및 관리기술 현장지원 : 5건
 - 농촌경관 조성계획기술 현장지원 : 2개소(제주, 부여)



<부여 신암천환경마을 계획>




<제주 낙천리 경관디자인계획>

- ⇒ 2012년 대한민국 조경대상 농산어촌부문 우수상 수상(농식품장관상, 제주)
 - 저탄소 농촌마을 현장적용 : 1개소 (홍천 무궁화마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발전시설 설치 2 에너지 흠닥터 제도 우선 적용 건물 3 녹음수 식재, 더위쉼터 마련 4 톱밥, 미생물 활용한 퇴비 생산 촉사 5 농기계 공동이용(농기계창고) 6 공동 텃밭 운영 및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도입 7 마을숲 관리 8 소하천 수생식물 보존 9 신축 회관(패시브하우스 기법 적용 / 에코체험센터 운영) 10 분리수거대 정비
	<p><공동 적용 사항> 가.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마을'을 목표로 에너지 절감, 친환경적 삶 영위의 의미와 실천방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교육 선행 나. 주민교육을 통해 열차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건물 신축 및 개보수시 단열재 사용하도록 유도 다. 집집마다 화단가꾸기,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 등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p>

- 녹색문화체험공간 모델 현장적용 : 2개소(여주, 부여)

	
	
<p><레저휴양형 : 여주 늘향골체험마을></p>	<p><자연생태형 : 부여 신암천환경마을></p>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전통미를 살린 한국형 농촌주택 모델 개발
 - 농촌 주택의 전통요소 및 특성 분석 : 4지역(서울, 중부, 남부, 제주)
 - 전통미를 살린 농촌주택 모델 시안 개발 : 3유형(고유, 지역, 환경)
-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스템 및 인프라 조성 기술 개발
 - 리모델링 평가등급 및 가이드라인 개발 : 주거·생산·커뮤니티공간
 - 주민참여의 농촌어메니티 공간 디자인 개발 : 2개소(이천, 영천)
 - 농촌마을자원 모바일 DB 구축 및 정보서비스 모델 개발

- 농업생태 특성 적용 경관 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개발
 - 농업생태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및 디자인 현장적용 : 3개소
 - 자연경관, 농업생산경관 등 유형에 따른 매뉴얼 개발 : 1종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촌경관조성 관리기반 기술 구축

- 사업 내용
 - 사업지원대상 : 농촌경관조성 및 어메니티자원 관리기반 기술개발 추진 부서
 - 사업 규모(사업량) : 농촌경관조성 및 어메니티자원 관리기반 기술 6과제
 - 지원금액 및 형태 : 27억원(기타회계)
 - 지원조건 : 국비 100%
 - 지원내용 : 전문가 등의 심의와 사전 중복과제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하여 농촌 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총체적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과제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0조, 제38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	-	700	-	700	-	-	700
2013	-	-	300	-	300	-	-	300
(증△감)			△400		△400			△40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 : 해당사항없음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134/125	-	-	700/700	-	-	-	700/700
'13	5	-	-	300	-	-	-	300
'14	5	-	-	300	-	-	-	300
'15	5			300				300
'16	5			300				300

-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촌어메니티 자원발굴조사 읍면지역수	179 /140	145 /140	125 /125	-	-	자원발굴· DB구축 읍면수	자원조사 보고서
농촌경관조성· 관리기술개발 및 현장지원 건수	-	-	9/5	5	5	경관기술개발 및 현장지원 건수	연구결과 보고서

6-2. 농어촌 환경오염 방지

(1) 개관

□ '13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마을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관거 설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를 위해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15개소)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을 '14년까지 71% 수준 달성
-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공급 확대를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으로 토양환경 보전
 - 유기질비료 290만톤에 대해 1,450억원 지원, 토양개량제 80만톤 1,080억원 지원
- 친환경농업지구 및 광역단지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유통시설·장비, 친환경농업교육시설·장비 등 지원
- 폐비닐 수거비 지원으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활성화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 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업인 등에게 수거보상금 지급을 통해 효율적인 폐비닐 수거 도모(톤당 1만원씩 1,950백만원 지원)
- 해양폐기물 정화·쓰레기 수거사업을 통해 수산자원회복 및 해상교통 개선
 - 전국 주요항만 및 연근해 주요 해역 20여개소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11개 광역 지자체에서 조업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및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지원
 -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 및 육상폐기물 해양배출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관련 법·제도 정비 및 배출해역의 친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및 방안 마련
-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치수·이수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정비로 친수환경조성(5,166억원)

□ 예산 내역

<2013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130,429	1,784	206,472		338,685	152,219		490,904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7,475				7,475		1,427	8,902
유기질비료 공급	220,612				220,612	32,405		253,017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25,391			25,391	40,343	16,137	81,871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6,375		6,375			6,375
해양폐기물 정화				15,589	15,589	1,883		17,472
소하천 정비	258,461				258,461	258,143		516,604
농어촌지역 쓰레기 수거·처리			10,816		10,816	9,590		20,406
합계	616,977	27,175	223,663	15,589	883,404	494,583	17,564	1,395,551

< 6-2-1-1.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환경부) >

담당부서	생활하수과	담당자	강부영
전화번호	044-201-7143	이메일	kangb413@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하수도 정비 및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확대(기본계획 p.61)

□ 마을별 소규모 하수도 확충·정비 추진

- '14년까지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을 71% 수준으로 제고
 - 소규모하수도(500톤 미만/일) 신설·개량 및 면단위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한 투자 확대('10~'14 기간 중 11,166억원 지원)
 - * 농어촌지역(면단위) 하수도보급률 : ('05)35.8% → ('10P)56.0 → ('14P)71
 - 소규모 마을은 자연 친화형 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검토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지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543억 원 지원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지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903억 원 지원(전년대비 0.9% 증가)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전국 군지역
 - 사업 규모(사업량) : '12년 292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총사업비의 70% 국고보조
 - 지원조건 : 개별 신청사업의 타당성·시급성 등을 평가, 지원여부 결정
 - 지원내용 :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증설 및 개량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
 -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3조 제1항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95,482	2,230	156,605		254,317	132,009		386,326
2013	130,429	1,784	206,472		338,685	152,219		490,904
(증△감)	34,947	△446	49,867		84,368	20,210		104,578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0,429	1,784		206,472		152,219		490,904
강원	13			11,263				
경기	14	8,113		14,295				
경남	49	26,714		28,291				
경북	45	9641		30,987				
광주	15			7,387				
부산	1			350				
세종	2	2,511		300				
울산	2			2,628				
인천	5	10,102		900				
전남	49	13,646		22,062				
전북	40	19,866		24,730				
제주	4	1,784						
충남	32	9,497		28,509				
충북	21	4,086		16,069				
추경		29,664		18,701		20,727		69,093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674	529,791	11,324	1,387,762		955,890		
'12	314	95,482	2,230	156,605		132,009		
'13	292	100,765	1,784	187,771		131,491		
'14	760	105,803	2,230	320,257		214,415		
'15	706	111,093	2,478	351,251		232,411		
'16	602	116,648	2,602	371,878		245,564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하수도보급률		56%	58%	70%	71%	공공하수도 사용 인구수/해당지역 전체 인구수	하수도 통계

< 6-2-1-2.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환경부) >

담당부서	폐자원에너지팀	담당자	박재완
전화번호	044-201-7411	이메일	wanjp@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하수도 정비 및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확대(기본계획 p.61)

□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폐기물 매립,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확대

- 군 단위 이하 지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확대
- '10년~'14년간 33개소에 총 535억 지원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12개소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완료

3. 2013년도 추진 계획

- 15개소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 계속사업 7개소, 신규사업 8개소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 사업 내용
- 사업 기간 : '95 ~ 계속
- 사업 규모(사업량) : 15개소(계속 7, 신규 8)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보조(70%, 15억원까지/개소)
- 지원조건 : 정률
- 지원내용 : 농어촌 지역의 매립지 여유용량 확보와 위생적인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소각, 매립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6조(국고보조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7,972				7,972			7,972
2013	7,475				7,475		1,427	8,902
(증△감)	△497				△497		1,427	93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	7,475				1,427		8,902
강원	3	1,298				128		1,426
충남	2	1,036				122		1,158
전북	2	1,374				-		1,374
전남	6	3,029				861		3,890
경남	1	528				226		754
제주	1	210				90		3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11/14	7,972/9,500				-		7,972/9,500
'13	15	7,475				1,427		8,902
'14	12	8,473				3,631		12,104
'15	14	9,500				4,070		13,570
'16	14	9,500				4,070		13,57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생활폐기물 소각율(%)	-	-	24.4	24.5	24.6	(11년도 농어촌생활 폐기물 소각량 / 11년도 농어촌생활폐기물 발생량) × 100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 자료

< 6-2-2-1. 유기질비료(친환경비료) 공급(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김 황 립(주무관)
전화번호	044-201-1882	이메일	khrip@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최소화(기본계획 p.61)

□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농업으로 인한 환경부하 저감

- 화학비료·농약사용 감축을 통해 '흙살리기' 추진
 -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전환 하고 유기질 비료 공급(250만톤/연) 및 녹비작물 재배를 확대
 - *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 ('09) 292kg/ha → ('14p) 220
 - * 녹비작물 재배면적 : ('09)135천ha → ('14p)250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유기질비료 공급확대 및 토양개량제 지속 공급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 및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 도모
 - * 유기질비료 : ('10) 2,500천톤/1,450억원 → ('11) 2,500/1,250 → ('12) 2,858/1,434
 - * 규산·석회질비료 : ('10) 811천톤/864억원 → ('11) 800/756 → ('12) 710/672
 - * 녹비작물 재배면적 : ('10) 144천ha/150억원 → ('11) 103/122 → ('12) 115/104
- 유기질 비료의 품질별 차등지원 추진으로 품질개선 유도
 - 부숙도 측정기준, 중금속 기준, 퇴비 품질등급제 등 운영
- '10년부터 기존 관행비료 대신 토양검정결과와 양분수지를 고려한 맞춤형 화학비료 전환을 통해 비료사용량 감축
 - 예산지원 : ('10) 465천톤, 600억원 → ('11) 541, 298 → ('12) 500, 200
 - * 비료사용량 : ('99~'01 평균) 375kg/ha → ('11) 249(△34%)

3. 2013년도 추진 계획

- '13년 퇴비 품질등급제 및 가격 차등지원으로 퇴비품질 고급화 유도
 - 유기질비료 1,400원/20kg, 퇴비(1,2,3 등급) 1,200, 1,000, 700원/20kg
 - * '13년 음식물쓰레기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해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 지원가격 동일 조정
- 유기질비료 공급확대 및 토양개량제 지속 공급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
 - * 유기질비료 : ('11) 2,500천톤/1,250억원 → ('12) 2,858/1,434 → ('13) 2,900/1,450
 - * 규산·석회질비료 : ('11) 800천톤/756억원 → ('12) 710/672 → ('13) 800/756
 - * 녹비작물 재배면적 : ('11) 103천ha/122억원 → ('12) 115/104 → ('13) 94/100
- 일몰예정에 따라 맞춤형비료 예산지원은 중지되었으나, 공급은 '12년 수준 (500천톤)으로 유지하고 교육·홍보 강화
 - 교육·홍보 예산 증액 : ('12) 1억원 → ('13) 2
 - 우수기관 평가·시상, 친환경비료 확대를 위한 전문지 홍보·리후렛 등 배포

4. 관련 사업 내용

가. 유기질비료(친환경비료) 공급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 3종,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
 - 사업 규모(사업량) : '13년 2,900천톤
 - 지원금액 및 형태 : 1,450억원, 정액지원
 - * 유기질비료 : 1,400원/20kg, 부산물비료(1,2,3 등급) : 1,200원/20kg, 1,000, 700
 -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 1,400원/20kg, 부산물비료(3개등급) 1,200~700원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3종, 부산물비료 2종의 농가 구입비 일부지원
 - 법적근거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43,441							143,441
2013	145,000							145,000
(증△감)	1,559							1,559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천톤)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900	1,450					1,450	
서울	6	310					310	
부산	30	1,510					1,510	
대구	22	1,090					1,090	
인천	32	1,600					1,600	
광주	22	1,120					1,120	
대전	21	1,050					1,050	
울산	27	1,350					1,350	
세종	10	500					500	
경기	344	17,200					17,200	
강원	280	14,000					14,000	
충북	180	9,000					9,000	
충남	184	9,200					9,200	
전북	240	12,000					12,000	
전남	542	27,070					27,070	
경북	550	27,500					27,500	
경남	344	17,200					17,200	
제주	66	3,300					3,3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천톤)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758	738,441					738,441	
'12	2,858/2,700	143,441/ 135,000					143,441/ 135,000	
'13	2,900	145,000					145,000	
'14	3,000	150,000					150,000	
'15	3,000	159,360					150,000	
'16	3,000	159,360					150,000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 '15년부터 녹비작물 지원예산 9,360백만원(11천톤) 포함하여 유기질비료로 통합 추진 계획임

나. 토양개량제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지원대상

- 규산 : 유효규산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경지
- 사업 규모(사업량) : '13년 800천톤(규산질 530, 석회질 270)
- 지원금액 및 형태 : 75,612백만원(규산질 48,207, 석회질 27,405)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내용 : 농가 신청에 의한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 무상 공급 지원
- 법적근거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67,171					28,788		95,959
2013	75,612					32,405		108,017
(증△감)	8,441					3,617		12,058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천톤)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00	75,612				32,405		108,017
서울	-	29						
부산	2	194						
대구	2	212						
인천	8	770						
광주	6	564						
대전	1	127						
울산	2	202						
세종	3	282						
경기	64	6,017						
강원	44	4,165						
충북	36	3,410						
충남	103	9,648						
전북	125	11,787						
전남	151	14,179						
경북	84	7,969						
경남	53	5,042						
제주	-	-						
유보	116	11,015						

* 제주도는 광특회계로 2,650백만원 별도지원, 유보분은 지역별로 추가신청을 받아 신청수요에 따라 지원할 계획임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구분	'10	'11	'12	'13	'14		
단위면적당 화학 비료 사용량(kg/ha)	목표		241 (신규)	236	225	220	화학비료 사용량(kg)/ 전국 경지이용 면적 (ha)	화학비료 사용 량(비료공업협 회), 경지이용 면적(통계청)
	실적		249	264 (잠정)				
논토양 유효규산 함량(ppm)	목표		-	157 (신규)	157	157	살포한 다음해의 토양 유효규산 함량 측정 치(ppm)	전년도 토양개 량제 살포 토 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실측조 사하여 산출 농 진청)
	실적			달성 (잠정)				

< 6-2-2-3. 친환경농업기반(지구조성) 구축(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김수진
전화번호	044-201-1878	이메일	ksj6059@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최소화(기본계획 p.61)

□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농업으로 인한 환경부하 저감

- 친환경농업지구 및 광역단지를 친환경농업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
 - 친환경지구 조성 : ('09까지)991지구 → ('14p)1,152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95년부터 마을단위로 10ha 규모의 집단화된 친환경농업지구조성
 - '12년도까지 1,076개소 선정·지원
 -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무농약이상 인증면적('11)이 전국 평균(6.7%) 보다 7.6배 높은 51.2%를 차지하고 있고, 지구내 인증면적도 전년도 보다 크게 증가하여 친환경농업기반구축 확대에 기여
- *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지구) : ('10) 45.0% → ('11) 51.2%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5개소(전남대, 강원대, 경북대, 경남 고성군, 제주대)를 설치하여 농법, 농자재,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및 농업교육 기반 마련('08~'12)

3. 2013년도 추진 계획

- '13년도 친환경농업지구 사업자 선정 : 2월
 - 농경지가 10ha 이상,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
-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친환경인증면적, 인증농가수 등) 점검 : 3월
- 농업환경 기초조사 실시(농촌진흥청 → 사업대상지) : 3월~6
- '12년도 사업지구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 : 3월
- 사업자 교육 및 사업추진 점검(수시)
- '14년도 신규 사업대상지구 제출
 - 시·군 제출(2월), 농림수산물식품부에 제출(3월)
 - 시·도는 신청조직에 대해 자체평가 실시 후 사업지구별 평가표 제출(10월)
- '13년 신규 사업자 선정 및 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추진
- 사업시행 지침서 개정 검토 : 1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친환경농업기반(지구조성) 구축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을 희망하는 지역(마을)에서 사업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
 - 사업 규모(사업량) : 지구조성 사업 개소수 : 30
 - 지원금액 및 형태 : 4,500백만원(광특)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유통시설·장비, 친환경농업교육시설·장비 등
 - 법적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550			2,550	4,250	1,700	8,500
2013		4,500			4,500	7,500	3,000	15,000
(증△감)		1,950			1,950	3,250	1,300	6,50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0		4,500			7,500	3,000	15,000
광주	1		200			333	133	667
경기	3		400			667	267	1,333
강원	3		420			700	280	1,400
충북	2		350			583	233	1,167
충남	4		520			867	347	1,733
전북	4		510			850	340	1,700
전남	6		900			1500	600	3,000
경북	3		480			800	320	1,600
경남	2		380			633	253	1,267
제주	2		340			567	227	1,133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7		34,050			56,750	22,700	113,500
'12	17/28		2,550/2,550			4,250	1,700	8,500
'13	30		4,500			7,500	3,000	15,000
'14	60		9,000			15,000	6,000	30,000
'15	60		9,000			15,000	6,000	30,000
'16	60		9,000			15,000	6,000	30,000

나.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원(광역친환경농업단지)

○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지원대상 : 지역농·축협 또는 농업법인(사업면적 600ha 이상 확보가 가능한 조직)
- 사업 규모(사업량) : '15년까지 광역단지 60개소 조성
- 지원금액 및 형태 : 20,891백만원(광특)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장비,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장비, 농축산자원화시설, 친환경산지유통시설 등
- 법적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1,470			21,470	29,368	12,441	63,279
2013		20,891			20,891	32,843	13,137	66,871
(증△감)		△579			△579	3,475	696	3,592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		20,891			32,843	13,137	66,871
경기				.				
강원				.				
충북	2		2,784			4,640	1,856	9,280
충남	2		2,762			4,603	1,841	9,206
전북	3		2,797			5,512	2,205	10,514
전남	3		2,304			5,340	2,136	9,780
경북	4		5,249			8,748	3,499	17,496
경남	2		1,800			3,000	1,200	6,000
제주	1		600			1,000	400	2,000
기타			2,595					2,595

* '13년도 시도별 배분내역은 미확정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9		103,303			139,826	83,790	326,919
'12	22/22		24,200/ 24,200			29,368	12,441	66,009
'13	17		20,891			32,843	13,137	66,871
'14	20		18,412			24,549	18,412	61,373
'15	19		18,700			24,933	18,700	62,333
'16	21		21,100			28,133	21,100	70,333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광역·지구조성 친환경 농업단지의 인증면적 비율(%) (무농약 이상)	32.5	34.0	35.0	36.5	38.0	(광역·지구조성의 전체면적에 대한 친환경인증면적의 비율 산출)	각 시·도 인증면적 보고자료

< 6-2-2.4.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환경부) >

담당부서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김진권
전화번호	044-201-7385	이메일	babarian30@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폐비닐·폐농약용기 등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기본계획 p.62)

- 농어촌 폐비닐 수거비 및 소각, 재활용 등 처리 지원
 - '11년까지 적체폐비닐 제로화를 위해 민간 기술공모 위탁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한 민간매각 실시
 - 폐비닐 수거를 위해 '10~'14년간 총 731억원 투자
 - * '07년 기준, 영농폐비닐 적체량은 198천톤 수준['06년 적체량 276천톤 + '07년 발생량(추정) 340천톤 - 처리량 254천톤('07년 수거량 175천톤 포함)]
-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폐 농약용기 수거 처리 지원
 - * 폐 농약용기 발생량은 감소 추세('01년 84백만개 → '06년 38백만개)
 - * '09년 한국환경자원공사-지자체-작물협회 출연금을 활용, 29억원 지원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적체 폐비닐 적기 처리를 통한 농촌 환경 보전
 - 2012년 적체폐비닐 처리목표 : 50천톤
 - 2012년 적체폐비닐 처리실적 : 64천톤
-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을 통한 효율적인 수거·처리 도모
 - 2012년 영농폐비닐 수거목표 : 195천톤
 - 2012년 영농폐비닐 수거실적 : 178천톤
- 폐농약용기 등 유해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한 농촌환경 보호
 - 2012년 영농폐기물 수거목표 : 52,000천개
 - 2012년 유해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 51,925천개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적체 폐비닐 적기 처리를 통한 농촌 환경 보전
 - 처리 목표 : 42천톤
- 폐비닐 수거비 지원으로 영농폐비닐 수거활성화 도모
 - 수거 목표 : 195천톤
- 유해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통한 농촌환경 보전
 - 수거 목표 : 50,000천개

4. 관련 사업 내용

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마을이장, 작목반장, 부녀회장 등 농업인/재활용업체
 - 사업 규모(사업량)
 - 농촌폐비닐처리 : '12년 까지 780억원
 - 폐비닐수거비 : '12년 까지 58억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 농촌폐비닐처리 : 4,425백만원, 농촌폐비닐 톤당 처리비 지급
 - 폐비닐수거비 : 1,950백만원, 정액지원(10원/kg, 국고보조 100%)
 - 지원조건
 - 농촌폐비닐처리 : 공단에 적체된 농촌폐비닐 처리
 - 폐비닐수거비 : 영농 후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사업소)에서 수집전표를 발행한 물량
 - 지원내용 :
 - 농촌폐비닐처리 : 농촌폐비닐 처리 계약 업체에 톤당 처리비 지급
 - 폐비닐수거비 : 영농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거보상금으로 경작 후 발생한 폐비닐의 수거활성화를 통하여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환경 개선을 기하고자 그간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던 것을 환경부로 일원화('10)하여 예산반영

-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 환경환경공단법 제17조(사업)
- 환경환경공단법 제23조(자금의 조달 등)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7,083		7,083			7,083
2013			6,375		6,375			6,375
(증△감)			△708		△708			△708

- '13년 시도별 폐비닐 수거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950				1950
경기				180.34				
충북				196.55				
충남				268.19				
인천				3				
전남				294.22				
전북				193.20				
대전				7.2				
세종				4.75				
광주				4.1				
대구				5				
경남				188.3				
경북				345.9				
울산				5				
제주				46.15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6,078			24,727				24,727
	/242,000			/24,957				/24,957
	/975,000			/9,750				/9,750
'12	64,078			4,903				4,903
	/50,000			/5,133				/5,133
	/195,000			/1,950				/1,950
'13	42,000			4,425				4,425
	/42,000			/4,425				/4,425
	195,000			1,950				1,950
	/195,000			/1,950				/1,950
'14	50,000			5,133				5,133
	/50,000			/5,133				/5,133
	195,000			1,950				1,950
	/195,000			/1,950				/1,950
'15	50,000			5,133				5,133
	/50,000			/5,133				/5,133
	195,000			1,950				1,950
	/195,000			/1,950				/1,950
'16	50,000			5,133				5,133
	/50,000			/5,133				/5,133
	195,000			1,950				1,950
	/195,000			/1,950				/1,950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나. 유해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지원대상 : 마을이장, 작목반장, 부녀회장 등 농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58,000천개

- 지원금액 및 형태 : 빈병류 50원/개(수거비), 봉지류 82.44원/개(수거·처리비)
- 지원조건 : 영농 후 발생한 유해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사업소)에서 수집전표를 발행한 물량
- 지원내용 : 영농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거보상금으로 경작 후 발생한 유해영농폐기물의 수거활성화를 통하여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환경 개선을 기하고자 예산반영
-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 환경환경공단법 제17조(사업)
 - 환경환경공단법 제23조(자금의 조달 등)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구분	'10	'11	'12	'13		
유해영농폐기물 수거량(천개)	목표	35,122	46,300	46,500	50,000	한국환경공단 유해영농폐기물 수거량	한국환경공단 보고자료
	실적	49,773	51,039	51,925	-		

< 6-2-3-1. 해양폐기물 정화(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해양보전과	담당자	정진용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4425	이메일	a85851472@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기본계획 p.63)

- 국가어항·무역항 및 주요 연근해역의 부유·침적된 해양쓰레기 분포 및 실태조사와 수거·처리
 - 해양폐기물 수거를 위해 '10~'14년간 730억 지원
-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및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
 - 항포구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로 수거처리 효율성 증대
 - '10~'14년간 443억(국비 295, 지방비 148) 지원
- '12년까지 해양배출 가축분뇨를 전량 육상처리 추진
 -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 ('06)261만톤 → ('08)170 → ('12)0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주요 항만 및 연근해의 침적쓰레기 수거·처리(계속)
-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및 재해쓰레기 수거·처리 지원(계속)
- '12년 육상폐기물의 감축목표(250만^m) 달성(228만^m)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전국 주요 항만 및 연근해의 침적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추진('13.2~12)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및 재해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 추진('13.2~12)
- 폐기물 배출해역(3개 해역) 정밀조사,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업체의 전·폐업 지원 및 가축분뇨의 전량 육상처리 추진('13.2~12)

4. 관련 사업 내용

가. 해양폐기물 정화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해양환경관리공단 및 지자체
- 사업 규모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민간대행) 및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 (지자체 보조),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지원(지자체보조)
- 지원금액 및 형태 : 민간대행(104억원), 지자체보조(30억원)
- 지원조건 : 민간대행사업(국비 100%), 지자체 보조(50~60%)
- 지원내용 : 전국 주요항만 및 연근해 주요 해역의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11개 광역지자체의 조업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및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지원
-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및 제119조(국고보조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2,392	12,392	1,733		14,125
2013				13,489	13,489	1,883		15,372
(증△감)				1,097	1,097	150		1,247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개 지자체				3,049	1,882		4,931
부산					35	24		59
인천					0	0		0
울산					65	42		107
경기					40	27		67
강원					198	132		330
충남					352	228		580
전북					340	218		558
전남					1,328	771		2,099
경북					226	150		376
경남					360	220		580
제주					105	70		175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개 지자체				67,371	9,261		76,632
'12					12,392	1,733		14,125
					/12,392	/1,733		/14,125
'13					13,489	1,882		15,371
'14					13,340	1,882		15,222
'15					13,801	1,882		15,683
'16					14,349	1,882		16,231

나.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한국해양연구원
- 사업 규모 : 폐기물 배출해역 정밀조사 등
- 지원금액 및 형태 : 직접수행(21억원)
- 지원내용

-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구 해수부 및 환경부) 및 육상폐기물 해양배출관리 종합 대책('06.3.27,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관련 법·제도 정비 및 배출해역의 친 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및 방안 마련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300	2,300			2,300
2013				2,100	2,100			2,100
(증△감)				△200	△200			△20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00			2,100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중기재정계획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580			10,580
'12				2,300/2,220			2,300/2,220
'13				2,070			2,070
'14				2,070			2,070
'15				2,070			2,070
'16				2,070			2,07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량 (단위:만 m ³)	448	397	228	120		육상폐기물 해양 배출감축량	해양경찰청 실적 통계자료
해양쓰레기 수거 및 수매량(단위:톤)	12,737	10,017	8,149	8,866		침적쓰레기 수거량 및 해양쓰레기 수매량	해양환경관리공단 실적 보고 및 지자체 실적보고

< 6-2-3-2. 소하천 정비(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재해경감과	담당자	박정운(주무관)
전화번호	02)2100-5462	이메일	eip0818@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소하천 정비 등을 통한 수해 방지 및 생태계 보전(기본계획 p.63)

- 소하천 정비율을 '09년 40%에서 '14년까지 45% 수준으로 제고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2013년 소하천정비 사업대상 선정지침 시달('12. 3. 9)
 - 소하천정비사업대상 선정방식 개선추진(마무리·계속사업, 신규사업-투자우선 순위 평가결과 반영 등)
 - ※ 국비지원 대상규모, 사업추진 방식, 사업대상지구 선정절차 강화 등
- 2013년 소하천정비사업 추진계획 보고('12. 9. 6)
 - 선정방식에 따른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유형별 구분 등 세부 추진계획 마련
- 2013년 소하천정비사업 보조금예산안 계획 통보('12.10.15)
 - 시도별 사업대상지구 보조금예산안 통보,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 2013년도 재해예방사업 추진 관계관 회의 개최('12.12.28)
 - 소하천정비사업 예방투자 및 조기추진 방향 등 설명
- 2013년 국고보조금 확정계획 및 추진지침 통보('13. 1. 2)
 - ※ 2013년 예산 확정('12.1.1)
 - 재해위험요인 조기해소 및 여름철 재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기완공
 - 사업시급성 및 투자효과가 큰 소하천 우선 정비
 - 주변경관과 적합한 친수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름다운 소하천정비

3. 2013년도 추진 계획

- 2013년 소하천정비사업 조기추진단 운영('12.11.28~'13. 6.30)
 - 조기 추진에 따른 사전재해 예방으로 농림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2012년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 점검('13. 2~3월)
 - '12년도 사업지구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강구
- 2014년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지 선정추진('13. 3~6월)
- 2013년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공모 및 선정('13. 4~7월)
 - 안정적인 치수와 하천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과 인간의 생활공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소하천을 자율적으로 조성토록 유도

4. 관련 사업 내용

가. 소하천 정비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읍·면지역, 시의 지역중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외의 용도지역
 - 자치구의 지역중 생산·보전녹지, 생산·보전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다른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법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등
 - 사업 규모(사업량) : 총 35,157km('12년까지 15,387km, 43.8% 정비)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보조(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Matching Fund)
 - 지원내용 : 사업수요, 투자효과 등을 감안 사업비 50% 지원
 -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13조(비용보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정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26,855				226,855	226,855		453,710
2013	258,461				258,461	258,143		516,604
(증△감)	31,606				31,606	31,288		62,894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km)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3.8	258,461					258,143	516,604
대구	1.0	1,078					1,078	2,156
인천	2.2	3,084					2,766	5,850
울산	0.7	350					350	700
세종	0.8	1,248					1,248	2,496
경기	19.5	37,150					37,150	74,300
강원	30.0	23,699					23,699	47,398
충북	31.2	27,167					27,167	54,334
충남	24.8	20,225					20,225	40,450
전북	22.0	20,758					20,758	41,516
전남	46.8	31,431					31,431	62,862
경북	73.4	38,385					38,385	76,770
경남	26.6	29,935					29,935	59,870
제주	4.8	3,951					3,951	7,902
추경		20,000					20,000	4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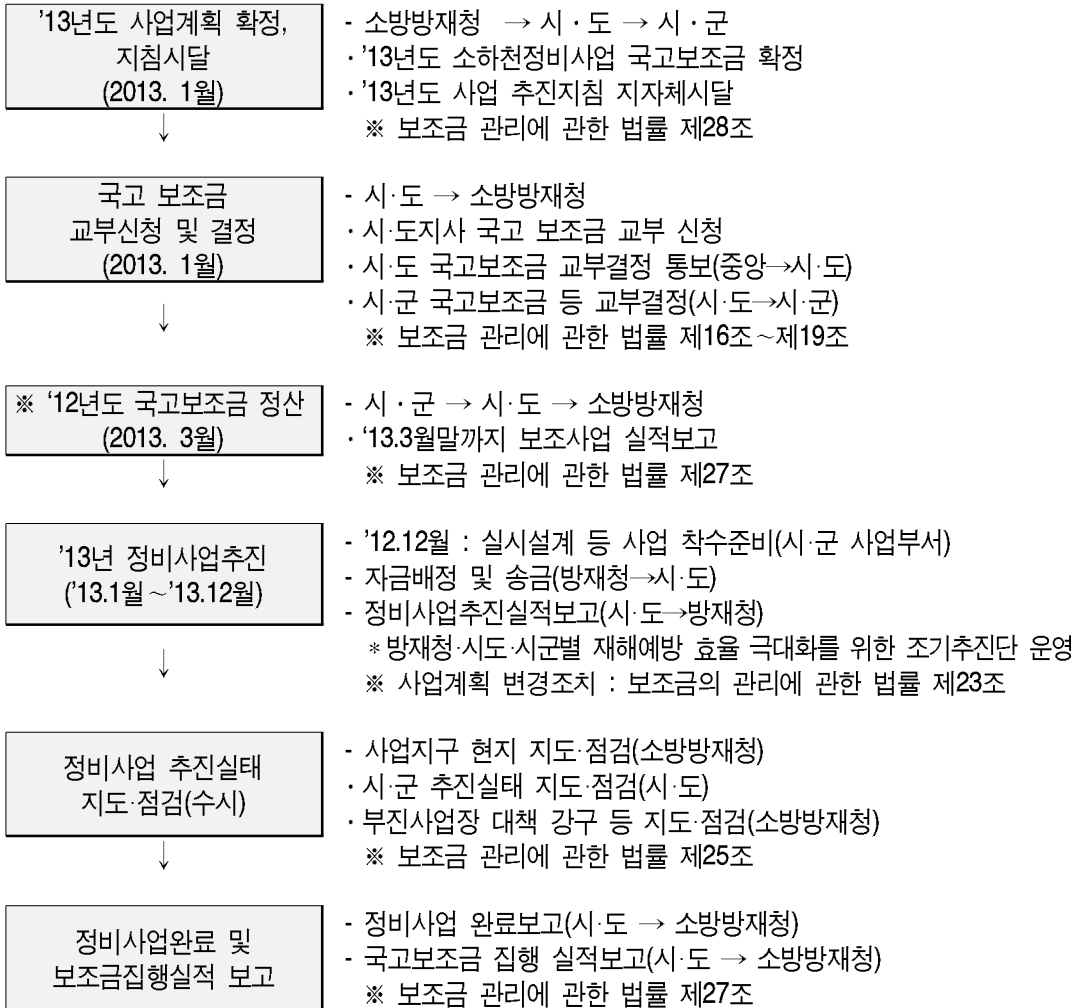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km)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76	1,333,553				1,333,235		2,666,788
'12	250/253	226,855/226,855				226,855/226,855		453,710/453,710
'13	283	238,461				238,461		476,604
'14	340	262,307				262,307		524,614
'15	410	288,538				288,538		577,076
'16	490	317,392				317,392		634,784

나. 소하천정비사업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소하천정비율(%)	42.0	43.1	43.8	44.6	45.5	추진실적누계/총연장 (35,157km)	사업추진결과 /내부자료
	414/ 14,769	368/ 15,137	250/ 15,387	283/ 15,670	340/ 16,010		

< 6-2-3-3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환경부) >

담당부서	수생태보전과	담당자	박대현 주무관
전화번호	044-201-7051	이메일	pk2710@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농어촌지역 쓰레기 수거처리(기본계획 p.62)

- 하천·하구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묵은 쓰레기 수거
 - 「하구·하천쓰레기 수거처리기본계획(환경부)」에 따라 관련부처·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
- 농어민과 저소득층 등 공공근로인력(희망근로프로젝트) 활용연계방안 강구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하천·호소 등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하구 등에 산재(부유)되어 있는 쓰레기 수거·처리
 - 하천·하구부유쓰레기 수거·처리 : 46천톤('12년 기준)

3. 2013년도 추진 계획

- 하천 상류에서 하구까지 방치·산재·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 지속 지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지역 쓰레기 수거·처리(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자체
 - 사업 규모(사업량) : 집중 호우 시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62개 지자체에 국고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광역시 40%, 일반시군 70% 보조
 - 지원내용 : 하천·하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 법적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69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8,616		8,616	6,391		15,007
2013			10,816		10,816	9,590		20,406
(증△감)			2,200		2,200	3,199		5,399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시·군 수)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1			10,816		9,590		20,406
부산	1			1,195		1,792		2,987
대구	2			203		87		290
인천	1			3,280		4,920		8,200
울산	1			150		225		375
세종	1			70		30		100
경기	1			143		61		204
강원	6			460		197		657
충북	3			155		67		222
충남	7			775		332		1,107
전북	13			960		411		1,371
전남	16			1,783		764		2,547
경북	7			535		229		764
경남	12			1,107		475		1,582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62/62			8,616/ 8,616		6,391/ 6,391		15,007/ 15,007
'13	71			10,816		9,590		20,406
'14	71			11,809		10,543		22,352
'15	71			12,399		11,070		23,464
'16	71			13,019		11,624		24,643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나.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추진 절차 및 임무

환 경 부	지 자 체	유역(지방)환경청
○ 사업총괄 - 계획수립, 예산확보, 사업검토 및 조정 등 - 종료된 사업 최종 정산	○ 사업시행 - 당해년도 사업추진 계획서 제출(환경부와 유역(지방)청) - 대상선정, 공사계약 및 인력선발, 사업추진 등 - 추진 실적 보고(환경부) - 사업 종료시 정산자료 제출(유역(지방)청)	○ 사업지원 - 지역별 현지 자료 조사, 사업검토, 점검(에로사항 등), 사업비 집행 독려 등 ○ 사업 종료시 정산 실시 - 정산 결과 통보(환경부) ○ 처리비용분담금 협의 조정 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하천·하구쓰레기 수거량(천톤/년)	40	40	45	46	46	계획대비 쓰레기 수거실적	쓰레기 수거 실적 보고서

6-3.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

(1) 개관

□ '13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농어촌지역에 목재펠릿의 사용확대를 위해 연중 목재펠릿보일러의 보급(가정용 2,800대, 주민편의시설용 200대) 및 제조시설 설치(4개소)하여 고유가 대처 및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
-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으로 고유가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 시설원예(원예작물), 축산(양돈, 계사), 수산(양어장) 분야 140ha에 천공 등 토목공사 및 히트 펌프, 온실내 배관시설 설치에 국비 및 지방비 일부 지원
-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12년부터)에 따라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원화시설 확대 및 가축분뇨 처리 시설·장비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유통기반 구축
 - * 공동자원화시설 : ('12) 88개소 → ('13) 101
 - * 유통센터/액비저장조 : ('12) 162개소/8,408기 → ('13) 177/9,108
 - * 녹색성장 대비 에너지화시설 확대 : ('12) 7개소 → ('13) 9
- 농작물과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확보 및 저탄소 경제 실현
 - 농작물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 5,620백만원 지원
 - 해조류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 800백만원 지원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으로 농어촌의 에너지자립도 제고와 녹색성장 구현
 - 저탄소 녹색마을(1개소, 2억원), 산림탄소순환마을(2개소, 25억원) 지원

□ 예산 내역

<2013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목재펠릿 사용 확대	11,425					5,225	3,960	20,610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			66,937			22,312	22,312	111,561
가축분뇨 자원화 에너지화(에너지화시설)			142,959		142,959	63,289	15,083	221,331
가축분뇨처리 지원	85,274	1,669			86,943	44,770	10,770	142,483
농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5,620				5,620		1,837	7,457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800		800			800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환경부)			100		100	100		200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산림청)	1,250					750	500	2,500
농업용저수지 활용한 소수력발전			15,000		15,000		3,736	18,736
합계	103,569	1,669	225,796		251,422	136,446	58,198	525,678

< 6-3-1-1. 목재펠릿 사용 확대(산림청) >

담당부서	목재생산과	담당자	최태환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4201	이메일	choita-1@forest.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13년까지 농산어촌 주거용 유류 사용량의 7%(37만톤), 시설 원예 난방기 유류 사용량의 20%(50만톤)를 목재펠릿으로 공급(기본계획 p.64)
 - 시설원예난방기 설치·교체시 펠릿보일러로 대체, 단계적으로 제조시설 확충 및 보일러 보급 확대
 - 펠릿 제조시설 설치 : ('09까지) 5개 → ('13p) 41
 - 펠릿 보일러 보급 : ('09까지) 3천대 → ('13p) 39
 - * 목재 펠릿 이용시 경유에 비해 비용은 1/3,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2 수준
 - 목재 펠릿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펠릿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목재펠릿 보일러 약 14,000대 보급
 - 주택용 : ('09) 3천대 → ('10) 4천대 → ('11) 4천대 → ('12) 2.8천대
 -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용 : ('11) 255대 → 200대
 - 지역단위 집중난방시설용 : ('12) 3대
 - 산업용 : ('11) 9대 → ('12) 28대
- 목재펠릿 제조시설 21개소 조성
 - ('08) 1개소 → ('09) 8개소 → ('10) 8개소 → ('11) 3개소 → ('12) 1개소
 - * 목재펠릿 21만톤/년 생산능력 확보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 주택용 2,800대, 주민편의시설용 200대, 산업용 40대, 지역단위 집중난방용 1대
-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사업 4개소

4. 관련 사업 내용

가. 목재펠릿 사용 확대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일반 국민, 목재펠릿 제조업체
 - 사업 규모(사업량) : 목재펠릿 보일러 3천대 보급,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사업 4개소
 - 지원금액 : 주택용·주민편의시설용 보일러(4,700천원/대), 산업용 보일러(3억원/대), 지역단위집중난방시설(3억원/개소)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 지원조건 : 목재펠릿 보일러(국비 30~50%, 지방비 20~50%, 자부담 30~50%),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지원내용 :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지원,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사업 지원
 - 법적근거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목재이용증진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0,925					5,025	3,660	19,610
2013	11,425					5,225	3,960	20,610
(증△감)	500					200	300	1,00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대,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보일러 2,300 제조시설 4	5,275				5,165	3,870	14,310
서울	보일러 15	26				31	14	71
부산	보일러 11	16				21	14	52
대전	보일러 20	28				38	28	94
세종	보일러 50 제조시설 1	270				175	170	615
경기	보일러 325	444				569	374	1,387
강원	보일러 212	263				331	204	799
충북	보일러 281 제조시설 2	1,424				887	932	3,243
충남	보일러 350	461				583	367	1,410
전북	보일러 281	400				494	282	1,175
전남	보일러 331	428				543	345	1,316
경북	보일러 506 제조시설 1	1,212				1,114	906	3,233
경남	보일러 205	270				341	212	823
제주	보일러 20	33				40	21	94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천대,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보일러 15 제조시설 17	56,625				25,925	19,500	102,050
'12 (계획)	보일러 3 제조시설 1	10,925				5,025	3,660	19,610
'13	보일러 3 제조시설 4	11,425				5,225	3,960	20,610
'14	보일러 3 제조시설 4	11,425				5,225	3,960	20,610
'15	보일러 3 제조시설 4	11,425				5,225	3,960	20,610
'16	보일러 3 제조시설 4	11,425				5,225	3,960	20,61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목재펠릿 소비 증가율(%)	85	86	170	50	50	(당해년도 목재펠릿 소비량-전년도 목재펠릿 소비량) /전년도 목재펠릿 소비량×100	국내 제조업체 목재펠릿 판매량 + 목재펠릿 수입량

< 6-3-1-2. 유리온실 등에 지열난방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원예경영과	담당자	이덕민(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258	이메일	dms0070@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유리온실 등에 대한 지열난방 시스템 도입으로 비용절감 및 품질 향상 도모

○ '10년 시범사업 추진후 확대(1,200억원, 250ha)

* 지열난방 : 계절에 따라 온도가 변하는 지상과 온도가 일정한 지하의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 활용시스템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지열 난방 보급사업 대상자 선정(1월)

- 원예 31농가, 축산 5, 수산 114

○ 중간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7월, 12월)

- 사업추진 상황 파악 및 축산, 수산분야 지열 확대 사전 현장 확인

○ '12년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협의회 개최(12월)

- 지열 설치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 '12년 지열 사업 신청 공고(12월)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지열 난방 보급사업 대상자 선정(2월)

- '12년 예산 66,937백만원

○ 현장 모니터링 실시(6월, 9월)

- 사업추진 상황 파악 및 현장 애로사항 파악

○ '13년 지열 사업 신청 공고(7~8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시설원예(원예작물), 축산(양돈, 계사), 수산(양어장)
- 사업 규모(사업량) : 140ha
- 지원금액 및 형태 : 66,937백만원, 자치단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천공 등 토목공사 및 히트펌프, 온실내 배관시설 지원
-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실적)			45,868			15,289	15,289	76,446
2013(계획)			66,937			22,312	22,312	111,561
(증△감)			21,069			7,023	7,023	35,115

* '12년도는 예산 배정내역임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ha)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6,937		22,312	22,312	111,561
부산				1,981		660	660	3,301
경기				4,738		1,579	1,579	7,896
강원				3,433		1,144	1,144	5,721
충북				3,883		1,294	1,294	6,471
충남				1,861		620	620	3,101
전북				15,423		5,141	5,141	25,705
전남				20,695		6,898	6,898	34,491
경북				1,226		409	409	2,044
경남				9,445		3,148	3,148	15,741
제주				4,251		1,417	1,417	7,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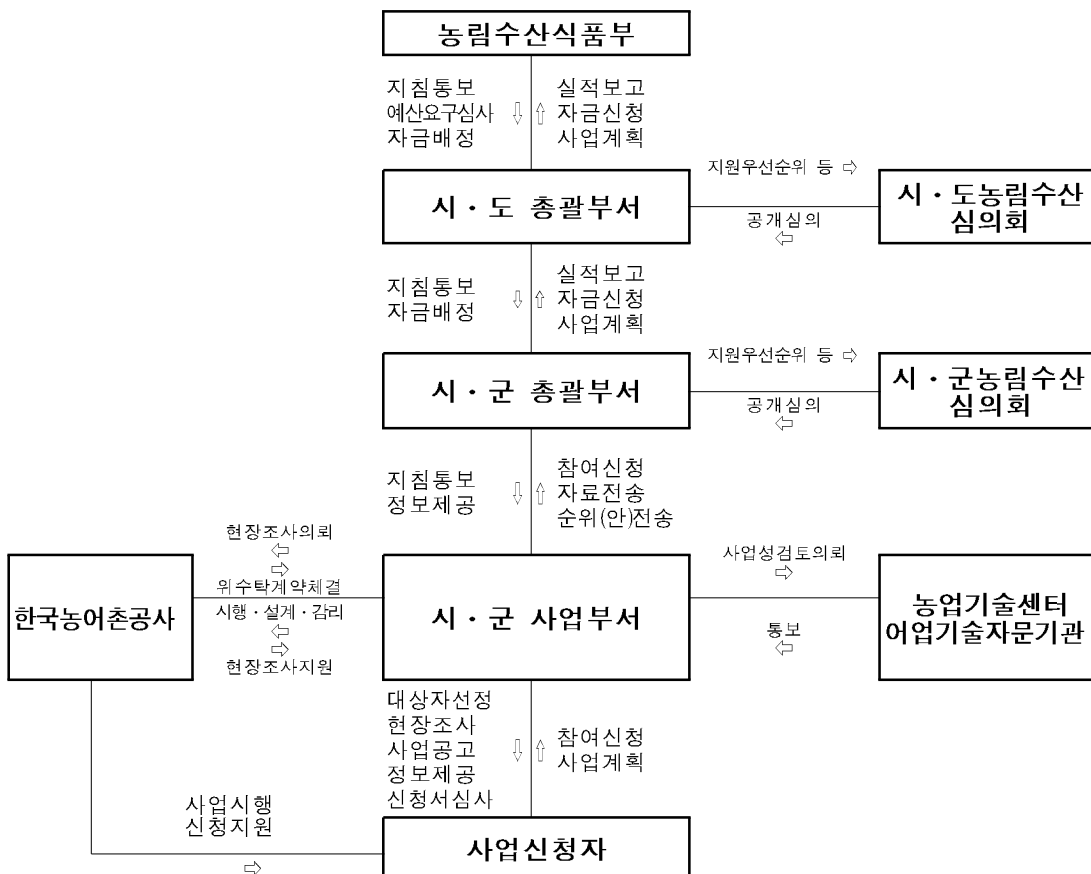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ha)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13,616		104,537	104,537	522,690
'12	95/155			45,868/ 74,400		15,289/ 24,800	15,289/ 24,800	76,446/ 124,000
'13	140			66,937		22,312	22,312	111,561
'14	140			66,937		22,312	22,312	111,561
'15	140			66,937		22,312	22,312	111,561
'16	140			66,937		22,312	22,312	111,561

나.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사업 추진체계 : 시장·군수(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

- 사업추진주체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에너지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대상 농어가 유류사용 절감율 (%)	15	20	22	23	24	$\left[\frac{\text{전년도 유류사용량} - \text{금년도유류사용량}}{\text{전년도 유류사용량}} \right] \times 100$	보급대상 중 sample을 선정 하여 유류사용 량 조사

< 6-3-1-3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환경부) >

담당부서	유역총량과	담당자	현세환(주무관)
전화번호	044-201-7022	이메일	wslwrxkd@korea.kr
담당부서	폐자원에너지팀	담당자	오종훈(사무관)
전화번호	044-201-7401	이메일	ojh21@me.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 가축분뇨 공공처리 및 에너지화 시설 확충(p.6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까지 89개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에너지화 시설 확대로 현재 85%인 자원화율을 90%로 제고 -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를 위해 비료공정규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 * 에너지화 시설 1개소 당 8만Kwh 생산(6백여 농가에서 한 달 동안 사용 가능) ○ '13년까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17개소 확충 추진 - 가축분뇨, 음식쓰레기, 음폐수,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가축분뇨 자원화 등 공공처리시설 설치 >

-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21개소(853톤/일) 등 공공처리시설 총 89개소(1,733톤/일) 설치·운영 중('12.12)

구분	시설수 (용량)	세부내역
액비	14 (573)	화성 70, 여주 80, 철원 30, 진천 30, 천안 30, 홍성 8, 당진 75, 해남 30, 영천 10, 화성2 40, 김제2 50, 상주2 50, 창원 10, 김해 60
퇴비	3 (90)	강화 30, 장수2 50, 합천 10
바이오	4 (190)	파주 60, 보성 30, 제주1 50, 제주2 50

- 중간처리수 액비화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등을 설치하여 효율적 처리시설 운영 및 자원화 유도

<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 >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20개소(4,738톤/일) 확충 추진(계속)
 - 음식물쓰레기 2,728톤/일, 음폐수 1,450톤/일, 가축분뇨 병합 560톤/일 등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추진현황 >

(단위 : 톤/일)

구 분	시설수	시설규모	세부내역
계	20	4,738	
완 공	2	138	동대문구 98톤(음식물), 속초 40톤(음식물)
공사중	8	1,960	대구 300톤(음식물), 고양 260톤(음식물), 진주 150톤(음폐수), 수도권 광역 500톤(음폐수), 광주 300톤(음폐수), 김해 100톤(음폐수), 울산 150톤(병합), 청주 200톤(음폐수)
입찰추진	5	980	대전 400톤(음식물 200, 음폐수 200), 충주 80톤(음식물), 전주 300톤(음식물), 제주 200톤(음식물)
기 타	5	1,660	수도권 광역 1,000톤(음식물), 충남 신도청 50톤(음식물), 경북 신도청 150톤(병합), 구리 200톤(음식물), 영천 260톤(병합)

- 음식물쓰레기·음폐수 및 가축분뇨 병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관리방안 및 인허가 의제 처리기준 마련 등('12.6 폐기물관리법 개정 완료)

3. 2013년도 추진 계획

- 가축분뇨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10개소)
 -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단위농협이 설치·운영) : 7개소 820톤/일
 - 환경순환형 공공처리시설 설치(환경공단이 기술지원) : 3개소 373톤/일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지원(12개소, 303억원)
 - '13년에 5개소(1,250톤/일) 완공 및 시운전 추진
-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의 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 액비(가축분뇨 발효액), 퇴비 원료 등에 관한 비료공정규격(농진청 고시) 개정 협의 추진
- '바이오가스 포럼'을 통한 지자체 기술지원 및 민간업체 사업 촉진
 - '12년 완공시설 시운전 상황,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시설 시범운영 성과, 산업계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추진방안 논의 등

4. 관련 사업 내용

가. 가축분뇨 자원화 등 공공처리시설 설치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자체에서 설치예정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및 가동중인 공공처리시설 중 개선·증설사업을 선정하여 지원
- 사업 규모(사업량) : 91년부터 89개시설(10,733톤/일) 설치 운영
- 지원금액 및 형태 : '12년까지 9,665억원(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시군구 80%, 시도 60%,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70%
- 지원내용 : 국고보조
- 법적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4조

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음식물쓰레기·음폐수 및 가축분뇨 병합(혼합) 처리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산·이용하는 지자체 시설사업
- 사업 규모(사업량) : 4,738톤/일(계속사업 20개소, '13년 : 12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12년까지 102,236백만원,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병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은 70%)
- 지원내용 : 국고보조, 제도개선, 기술지원 등
-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6조(국고보조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 가축분뇨 자원화 등 공공처리시설 설치 >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07,767			26,941		134,708
2013			119,469			24,210	15,083	158,762
(증△감)			11,702			△2,731	15,083	24,054

<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 >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30,409			65,501		95,910
2013			23,490			39,079		62,569
(증△감)			△6,919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가축분뇨 자원화 등 공공처리시설설치 >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3			119,469		24,210	15,083	158,762
인천	1			3,000		750		3,750
강원	2			6,084		1,521		7,605
경기	3			22,894		4,395	3,543	30,832
충북	1			1,500		375		1,875
충남	3			13,831		2,729	1,943	18,503
전북	5			12,270		2,977	240	15,487
전남	2			2,380		595		2,975
경북	9			44,964		7,757	9,291	62,012
경남	6			12,314		3,078		15,392
제주	1			232		33	66	331

<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 >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23,490		39,079		62,569
광주	1			2,660		6,207		8,867
대전	2			1,655		3,862		5,517
울산	1			7,810		3,347		11,157
경기	2			2,895		6,757		9,652
충북	2			3,607		8,416		12,023
전북	1			3,024		7,056		10,080
경북	1			450		193		643
경남	1			829		1,934		2,763
제주	1			560		1,307		1,867

○ 중기재정계획

< 가축분뇨 자원화 등 공공처리시설설치 >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69			607,580		128,225	64,993	800,798
'12	33/33			107,767/97,507		26,941/25,113		134,708
'13	33			119,469		24,210	15,535	159,214
'14	34			123,053		24,936	16,001	163,990
'15	34			126,744		25,684	16,481	168,909
'16	35			130,547		26,454	16,976	173,977

<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 >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5,528		341,084		496,612
'12	12			30,409		65,501		95,910
'13	12			23,490		39,079		62,569
'14	9			31,302		72,408		103,710
'15	6			28,827		67,263		96,090
'16	5			41,500		96,833		138,333

5. 성과목표

- 운영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수질오염물질(BOD) 삭감량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완공 용량 지표를 신규 설정함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가축분뇨 오염물질 삭감량 (BOD, 톤/ 일)	105,5	107.8	112,7	113,8	115.0	삭감부하량=유입부 하량-배출부하량	내부보고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완공 수	-	-	2	4	5	'13년에 완공(시운전 착수)한 시설 수 집계	지자체 보고자료

< 6-3-14. 가축분뇨처리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방역관리과	담당자	김정주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75	이메일	bullsvet@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시설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까지 자원화 시설 76개소('09, 40개) 설치 및 에너지화 시설 확대로 현재 85%인 자원화율을 90%로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를 위해 비료공정규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 * 에너지화시설 1개소 당 8만Kwh 생산(6백여 농가에서 한 달 동안 사용 가능) ○ '13년까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17개소 확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분뇨, 음식쓰레기, 음폐수,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
--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자원화 등 적정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 공동자원화(누계) : ('09) 39개소 → ('10) 56 → ('11) 68 → ('12) 88
 - 액비유통센터(누계) : ('09) 101개소 → ('10) 121 → ('11) 147 → ('12) 162
 - 액비저장조(누계) : ('09) 5,646기 → ('10) 6,524 → ('11) 7,508 → ('12) 8,408
 - 에너지화(누계) : ('10) 3개소 → ('11) 6 → ('12) 7
-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수립·시행(2월)
 - 축산·환경관련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 개최(3.6~7, 275명)
 -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지원계획 수립·시행(3.29)
 - 평가(4.2~4.30) 결과, 우수 조직체 인센티브 자금 지원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활성화 방안 워크샵(6.20~21, 180명)
 -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집합 컨설팅 실시(10.31, 250명)
 - 축산환경 컨설턴트 육성 집합교육 계획 수립(6.8, 62명 수료)

- 1차(기초) : 7.2~6일, 2차(응용) : 9.5~7일
- 가축분뇨 자원화 중장기 대책 마련 전문가 워크숍(12.6~7, 80명)
- 액비홍보 동영상 제작 및 우수사례 발간·배포(12월말)
- '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 이후 추진대책 수립·시행
 - '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 이후 추진대책(12.30, 장관보고)
 - 경남북 지역, 가축분뇨 처리실태 현장 점검회의 실시(3회)
 -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이후, 문제발생 우려 10개 특별관리 시·군에 대한 처리실태 점검 및 비상대책 강구
 - * 1차(1.31~2.1), 2차(5.3), 3차(5.31~6.1)
- (추진성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유통기반 구축 등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함에 따라 자원화율이 증가하고, 또한 '12년부터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여 해양배출 제로화("0")로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 가축분뇨 자원화율 : ('10) 86.6% → ('11) 87.6 → ('12) 88.7
 -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 ('10) 107만톤 → ('11) 77 → ('12) 0

3. 2013년도 추진 계획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등을 위한 자원화시설 확대 및 유통기반 구축
 - 공동자원화시설(누계) : ('12) 88개소 → ('13) 101
 - 액비유통센터(누계) : ('12) 162개소 → ('13) 177
 - 액비저장조(누계) : ('12) 8,408기 → ('13) 9,108
 - 녹색성장 대비 에너지화시설(누계) : ('12) 7개소 → ('13) 9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계획 수립(2월)
 - 축산환경 관련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 개최(2월)
 -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지원계획 수립·시행(3월)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활성화 방안 워크숍 개최(6월)
 -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집합컨설팅 및 지역단위 컨설턴트 육성교육 실시(7월)

-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유통센터) 평가·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퇴·액비 품질 향상 및 경종농가 신뢰 구축
 - 자원화 조직체 컨설팅 의무화(연 1회) 및 평가제 도입, 평가결과에 따라 액비살포비 등 차등 지원
 - 가축분뇨 액비의 성분 및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액비에 한하여 농경지 등 살포를 허용하는 시비처방서 발급제도 개선
- 가축분뇨 자원화 중장기 대책 마련(2월)
 - '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이후,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 및 퇴·액비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4. 관련 사업 내용

가. 가축분뇨처리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 돼지 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등
 - 사업규모 및 지원형태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합 계		226,088	85,274	46,629	38,645	44,770	10,770
· 개별시설	580천㎡	43,848	19,488	4,872	14,616	4,872	-
· 공동자원화(퇴액비)	10개소	98,175	40,425	23,100	17,325	17,325	-
· 공동자원화(에너지)	2개소	26,250	8,750	5,250	3,500	5,250	3,500
· 정착촌구조개선	60천㎡	4,284	1,764	1,260	504	756	-
· 액비저장조	700기	14,280	2,380	2,380	-	5,950	3,570
· 액비유통센터	25개소	6,500	1,500	1,500	-	2,500	1,000
· 액비살포비	60,470ha	18,141	6,047	6,047	-	6,047	-
· 액비성분분석기	10개	360	120	120	-	120	-
· 액비부숙도관정기	10개	450	150	150	-	150	-
· 자원화조직체관리평가	-	300	150	150	-	-	-
· 친환경퇴비시설현대화	15개소	13,500	4,500	1,800	2,700	1,800	2,700

- 지원조건 :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용자	자부담	용자조건
· 개별시설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민간기업 등4%)
· 공동자원화시설	40	30	30	-	
- 퇴·액비화 - 에너지화	30	30	20	20	
· 정착촌구조개선	50	30	20	-	
· 액비저장조	20	50	-	30	
·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 액비살포비	50	50	-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 액비부속도판정기	50	50	-	-	
· 자원화조직체관리평가	100	-	-	-	
· 친환경퇴비시설현대화	20	20	30	30	6년(3년거치 3년 균분상환), 연 3%

- 지원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자원화 하는 등 적정처리를 위한 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업신청(사업희망자 → 시·군) ⇒ 사업내용검토 및 심의(시·군, 시·도 농정심의회) ⇒ 대상자 선정(시·군, 시·도) ⇒ 시·도에 예산배정(농식품부) ⇒ 시·군에 예산배정(시·도) ⇒ 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 시·도) ⇒ 보조금 교부신청(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보조금 교부결정(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 가축분뇨시설 허가·신고(시·군) ⇒ 시공업체 선정·착공(사업자) ⇒ 준공검사(시·군) ⇒ 사업완료 신고·사업비 신청 ⇒ 사업비 검정·정산 ⇒ 보조금 집행

- 법적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지자체·축산업자의 책무)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69,319	1,534	-	-	70,853	38,841	6,500	116,194
2013	85,274	1,669	-	-	86,943	44,770	10,770	142,483
(증△감)	15,955	135	-	-	16,090	5,929	4,270	26,289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세종		524	-	-	-	214	20	758
인천		1,093	-	-	-	482	0	1,575
광주		30	-	-	-	9	0	39
울산		208	-	-	-	291	111	610
대구		72	-	-	-	22	0	94
부산		37	-	-	-	26	10	73
경기		9,816	-	-	-	4,987	641	15,444
강원		3,950	-	-	-	2,165	255	6,370
충북		3,078	-	-	-	1,785	357	5,220
충남		12,112	-	-	-	6,544	732	19,388
전북		11,258	-	-	-	6,164	732	18,154
전남		9,617	-	-	-	5,645	732	15,994
경북		3,854	-	-	-	2,140	306	6,300
경남		6,515	-	-	-	3,450	273	10,238
제주		5,925	1,669	-	-	2,385	0	9,979
유보		17,186	-	-	-	0	0	17,186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69,319	1,534	-	-	38,841	6,500	116,194
'13		85,274	1,669	-	-	44,770	10,770	142,483
'14		78,469	1,534	-	-	43,968	7,358	131,329
'15		74,600	1,534	-	-	41,800	6,995	124,929
'16		74,600	1,534	-	-	41,800	6,995	124,929

5. 성과목표

- 가축분뇨 자원화율은 '06년 82%를 기준으로 '14년 90%를 목표로 연 1%씩 증가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가축분뇨 자원화율(%)	86.6	87.6	88.7	89.5	90.0	(가축분뇨 자원화 물량 /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 100	퇴비 판매량, 액비이용량 등 (농식품부), 가축 분뇨 해양투기 물량(국토부), 공공처리물량 (환경부)

< 6-3-1-5. ①농산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과학기술정책과	담당자	안형근연구원
전화번호	044-201-1637	이메일	hgahn@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농작물 및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기본계획 p.65)

- 바이오에너지 추출에 적합한 갈대·억새 등 비식용 농작물의 품종개발 및 유희지를 활용한 시험재배로 상용화 토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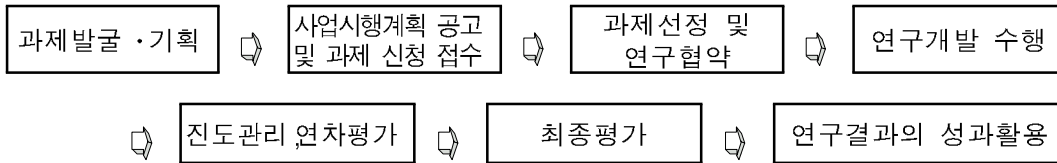
* ('13년) 기초기술 개발 → ('16년) 응용기술 개발 → ('18년) 상용화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12년 계속사업 추진
 - 사업목표 : 농촌 바이오매스 타운 건설을 위한 요소기술 및 기반 확보
 -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 10과제, 3,650백만원
 -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 1과제, 600백만원
 - 고오일 함유 바이오매스 종자개발, 농·임·축산 바이오매스 순환 실증단지 (Biopia) 모델 구축 및 사업지침서 개발, 에너지 저장 및 순환형 온실시스템 개발, 가축폐기물을 활용한 경제성 있는 에너지생산 실증플랜트 개발 등
- '12년 신규사업 추진
 - 사업목표 : 농림 바이오매스 활용 청정에너지 농업시스템 개발
 -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 2과제, 240백만원
 -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 1과제, 800백만원
 - 농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환경친화형 기능성 biochar 생산 및 기후변화대응 농업·환경기술 개발, 바이오매스 전환반응에 이용 가능한 새로운 나노촉매의 개발, 지역단위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청정에너지 농업시스템 개발 및 실증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사업목표 : 농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친환경기술 연구 추진
- 사업내용 :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계속, 신규과제 추진
- 추진절차



- 사업공고 : '13. 2 ~ 3월
- 선정평가 : '13. 3 ~ 4월
- 사업대상자 선정, 협약 : '12. 5월 중
- 주요 추진과제(안) : 바이오에너지 농업 이용,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작물재배 순환활용 기술 개발, 시설채소 작물 재배기술과 결합하는 청정에너지 농업 시스템 구축, 생산 바이오에너지의 변환체계 개선, 바이오매스 생산에 적합한 품종 육성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산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 사업명 :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단체)등 산·학·연 연구팀
- 사업 규모(사업량) : 5,620백만원(12개 과제)
- 지원금액 및 형태 : 과제당 10억원 이내, 출연
- 지원조건 : 대기업 50%, 중소기업 25% 이상 매칭
- 지원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 법적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6조(농업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제37조(농업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농림수산식품과학 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생명공학육성시책연구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5,290				5,290		1,565	6,855
2013	5,620				5,620		1,837	7,457
(증△감)	330				330		272	602

* '11년 이후 예산(국비)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연 6.4%씩 확대, 기타(민간부담)는 정부출연금(국비)의 25%(중소기업 참여부담금) 적용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없음

* 지자체 보조사업이 아닌 우수연구자(대학·연구소·기업 등) 지원으로 시도별 배분계획 없음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과제수)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12/14	4,620 /5,290					1,060 /1,565	5,680 /6,855
'13	13	5,620					1,837	7,457
'14	14	5,970					1,950	7,920
'15	15	6,360					2,070	8,430
'16	16	6,760					2,210	8,970

* '11년 이후 예산(국비)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연 6.4%씩 확대, 기타(민간부담)는 정부출연금(국비)의 25%(중소기업 참여부담금) 적용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16		
특허출원건수	2	2	2	2	2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상향	연구성과활용 결과보고서
논문게재건수	7	7	7	7	7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상향	연구성과활용 결과보고서

< 6-3-1-5. ②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자원환경과	담당자	김 평 전
전화번호	044-201-2757	이메일	kpj1599@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농작물 및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기본계획 p.65)

- 우뚝가사리 등 해조류 대량 양식장 조성(20년까지 50만ha) 등을 통한 에너지화 기반 구축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달성을 위한 추진실적 중심으로 기재(추진 일시, 진행상황(계속, 완료) 등)
 - 해조류를 통한 바이오오일 수율 46.7% 달성
 - 혼합 알코올 수율 90% 달성
 - 해조류 추출물(바이오소재) 기능성 물질 동정
 - 해조류 부산물 유래 시트형 바이오복합재료 제조 조건 확립
 - 공정모사기 이용 단위공정의 에너지 및 물질수지식 모델링 완료
 - 2차 해조류 바이오매스 국제심포지엄 개최(10/25, 부산BEXCO)
 - 통합활용공정을 통하여 갈조류 1톤(건량, 수분 10%포함)에서 495kg(수율 55%)의 에너지원 및 고부가 기능성 식·의약품(후코잔틴 및 폴리페놀 5kg) 추출 성공

3. 2013년도 추진 계획

- ※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달성을 위한 '13년도 추진계획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제3차 해조류 바이오 매스 그린에너지화 및 통합활용기반구축 연구용역 계약사업 추진(12.12.~13.8)
 - 해조류바이오매스 총괄·기술통합연구
 - 생물학적 전환공정 연구
 - 그린에너지 융합공정 연구

4. 관련 사업 내용

※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반드시 작성) 외 관련사업도 각각 작성

가.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부경대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바이오에너지 통합활용공정 개발, 생물전환이용 바이오 연료 및 화화소재 생산, 혐기성발효 이용 바이오에너지 생산 등
- 지원금액 및 형태 : 275억원(총사업비, 국고)
- 지원조건 : 직접수행
- 지원내용 :
- 법적근거 :
 - 「수산업법」 제1조(목적), 제2조(양식), 제8조(해 조류 양식어업)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5조(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
 -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제1항제3호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6.30 국회의결, ’11.7월 공포예정)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	소계			
2012			1,000		1,000			1,000
2013			800		800			800
(증△감)			△200		△200			△200

- * 농특세 전입금 사업은 농특세로 기재하고, 현 회계는 별도 기재
- * 마사회 적립금 등 기금 성격이 높은 재원은 기금으로 기재하고, 자원명을 별도기재
- * 2012년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계획금액을 기재하고 계획임을 표시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경기								
충북								
충남								
인천								
..								
..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12	실적/계획	실적/계획		1,000/1,000				1,000/1,000
'13				1,000/800				1,000/800
'14				1,000				1,000
'15				1,000				1,000
'16				1,000				1,000

나. 해조류바이오매스 대량생산 및 통합활용방안 연구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연구용역사업계약에 의한 직접수행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특허출원(건수)	신규	3	3	3	3	특허출원 건수	특허출원 여부 확인
학술논문발표(건수)	신규	9	9	9	9	발표 논문 확인	학술지 게재 여부 확인

< 6-3-2-1.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환경부) >

담당부서	폐자원에너지팀	담당자	김영
전화번호	044-201-7410	이메일	k165y@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집적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기본계획 p.65)

- 소규모 마을(40~50호)을 대상으로 바이오매스·풍력·태양력 등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형 녹색마을로 리모델링
 - '12년까지 시범사업 실시, '20년까지 전국적으로 600여개 조성
- 친환경·저에너지형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 개발·보급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10-'12년 시범사업 추진(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사 중)
 - 기본 및 실시설계(7.9~9.28), 공사착공('12.10-)
 -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운영(4회)
- '13년 사업대상지 선정(12.31, 경남 합천)
-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12.4~10)

3. 2013년도 추진 계획

- '13년 본 사업 추진(경남 합천)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14년 사업 대상지 선정

4. 관련 사업 내용

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등을 이용, 에너지화를 통해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자체
 - 사업 규모(사업량) : 2,080억원, 전국 40개소 지원(개소당 52억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보조(환특)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52억원 지원(1년차 : 2억원, 2-3년차 : 각 25억원)
-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6조(국고보조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949		949	949		1,898
2013			100		100	100		200
(증△감)			△849		△849	△849		△849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경남	1			100		100		2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1/1			949/949		949/949		1,898/1,898
'13	1			100		100		200
'14	3			1,450		1,450		2,500
'15	7			4,150		4,150		8,300
'16	11			8,000		8,000		16,0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녹색마을 조성개소	1			1	2		선정문서

< 6-3-2-1.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산림청) >

담당부서	산림휴양문화과	담당자	이명규
전화번호	042-481-8877	이메일	km2324@forest.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집적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기본계획 p.65)

- 소규모 마을(40~50호)을 대상으로 바이오매스·풍력·태양력 등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형 녹색마을로 리모델링
 - '12년까지 시범사업 실시, '20년까지 전국적으로 600여개 조성
- 친환경·저에너지형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 개발·보급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산림탄소순환마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09.11.16)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 1리 및 2리
-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지침시달('10.5.4)
-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10.6~12월)
-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1차년도 주택신축공사 11가구 완료('11.6~12월)
- 2010년 시범사업 대상지(봉화군) 2년차 조성공사 완료('12. 1~12월)
- 2011년 시범사업 대상지(화천군) 실시설계 및 1년차 공사(계속)

3. 2013년도 추진 계획

- 2011년 시범사업 대상지(화천군)2년차 조성공사 추진('13. 12월 완료예정)
- 지역난방시설 시험가동 등 보완사항 점검(계속)

4. 관련 사업 내용

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산촌

- 사업 규모(사업량) : 2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총 50억원 이내,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시설, 목재를 활용한 주택 신축·리모델링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주택 개선사업 지원
- 법적근거 : 산림기본법 제8조, 제29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500	-	-	-	2,500	1,500	1,000	5,000
2013	1,250					750	500	2,500
(증△감)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개소	1,250	-	-	-	750	500	2,500
경북	1개소	1,250	-	-	-	750	500	2,5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2/2	2,500/2,500				1,500/1,500	1,000/1000	5,000
'13	2	1,250				750	500	2,500
'14	2	440 (설계비)				25 (설계)	-	465
'15	2	2,940				1,275	1,000	5,215
'16	4	5,440				3,250	2,000	10,69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저탄소녹색마을조성	-	-	1	1	2 (설계)	조성공사 준공	사업추진 자치단체

< 6-3-2.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에너지개발팀	담당자	김대성
전화번호	031-420-3904	이메일	bluelinek@ekr.or.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기본계획 p.6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저수지의 관개용수 및 잉여수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소수력발전과 공사소유 유희부지에 태양광·풍력발전소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비 지원 - '17년까지 발전소 83개소 54,481kW(연간 12만MWh 전기 생산)건립 지원

2. 신재생에너지 건설 현황(2012.12월 말 기준)

○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위 치	발전규모 (kW)	예상발전량 (MWh/년)	사업비	예상수익/년
35개소		17,909	49,122	71,372	7,754
소수력	18개소	12,109	40,272	30,717	2,992
태양광	17개소	5,800	8,850	40,655	4,762

※ 자료출처 : 발전규모<정산>, 예상발전량<이사회>, 사업비<정산>

○ 소수력 발전소 건설 현황

년도별	지구명	위 치	발전규모 (kW)	예상발전량 (MWh/년)	사업비	예상수익/년
합 계		18 지구	12,109	40,272	30,717	2,992
1986	정 우	전북 정읍	2,000	3,888	552	304
2005	동 화	전북 남원	1,000	2,913	2,095	208
2006	하 동	경남 하동	825	2,722	2,627	172
2007	백 곡	충북 백곡	430	1,702	1,904	173
	담 양	전남 담양	1,274	2,138	2,768	211
2008	장 성	전남 장성	1,220	2,861	3,595	196
	울 현	경남 산청	560	1,765	2,020	234
2009	경 천	전북 완주	440	2,662	1,822	130
	탑 정	충남 논산	320	3,197	1,439	138
	청 천	충남 청천	490	2,415	1,449	132
2010	구 이	전북 완주	360	1,630	1,307	160
	용 립	전북 장수	600	1,915	1,266	136
	삿갓보	전북 정읍	400	1,915	1,253	160
2011	물 야	경북 봉화	410	1,557	1,392	130
2012	오 봉	강원 강릉	530	1,600	1,219	116

년도별	지구명	위 치	발전규모 (kW)	예상발전량 (MWh/년)	사업비	예상수익 /년
	예 당	충남 예산	480	2,421	1,781	176
	공 평	충남 아산	180	963	658	70
	동 상	전북 완주	590	2,008	1,570	146

○ 태양광 발전소 건설 현황

준공 년도	지구명	위 치	발전규모 (kW)	예상발전량 (MWh/년)	사업비	예상수익 /년
합 계		17개소	5,800	8,850	40,655	4,762
2008	횡성	강원 횡성	157	527	1,510	144
	영암1	전남 영암	1,500	2,259	11,671	1,391
	진도	전남 진도	1,000	1,506	8,155	927
	하동	경남 하동	200	301	1,809	185
2009	괴산	충북 괴산	520	783	3,888	418
	영암2	전남 영암	1,500	2,258	10,289	1,152
2012	가현	경기 김포	100	131	311	59
	서촌	충북 청원	100	131	331	59
	신대	충북 청원	100	131	303	59
	청포	충남 부여	65	86	248	39
	칠산3	충남 부여	52	68	196	31
	청하	전북 동진	100	131	401	59
	황등외3	전북 익산	85	111	379	50
	청호	전북 부안	30	45	147	17
	신흥	전남 나주	100	131	306	59
	태촌	경북 구미	100	131	354	59
무전2	경남 의령	91	120	357	54	

3. 2012년도 예산집행 실적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비고
	계	국고	자부담	
계(20)	11,451	10,000	1,451	
소수력(9)	8,118	6,667	1,451	
태양광(11)	3,333	3,333	-	
풍력(0)	-	-	-	

○ 사업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구명	위 치	'12년 사업비			비 고
			계	국 비	자부담	
합 계			11,451	10,000	1,451	
소수력	오봉	강원 강릉	717	717	-	'12년 준공
	예당	충남 예산	1,266	1,266	-	
	궁평	충남 아산	550	550	-	
	동상	전북 완주	1,062	1,062	-	
	북창보	강원 홍천	2,109	2,109	-	'13년 준공
	정우1	전북 정읍	441	-	441	
	광주호	전남 담양	701	-	701	
	불갑	전남 영광	1,111	802	309	
	죽전	경남 합천	161	161	-	
소 계			8,118	6,667	1,451	
태양광	가현	경기 김포	311	311	-	'12년 준공
	서촌	충북 청원	331	331	-	
	신대	충북 청원	303	303	-	
	청포	충남 부여	248	248	-	
	칠산3	충남 부여	196	196	-	
	청하	전북 동진	401	401	-	
	황등외3	전북 익산	379	379	-	
	청호	전북 부안	147	147	-	
	신흥	전남 나주	306	306	-	
	태촌	경북 구미	354	354	-	
	무전2	경남 의령	357	357	-	
	소 계			3,333	3,333	

4. 2013년도 추진 계획

○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상사업비			발전 규모 (kW)	예상발전량 (MWh/년)	예상수익/년	tCO2 감축량/년	비고
	계	국고	자부담					
계(18)	18,736	15,000	3,736	10,060	20,872	3,926	13,029	
소수력(13)	9,736	6,000	3,736	3,610	11,436	1,815	6,690	
태양광(4)	6,000	6,000	-	3,450	4,210	1,249	2,829	
풍력(1)	3,000	3,000	-	3,000	5,226	862	3,510	

※ 건설중인 지구로 준공시 건설규모 사업비 변경 가능

○ 소수력발전 건설중 지구

지구명	위 치	예상사업비			발전 규모 (kW)	예상발전량 (MWh/년)	예상수익 /년	tCO2 감축량 /년	비고
		계	국고	자부담					
계	13지구	9,736	6,000	3,736	3,610	11,436	1,815	6,690	
북창보	강원홍천	2,961	1,707	1,254	500	2,475	390	1,448	'11~ '13
낙덕	전북순창	155	155	-	60	293	47	171	
정우1	전북정읍	216	216	-	75	434	68	254	
광주호	전남담양	378	378	-	240	736	116	431	
불갑	전남영광	761	761	-	600	1,352	213	791	
죽전	경남합천	325	325	-	190	349	54	204	
잠곡	강원철원	969	969	-	465	925	148	541	'12~ '14
고수	전북고창	427	-	427	100	301	49	176	
구만	전남구례	772	-	772	170	943	151	552	
백운	전남광양	633	-	633	160	634	101	371	
문경	경북문경	600	-	600	220	763	121	446	
금계	경북영주	440	390	50	280	1,007	161	589	
서포	전북군산	1,099	1,099	-	550	1,224	196	716	

○ 태양광발전 건설중 지구

지구명	위 치	예상사업비			발전 규모 (kW)	예상발전량 (MWh/년)	예상수 익/년	tCO2 감축 량/년	비고
		계	국고	자부담					
계	4지구	6,000	6,000	0	3,450	4,210	1,249	2,829	
계룡	충남공주	1,136	1,136	-	300	394	115	265	'13
화성	경기화성	4,275	4,275	-	3,000	3,627	1,063	2,437	'13~14
계화	전북부안	280	280	-	70	88	33	59	'13
서포	전북군산	309	309	-	80	101	38	68	'13

○ 풍력발전 건설중 지구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예상사업비			발전 규모 (kW)	예상발전량 (MWh/년)	예상수익 /년	tCO2 감축량 /년	비고
		계	국고	자부담					
새만금 가력도	전북 군산	3,000	3,000	-	3,000	5,226	862	3,510	'13~ 14년

5.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업기반시설 에너지개발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 규모(사업량) : 총 83개소 54,481kW 건설('12년 현재 35개소 17,909kW준공)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출자금) + 자체자금
- 지원조건 : 국고
-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태양광,소수력,풍력)발전소 건설비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1							2,264	2,264
2012			10,000		10,000		1,451	11,451
2013			15,000		15,000		3,736	18,736
(증△감)			5,000		5,000		2,285	7,285

* 자부담은 국고를 제외한 예산 편성 사업비임.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610kW 13개소			15,000			3,736	18,736
경기	3000kW 1개소			4,275				4,275
강원	965kW 2개소			2,676			1,254	3,930
전북	3,935kW 7개소			5,059			427	5,486
전남	1,170kW 4개소			1,139			1,405	2,544
충남	300kW 1개소			1,136				1,136
경북	500kW 2개소			390			650	1,040
경남	190kW 1개소			325				325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1개소 11,948kw			40,000			12,451	52,451
'11	4개소 1,780kW						2,264	2,264
'12	15개소 2,703kW			10,000			1,451	11,451
'13	9개소 2,115kW			10,000			8,736	18,736
'14	7개소 2,600kW			10,000				10,000
'15	6개소 2,750kW			10,000				10,000

※ '13년까지는 준공 실적 규모 '14년 이후는 계획

6.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이후		
준공규모(kW)	13,427	15,197	18,007	21,672	54,481	준공서류	발전사업 신고개시서

7

지역역량 강화

7. 지역역량 강화

7-1. 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

(1) 개관

□ '13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농어촌 지역리더, 사무장,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다양한 지역개발 주체에 대해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실시
 - 16개 과정에 4,530명을 대상으로 교육시행계획 수립('13.1) 및 교육실시('13.3~12)
 - '12년 교육 이수자 DB 지자체에 제공
-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인증 제도의 지자체 이양을 위한 워크숍 개최(상반기)

□ 예산 내역

<2013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단계별·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25,426				25,426			25,426
역량 강화 교육품질 제고								비예산
합계	25,426				25,426			25,426

< 7-1-1. 단계별·맞춤형 교육훈련 강화(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어촌산업팀 경영인력과	담당자	유재중사무관 손윤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2 044-201-1535	이메일	yujj8610@korea.kr yhson@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단계별·맞춤형 교육훈련 강화(기본계획 p.68)

□ 주민에 대한 현장 방문교육 강화

- 사업 준비단계부터 우수사례 견학 등을 통해 지역개발에 대한 이해 및 참여의식 제고
- * 주민역량강화 교육 계획(누계) : ('05~'09) 26천명 → ('14까지) 60

□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14년까지 지역개발 핵심리더 1만명 육성

- 마을사무장, 대표 등에게 기존의 역량강화 교육 후 경영, 회계관리 등 전문교육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여 현장 적용능력 향상
- 지자체 및 지역개발 관련 기관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과정 신설

□ 교육 이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 교육이수자 풀(Pool)을 구축하여 지자체·마을 등이 마을사무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체험마을 사무장 등 운영 확대: ('09) 465명 → ('10) 605 → ('14) 1,000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가. 인적역량 강화

- 농어촌관광 및 도농교류를 주도할 인적역량강화를 위해 전년도 교육내용을 개편하여 인적역량강화 시행계획 수립('12.1월, 총 12개과정, 3,265명에 대해 교육목표 설정) 및 교육 실시(3~12월)
- (교육계획) 12개 과정 3,265명 → (실적) 12개 과정 4,006명

<주요개편 내용>

- 전문가 과정인 프로젝트개발과정 개설, 체험마을 서비스 향상과정 개설 및 체험마을 안전·위생을 위한 교육 홍보 책자 개발
- 멘토·퍼실리테이터 워크숍 시행으로 효율적인 멘토와 퍼실리테이션 시행 (퍼실리테이터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도입)
- 도농교류사업 워크숍 개최(지자체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
- 체험마을 서비스 향상과정 개선
 - 당초에는 등급제 대비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과정을 확대 실시(1회→3회, 등급제 실시 대비 서비스 표준화 교육 실시)
- 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RUCOS를 통해 지자체, 체험마을 및 농어촌공간 정보 공유 관리(시스템 구축, '12.12월)
- 체험마을 사무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 '12년도말 체험마을지정을 받은 700개마을 중 350개 마을에 체험마을 사무장을 지원

나. 농업인 교육훈련

- 농업교육의 현장수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모분야, 교육대상 확대 등 공모사업 방식 개선
 - 현업 적용가능한 현장 실무역량 강화 심화교육 비중 강화(교육시간 62시간, 과정별 50시간 이상이 전체 과정 중 37%(27/72개 과정) 차지)
 - 공모선정 교육기관 대상으로 현장실습교육장 현황 및 이용안내자료 등 사전제시
 - FTA 대응 수출활성화, 핵심주체(마을리더) 양성 등 기획과제공모 확대 운영(총 공모지원액 비중 증가 ('11년)9% → ('12)26)
- 농산업 현장에서의 다양한 성과 창출을 위한 학습조직 시범사업 운영
 - 자생적 학습조직 운영 및 지원(100개소 선정, 최종 71개소 시범운영)
- 특성화농고와 산업현장을 연계하여 농식품산업 진출 환경 조성
 - 학생과 선도농가·법인 간 멘토링 운영대상 학교 확대(10 → 16개교, 멘토 22명, 멘티 109명)
 - 비전아카데미, 희망 Agro-school, 미래농업인 발굴대회 등 비전스쿨 운영(170명)
 - 전국 FFK전진대회('13.9월, 대구자연과학고, 1,600명) 지원 및 교원 국내·외 연수(48명), 우수학생 국외연수(2개과정, 49명) 지원 등

- 농업계 고교 및 대학의 취업·창업 활성화 및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농산업 현장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농고 : 기초 경영교육 및 현장실습교육(WPL)과 연계한 실습교육(10개교 5,170명)
 - 농대 : 직업탐색 프로그램, 실습중심교육, 선진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10개교 1,690명)
-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운영의 내실화
 - 국내·외 농업여건변화(WTO·FTA 등)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32개 품목 591개 교과목 개발), 수출전략품목전문가과정 개발(11개 품목)
 - 32개 품목의 영농능력표준 진단도구 수정·보완을 통해 교육과정 편성 체계화
- 대표실습장 및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12년 76개 실습장 지정 및 운영(대표실습장 9, 선도농가실습장 67)

3. 2013년도 추진 계획

가. 인적역량 강화

- 총 16개 과정, 4,530명(추후 변경 가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행계획 수립('13.1) 및 교육실시(3~12)
 - '12년대비 전문가 양성과정 중 “농어촌 스토리텔링 양성과정”과 “농어촌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신설 운영
 - 사업주제별로 특화과정은 “농어촌체험마을 동기화과정”과 “도농교류사업 담당자과정” 및 “관광농원경영과정”을 신설하여 운영
 - * (농어촌체험마을 동기화과정)마을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여 선 교육 후 지원 시스템으로의 개선
 - 체험마을 사업 전 사전 교육 실시(이해, 동기 부여 및 시행착오 감소 등)
 - * (관광농원경영과정)관광농원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부재
 - 기획, 프로그램 운영, 경영능력 배양 등 역량강화 추진
- 교육 시행방식을 개선
 - 농어촌마을 리더, 사무장 양성과정은 공사 직접 시행에서 도 협의회 위탁 시행
- 농어촌 여성리더 양성과정 확대 시행
 - (기초) 농어촌여성 리더상 정립 → (심화) 농가식당 운영기법 등 실제 사업전략

나. 농업·농촌 교육훈련지원

- 미래 후계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계학교 교육지원 개편(2~12월)
 - 학교 중심에서 교육프로그램 및 학생 지원 중심으로 전환, 대상 학교 확대·재선정
 - 농·수고에 최신 영농기술 습득 실습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영농능력 배양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
- 후계농업인력이 정예농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교육과정 개발·시범운영, 학습자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3월~12월)
 - 후계농 이탈방지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직무교육(의무)을 신설, 국외연수과정을 정규과정으로 도입하여 선진농업국 벤치마킹 기회 제공
- 농업마이스터대학을 경영·기술분야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정예 농업교육 과정으로 개편(1~12월)
 - 효율적인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지역 특화 및 수출전략 품목 위주로 조정
 - '13년 부터는 품목전공을 확대개편(88개전공→96)하고, 농업인의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여건 등을 감안하여 32학점(480시간, 2년제)으로 이수기준 조정
- 농업·농촌 공모교육은 농정정책 및 현안과 부합하는 기획과제 공모교육 중심으로 확대(3~12월)
 - 현장적용 및 성과창출이 가능한 50시간 이상의 고급·심화과정 위주로 지원하여 교육 품질 제고
 - 농산업 경영체의 현장 실무중심의 창조적 역량개발과 학습을 촉진하는 자생적 조직 발굴을 확대(100개소 → 200)
- 농업·농촌교육의 성과 도출과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성공요인 및 성과 조사·분석 강화(2~1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주민역량강화(도농교류활성화 인적역량강화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도농교류지원)
 - 사업 규모(사업량) : 1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1,260백만원(민간경상보조, 농특)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내용 : 농어촌 지역리더, 사무장,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다양한 지역 개발 주체에 대해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법적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260				1,260			1,260
2013	1,260				1,260			1,260
(증△감)	-				-			-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532						6,532
'12		1,260						1,260
'13		1,260						1,260
'14		1,298						1,298
'15		1,337						1,337
'16		1,377						1,377

나. 마을 사무장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체험마을 및 농촌종합개발 마을
- 사업 규모(사업량) : 700개소 중 '13년 389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3,620백만원(월 120만원, 지자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농어촌체험관광을 주도한 체험마을 사무장 인력 지원

- 법적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3,024		3,528		6,552	3,931	605	11,088
2013	3,304		3,931		7,235	4,888	101	12,224
(증△감)	280		403		683	957	△504	1,136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834	19,324		21,671		28,614		69,609
'12	770	3,024		3,528		3,931	605	11,088
'13	849	3,304		3,931		4,888	101	12,224
'14	957	3,794		4,334		5,541	111	13,780
'15	1,055	4,212		4,737		6,121	122	15,192
'16	1,203	4,990		5,141		7,060	134	17,325

다. 단계별·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자체,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고, 농대, 품목·농업인 단체, 민간교육기관 등
- 지원금액 및 형태 : 25,426백만원(지자체·민간보조, 농특)
- 지원조건 : 지자체(국고 50~100%, 지방비 0~30%, 자부담 0~30%), 민간(국고 50~100%, 지방비 0~30%, 자부담 0~30%, 정액)
- 지원내용 : 전문농업경영인 및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 농고·농대생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및 농업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인프라 구축비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2 및 제40조,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2조~제23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제28조, 자연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2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35,754				35,754			35,754
2013	25,426				25,426			25,426
(증△감)	△10,328				△10,328			△10,328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4,000	179,283						179,283
'12	36,663/ 29,000	35,744/ 35,754						35,754/ 35,754
'13	30,000	25,426						25,426
'14	31,000	33,966						33,966
'15	31,000	33,966						33,966
'16	31,000	33,966						33,966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주민역량강화교육 인원	3,525	3,767	4,006	4,530	15,000	역량강화 교육 수료 자 인원 산출	내부자료
핵심리더 양성(명)	735	1,015	2,000	2,500	3,000	리더 교육 수료자 인원 산출	내부자료
체험마을 사무장 확대(명)	600	664	770	849	957	체험마을사무장 채용 인원	행정자료
교육전후 역량향상 율(%)	-	16.7	16.7	15.0	15.0	{(교육후 역량 교육전 역량) / 교육 전 역 량} × 100 * 전문농업인및예비농 업인대상장기농업교육 (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 농고·농대 교육과정)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장기교육생 (농업마이스터대 학과정, 농고·농대 교육과정) 교육 전후 역량을 진단 하여 측정

< 7-1-2 : 역량강화 교육 품질 제고(농림수산식품부) >

* 7-1-2-1(우수민간교육기관육성)과 7-1-2-2(교육쿠폰제 도입)을 과제 통합에 따라 과제명 변경

담당부서	농어촌산업팀	담당자	유재중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2	이메일	yujj8610@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2) 역량강화교육 품질 제고(기본계획 p.68)</p> <p><input type="checkbox"/> 도농교류·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교육과정' 인증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우수 교육소프트웨어 개발을 유도하고 교육과정 인증을 통해 마을해설사, 체험지도사를 양성하는 우수 민간교육기관 육성 <p><input type="checkbox"/> 교육쿠폰제 도입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과정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과 지자체 교육원 등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인증 : 2건
 - * 인증기관 : (사)한국지역활성화포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분단
- 농어촌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인증 : 9건
 - 체험지도사 6건, 마을해설가 3건
 - * 인증기관 : (주)지역타카데미, (주)지역활성화센터 2, (주)퍼포먼스웨이컨설팅 2,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2, 대구대학교 동아시아 관광연구소, 제주관광대학교
- 인증기관에 대한 시설의 현지실태조사 실시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제 도입 및 도농교류 교육과정 지자체 이관에 따른 관계자 회의개최('12.9월)
 - 충북 충주(건설연수원), 대상(시·도,인증교육기관,체험마을대표)
-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등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업무 지자체 이관에 따른 교육 실시('12.12월)
 - 전남 영암(왕인촌마을), 대상(시·도 인증업무담당자, 마을대표 등)

3. 2013년도 추진 계획

- '13년부터 인증기관이 농식품부에서 시·도로 이양되어 지자체에서 주관하여 추진
 - 지자체가 주관하여 추진하므로 성과목표·지표를 산정하기 어려움

4. 관련 사업 내용(비예산사업임)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인증건수	8	8	11			인증건수	내부자료

7-2. 지역발전 컨설팅 강화

(1) 개관

□ '13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총괄계획가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지구의 경관, 생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고 권역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하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 (시범사업지구 7개권역 운영)
- 총괄계획가 선정 : 농어촌계획 및 개발 분야 전문가로써 모집공고 및 지자체 추천 등을 통해 농식품부장관이 선정하고, 시장군수가 위촉
- 권역단위 종합정비계획 용역발주 이전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때까지 운영

□ 예산 내역

<2013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지역개발 총괄계획가제도 활용								

<7-2-2-1. 지역개발 총괄계획가제도 활용(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안완기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63	이메일	okan@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농어촌지역개발 총괄계획가 제도 활용 (기본계획 p69)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09.9월 관련법 개정 및 12월 시행)
 - 지역개발 관련 교수·전문가 중에서 시장·군수가 위촉, 중장기 지역개발 방향 수립 및 마을정비계획 등 총괄·조정 역할 수행
 - 지자체가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11~12년)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촌다움 제고를 위한 「五感경관종합대책」에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계획 반영('11.12.21)
-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 추진계획 및 운용방안 수립('12.2.14)
- 총괄계획가 시범사업지구 선정 및 확정시달('12.2)
- 총괄계획가 모집공고 및 선정·위촉('12.2~3)
- 총괄계획가 제도 업무지침 시달('12.2)
- 총괄계획가 및 행정기관, 권역추진위원장 합동 워크숍('12.3)
- 총괄계획가 모니터링 추진(연간)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확대방안 마련('13.1)
- 총괄계획가 시범사업지구 선정 및 확정시달('13.2)
- 총괄계획가 모집공고 및 선정·위촉('13.2~3)
- 총괄계획가 교육 및 행정기관, 권역추진위원장 합동 워크숍('13.2~3)
- 총괄계획가 제도 업무지침 고시 제정 및 시달('13.12)
- 총괄계획가 제도 연구용역 및 지자체 확대방안 마련 시달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개발사업에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적용

- 기본방향
 - 총괄계획가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지구의 경관, 생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고 권역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
 - 시범사업지구 선정 :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선정
 - 시범사업지구 : 7개 권역(강원 원주 치악산권역, 충북 괴산 송면권역, 충남 예산 황새권역, 전북 임실 대리만족권역, 전남 진도 금골권역, 경북 의성 산수유권역, 경남 하동 북천코스모스권역)
 - 총괄계획가의 선정 : 농어촌 계획 및 개발분야의 전문가로써 모집공고 및 지자체 추천 등을 통해 농식품부장관이 선정하고, 시장군수가 위촉
- 운영방안
 - 권역단위 종합정비계획 용역발주 이전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때까지 운영
 - 총괄계획가 운영지침에 의해 운영
 - 총괄계획가의 보수는 보수기준에 따라 농산어촌지역 종합개발지원사업에서 지원
 - 지원내용 : 사전검토수당, 회의수당, 및 교통비 등 활동내역에 근거하여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 해당없음
 - '12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없음
- 중기재정계획 : 해당없음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총괄계획가 시범사업지구시행율(지구수)	-	-	7	9	50	시범지구시행수/시범지구목표수×100 * '12년 시범지구수 : 7개지구	사업추진보고서

7-3. 지역발전 네트워크 강화

(1) 개관

□ '13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 계획수립, 모니터링 등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정책 추진
 - 농어촌 지역발전 협의회 구성·운영 활성화 정도를 각종 점검 및 평가 시 반영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20개 시·군 자체평가 실시(평가지표에 반영)
-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의 연중 운영
 -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지자체, 언론, 대학, 지방 연구소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포럼 운영
- 농어촌 체험마을 및 정주지원 정보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웰촌포털 (www.welchon.com) 운영 기능 확충
 - 마을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체험여행상품 발굴 및 개발
 - 100개 체험마을 300개 여행상품 판매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전개(연중)
 - 웰폰포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확충(농어촌유학시범사업, 팜스쿨 시범사업, 농촌휴양관광, 농촌활력증진 등)

□ 예산 내역

<2013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비예산
전국단위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								비예산
농어촌 개발 포털사이트 확충								
합계								

< 7-3-1-1 : 지역발전협의회 구성(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안완기(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66	이메일	okan@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1) 지역별·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기본계획 p.70)</p> <p>□ 시·군별로 마을대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읍면, 권역)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리더 모임 등 지역의 자율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지역별 발전 방향에 대한 합의형성 유도 ○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계획수립, 모니터링, 주민 역량 강화교육 지원 등을 통해 상향식 지역개발의 기초 조직화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지역발전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10.7.23, 시행 '11.1.24부터)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3년 신규사업 평가 실시 : '12.4.17 ~19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17개 시군 자체평가 실시 : '12.1.30 ~2.10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지역발전 협의회 구성·운영 활성화 정도를 각종 점검 및 평가시 반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17개 시군 부처 자체평가 실시 : '12.1.6 ~1.25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평가지표에 반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17개 2014년 신규사업 평가 실시 : '13.4월

4.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합계			158	165		시군 협의회 운영실적	평가 및 점검
읍면정비사업			72	80			
권역정비사업			86	85			

< 7-3-2-1. 전국단위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이재식(서기관)
전화번호	044-201-1554	이메일	sik815@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2) 전국단위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 유도 (기본계획 p.70)</p> <p>□ 지역별·분야별 네트워크가 전국단위 협의체로 발전하도록 ‘(가칭) 농어촌 지역개발 네트워크’ 설립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단위의 포럼·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우수사례·정보교환, 지역간 연계 사업 모색기회 제공 ○ 네트워크조직 역량 축적 후 교육과정 인증 권한 부여방안 검토 <p>* 예)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도농교류 등) 및 교육기관(체험지도사 등) 인증 등</p>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총8회 개최(분기별 1회)
 - 매회 약 60~100명 참석하여 지역정책, 자원 등 농어촌지역정책에 대한 정보 교환-전문가 네트워크 구축하고 포럼 결과집 발간
 - 농어업유산제도 도입과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등 신규 정책 입안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및 이론적 근거 제공
- * '12년 제도 도입 후 청산도 구들장논, 제주도 흑룡만리담 등 2개소 유산 지정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주요 논의 아젠다 등 농어촌지역정책포럼 2013년 운영계획 수립(2월)
-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운영(연중)
 -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지자체, 언론, 대학, 지방 연구소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포럼 운영
 - 새로운 정부 출범과 관련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제시

4.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포럼 참여자(명)	-	200	250	300	350	매회 포럼 참석자의 합계	내부자료

< 7-3-3-1 : 농어촌개발 포털사이트 확충(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어촌산업팀	담당자	유재중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2	이메일	yujj8610@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농어촌 개발 포털사이트 확충(기본계획 p.70)

- 농촌마을 정보제공, 도농교류 지원을 위한 포털사이트(www.welchon.com)를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종합 포털사이트로 운영
 - 지역개발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교육과정, 마을정보 등을 종합 제공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웰촌포털 콘텐츠 개발 보급 및 모바일시스템 개발 보급(1~12월)
 - 농어촌체험마을 중심으로 메인화면 구성 및 콘텐츠 재정비
 - * 체험마을 숙박·체험프로그램 위주로 화면구성 및 마을정보 제공
 - 검색기능 세분화를 통한 사용자 정보이용 편의성 도모
 - * 체험마을·숙박, 프로그램, 축제 등(지역,수용인원,가격,테마,예약,유형 등)
 - 고객편의를 위한 예약 및 마을별 문의사항 처리 기능 도입
 - * 마을 주요시설·숙박, 체험프로그램 예약, 고객 문의사항 등록·응대 등
 - 모바일시스템 구축·정보제공 등
 - * 스마트폰·i-PAD·갤럭시탭 등 모바일기기 정보제공, GPS·GIS, SNS연동 등
- 마을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체험여행상품 발굴 및 개발(1~12월)
 - 웰촌포털·모바일을 통한 여행상품정보 제공
 - * 100개 체험마을 300개 여행상품 개발 홍보(daum포털 사이트에 웰촌상품 소개 → 웰촌포털 사이트에 체험마을 지정 655개 마을 상품 소개 등)
- 웰촌포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확충(1~12월)
 - 귀농안·마을사무장 등이 농어촌 생활을 하면서 보고 느낀 이야기를 게재하는 “그린리포터” 운영
 - * 웰촌포털 및 모바일에 코너를 운영하여 도시민에게 체험마을 및 지역정보 소개(코너 : 알콩 달콩 전원이야기)

- 체험마을 중심 여행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여행 전문가 운영 및 전담인력 운영
 - * 여행작가 3명으로 하여금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테마로 한 여행기 제공(코너 : 테마여행)
- 웰촌포털 매뉴얼 오픈 행사(인증샷 이벤트/상품제공) 및 모바일 의견 수렴 등 이벤트 행사 추진(11~12월)
- 웰촌포털 평가·만족도 조사를 통한 지속적 서비스 개선(상·하반기)
- 고객 노출빈도가 높은 네이버, 다음포털 사이트에 배너 및 키워드 검색 광고 연중 실시(1~12월)
- 웰촌포털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1~12월)
 - DB, 솔루션 등 S/W, 서버, 장비 등 H/W 유지관리·보수 등
 - 최적의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전용회선 사용 및 SNS 등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웰촌포털 기능개선(2~12월)
 - 모바일시스템 사용자화면 및 검색기능 등 웰촌포털 콘텐츠 재구성에 따른 UI(User Interface) 변경
 - 모바일 인증 로그인 및 예약관리 기능 추가로 웹(Web)과 모바일 앱(App)의 통합운영
 - 농어촌체험마을 단순 홍보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도구로서의 웰촌포털 변화
 - 웰촌포털 뉴스레터 발송 서버 교체 등
- 웰촌포털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2~12월)
 - DB, 솔루션 등 S/W, 서버, 장비 등 H/W 유지관리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용회선 사용 등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
- 웰촌포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확충(2~12월)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콘텐츠 품질강화를 위한 조직 운영
 - 숙박·체험프로그램 등 콘텐츠 품질향상과 조달청 체험상품(MAS) 관리 지원 등 고객만족도 향상
 - 전문화된 외부공급자 그룹 확대
 - 여행작가, 그린리포터, 웰촌그리미 등 체험마을 전문가 그룹에 의한 여행테마 및 농어촌스토리 지속 보강
 - 연합뉴스 공신력 있는 외부 콘텐츠 활용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개발 포털사이트 확충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도시민, 농어촌주민
- 지원금액 및 형태 : 민간보조(농특)
- 지원조건 : 민간보조(국고100%)
- 지원내용 : 농어촌 체험마을 및 정주지원 정보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웰촌포털 기능개선, 유지·보수, 콘텐츠 확충, 방문활성화 확대 등
- 법적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897				897			897
2013	878				878			878
(증△감)	△19				△19			△19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999						5,999
'12	-	897						897
'13	-	878						878
'14	-	1,863						1,863
'15	-	1,117						1,117
'16	-	1,244						1,244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포탈이용자 만족도 (%)	신규	83.1	84	85	86	설문조사기관을 통한 설문지 작성 및 설문 *(진반적인 만족도 기여도)	설문조사기관 자료 확인

7-4.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1) 개관

□ '13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촌 활력 증진
 -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신청 시·군중 선정된 시·군에 대하여 3년간 5~6억원 이내에서 국비 및 지방비 지원(35개 시군, 70억원)
 -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2개소, 40억원), 귀농인 및 농촌후계자 체험관(1개소, 10억원), 귀농귀촌 교육, 창업박람회 등 지원
- 도시농어촌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활동 및 사업추진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자원봉사자 모집 및 봉사활동 지속 추진
 - 농협연수원을 통한 도시민 교육 추진
 - 농어촌 의료봉사활동 및 공부방 운영 활동 지원
- 현장활동가 육성 등 주민 주도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와 연계하여 활성화지원센터(9개소) 선정
 - * 1사1촌이 지속적인 마을과의 교류를 통해 도농연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단체와 협조 강화

□ 예산 내역

<2013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15,100				15,100	12,500		27,600
도농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								비예산
농어촌공동체 활성화지원	3,098	.	.	.	3,098	1,076	.	4,174
합계	18,198	.	.	.	18,198	13,576	.	31,774

< 7-4-1-1.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경영인력과	담당자	황규광 사무관
전화번호	02-500-1737	이메일	hwangkk@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1)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기본계획 p.71)</p> <p><input type="checkbox"/> 농어촌 이주 의향 형성, 이주 준비와 실행, 정착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귀농·귀촌 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에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귀농·귀촌종합센터(농협)」와 연계·협력 * 연도별 귀농귀촌 가구 수 : ('01) 880가구 → ('05) 1,240 → ('10) 4,067 → ('11) 10,503 * 시·군 전담기구 설치·운영 : ('09) 10개 시·군 → ('10~'13) 35 → ('14이후) 40 <p><input type="checkbox"/> 귀농·귀촌 도시민이 전문지식을 활용,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p>

2. 2012년말 까지 추진 실적

-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의 추진 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12년부터 3년간 추진할 시·군 공모
 - '12년부터 3년간 추진 2개 시·군(홍성, 거창) 선정('12.2월)
 - '12년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12.7월)
 - 지자체담당자, 전문가, 귀농귀촌인 등 152여명 참석
 - '12년도 사업 추진 시·군 성과평가 실시('12.12월)
 - 상·하위 30% 이내 시·군 '12년도 국고 예산 10% 차등 지원
 - 3년차 사업 추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 ⇒ '12년도 추진성과 : 27개 시·군이 도시민 농촌유치활동을 통해 13,478명이 귀농·귀촌하여 정착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 2013년도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추진 시·군 선정계획 수립·시행('13.1월)
 - 사업 참여 희망 시·군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도시민 농촌유치사업계획'을 작성·제출('13.1월말)
 - 각 도에서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 18개 시·군 선정 추진('13.2월초)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추진 시·군(신규 18) 선정결과 통보('13.3월초)
 - '13년도 사업 추진 시·군 성과평가 실시('13.12)
-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사업
 - 2013년도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사업 지침 시행('13.2월)
- 귀농귀촌 교육
 - 2013년도 귀농귀촌 교육 공모 시행('13.3월)
- 귀농귀촌 창업 박람회
 - 2013년도 귀농귀촌 창업 박람회 개최('13.10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시장·군수
 - 사업 규모(사업량) : 35개 시·군('14년이후 최대 40개 시·군으로 확대)
 - 지원금액 및 형태 : 6억원, 자치단체경상보조(3년에 걸쳐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농특회계 농특세사업계정)
 - 지원내용 :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시·군이 예시를 참조하여 구성)

농촌 정주의향 형성단계	농촌 이주 준비 단계	농촌 이주 실행 단계	농촌 이주후 정착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매뉴얼 제공 - 출향인사 DB구축 홍보 - 관내 투어(농지·지역별 재배 품목 설명) - 정착귀농인, 공무원, 단체 등 협의체 구성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문화체험/제독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 한마당(설명회) - 도시민유치 워크숍 - 예비귀촌인 농사체험 - 귀농클럽 동호회 운영/상담 빈집 등 주거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택지, 빈집 정보 - 빈집 체재형 주말농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 실행 유도 프로그램 운영 및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 임대 운영 - 원-스톱 행정처리반 운영 - 융자금 알선 - 농촌형 일자리 발굴 및 모니터링 - 소규모 주거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착륙 적응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주 도시민 멘토링제 운영 - 귀농인 적응 프로그램 운영 - 귀촌인 정보실 운영 - 귀농·귀촌자 모임구성 - 선진지 견학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600				2,600	2,600		5,200
2013	3,500				3,500	3,500		7,000
(증△감)	900				900	900		1,80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	3,500				3,500		7,000
본부	18	1,800				1,800		3,600
강원	1	100				100		200
충북	2	200				200		400
충남	2	200				200		400
전북	3	310				300		610
전남	5	490				500		990
경북	2	200				200		400
경남	2	200				200		400

나.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시장·군수
- 사업 규모(사업량) : 2개 시·군
- 지원금액 및 형태 : 40억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농특회계 농특세사업계정)
- 지원내용 : 체류형 농업창업 센터건립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8,000				8,000	8,000		16,000
(증△감)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	8,000				8,000		16,000
본부								0
강원								0
충북	1	4,000				4,000		8,000
충남								0
전북								0
전남								0
경북	1	4,000				4,000		8,000
경남								0

다. 귀농인 및 농촌후계자 체험관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시장·군수
- 사업 규모(사업량) : 1개 시·군
- 지원금액 및 형태 : 10억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농특회계 농특세사업계정)
- 지원내용 : 귀농인 및 농촌후계자 체험관 건립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1,000				1,000	1,000		2,000
(증△감)								

라. 귀농귀촌 교육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귀농인 및 예비귀농인 등
- 사업 규모(사업량) : -
- 지원금액 및 형태 : 21억원,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70%~100%
- 지원내용 : 최근 귀농·귀촌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귀농·귀촌자 교육확대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2,100				2,100			2,100
(증△감)								

마. 귀농귀촌 창업 박람회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귀농인 및 예비귀농인 등
- 사업 규모(사업량) : -
- 지원금액 및 형태 : 5억원,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내용 : 사회적 붐을 일으키고 있는 귀농·귀촌 트렌드에 부응하여
귀농인 및 예비귀농인에게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500				500			500
(증△감)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2,600/2,600				2,600/2600		5,200
'13		15,190				12,580		27,770
'14		15,690				13,850		29,540
'15		16,082				13,580		29,662
'16		16,778				13,850		30,628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귀농·귀촌 가구증가율(%)	129.2	74.2	262.1	263(목표)	-	[('11년 귀농귀촌 가구수-최근 5년 평균 귀농귀촌 가구수)/최근 5년 평균 귀농·귀촌 가구수] × 100)	'11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 목표치는 과거 5년간 평균 귀농귀촌 가구수 대비 당해연도 귀농귀촌 가구 증가율로서 최근 3년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262.1('12년)에 0.9%p를 상향 조정한 263%를 지표로 선정

< 7-4-2-1 : 도농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박재화(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0	이메일	nanaimo@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2) 도농간 취업 및 인력교류 추진('11~'14) (기본계획 p.71)
- 도시·농어촌을 연결하는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10)
 - 농어촌 지역에 관심 있는 은퇴교사, 예술가, 기술자 등 도시민·단체를 농어촌 마을·단체와 연결·중개
 - 중개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희망도시민에 대하여 일정기간 연수후 체험·교류를 추진토록 유도
 - 취업·봉사분야 등 다양한 교류프로그램, 활용모델 발굴·보급
 - * 지자체 농업엑스포 등 행사지원, 체험지도, 환경·경관·문화보전활동 등
 - 1사1촌 운동과 더불어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내고향돕기' 운동 전개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1사1촌 운동 및 농촌사랑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도시농어촌 인적교류 확대에 기여함
 - 1사1촌 자매결연 참여 증가('11 : 8,741개소 → '12 : 9,627개소)
- 농촌사랑봉사활동신청자(1,462명) 현황(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 봉사분야 : 일손돕기(911명), 소년소녀가장 후원(92명), 이미용 및 청소 등(71명), 교육·문화(58명), 재해복구(23명), 의료(6명), 기타(301)
 - 지역별 : 서울(250명), 경기(204명), 대구(95명), 부산(87명), 광주 등(826명)
- 농촌사랑봉사활동 실적 현황
 - 일손돕기 : 부산 38회 등 전국적으로 165회 3,877

- 의료활동(마사회특별적립금) : 제주 27회 등 전국적으로 58회, 9,017명 진료, 농촌취약계층 환아지원 14명
- 농어촌 학습도우미방 운영(마사회특별적립금) : 강원, 경남 등 농촌지역 14개 마을 대상으로 56명의 자원봉사자가 초·중학생 391명 학습지도
- 1사1촌 자매결연 9,627개소로 확대
- 도시농어촌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활동 및 사업추진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자원봉사자 모집 및 봉사활동 지속 추진
-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을 통한 도시민교육 추진
- 농촌사랑 의료지원 및 학습도우미방 운영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도시농어촌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활동 및 사업추진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자원봉사자 모집 및 봉사활동 지속 추진
 - 농어촌 의료봉사활동 지원

<7-4-2-2. 농어촌공동체활성화지원(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박종훈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1558	이메일	mfsun@korea.kr
담당부서	농어촌정책과	담당자	이정석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18	이메일	ljskorea@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7-4. 도시민 및 귀농인력 등 활용강화

(2) 도농간 취업 및 인력교류 추진('11~'14) (기본계획 p.71)

□ 도시·농어촌을 연결하는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10)

- 농어촌 지역에 관심 있는 은퇴교사, 예술가, 기술자 등 도시민·단체를 농어촌 마을·단체와 연결·중개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활력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동 본격 전개('11.6~)
 -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대국민 홍보·설명회 등 추진
 -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스마일 재능뱅크와 재능기부팀 운영
 - * 개인, 기업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경험·기술을 농어촌 활력창출을 위해 기부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자 및 수요자를 온라인상에서 관리하고 지원
 - 농어촌 현장포럼 및 마을협의체 구성 운영 방안 마련('11.10)
 - * 현장포럼 및 마을협의체 운영기준, 구성내용, 추진방향 등
 - 색깔마을 육성 및 농어촌 현장포럼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활동가 양성('11~'12)
 - * '11년 300명, '12년 671명(중급과정 수료자 60명), 고급과정 개발완료
 - * 시·군 기술센터 및 농어촌공사 직원 등 농어촌마을 업무관련자
 - 색깔 있는 마을 육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운동 연계방안 마련('11.12)
 - * '15년까지 5,000개의 색깔 있는 마을 발굴·육성 목표
 - * '12년은 40개 관련사업(2조원)을 연계
 - 색깔있는 마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내실화 방안 마련('12.11)
 - * 색깔마을 유형의 다양화, 주민주도 색깔마을 조성, 관련사업 연계방안

- 대한민국 농어촌 마을대상 시상식 개최
 - * 1회('11.12, 700명): 총82점 시상(대통령 12, 국무총리 11, 장관 59), 시상금 678백만원
 - * 2회('12.12, 500명): 총95점 시상(대통령 12, 국무총리 11, 장관 72), 시상금 470백만원
- 농어촌 재능기부 신청자 수가 3만명이 넘었으며, 이들을 통한 실질적인 농어촌 활력화 노력
 - * 스마일 재능뱅크 홈페이지(www.smilebank.kr) 오픈 : '11. 8. 1
 - * '12.12.31일 현재 농어촌 재능기부 신청자 30,879명, 요청마을 1,504개소
- 재능기부자 3만명을 확보하여 마을발전 및 활력창출 지원
 - 1사1촌이 지속적인 마을과의 교류를 통해 도농연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단체와 협조 강화
- 색깔있는 마을 선정 세부기준 마련, 관련사업 발굴 등 추진
 - 색깔 있는 마을 3,000개 선정['11년 1,500개, '12년 1,500개]
- '색깔 있는 마을' 지원을 위한 마을협의체 및 현장포럼 활성화
 - 농어촌 현장포럼을 위한 자원·역량 진단표 개발
 - *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홈페이지에 지원시스템을 설치하여 지원
- 색깔마을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및 역량강화('12.4~11)
 - 37개 마을(105회, 3,282명) 대상 농어촌 현장포럼 시범운영('12.4~10)
 - 거점별 농어촌 활성화지원센터 2개소(강원대,공주대) 시범사업('12.5~12)
 - 핵심주체 6만5천명 선정, 교육체계 및 DB 구축('12.2~11)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색깔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 지침 개정('12.12) 검토 및 보완('13.12)
 - 색깔마을이 사전준비 절차를 이행하여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우선 선정 및 가점부여 등을 개별 사업지침에 반영
- 현장활동가 육성 등 주민 주도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와 연계하여 '13년 활성화지원센터(9개소) 선정·추진('13.2~)
 - * 지자체 추천 기관을 대상으로 최종 선정 (선정계획 통보)
 - * 워크숍을 개최하여 색깔마을 만들기 홍보·교육('13.3월)

- * 주민주도 마을발전을 위한 농어촌 현장포럼(234개소) 추진('13.2~)
- 색깔있는 마을을 담당하여 밀착 지원할 현장활동가 육성('13.3~12월)
 - * 초급과정 500명, 중급과정 60명, 고급과정 50명
- 생활만족형 마을 사례집 등 색깔마을 홍보물 제작·배포('13.2)
- 중앙-지방 연계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13.6월)
- 2013년 색깔있는 마을(500개소) 추가선정('13.12)
- 농어촌 활성화 컨퍼런스(대표자회의, 시상식) 개최('13.12월)
- 색깔있는 마을 발전 단계별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3.4~8)
 - 마을별 구분·지정·발전단계, 단계별 지표개발, 지원내용 등 검토
- 일간지 재능기부 캠페인 전개('13연중)
 - 대상 일간지 선정 및 계약 (대변인실 협조)
 - 농어촌재능기부 운동본부 구성
- 직능·사회봉사단체, 기업체, 지자체 등 공모사업 추진('13연중)
 - 참여 단체와 농어촌공사간 MOU 체결
- 재능기부 수기공모전('13.하반기)
- 우수 재능기부 개인·단체 대한민국 농어촌 대상 시상('13.하반기)

4. 관련 사업 내용

- 농어촌공동체활성화지원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마을, 재능기부 수요자 등
 - 사업 규모(사업량)
 - 현장포럼(지자체) 234개, 활성화지원센터 9개소
 - 재능뱅크 운영관리 1개
 - 지원금액 및 형태 : 3,098백만원(지자체보조 1,076, 민간보조 2,022)
 - 지원조건
 - 주민주도 마을·권역사업 준비지원 : 국고 50%, 지방비 50%
 - 재능뱅크 운영관리, 재능기부 홍보 등 기타 : 국고 100%(민간보조)

- 농어촌 마을대상 : 국고 100%(민간보조)
- 지원내용
 - 마을·권역사업의 사전준비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재능기부 참여 활성화 지원 및 홍보
- 법적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635	-	-	1,500	3,135	-	-	3,135
2013	3,098	-	-	-	3,098	1,076	-	4,174
(증△감)	1,463	-	-	△1,500	△ 37	1,076	-	1,039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마을권역사업 사전준비지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4	1,076				1,076		2,152
경기	14	80				80		160
강원	18	93				93		186
충남	22	106				106		212
충북	30	133				133		266
경남	26	119				119		238
경북	42	173				173		346
전남	44	180				180		360
전북	34	146				146		292
제주	4	46				46		92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현장포럼 개소수)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334	39,368	-	-	1,500	23,178	4,852	68,898
'12	100	1,635	-	-	1,500	-	-	3,135
'13	234	3,098	-	-	-	1,076	-	4,174
'14	500	5,576	-	-	-	3,100	-	8,676
'15	1,000	8,797	-	-	-	5,750	-	14,547
'16	1,500	12,057	-	-	-	8,400	-	20,457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색깔있는 마을 선정	-	1,506	1,500	1,000	1,000	색깔있는 마을 선정 내역	지자체 색깔있는 마을 선정내역
현장포럼 활성화	-	-	100	234	500	현장포럼 운영 실태 조사	지자체 농어촌 현장포럼 운영 현황

참고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참고 :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1. 부산광역시

<2-1-3-1.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담당부서	교수학습기획과 (학력지원팀)	담당자	강병수
전화번호	051)8600-312	이메일	jirikang@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기숙형 학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기본계획 p26)

□ 150개 기숙형 고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등 지원
- 기숙사내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 기숙형 고교현황(150개) : '08년 82개교(공립), '09년 68개교(공·사립)

* 지원금액 : ('08) 3,173억원, ('10) 2,720억원, ('11이후) 정책연구 후 사업 확대 여부 검토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연구학교 운영비 지원 10,000천원
- 기숙사생 인성·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0,000천원
-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8,000천원(특별교부금)

3. 2013년도 추진 계획

- 기숙사생 인성·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0,000천원
- 학력신장 프로젝트 운영비 지원 25,000천원(예정)

4. 관련 사업 내용

가.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기장고
- 사업 규모(사업량) : 1교 운영
- 지원금액 및 형태 : 20,000천원, 학교운영비
- 지원조건 : 인성·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
- 지원내용 : 인성·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20,000천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8			30		58
2013						45		45
(증△감)			△28			15		△13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교)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부산						45		45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교)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							
'12	1			28		30		58
'13	1					45		45
'14	1					45		45
'15	1					45		45
'16	1					45		45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지정·육성 학교 수	1교	1교	1교	1교	1교	지정·육성 학교 수	내부자료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정재우
전화번호	051)860-0715	이메일	jjw1572@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기본계획 p31)
-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 노후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현실화 추진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통학버스 운영 지원(연중) : 15교 23대(강서지역 9교 16대, 기장지역 6교 7대)

3. 2013년도 추진 계획

- 통학버스 운영 지원(연중) : 24교 34대(강서지역 9교 18대, 기장지역 15교 16대)

4. 관련 사업 내용

가.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원거리 통학학교 유치원생 및 초·중학교 학생
 - 사업규모 : 34대(24교)
 - 지원금액 : 1,059백만원
 - 지원내용 : 학교소유차량 운행경비(6대) 및 차량 임차료(28대)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47	488	635
2013						495	564	1,059
(증△감)						348	76	424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교, 대)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부산	24/34					495	564	1,059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교, 대)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1/159					2,127	2,744	4,871
'12	15/23					147	488	635
'13	24/34					495	564	1,059
'14	24/34					495	564	1,059
'15	24/34					495	564	1,059
'16	24/34					495	564	1,059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지원학교수	9	10	15	24	24	통학차량 지원학교수	내부자료

2. 대구광역시

<2-1-3-1.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담당부서	교육과정운영과	담당자	장학사 김현우
전화번호	053-757-8306	이메일	hyunwoo@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기숙형 학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기본계획 p26)

□ 150개 기숙형 고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등 지원
- 기숙사내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 기숙형 고교현황(150개) : '08년 82개교(공립), '09년 68개교(공·사립)

* 지원금액 : ('08) 3,173억원, ('10) 2,720억원, ('11이후) 정책연구 후 사업 확대 여부 검토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포산고 교과부 지정 기숙형고교 모델학교 운영('09.4.~'11.12.)
- 포산고 전국 기숙형고교 벤치마킹을 위한 상설 전시설명회장 운영('09.5~)
- 포산고 대구시교육청 지정 기숙형고교 정책 연구학교 운영('10.3.~'12.2.)
- 기숙형고교 포산고 기숙사 증축(288명 정원, '10.12.)
- 기숙형고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 포산고('10년~ '12년), 다사고('11년~'12년)
- 다사고 대구시교육청 지정 기숙형고교 연구학교 운영('11.3.~'13.2.)
- 포산고, 다사고 : 기숙형고교 교육활동운영비 지원('11년, '12년)
- 포산고, 다사고 :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11.2., '12.3.)
- 기숙형고교 다사고 기숙사 신축(200명 정원, '11.8.)
- 학력증진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12.3.~'13.2.)
- 기숙형고교 운영성과평가 및 컨설팅('11.10~12, '12.12.~'13.1.)
 - 2011년 기숙형고교 운영성과평가 : 포산고 최우수학교(A등급) 선정, 인센티브 3,000만원 교과부에서 지원

- 2012년 기숙형고교 운영성과평가 : 포산고 최우수학교(A등급) 선정, 인센티브 3,000만원 교과부에서 지원
- 2012년 기숙형고교 운영성과평가 : 다사고 우수학교(B등급) 선정, 인센티브 2,500만원 교과부에서 지원

3. 2013년도 추진 계획

- 기숙형고교 교육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 학교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 기숙형고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다사고, 포산고
 - 사업 규모(사업량) : '12년 지원 2개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800백만원(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지원내용 : 기숙사 운영비 및 기숙사생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 법적근거 :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안)(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2012.10.4.)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782		782
2013						800		800
(증△감)						18		18

- * 농특세 전입금 사업은 농특세로 기재하고, 현 회계는 별도 기재
- * 마사회 적립금 등 기금 성격이 높은 재원은 기금으로 기재하고, 자원명을 별도기재
- * 2012년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계획금액을 기재하고 계획임을 표시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					800		800
달성군	2					800		8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2/2			64/0		782/782		846/782
'13	2					800		800
'14								
'15								
'16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기숙형고교 교육 만족도(%)	51.8	58.36	65	70	75	기숙사생 대상 설문조사	내부자료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담당부서	교육복지지원과 (평생교육팀)	담당자	이상민
전화번호	650-8729	이메일	hotmin0422@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5)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강화 (기본계획 p27)

□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운영내실화

-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이용 접근성 제고
- * 평생학습도시 지정 76개 지자체 중 군지역은 13개
- * 진안군은 「농촌 창업을 위한 평생학습 경제공동체 리더 양성」 프로그램 실시 중

□ 농어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능력 함양

-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고령농어업인,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만족도 제고
- *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 8.8억('09)

□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휴일·방과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추진현황: 관내 초·중·고등학교 47개교(초25, 중14, 고8)
- 운영기간: 2012. 3. ~ 12.
- 지원금액: 155,650천원(교당 2,000 ~ 5,000천원)
- 추진내용: 학교폭력예방, 자기주도학습, 자녀와의 소통 강화 프로그램 등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추진현황: 관내 초·중·고등학교 47개교(초25, 중14, 고8)
- 운영기간: 2012. 3. ~ 12.
- 지원금액: 228,000천원(교당 4,000 ~ 6,000천원)
- 추진내용: 학교폭력예방, 자기주도학습, 자녀와의 소통 강화 프로그램 등

4. 관련 사업 내용

가. 학교평생학습관 지정 및 학부모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관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47개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228,000천원(지방비)
- 지원조건 : 지방비100%
- 지원내용 : 학교폭력예방, 자기주도학습, 자녀와의 소통 강화 프로그램 등
-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 제30조(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대구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55,650 천원		
2013						228,000 천원		
(증△감)						72,350 천원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달성군	47개교					228,000천원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67,660천원		
'12	47개교					155,650천원		
'13	47개교					228,000천원		
'14	47개교					228,000천원		
'15	47개교					228,000천원		
'16	47개교					228,000천원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학교평생학습관 지정학교 수	15개교	16개교	47개교	47개교	47개교	지정계획 학교 수÷ 지정학교 수	대구시교육청 운영지침

<2-1-6-1.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담당부서	교육복지지원과 (학생복지지원팀)	담당자	신은정
전화번호	650-8750	이메일	asdeer76@ edunavi.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6) 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활성화 (기본계획 p27)

□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협의를 위해 시·군 단위에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지자체, 교육청, 주민, 전문가 등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지역개발계획과 교육환경 개선과의 연계방안, 교육투자 활성화 방안 등 논의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추진현황: 달성교육지원청 교육발전위원회 운영협의회 개최(1회)
- 운영기간: 2012. 3. ~ 12.
- 추진내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및 농어촌 전원학교 사업의 교육지원청 단위 지원방안 협의, 교육지원청 단위 교육복지정책 연계 협력, 기관간 연계방안 협의 등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달성교육지원청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5월, 1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농어촌 전원학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관내 면지역 초·중학교 15개교(초9, 중6)
 - 사업 규모(사업량) : 15개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1,115,500천원(지방비)
 - 지원조건 : 전체학생수 기준 학생당 500천원

- 지원내용 : 기본생활안전망구축, 기초학력신장, 심리정서발달, 특기적성계발, 사회문화적 소양증진, 사업지원 등
- 법적근거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대구광역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115,500천원		1,115,500천원
2013						19,480천원		19,480천원
(증△감)						-1,096,020천원		-1,096,020천원

- * 2012년 실적이 나오지 않아 계획금액임
- * 2013년부터 농어촌 전원학교 단위학교 사업비가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사업비 감액됨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93,420천원		
'12	15개교					1,115,500천원		1,115,500천원
'13	16개교					19,480천원		19,480천원
'14	16개교					19,480천원		19,480천원
'15	16개교					19,480천원		19,480천원
'16	16개교					19,480천원		19,480천원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 전원학교 실시학교수	2개교/ 2개교	9개교/ 9개교	15개교/ 9개교	15개교/ 15개교	15개교/ 15개교	지정계획 학교 수÷ 지정학교 수	대구광역시 교육청 운영지침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담당부서	달성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	담당자	노영주
전화번호	053-650-8740	이메일	nyju@edunavi.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기본계획 p31)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 노후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현실화 추진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직영통학차량 운영교에 차량운영비 22,692천원 지원
(현풍초, 하빈초, 도림초, 구지초, 논공초)
- 임차통학차량 운영교에 차량임차료 189,943천원 지원
(현풍초, 구지초, 유가초, 용계초, 가창초, 금포초, 동곡초)
- 방학중 방과후학교 운영 차량운영비 47,435천원 지원
(유가초, 용계초, 가창초, 금포초, 동곡초, 구지초)

3. 2013년도 추진 계획

- 2012년도 수준으로 학기 중 244,025천원 지원 계획임
- 방학 중 방과 후 학교운영 학교에 43,680 천원 지원 계획임

4. 관련 사업 내용

가.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대구현풍초등학교, 대구유가초등학교, 대구구지초등학교,
대구하빈초등학교, 대구용계초등학교, 대구가창초등학교,
대구도림초등학교, 대구논공초등학교, 대구금포초등학교,
대구동곡초등학교, 대구반송초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11개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방비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지원내용 :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에게 무료 통학버스 지원
- 법적근거 :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60,070		
2013						287,705		
(증△감)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10교/10교					10교/10교		
'13	11교/11교					11교/11교		
'14	11교/11교					11교/11교		
'15	11교/11교					11교/11교		
'16	11교/11교					11교/11교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100%	8교/8교	10교/8교	10교/10교	11교/11교	11교/11교	(통학버스관련예산지원 학교수)/(통학버스 운영 학교수)	해당학교 예산서, 해당학교 차량 등록부

3. 인천광역시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보건행정과(팀)	담당자	전수정
전화번호	032-899-3146	이메일	wjstnwkd@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기본계획 p18)

□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낙도지역에는 병원선을 이용한 이동진료 제공

* 경남, 전남, 인천, 충남 섬 지역 대상으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병원선 운영 중

※ 지자체에서 내과, 한방과, 치과 등 치료 진료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을 말함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내과, 한방과, 치과 진료인원 목표치7,000명 달성(실적:7,818명/12월31일/완료)

3. 2013년도 추진 계획

○내과, 한방과, 치과 진료 인원 목표치7,000명 달성

I. 추진 기간 : 2013.01.01 ~ 12.31

II. 진료 기준

- 1) 덕적외곽도서(문갑, 울도, 지도, 굴업), 자월면(소이작도), 백아, 소야, 대이작, 승봉, 장봉
- 2) 2 ~ 3주 간격 정기적인 순회 진료
- 3) 내과, 한방, 치과 진료 : 공중보건에 의한 진료 및 무료투약
- 4) 주요환자 중점관리 시스템 : 병원선 생화학검사 장비 신설과 응진군 의료 데이터 활용으로 보건진료소의 진료가능 영역은 기존대로 보건진료소가 담당한다.

Ⅲ. 진료 계획

1. 출항횟수 및 진료일수 : 45회/120일
2. 지역별 출항횟수 및 진료일수

지역명	덕적면	자월면	소연평도	장봉도
출항횟수 및 진료일수	19회/53일	18회/51일	4회/8일	4회/8일

3. 병원선 운영 방법 : 주 1회 정기적인 순회 진료 실시
4. 진료과목 : 내과, 한방, 치과

1) 내과 :

(1) **주요환자 중점관리 시스템:** 병원선 생화학 검사장비 신설과 응진군 의료데이터활용

- 가)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관절염) 진료 및 관리
- 나) 내과질환자 진료 및 관리
- 다)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상담 및 교육
- 라) 무의도서 주민의 응급상황 발생 대비 비상구급약 지급

2) 한방 :

- (1) 침, 투약을 이용한 한방진료
- (2)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상담 및 교육

3) 치과 :

- (1) 구강질환 및 결손치로 불편을 겪는 주민의 치과진료
- (2)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검진 및 교육도 추진 계획

4. 관련 사업 내용

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모든 주민
- 사업 규모(사업량) : 7,00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450백만원
- 지원조건 : 병원선 운항지역 전 주민

- 지원내용 : 내과, 치과, 한의과 진료 및 투약, 보건사업

- 법적근거 :

『웅진군병원선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관리운영』 보건복지가족부 규정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450		450
2013						450		450
(증△감)						-		-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3	7,000					450		45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7,818/7,000					450		450
'13	7,000					450		450
'14	7,000					450		450
'15	7,000					450		450
'16	7,000					450		45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내과,한의원,치과 진료 인원	6,854	7,946	7,818	7,000	7,000	수혜자수/수혜목표 X100	병원선 진료 수 혜율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강화군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강혜원
전화번호	032) 930-4112	이메일	riverhw@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농어촌 평생교육 기반 확충

(1) 농업대학(원) 운영

-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력 체계적 양성
- 추진근거 : 강화군조례 제1613호(강화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1998년 강화군농업대학 설립 계획 승인
- 1999년 강화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04년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지정
- 2005년 강화군농업대학원 설립 계획 승인
- 2005년 강화군농업대학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07년 농업대학 운영 전국 최우수상 수상
- 2012년 총 졸업생(누계) 1,564명

3. 2013년도 추진 계획

- 1~2월 신입생모집 및 선정
- 3월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 6월 농업대학 총동문회 체육행사 개최
- 3~11월중 선진현장견학 대학 2~3회, 대학원 2~3회 실시
- 11월 우수학생선발 해외연수 실시
- 12월 졸업식

4. 관련 사업 내용

- 운영기간 : 1~12월
- 사업주체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 추진체계
 - 주관 : 강화군
 - 실시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 운영학과
 - 농업대학 : 환경원예과 60명, 향토자원개발과 44명
 - 농업대학원 : 농업CEO과 66명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30		30	80	20	130
2013			30		30	90 (계획)	20	140 (계획)
(증△감)			-		-	10	0	1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		4.6	1.3	7.4
'11	200명, 4개학과			0.3		1.1	0.5	1.9
'12	170명, 4개학과			0.3		0.8	0.2	1.3
'13	190명, 3개학과			0.3		0.9	0.2	1.4
'14	190명, 3개학과			0.3		0.9	0.2	1.4
'15	190명, 3개학과			0.3		0.9	0.2	1.4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 졸업율	86	93	93	93	93	(졸업인원 / 계획인원)*100	내부자료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강화교육지원청)>

담당부서	강화교육지원청	담당자	김혜나
전화번호	032) 930-7719	이메일	imp0205@ice.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기본계획 p31)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 노후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현실화 추진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강화관내 유·초·중학교 21개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 유류비 및 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 27백만원('12.1월~2월)
- 비정규직 운전원 인건비 지원 : 5백만원('12.1월~2월)
- 초등학교 승차지도원 인건비 지원 : 96백만원('12.3월~12월)
-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 829백만원('12.3월~12월)
 - 유,초등학교 임차버스의 경우 임차료에 승차지도원 인건비 포함
- 노후차량교체비 지원 : 82백만원('12.3월~12월)
- 유류비 및 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 135백만원('12.3월~12월)
- 비정규직 운전원 인건비 지원 : 25백만원('12.3월~12월)

3. 2013년도 추진 계획

- 강화관내 유·초·중학교 23개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 유류비 및 관리비 지원 : 165백만원
- 노후차량교체비지원 : 90백만원
- 임차료지원 : 859백만원
- 비정규직 운전원 인건비 지원 : 35백만원
- 초등학교 승차지도원 인건비 지원 : 122백만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역특성상 넓은 학군에 불편한 대중교통, 통학로, 안전 시설 등을 고려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선정
- 사업 규모(사업량) : 유·초·중학교 23개교(유2교, 초 18교, 중 3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1,271백만원
- 지원조건 : 지방비 100%(교육비특별회계)
 통학방법이 자가용을 이용한 통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넓은 통학구역에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과 인도 및 안전시설 미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학교
- 지원내용 : 노후차량교체비, 통학버스 임차료, 통학버스 기본운영비, 승차지도원 인건비, 비정규직 운전원 인건비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199		1,199
2013						1,271 (계획)		1,271 (계획)
(증△감)						72		72

- * 농특세 전입금 사업은 농특세로 기재하고, 현 회계는 별도 기재
- * 마사회 적립금 등 기금 성격이 높은 재원은 기금으로 기재하고, 재원명을 별도기재
- * 2012년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계획금액을 기재하고 계획임을 표시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1,199		1,199
'13						1,271		1,271
'14						1,310		1,310
'15						1,405		1,405
'16						1,522		1,522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통학버스운영비지원	94	100	100	100	100	지원액/학교별신청액	내부자료
노후차량교체지원율	80	100	100	100	100	교체수/내용연수경과차량수	내부자료

4. 울산광역시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보건소)>

담당부서	보건과 (방문건강팀)	담당자	최성화(주무관)
전화번호	229-8558	이메일	hemil0104@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 경로당 한방순회진료 사업 (사랑은 전기를 타고)

- 의료취약지역에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수혜 제공을 통하여 지역 내 의료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건강증진과 한의약 공공보건 서비스에 대한 친밀도 강화 및 인식 제고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사업목적 : 퇴행성질환 및 만성질환주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방무료 순회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 사업대상 : 의료취약계층, 경로당, 복지관의 65세이상 만성질환자
- 추진일시 : 2012. 1 ~ 12월
- 추진상황

구분 (보건소명)	추진업무명 (프로그램명)	장소명	소재지	운영횟수	인원(명)	비고
남부통합 보건지소	한방 순회진 료	계		5	108	
		덕신경로당	온산읍 덕신리	1	26	
		남창경로당	온양읍 남창리	1	20	
		서중마을회관	웅촌면	1	20	
		화창마을회관	청량면	1	20	
		온양경로당	온양읍 남창리	1	22	

- 추진내용
 - 침 시술, 한약재를 이용한 치료
 - 한방관련 건강상담
 - 체질별 올바른 생활습관 및 식습관 교육
 - 한의학적 건강관리법 교육
 - 잘못된 한방상식 소책자 배부
 - 만성질환자 대상자는 보건소내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과 등록·연계
- 인 력 : 한방공중보건 의사 1명, 담당자 1명
- 예 산 : 1,300천원 (군비 20%, 민간후원금 80%)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목 적
 -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한방순회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서비스의 폭을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 관련 사업 내용

- 사업내용
 - 기 간 : 2013. 1 ~ 12월
 - 대 상

구분 (보건소명)	추진업무명 (프로그램명)	장소명	소재지	예상 운영횟수	비고
남부통합 보건지소	한방순회 방문진료	계		8회/170명	
		덕신경로당	온산읍 덕신리	2회/50명	
		남창경로당	온양읍 남창리	2회/40명	
		서중마을회관	웅촌면	2회/40명	
		화창마을회관	청량면	2회/40명	

- 내 용 : 한방진료 및 한방관련 건강상담, 한방건강정보 책자 배부
- 인 력 : 한방공중보건 의사 1명, 담당자 1명
-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 19조, 한의약육성법 제 16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5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군비)	기 타 (자부담 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	-	-	-	-	300천원	1,000천원	1,300천원
2013	-	-	-	-	-	1,000천원		1,000천원
(증△감)						△700천원	▽1,000천원	▽300천원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울주군	한방순회 방문진료	-	-	-	-	1,000천원	-	1,000천원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실적/계획)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500천원	1,000천원	8,500천원
'11	314명/300명					4,000천원	-	4,000천원
'12	108명/400명					300천원	1,000천원	1,300천원
'13	170명					1,000천원		1,000천원
'14	400명					1,500천원		
'15	400명					1,500천원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실적/계획)	'12 (실적/계획)	'13	'14		
한방순회진료 인원(명)	314명/300명 (104.7% 달성)	108명/400명 (27%)	170명	400명	실제 진료인원 수	내부자료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울산광역시교육청)>

담당부서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자	손혜영
전화번호	052-210-5574	이메일	hyeyoung@use.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5)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강화(기본계획 p.27)

□ 농어촌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주민
- 사업규모(사업량) : 53기관(학교+도서관)
- 지원금액 및 형태 : 92백만원, 자체 확보
- 지원조건 : 도서관 및 학교 자체 예산 반영
- 지원내용 : 농어촌지역 평생교육프로그램 자체 운영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평생교육운영 : 53기관(학교+도서관), 16,530명, 92백만원
- 학교 평생교육 운영 : 7학년 이상 학교 1강좌 운영추진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울주도서관 평생교육운영 : 53기관(학교+도서관), 16,700명, 90백만원
- 학교 평생교육 운영 : 7학년 이상 학교 1강좌 운영추진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주민
 - 사업규모(사업량) : 53기관(학교+도서관)
 - 지원금액 및 형태 : 90백만원, 자체 확보
 - 지원조건 : 도서관 및 학교 자체 예산 반영
 - 지원내용 : 농어촌지역 평생교육프로그램 자체 운영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92		92
2013						90		90
(증△감)	-				-	△2	-	△2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5/255					481		481
'11	51/51					77		77
'12	51/51					92/86		92
'13	53/53					90		90
'14	53/53					106		106
'15	53/53					116		116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지역 평생 교육활성화	30	32	34	35	37	참여인원/지역인구	평생교육운영 연간실적자료

<2-1-6-1. 울산광역시교육복지정책및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울산광역시육청)>

담당부서	기획홍보과	담당자	한미화
전화번호	052-210-5882	이메일	han3204@use.go.kr

1. 울산광역시교육복지정책및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목적

- 소통과 참여로 함께하는 열린 교육 행정 실현
- 교육정책에 대한 공동사고 집약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

2. 울산광역시교육복지정책및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현황

- 위원수 : 17명
- 임기 : 2년, 연임가능
- 기능
 - 교육복지정책 추진 및 활동 지원
 - 교육복지관련 기관 간 정책 협의·조정
 -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복지 및 농산어촌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3.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해당없음

4. 2013년도 추진 계획

- 정기회 : 1회

5. 2012년도 안건 자문 현황 : 해당없음

6. 예산 : 1,460천원(수당 및 협의회비)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확대(울산광역시교육청)>

담당부서	재정과	담당자	조희정
전화번호	052-210-5875	이메일	rainbi97@use.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기본계획 p31)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확대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확대 지원

○ 노후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현실화 추진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통학차량 교체

- 두서초 : 1대, 82,840천원

○ 통학차량 구입

- 두동초 : 2대, 180,000천원

○ 통학차량 운영비(유류비, 수리비, 안전요원 인건비 등) 지원

- 두서초 등 9개교(123,765천원)

3. 2013년도 추진 계획

○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확대(유류비, 수리비, 안전요원 인건비 등)

- 두서초 등 10개교(150,319천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무료통학 지원 확대

○ 사업 내용

- 사업지원 대상 : 노후 차량 교체 및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 사업규모(사업량) : 통학차량 지원학교 10개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2011(160,000천원), 2012(380,000천원), 2013(150,000천원)
- 지원조건 : 농어촌 통폐합학교 대상 지원
- 지원내용 : 노후차량 교체비, 차량 신규 구입비
통학차량운영비(유류비, 수리비, 안전요원 인건비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380		380
2013						150		150
(증△감)	-				-	△230	-	△230

※ 12년도는 통·폐합에 따른 노후차량 교체비, 신규 구입비 포함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	9					160		160
'12	10					380/380		380/380
'13	10					150		150
'14	11					250		250
'15	11					350		350

※ 12년도는 실적/계획으로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 통학버스 지원학교 수	9	9	10	10	11	농어촌통학버스 지원학교수	내부자료

5. 세종특별자치시

<1-2-2-4.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우정선
전화번호	044-301-2122	이메일	zuriel@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기본계획 p18)

□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낙도지역에는 병원선을 이용한 이동진료 제공

* 경남, 전남, 인천, 충남 섬 지역 대상으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병원선 운영 중

※ **지자체에서 내과, 한방과, 치과 등 치료 진료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을 말함**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운영 ('12.8월)
 - 의료소의 마을회관·경로당 순회방문 2~3개월에 1회→ 월1회로 확대 실시
- 방문건강관리 등록관리 및 방문서비스 현황('12.12월)
 - 등록관리가구/가구원수(3,084가구/3,422명)
 - 전문인력 1인당 방문횟수 : 1,462회 달성 (적정횟수 1,200회~2,500회)
 - 방문간호사 1인당 군별 관리율 : 103.5% 달성(90~110% 만점)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전문인력별 자체 프로그램 개발·운영
 - ('9988 뼈튼튼' 운동교실) 농촌지역 노인층에 다수 발생하는 관절염환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운동과 관절 자가관리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건강한 저염 '실버 밥상') 의료소의·건강취약계층인 농어촌지역 만성질환자의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밥상 식이교육
 - ('엄마건강 아기건강' 프로젝트) 임산부(농어촌 다문화가정 우선)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모·영유아관리의 실질적 교육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지역담당제 강화 : 보건지소·진료소 방문건강관리 구역 확대('13.1월)
 - (농어촌 건강관리서비스 접점) 지역담당제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접점으로서의 역할강화를 위하여 8개 보건지소 및 7개 보건진료소 담당구역 확대지정

4. 관련 사업 내용

가. 방문건강관리사업

- 사업 내용
 -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또는 질환군
 - 사업예산(사업량) : 210백만원 (등록가구원수 3,50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보조(기금)
 - 지원조건 : 기금 50%, 지방비 50% (인력 4대보험 등 기관부담금은 시비100%)
 - 사업내용 : 보건소 내 간호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방문하여 대상자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직접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실시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			98	98	107		205
2013	-			97	97	113		210
(증△감)	-				△1	6	-	5

- * 농특세 전입금 사업은 농특세로 기재하고, 현 회계는 별도 기재
- * 마사회 적립금 등 기금 성격이 높은 재원은 기금으로 기재하고, 자원명을 별도기재
- * 2012년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계획금액을 기재하고 계획임을 표시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00				97	113	-	210
세종	3,500	-	-	-	97	113	-	21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3,422				98	107		205
'13	3,500				97	113		210
'14	3,600				100	115		215
'15	3,600				100	115		215
'16	3,650				105	120		225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전문인력1인당 방문횟수(회)	-	1,933	1,462	1,550	1,600	방문횟수/전문인력수 +(방문선임인력×0.5)	공공보건시스템 보건복지부자료
방문간호사 1인당 군별 관리율(%)	산식변경	산식변경	103	100	100	$\frac{[(\text{집} \text{봉관리간수} / \text{간호사수}) \times 40 \text{건}] \times 0.3 + [(\text{회} \text{약노인관리간수} / \text{간호사수}) \times 5 \text{건}] \times 0.1 + (\text{관정통증관리간수} / \text{간호사수}) \times 5 \text{건} \times 0.1 + (\text{정기관리간수} / \text{등록관리간수}) \times 0.7}]{\times 0.5} \times 100$	공공보건시스템 보건복지부자료

<2-1-3-1. 기숙형고교 지정·육성(자치행정과)>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한 경 희
전화번호	044-300-3143	이메일	matilda@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기숙형 학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기본계획 p26)

□ 150개 기숙형 고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등 지원
- 기숙사내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 기숙형 고교현황(150개) : '08년 82개교(공립), '09년 68개교(공·사립)

* 지원금액 : ('08) 3,173억원, ('10) 2,720억원, ('11이후) 정책연구 후 사업 확대 여부 검토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관련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
- 지원실적
 - 관내 기숙형 고교현황 : 세종고등학교
 - 지원내용 : 기숙형 고교 운영비(급식비) 110,000천원
- 그 외 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
 - 대상학교 : 조치원여자고등학교
 - 지원내용 : 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공공요금, 시설보수, 급식비 등) 50,000천원.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주말프로그램 운영지원 20,000천원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세종고 기숙형고교 운영비 지원(급식비) 120,000천원
- 조치원여고 내고장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 65,000천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기숙형고교 지정·육성(농촌 기숙형고교 교육경비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세종고등학교(농촌소재 기숙형학교 지정)
- 사업 규모(사업량) : 1개교(기숙사생 전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120,000천원 / 지방비100%
- 지원내용 : 기숙형고교 운영비 중 급식비 지원(학부모 부담 경감)
- 법적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10		110
2013						120		120
(증△감)						10		1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1/1					110		110
'13	1					120		120
'14	1					120		120
'15	1					120		120
'16	1					120		120

나.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조치원여자고등학교(기숙사)
- 사업 규모(사업량) : 1개교(기숙사생 포함 학생전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65,000천원 / 지방비100%
- 지원내용 : 기숙사 운영비 일부지원, 내고장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70		70
2013						65		65
(증△감)						△5		△5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1/1					70		70
'13	1					65		65
'14	1					65		65
'15	1					65		65
'16	1					65		65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기숙형고교 급식비지원액			110	120	120		당해연도 예산서
기숙형고교 기숙사운영지원 프로그램 수			2	2	2		사업계획서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자치행정과)>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교육지원담당)	담당자	염기택
전화번호	044-300-3142	이메일	ygt3861@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5)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강화 (기본계획 p27)

□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운영내실화

-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이용 접근성 제고

* 평생학습도시 지정 76개 지자체 중 군지역은 13개

* 진안군은 「농촌 창업을 위한 평생학습 경제공동체 리더 양성」 프로그램 실시 중

□ 농어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능력 함양

-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고령농어업인,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만족도 제고

*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 8.8억('09)

□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휴일·방과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한자, 부동산 카운슬러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2. 4~11월/35백만원)
- 세종시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 ('12. 5~'13. 4월/20백만원)
- 비정규 야간학교(등불, 석탑) 운영 ('12. 1~12월/20백만원)
- 주5일 수업제 토요프로그램 운영 (4개기관 226명)

3. 2013년도 추진 계획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요내용) 서예, 요가, 한자 및 예절교육, 부동산 카운슬러 등
 - 2013년 프로그램 선정공모 추진 : '13. 3월
- 세종시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
 - (주요내용) 외국어, 자격증, 컴퓨터, 취업/자기계발, 창업, 제테크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운영

- 홈페이지 프로그램 재구축 운영 : '13. 4월
- 비정규 야간학교(등불, 석탑) 운영
 - (수업운영) 주 5일 / 1일 3시간 (19:00~21:00, 야간학습)
 - (수업내용)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대비 및 문자해득 등
- '13년 주5일 수업제 토요프로그램 활성화 지속 추진
-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휴일·방과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 (교육청 협의 추진)

4. 관련 사업 내용

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기 간 : 2013. 4 ~ 11월
 - 사 업 비 : 39,000천원(시비)
 - 주요내용 : 서예, 요가, 한자 및 예절교육, 부동산 카운슬러 등
 - ※ 2013년 프로그램 선정공모 추진 : 2012. 3월

나. 세종시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

- 사업내용
 - 기 간 : 2013. 5 ~ 2014. 5월
 - 사 업 비 : 22,000천원(시비)
 - 주요내용 : 외국어, 자격증, 컴퓨터, 취업/자기계발, 창업, 재테크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운영
 - ※ 홈페이지 프로그램 재구축 운영 : '13. 4월

다. 비정규 야간학교(등불, 석탑) 운영

- 기 간 : 2013. 1 ~ 12월
- 사 업 비 : 20,000천원
- 수업운영 : 주 5일 / 1일 3시간 (19:00~21:00, 야간학습)
- 수업내용 :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대비 및 문자해득 등

라. 기 타

- '13년 주5일 수업제 토요프로그램 활성화 지속 추진
-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휴일·방과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 (교육청 협의 추진)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75		75
2013						81		81
(증△감)						6		6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11		411
'12	4/4					75		75
'13	4					81		81
'14	4					85		85
'15	4					85		85
'16	4					85		85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평생교육 기반확충 프로그램운영 수			4	4	4	프로그램 운영실적	사업추진 결과서

<2-1-6-1. 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교육청)>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임재희
전화번호	044-320-1127	이메일	1004j@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6) 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활성화 (기본계획 p27)

□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협의를 위해 시·군 단위에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지자체, 교육청, 주민, 전문가 등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지역개발계획과 교육환경 개선과의 연계방안, 교육투자 활성화 방안 등 논의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12.11.12.) 제정
- 세종시 교육행정협의회(시의원) 위원 추천(2012.11.22.)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2013.1.21.)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외부위원 위촉식(2013.1.28.)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실무협의(2013.2. ~ 2013.3.) 예정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임시회의(2013.4.) 예정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실무협의(2013.6. ~2013.8.) 예정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2013.9.) 예정

4. 관련 사업 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초·중·고, 세종시교육청
 - 사업 규모(사업량) :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간 상호협력 사업
 - 지원금액 및 형태 : 사업별 지원금액 및 형태 상이
 - 지원조건 : 비예산 사업

- 지원내용 : 세종시 지역교육 현안문제
- 법적근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 예산 : 비예산사업
- 중기재정계획 : 비예산사업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교육행정협의회				2회	2회	협의회 운영횟수	운영실적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교육청-학교지원과)>

담당부서	학교지원과 (학교지원팀)	담당자	박성용(주무관)
전화번호	044-320-1013	이메일	jaemu1098@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기본계획 p31)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 노후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현실화 추진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지원실적
 - 노후차량 교체 : 3대
 - 차량(관용+임차)지원 : 22대
- 지원내용 : 노후차량 교체, 차량운영비 및 차량임차비 지원
- 지원시기 : 2012.12월 지원 완료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지원계획 : 차량(관용+임차)지원 29대
- 지원시기 : 2013.12월까지 지원 예정

4. 관련 사업 내용

가. 무료학교버스 지원 확대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읍·면단위 학교중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학구
 - 읍·면단위 학교중 시내버스가 운행되어도 학생 등하교 시간과 맞지 않아 시내버스 통학이 사실상 곤란한 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29대

- 지원금액 및 형태 : 756백만원
- 지원조건 : 없음
- 지원내용 : 통학(임차+관용)차량 운영비 및 통학차량 교체비
- 법적근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관리 규칙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747		747
2013						756		756
(증△감)						9		9

- * 농특세 전입금 사업은 농특세로 기재하고, 현 회계는 별도 기재
- * 마사회 적립금 등 기금 성격이 높은 재원은 기금으로 기재하고, 자원명을 별도기재
- * 2012년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계획금액을 기재하고 계획임을 표시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7					5,562		5,562
'12	22/22	실적/계획				747		747
'13	29					756		756
'14	37					1,353		1,353
'15	37					1,353		1,353
'16	37					1,353		1,353

※ 사업규모 : 당해연도 전체 차량수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산어촌 학교버스 운영			22	29	37	지원 운행대수	추진실적

6. 경기도

<1-3-3-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경기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담당자	노희정
전화번호	031-8008-4414	이메일	hjroh@gg.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p21)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및 경제활동 역량제고 지원

- 시설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 등 기능제고
- 도시 기업인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경영마인드 제고
 - 창업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기법 전수 및 기술적 컨설팅 제공

2. 2012년 추진 실적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업량 : 3개소(용인, 이천, 여주)
- 사업비 : 327백만원(도비 65, 시군비 228, 자담 33)
- 사업내용 : 여성농어업인 고충상담, 영유아 자녀 보육, 방과후 교실 운영,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필수사업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도·농 교류 협력 사업 등 임의사업 추진
- ※ 2005년 지방이양 후, 도내 4개소 여성농업인센터에 매년 436백만원 지원
2010년 김포여성농업인센터의 사업포기(인근 보육시설 증가로 인한 경영난)로 3개소 여성농업인센터에 매년 327백만원 지원

연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분권세	도비	시군비	자담	
2005	4개소	436	121	90	181	44	지방이양
2006	4개소	436	144	87	161	44	
2007	4개소	436		87	305	44	시군비에 분권세 포함
2008	4개소	436		87	305	44	
2009	4개소	436		87	305	44	
2010	3개소	327		65	229	33	사업축소(김포 포기)
2011	3개소	327		65	229	33	
2012	3개소	327		65	229	33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사업량 : 3개소(용인, 이천, 여주)
- 사업비 : 327백만원(도비 20%, 시군비 70%, 자담 10%)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인건비, 경상운영비, 부정기 사업비)

4. 관련 사업 내용

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지원대상 : 여성농업인센터
 - 사업량 : 3개소(용인, 이천, 여주)
 - 사업비 : 327백만원(도비 20%, 시군비 70%, 자담 10%)
 - 사업내용 : 여성농어업인 고충상담, 영유아 자녀 보육, 방과후 교실 운영,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실정을 반영한 도·농 교류 협력 사업 등 추진(필수사업, 임의사업 구분 폐지)
 - 지원조건(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자 신청자격)
 - 신규사업자
 - ☞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시설, 기타 여성농업인 교육시설 등을 확보하여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
 - 계속사업자 : 기존센터운영 사업자가 계속해서 차년도 센터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단체)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	-	-	-	-	294	33	327
2013	-	-	-	-	-	294	33	327
(증△감)	-	-	-	-	-	-	-	-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개소	0	0	0	0	294	33	327
용인	1개소	-	-	-	-	98	11	109
여주	1개소	-	-	-	-	98	11	109
이천	1개소	-	-	-	-	98	11	109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0	0	0	0	1,470	165	1,635
'12	계획) 3개소 실적) 3개소	-	-	-	-	294	33	327
'13	3개소	-	-	-	-	294	33	327
'14	3개소	-	-	-	-	294	33	327
'15	3개소	-	-	-	-	294	33	327
'16	3개소	-	-	-	-	294	33	327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3	3	3	3	3	운영비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개소 수	예산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담당자	문혜림
전화번호	031-8008-4379	이메일	ppmhl@gg.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기본계획 p18)

□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낙도지역에는 병원선을 이용한 이동진료 제공

* 경남, 전남, 인천, 충남 섬 지역 대상으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병원선 운영 중

※ 지자체에서 내과, 한방과, 치과 등 치료 진료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을 말함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구 중 건강위험군에 대한 방문 간호서비스 및 보건상담 등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등록가구/방문실적 : 240,397가구/887,602방문
- 방문전담인력 : 508명(간호사 443, 물리치료사 20, 치과위생사 11, 영양사 11, 기타 23)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방문 간호서비스 및 보건상담 등 서비스 제공 : 210,000가구
- 방문 전담인력 : 440명

4. 관련 사업 내용

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방문건강관리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 사업 규모(사업량) : 방문전담인력 440명/210,000가구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방문전담인력 수 대비 비례 지원
 - 지원내용 : 간호서비스, 운동, 영양상담 등의 건강관리
 -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9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590	590	590		1,180
2013				-	-	-		-
(증△감)				-	-	-		-

※ 2013년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7개 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1개)으로 예산 등 통합 운영됨(방문건강관리사업만 별도로 예산 구분 어려움)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2013년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7개 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1개)으로 예산 등 통합 운영됨(방문건강관리사업만 별도로 예산 구분 어려움)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205,000				590	590		1,180
'13	210,000				-	-		-
'14	215,000				-	-		-
'15	220,000				-	-		-
'16	225,000				-	-		-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방문 등록가구수	202,000	202,400	205,000	210,000	215,000	연간 방문 등록가구수	실적보고 및 보건소통합 정보시스템

7. 강원도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강원도)>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담당자	정경자
전화번호	033-249-2674	이메일	jkja65@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도내 산부인과 없는 군 지역의“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의 임신부 산전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임신부 건강보호 및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찾아가는 산부인과 추진계획 수립 : '12. 1월
-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12. 11월
- 임신부 산전관리 진료 실적 : 2,222건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찾아가는 산부인과 추진계획 수립 : '13. 1월
-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13. 11월
- 찾아가는 산부인과 모니터링 : 2회
- 검진일정 : 5개군 대상으로 월2~3회 순회 검진

4. 관련 사업 내용

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5개군 임신부(정선, 양구, 인제, 고성, 양양)
 - 사업 규모(사업량) : 2,300명
 - 위탁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

- 검진반 : 5~6명(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의료기사 등)
- 사업내용 : 임신부(산전진찰, 뇨·혈액검사, 태아기형아·초음파 검사 등)
- 예산 : 410백만원(도비 123, 시군비 287)
- 법적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고령화 기본법 제10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430		430
2013						410		410
(증△감)						△20		△20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00					410		410
정선군	460					82		82
양구군	460					82		82
인제군	460					82		82
고성군	460					82		82
양양군	460					82		82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412					2,070		2,070
'12	2,222					430		430
'13	2,300					410		410
'14	2,300					410		410
'15	2,300					410		410
'16	2,300					410		41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인원	558	2,440	2,222	2,300	2,300	진료인원/계획인원*100	진료실적(월보)

<1-3-3-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강원도)>

담당부서	농어촌정책과	담당자	김지석
전화번호	249-2612	이메일	yahro4493@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p21)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및 경제활동 역량제고 지원

- 시설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 등 기능제고
- 도시 기업인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경영마인드 제고
- 창업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기법 전수 및 기술적 컨설팅 제공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여성농업인의 교육·문화활동, 고충상담 및 복지활동 추진으로 삶의 질 개선
- 농어촌 영유아보육 및 방과 후 아동학습 지원으로 도시와의 교육격차 해소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 완화 프로그램 운영 → 영유아 보육, 방과후 학습지도
 - 찾아가는 문화공연 운영 → 취미교실 운영, 교양강좌, 여성농업인 동아리활동 지원
- 여성농업인센터를 여성농업인 문화활동의 거점으로 활용
 - 전통문화 보존계승, 자기개발, 결혼이민자 생활체험, 도농교류활동 추진
 - 여성농업인 리더십교육, 이주여성·귀농여성 맞춤형 교육 및 모임지원
- 여성농업인센터 필수 및 임의사업 지속 추진
 - 고충상담, 영유아보육, 방과후 아동학습,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 사업량 : 2개소(횡성여성농업인센터, 양구여성농업인센터)
- 사업비 : 218백만원(도비 22, 시군비 163, 자부담 33)

- 지원기준 : 도비 10%, 시군비(분권교부세 포함) 75%, 자부담 15%
- 사업내용 :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기타 제잡비 등 지원
- 지원대상(사업자 자격)
 -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며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 영유아보육시설 및 방과후 아동학습 지도시설을 확보한 자
- 법적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동법 시행령 및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85	33	218
2013						185	33	218
(증△감)						-	-	-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2/2					185	33	218
'13	2					185	33	218
'14	3					278	50	328
'15	3					278	50	328
'16	4					370	66	436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고충상담	240	291	300	310	320	상담인원	
영유아보육	4,447	6,882	6,900	7,000	7,100	어린이집 운영인원	
방과후 학습지도	8,192	6,380	6,500	6,600	6,700	방과후 학습지도 인원	
문화프로그램운영	5,355	8,971	9,000	9,100	9,200	문화프로그램 참여인원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강원도교육청)>

담당부서	교육진흥과	담당자	윤문상
전화번호	033-258-5517	이메일	yms0202@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5)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강화 (기본계획 p27)

□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운영내실화

-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이용 접근성 제고

* 평생학습도시 지정 76개 지자체 중 군지역은 13개

* 진안군은 「농촌 창업을 위한 평생학습 경제공동체 리더 양성」 프로그램 실시 중

□ 농어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능력 함양

-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고령농어업인,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만족도 제고

*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 8.8억('09)

□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휴일·방과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완료)
 - 평생학습관 지정 운영 : 22개관
-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완료)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지원 : 355개교
 - 지원액 : 3,017,500천원(교당 8,500천원)
 - 배치시기 : 2012년 3월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관 지정 운영 : 22개관
 - 운영기간 : 2013년 1월~12월
 - 대상 : 초등학교 및 중학교
-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 지원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지원 : 284개교
 - 지원액 : 3,518,000천원(교당 12,300천원)
 - 2013년 3월중 배치
-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우리마을학교도서관으로 지정 운영 : 47개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강원도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
 - 사업 규모(사업량) : 22개관

나.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초, 중, 고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284개교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지원 : 284개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3,518,000천원(교육비특별회계)
 -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우리마을학교도서관으로 지정 운영 : 47개교
 - 지원조건 : 학교도서관 지역주민에게 개방 및 다양한 문화·교양 프로그램 운영
 - 지원내용 : (주)NHN문화재단에서 우리마을학교도서관 개관시 도서 3,000권 지원 및 다양한 문화 관련 프로그램 지원
 - 추진근거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3,018	3,018
2013							3,518	3,518
(증△감)							500	500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교)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4						3,518	3,518
춘천시	47						582	582
원주시	54						669	669
강릉시	38						470	470
동해시	20						248	248
속초시	19						235	235
태백시	11						136	136
삼척시	14						173	173
홍천군	7						87	87
횡성군	7						87	87
영월군	9						111	111
평창군	13						161	161
정선군	5						62	62
철원군	15						186	186
화천군	3						37	37
양구군	6						75	75
인제군	10						124	124
고성군	6						75	75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090	17,090
'12	355/355						3,018	3,018
'13	284						3,518	3,518
'14	284						3,518	3,518
'15	284						3,518	3,518
'16	284						3,518	3,518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2	22	22	22	22	평생학습관 수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	361	355	284	284	284	배치 학교 수	
우리학교마을 도서관 운영	44	46	47	47	47	운영 학교수	

<2-1-6-1.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강원도교육청)>

담당부서	예산과	담당자	김연경
전화번호	033-258-5653	이메일	dusrud1105@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6) 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활성화 (기본계획 p27)

□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협의를 위해 시·군 단위에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지자체, 교육청, 주민, 전문가 등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지역개발계획과 교육환경 개선과의 연계방안, 교육투자 활성화 방안 등 논의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4개 지역교육청)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위원회 운영(6개 지역교육청)
- 교육행정협의회 규정 개정 및 위원 위촉(1개 지역교육청)
- 교육환경개선사업대상 심의 및 협의(1개 지역교육청)
- 교육경비지원사업 성과보고회 및 설명회 개최(2개 지역교육청)
-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확보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외 58개 사업(3개 지역교육청, 7,716,694천원)
 - 교육환경개선사업-다목적 건립 외 24개 사업(1개 지역교육청, 4,086,966천원)

3. 2013년도 추진 계획

-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6개 지역교육청)
- 농산어촌교육발전협의회 구성·운영(3개 지역교육청)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위원회 운영(4개 지역교육청)
- 교육환경개선사업대상 심의 및 협의(2개 지역교육청)
- 교육경비지원사업 조정협의회 운영(2개 지역교육청)

4. 관련 사업 내용

가.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 사업 내용

- 사업주체 : 17개 지역교육청
- 사업규모 : 연 1회 이상
- 사업내용 : 교육환경 개선과의 연계방안, 교육투자 활성화 방안 등 논의
- 추진근거 : 강원도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규칙,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비	예	산	사	업			
2013	비	예	산	사	업			
(증△감)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청							
춘천시	1							
원주시	1							
강릉시	1							
속초양양	1							
동해시	1							
태백시	1							
삼척시	1							
홍천군	1							
횡성군	1							
영월군	1							
평창군	1							
정선군	1							
철원군	1							
화천군	1							
양구군	1							
인제군	1							
고성군	1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14/17청							
'13	17청							
'14	17청							
'15	17청							
'16	17청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교육발전협의회 활성화	17	17	14	17	17	각 지역교육청 연 회 이상 협의회 개최 여부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강원도교육청)>

담당부서	행정과	담당자	안성수
전화번호	033-258-5443	이메일	sungsu71@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기본계획 p31)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 노후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현실화 추진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고등학생 방과후(야간) 차량 지원
 - 대상 : 원주 부론고 외 14교
 - 집행액 : 290,322천원

3. 2013년도 추진 계획

- 고등학생 방과후(야간) 차량 지원
 - 대상 : 원주 부론고 외 17교
 - 집행액 : 326,076천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방과후 교육활동이 끝나는 밤10시 이후 시내버스 미운행으로 귀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고등학교 18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326,076천원
 - 지원조건 : 인근 초등학교에 보유중인 통학차량을 활용 가능한 학교
 - 지원내용 : 일용직 운전원 인건비, 4대 보험, 유류비 지원
 - 추진근거 : 연도별 고등학교 방과후(야간) 차량지원 계획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91	291
2013							327	327
(증△감)							36	36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8교						327	327
원주시	1교						12	12
속초·양양	1교						46	46
삼척시	3교						34	34
홍천군	2교						51	51
횡성군	1교						11	11
영월군	1교						15	15
평창군	1교						2	2
정선군	1교						10	10
철원군	1교						12	12
화천군	1교						11	11
인제군	4교						111	111
고성군	1교						12	12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8교						1,599	1,599
'12	15교						291	291
'13	18교						327	327
'14	18교						327	327
'15	18교						327	327
'16	18교						327	327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차량지원학교수	26교	17교	15교	18교	18교	(지원학교수/계획학교수)×100	연도별 지원계획서 및 지원내역

8. 충청북도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충청북도)>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담당자	정인영
전화번호	220-3123	이메일	mento923@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방문건강관리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 방문건강사업 강화 : 년 85천가구 , 3,108백만원
 - 방문보건관리사 130명 확보, 보건소별 방문보건팀 운영
- 취약지역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대상지역 :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군(괴산군, 단양군)
 - 충주의료원에 산부인과팀 구성, 정기 이동진료 서비스 실시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방문건강관리 추진실적(계속)
 -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계층 : 85,000가구 등록관리 / 302천회
 - 사업담당자 교육 등 :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교육 130명
 -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 허약노인 낙상예방 프로그램
-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지원(계속)
 - 산부인과 없는 군 : 2개군(괴산군, 단양군)
 - 진료실적 : 786명(실인원 185명)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중점관리 추진
 -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계층 : 85,050가구 등록관리 / 310천회
 - 사업담당자 교육 :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130명
 -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 기 개발된 프로그램 활용방안 마련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2개군(괴산군, 단양군) / 700명

○ 추진일정

주요업무	'10	5개년('10~'14) 계획					비고
		'10	'11	'12	'13	'14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			→	계속 사업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	

4. 관련 사업 내용

가. 방문건강관리사업

○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내의 주민 중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족등 건강위험군 등
- 중점 관리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 세대, 장애인, 거동불편자, 결혼이민자, 그 외 만성질환자 등
- 사업규모(사업량) : 13개소 / 방문건강관리사 130명
- 사업비 : 3,108천원(기금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실적 집계 및 분석·평가
 - 보건소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기술지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취약계층, 노인정 등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상담 및 서비스제공
 - 중증장애인 및 이동 가능 장애인 대상 보건의료 재활서비스 제공
 - 암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취약계층 암 예방관리
 - 방문건강관리사 전문 인력 확보 : 130명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554	1,554	1,554		3,108
2013				1,554	1,554	1,554		3,108
(증△감)				-	-	-		-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개소				1,554	1,554		3,108
도					22	22		44
청주	2개소				296	296		592
충주	1개소				141	141		282
제천	1개소				129	129		258
청원	1개소				158	158		316
보은	1개소				91	91		182
옥천	1개소				135	135		270
영동	1개소				117	117		234
증평	1개소				59	59		118
진천	1개소				104	104		208
괴산	1개소				79	79		158
음성	1개소				110	110		220
단양	1개소				113	113		226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761	7,760		15,521
'11	13개소				1,545	1,544		3,089
'12	13개소				1,554	1,554		3,108
'13	13개소				1,554	1,554		3,108
'14	13개소				1,554	1,554		3,108
'15	13개소				1,554	1,554		3,108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도(12개 시·군)
- 사업시행 절차 : 지출한도액 통보(보건복지부)→사업계획서 제출(도, 시군)
→ 국고보조금 신청 → 사업계획 검토(보건복지부) → 사업 추진(도, 시·군)

나.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사업 내용

- 사업대상 :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 임산부
- 사업지역 : 괴산군, 단양군
- 추진방법 : 월 1회 ~ 2회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검진 및 낙태예방교육
- 사업내용
 - 초음파진단기 등이 장착된 이동검진차량으로 산전검진
 - 산전 진찰 횟수 : 1인 총 12 ~ 14회
 - 주요검사내용 : 산전기본검사, 초음파, 태아기형아검사 등 20여종
 - 찾아가는 산부인과 팀 구성운영(6명)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80		80
2013						80		80
(증△감)						-		-

- '13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개소					80		80
도						80		80

- 중기재정계획 : 해당없음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도(2개군)

추진주체		역할
도	보건정책과	- 사업계획 및 지침 수립 - 예산확보 및 행정적 지원 - 정기적 점검 및 관리
관할 시·군	보건소 보건지소	-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관내 임신부 현황 파악, 보건소 등록 관리 -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진료 · 진료 장소제공 협조 · 개인별 진료일정 관리 및 안내 · 유소견자 통보 시 즉시 전문병원 연계 조치 - 사업 시행, 홍보 및 사후관리 - 기타 진료에 필요한 사항 협조 - 관내 임신부 현황 파악 및 실적보고 - 임신부 진료일정 관리 및 안내 - 사업시행 및 지역주민 홍보
총주의료원	기관 담당자	- 사업추진계획 및 협약서에 의한 사업추진 - 진료일정 보건소 통보 및 사후관리 안내 - 유소견자 관리 : 보건소 통보 및 협력병원 연계 - 산전 진찰완료 후 분만 시 병원연계 -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진료 시행 및 홍보 - 성교육 및 낙태예방 홍보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방문등록관리가구수	65,000	85,000	85,050	85,100	85,150	사업실적	보건복지부 실적보고 자료
취약가구 적정관리율	46	56	57	58	59	$\left[\left(\frac{\text{등록관리가구수}}{\text{취약가구수}} \times 0.3 \right) + \left(\frac{\text{기초수급자 등록관리가구수}}{\text{기초수급자 가구수}} \times 0.4 \right) + \left(\frac{\text{12년 신규등록관리가구수}}{\text{취약가구수}} \times 0.2 \right) + \left(\frac{\text{12년 퇴로가구수}}{\text{등록관리가구수}} \times 0.1 \right) \right] \times 100$	보건복지부 실적보고 자료 정부합동평가 자료
찾아가는 산부인과운영	3개군	2개군	2개군	2개군	2개군	총주의료원 실적보고	실적보고자료

<1-3-3-7.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충청북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정숙용
전화번호	220-3523	이메일	jsyong71@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p21)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및 경제활동 역량제고 지원
 - 시설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 등 기능제고
 - 도시 기업인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경영마인드 제고
 - 창업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기법 전수 및 기술적 컨설팅 제공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 개소수 : 3개소
 - 사업비 : 420백만원(개소당 140백만원) → 도비 46백만원 시군비 311백만원 지담 63백만원
 - 고충상담(년/건) : 1월~12월(687건, 계속)
 - 영유아 보육활동(명/일평균) : 1월~12월(71명, 계속)
 - 방과 후 학습지도(명/일평균) : 1월~12월(38명, 계속)
 - 교육 및 문화 활동(년) : 1월~12월(12,683명, 계속)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 개소수 : 3개소
 - 사업비 : 420백만원(개소당 140백만원) → 도비 63백만원 시군비 315백만원 지담 42백만원
 - 고충상담실 운영(년/건) : 1월~12월(620명)
 - 영유아 보육활동(명/일평균) : 1월~12월(59명)
 - 방과 후 학습지도(명/일평균) : 1월~12월(33명)
 - 교육 및 문화 활동(년) : 1월~12월(7,525명)

4. 관련 사업 내용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도내 여성농어업인센터
- 사업 규모(사업량) : 3개소 (청주·청원·영동 여성농어업인센터)
- 지원금액 및 형태 : 420백만원(개소당 140백만원)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75%(분권 50%포함), 자담 10%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부정기사업비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357	63	420
2013						378	42	420
(증△감)						21	△21	0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					378	42	420
청주시	1					126	14	140
청원군	1					126	14	140
영동군	1					126	14	14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3/3					357/357	63/63	420/420
'13	3					378	42	420
'14	4					504	56	560
'15	4					504	56	560
'16	4					504	56	560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3개 시·군 (청주, 청원, 영동)

5. 성과목표

(단위:백만원)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345	390	420	420	560	개소당 사업비	시군

<2-1-3-1. 기숙형고교 지정·육성(충청북도)>

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	담당자	김 수 희
전화번호	043) 290-2144	이메일	soohee99@cbe.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기숙형 학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기본계획 p26)

□ 150개 기숙형 고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등 지원
- 기숙사내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 기숙형 고교현황(150개) : '08년 82개교(공립), '09년 68개교(공·사립)

* 지원금액 : ('08) 3,173억원, ('10) 2,720억원, ('11이후) 정책연구 후 사업 확대 여부 검토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2008년 : 기숙형 고교 군지역 공립고 7교 선정
- 2009년 : 기숙형 고교 도·농복합시지역 공·사립고 6교 선정 및 08년도 지정 7개 학교 기숙사 준공 완료(26,607,528천원 집행)
- 2010년 : 09년도 지정 6개 학교 기숙사 준공 완료(13,350,262천원 집행) 및 08년 지정학교 운영비 지원 (611,800천원)
- 2011년 : 13개 기숙형고교 운영비 지원(1,237,400천원)
7개 기숙형고교 지자체 운영비 지원(945,400천원)
- 2012년 : 13개 기숙형고교 운영비 지원(851,600천원)
7개 기숙형고교 지자체 운영비 지원(838,228천원)
(청원고 31,920천원, 음성고 136,650천원, 옥천고 180,000천원, 영동고 30,000천원, 진천고 200,000천원, 괴산고 159,658천원, 단양고 100,000천원)

3. 2013년도 추진 계획

- 기숙형 고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을 통한 기숙사 운영 내실화
 - 기숙사 운영비 교당 3,500만원 및 학생 1인당 20만원씩 자체 지원
-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 지자체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재정 지원 독려
- 기숙사내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로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 학습상담시스템 구축 및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 다양한 학습동아리 및 체계적인 진로 상담지도 활성화
 - 기숙사생 대상 주말 및 휴일 학력·인성·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 자치회 주관 프로그램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학생 안전 관리 철저
- 지역 거점학교로서 지역과 연계한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강화
- 기숙형고교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 및 전담 부서 설치 권장
- 기숙사내 지원시설 유지 보수의 신속화로 운영 만족도 제고
- 기숙형고교 홍보를 통한 인재 유출 방지 대책 및 내고장 학교 진학 활성화
- 성적우수자 및 원거리 학생,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균형있는 배정 및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

4. 관련 사업 내용

가. 기숙형고교 운영비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기숙형고교
 - 사업 규모(사업량) : 13교(청원고, 진천고, 음성고, 괴산고, 형석고, 보은고, 영동고, 충주여고, 충원고, 제천여고, 제천제일고, 단양고, 옥천고)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방비 851,600천원
 - 지원조건 : 기숙사 운영비
 - 지원내용 : 운영비 교당 3,500만원 및 기숙사 학생 1인당 20만원
 - 법적근거 : 없음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백만원)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414			852		1,266
2013						852		852
(증△감)								△414

- '13년 기숙형고교별 운영비 지원 내역

	사업규모 (교)	국비(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자부담	합계 (백만원)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852		852
청원고	1					83		83
옥천고	1					67		67
영동고	1					72		72
진천고	1					60		60
괴산고	1					59		59
음성고	1					70		70
단양고	1					66		66
제천여고	1					71		71
제천제일고	1					59		59
충주여고	1					70		70
보은고	1					61		61
충원고	1					59		59
형석고	1					55		55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교)	국비(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자부담	합계 (백만원)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13			414/414		4,260/4260		4,674/4674
'12	13/13			414/414		852/852		1,266 /1266
'13	13					852		852
'14	13					852		852
'15	13					852		852
'16	13					852		852

나. 기숙형고교 교사 인센티브 강화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기숙형고교 업무담당교사
- 사업내용 : 승진가산점 부여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기숙형고교 교육만족도	-	82.6	85	84	85	학생 만족도 조사	학생 설문조사
기숙사 총원율		96.1	99	97	97	기숙사 학생수/ 기숙사 정원	현황 파악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충청북도)>

담당부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황 의 공
전화번호	043-220-2145	이메일	idana20@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5)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강화 (기본계획 p27)

□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운영내실화

-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이용 접근성 제고

* 평생학습도시 지정 76개 지자체 중 군지역은 13개

* 진안군은 「농촌 창업을 위한 평생학습 경제공동체 리더 양성」 프로그램 실시 중

□ 농어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능력 함양

-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고령농어업인,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만족도 제고

*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 8.8억('09)

□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휴일·방과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완료)

- 기 간 : 2012. 4 ~ 11월(8개월)

- 총사업비 : 145백만원

- 주 관 :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정낙형)

- 사업내용 : 4개 분야 35개 프로그램 공모 선정 추진(145백만원)

분야별	건수	지원현황(천원)	비 고
고용복지	11	45,000	• 시군별 1개 이상 배분 • 1건당 300~500만원 지원 • 9월까지 9개 프로그램 완료
소외계층	11	45,000	
자기계발	9	35,000	
장애인	4	20,000	

-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 추진
 - 기 간 : '12. 6 ~ 12월
 - 총사업비 : 150백만원(국비 120, 도비 30)
 - 주 관 : 충북평생교육진흥원(원장 정낙형)
 - 사업내용 : 3개 분야 13개 프로그램 공모 선정 추진(90백만원)

프로그램별	건수	지원액(천원)	비 고
합 계	13	90,000	• 시군별 1개 이상 배분 • 건당 250~750만원 지원 • 9 ~ 12월 프로그램 운영
주민학습 공동체 운영	4	30,000	
전통문화체험 전문가 양성	6	37,500	
소외계층 경제교육 전문가 양성	3	22,500	

*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 : 교과부 주관 시도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국비지원

3. 2013년도 추진 계획

- 함께하는 평생학습 공동체 충북건설을 위한 평생교육 과제 발굴·추진
- '13년도 예산 확보액 : 300백만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평생학습 역량강화를 통한 참여문화 확산

- 사업내용
 - 사업지원대상 : 도내 시군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교육 기관 등 평생학습관련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관 단체
 - 사업규모(사업량) : 300백만원(진흥원 운영비 101, 사업비 199)
 - 지원금액 및 형태 : 시군 평생교육기관 단체 대상 공모사업 추진
 - 지원조건 : 도비, 자부담
 - 지원내용 : 기관별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후 성과평가 및 정산
 - 법적근거 :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조례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20			318		438
2013			-			300		300
(증△감)			△120			△18		△138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00		300
충북						300		300

※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함에 따라 본 사업의 공모에 참가하는 시군에 한해 사업비 지원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88		1,788
'12						438/288		438/288
'13						300		300
'14						400		400
'15						400		400
'16						400		4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평생교육 프로그램	-	17	25	30	30	프로그램 보급수	공모사업 추진실적

<2-1-6-1.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충청북도)>

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	담당자	김현경
전화번호	043) 290-2897	이메일	qjenddl@cbe.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6) 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활성화

-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협의를 위해 시·군 단위에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지자체, 교육청, 주민, 전문가 등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지역개발계획과 교육환경 개선과의 연계방안, 교육투자 활성화 방안 등 논의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충청북도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 : 11명(당연직 5명, 위촉위원 6명)
 - 임기 : 2012. 5. 14. ~ 2014. 5. 13.(2년간)
- 「충청북도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3. 2013년도 추진 계획

- 2013년 농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계획 심의 예정
 - 농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중
 - 대상 : 학교, 학부모, 충북도민, 지방자치단체,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
 - 기간 : 2013. 1. 10. ~ 1. 25.
- 충청북도농산어촌교육발전 지역교육청 협의회 구성·운영 활성화

4. 관련 사업 내용

- 시군교육발전협의회 설치·운영
 - 사업 내용
 - 교육여건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예산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재정계획 : 해당사항 없음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충청북도)>

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단	담당자	유여종
전화번호	043) 290-2898	이메일	yough@cbe.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기본계획 p31)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 노후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현실화 추진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노후차량 교체 8대
- 직영차량 운영 126대, 임차차량 운영 99대
- 안전보조요원 인건비 126명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노후차량 교체 7대
- 직영차량 운영 118대, 임차차량 운영 114대
- 안전보조요원 인건비 118명

4. 관련 사업 내용

가.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촌지역 학교 통학차량 지원
 - 사업 규모(사업량) : 노후차량 교체 7대, 직영차량 운영 118대, 임차차량 운영 114대, 안전보조요원 인건비 118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학교회계전출금 5,763백만원, 안전보조요원 인건비 별도지원
 - 지원조건 : 통·폐합교 및 통학불편교
 - 지원내용 : 노후차량교체, 직영차량운영비, 임차비

-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백만원)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5,071		5,071
2013						5,763		5,763
(증△감)						692		692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대)	국비(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자부담	합계 (백만원)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9					5,763		
청주	5					158		
충주	30					813		
제천	22					363		
청원	38					1,203		
보은	22					393		
옥천	15					462		
영동	26					490		
진천	15					439		
증평	2					50		
괴산	25					458		
음성	23					784		
단양	16					15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대)	국비(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자부담	합계 (백만원)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233/233					5,071/5,071		5,071/5,071
'13	239					5,763		5,763
'14	239					5,994		5,994
'15	239					6,234		6,234
'16	239					6,483		6,483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9. 충청남도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충남)>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자	이종천
전화번호	041-635-4302	이메일	7551@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기본계획 p18)

□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낙도지역에는 병원선을 이용한 이동진료 제공

* 경남, 전남, 인천, 충남 섬 지역 대상으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병원선 운영 중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지역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방문인력 154명)
 - 등록관리 113,758가구, 방문서비스 제공 254,106회
- 병원선 도서주민 운항일수(진료일수) 및 진료실적
 - 운항일수 : 189일(진료일수 : 189일)
 - 진료실적 : 218,229명(내과 212,287, 치과 461, 한방 5,481)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전체 등록관리 가구수 - 10만가구
- 농어촌지역 및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속 제공
- 의료취약지역 도서 주민을 위한 병원선 활용 이동진료 지속 추진
 - 진료기간 : 2013년 1월~12월
 - 진료일수 : 180일 이상
 - 매월 15일 이상 진료를 원칙으로 운영
(3주진료, 1주 선박정비 및 진료준비)
 - 도서별 진료는 매월 1회 이상 순회진료를 실시하며 300인 이상 3개 도서
(원산도, 삼시도, 외연도)는 진료횟수 확대(월2~4회실시)

4. 관련 사업 내용

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건강 위험군
- 사업 규모(사업량) : 15개 시군
- 지원금액 및 형태 : 3,648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농어촌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생활습관 실천 및 건강위험요인관리, 산후건강관리, 허약노인건강관리, 북한이탈주민건강관리, 독거노인건강관리,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병)관리 서비스 제공하고 계절별 폭염 및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
-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9조, 2013년 방문건강관리사업지침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804		1,804		3,608
2013				1,824		1,824		3,648
(증△감)				20		20		40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 '13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포함되어 시군별 자체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 및 자체사업 추진 가능함

구분 시군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				1,824	1,824		3,648
천안	1				300	300		600
공주	1				144	144		288
보령	1				144	144		288
아산	1				216	216		432
서산	1				108	108		216
논산	1				120	120		240
계룡	1				60	60		120
당진	1				180	180		360
금산	1				72	72		144
부여	1				60	60		120
서천	1				72	72		144
청양	1				36	36		72
홍성	1				132	132		264
예산	1				108	108		216
태안	1				72	72		144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6				9,433	8,433		18,866
'12	16				1,804	1,804		3,608
'13	15				1,824	1,824		3,648
'14	15				1,900	1,900		3,800
'15	15				1,905	1,905		3,810
'16	15				2,000	1,000		4,000

나. 병원선 도서주민 진료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의료취약지역인 28개 도서주민
- 사업 규모(사업량) : 6개 시군 4,100명(남 2,138, 여 1,962)
- 지원금액 및 형태 : 663,875천원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지원내용 : 의료 취약계층인 도서지역주민 진료와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 관절질환) 및 거동불편 주민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진료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 대하여 3차 의료기관과 원격영상 진료시스템을 활용하여 협진 진료 서비스 제공
- 법적근거 : 충청남도병원선운영조례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지방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638		638
2013						664		664
(증△감)						26		26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지방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359명					3,266		3,266
'12	4,229명					638		638
'13	4,100명					664		664
'14	4,050명					664		664
'15	4,000명					650		650
'16	3,980명					650		65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등록관리가구수	104,792 가구	100,000 가구	100,000 가구	100,000 가구	100,000 가구	방문서비스 등록관리 가구수	전상등록자료
년간 진료실적(명)	196,753	218,229	218,300	218,300	218,300	병원선 내원 진료환자	전상등록자료

<1-3-3-7.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충남)>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황평하
전화번호	041-635-2513	이메일	hpyongha@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p21)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및 경제활동 역량제고 지원

- 시설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 등 기능제고
- 도시 기업인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경영마인드 제고
 - 창업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기법 전수 및 기술적 컨설팅 제공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자 선정('12.1월)
 - 3개소(서천1, 홍성1, 예산1)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12.1월)
 - 3개소 / 총사업비 120백만원 중 도비 43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추진상황 현지점검('12.4~5월)
 - 사업 추진 현황, 문제점 및 대책, 예산 집행 현황,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자 선정('13.1월)
 - 도 선정심의회에서 서면심사를 통해 전년도 추진실적과 당년도 사업계획, 자격 및 시설조건 등을 평가, 80점 이상 득점자를 지원자로 확정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13.1월)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추진상황 현지점검('13.4~5월)
 - 사업 추진 현황, 문제점 및 대책, 예산 집행 현황,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4. 관련 사업 내용

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여성농업인센터
- 사업규모(사업량) : 4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520백만원(개소당 130백만원)
- 지원조건 : 도비 13.5%, 시군비 74.5%, 자부담 12%
- 지원내용 : 센터 운영자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일부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도(시장·군수)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312	48	360
2013						458	62	520
(증△감)						146	14	160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					458	62	520
서천	1					114.5	15.5	130
홍성	1					114.5	15.5	130
예산	2					229	31	26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9					2,144	296	2,440
'12	3/3					312/312	48/48	360/360
'13	4					458	62	520
'14	4					458	62	520
'15	4					458	62	520
'16	4					458	62	52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지원개소수 (개소수)	3	3	3	4	4	여성농업인센터수 대비 지원센터수	내부자료

< 2-1-3-1.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충남) >

담당부서	학교정책과	담당자	백 종 진
전화번호	042-580-7232	이메일	31black@cnoe.or.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4) 기숙형 학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기본계획 p26)</p> <p>□ 150개 기숙형 고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등 지원 ○ 기숙사내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p>* 기숙형 고교현황(150개) : '08년 82개교(공립), '09년 68개교(공·사립)</p> <p>* 지원금액 : ('08) 3,173억원, ('10) 2,720억원, ('11이후) 정책연구 후 사업 확대여부 검토</p>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2008년 충남교육청 기숙형 고교 8교 선정 및 기숙사 건립
[교과부 특교금 22,489,500천원 + 교육청 자체 예산 1,200,000천원 지원]
- 2009년 충남교육청 기숙형 고교 9교 선정 및 기숙사 건립
[교과부 특교금 10,886,400천원 + 교육청 자체 예산 12,543,780천원 지원]
- ➔ 2012년말 현재, 충남 기숙형 고교 16교 기숙사 건립 : 완료
- ➔ 2012년 9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립으로 세종고등학교 분리됨.
- 2010년 기숙형 고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8교 [교육청 자체 예산 1,350,006천원]
- 2011년 기숙형 고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7교 [교과부 특교금 335,000천원]
- 2011년 기숙형 고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17교 [교육청 자체 예산 2,053,445천원]
- 2010 ~ 2012년 기숙형 고교 연구학교 및 모델학교 운영 : 완료
- 2012년 기숙형 고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6교 [교과부 특교금 516,000천원]
- 2012년 기숙형 고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16교 [교육청 자체 예산 2,003,404천원]
- 기숙형 고교 담당자 연수 및 워크숍 실시 [교장, 교감 행정실장, 업무담당자 등] : 계속
- 기숙형 고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해당 시·군에 기숙사비 지원 조례 제정 협조 요청
- ➔ 2012년말 현재, 12개 해당 시·군 중 3개 기관 (태안군, 아산시, 청양군) 조례 제정 : 계속

3. 2013년도 추진 계획

- 2013년 기숙형 고교 연구학교 운영 및 지원 : 1교
- 2013년 기숙형 고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 16교
- 2013년 기숙형 고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16교
- 기숙형 고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숙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나머지 9개 해당 시·군에 기숙사비 지원 조례 제정 협조 요청
- 기숙형 고교 취지에 부합하는 학교가 되도록 맞춤형 컨설팅, 평가 및 교원 연수 실시 : 16교

4. 관련 사업 내용

가.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 대상 : 기숙형 고교 운영교
 - 사업 규모 : 고등학교 [16교]
 - 지원 금액 및 형태
 - ▶ 금액 : 학교별 (기숙사생수) 차등 지급
 - ▶ 형태 : 보통 교부금 [학교 기본 운영비]
 - 지원 조건
 - ▶ 기숙사 학생 기숙사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 경감
 - ▶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한 기숙형 고교 취지에 부합하는 학교 만들기
 - 지원 내용 : 프로그램 운영비 및 기숙사 운영비 지원
- 예산 [단위: 천원]

사업 주체	예산액					비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교과부	22,489,500	11,096,400	335,000	516,000		2013년 1차 추경에 추가 예산지원 계 획임
교육청	1,200,000	13,893,786	2,053,445	2,003,404	1,853,090	
합계	23,689,500	24,990,186	2,388,445	2,519,404	1,853,09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기숙형 고교 교육 만족도	30	40	50	60	70	설문 조사	학교별 기숙사생, 학부모 및 교사 조사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충남교육청)>

담당부서	평생교육행정과 (평생교육담당)	담당자	조 권 호
전화번호	042-580-7272	이메일	jgh@cnoe.or.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5)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강화 (기본계획 p27)

-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운영내실화
 -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이용 접근성 제고
 - * 평생학습도시 지정 76개 지자체 중 군지역은 13개
 - * 진안군은 「농촌 창업을 위한 평생학습 경제공동체 리더 양성」 프로그램 실시 중
- 농어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능력 함양
 -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고령농어업인,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만족도 제고
 - *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 : 8.8억('09)
-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휴일·방과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교육청)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평생교육의 장으로 학교 개방
 - 초등학교 427교, 중학교 193교, 고등학교 118교, 특수학교 6교
- 평생학습기관 협력 체제 구축
 - 충청남도교육청 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운영 : 충청남도평생교육원
 - 권역대표·지역·학교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 3권역 15지역 20개 기관
-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 지원
 - 창의성 함양을 위한 학력지원 프로그램 운영 : 20개 기관
 - 바른 품성 5운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 20개 기관
 - 사회통합을 위한 배려대상 프로그램 운영 : 20개 기관
 - 성인 문자해독 프로그램 운영 : 15개 기관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 188명(일반단원 157명, 명예단원 31명)

3. 2013년도 추진 계획

- 「2013년도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시달(2013. 1월 중)
 - 평생학습기관 협력 체제 구축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기관의 평생교육 활성화 등
 - 대상 : 도내 초·중·고등학교,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4. 관련 사업 내용

가. 학교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을 이용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60개 기관(학교 41, 도서관 15, 평생학습관 4)
 - 지원금액 및 형태 : 382백만원
 - 지원조건 :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기관
 - 지원내용
 -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 지원 : 41교
 - 성인 문자해독 프로그램 운영 : 19기관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야간 프로그램 운영 : 6기관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724		724
2013						362		362
(증△감)						△362		△362

- * 농특세 전입금 사업은 농특세로 기재하고, 현 회계는 별도 기재
- * 마사회 적립금 등 기금 성격이 높은 재원은 기금으로 기재하고, 자원명을 별도기재
- * 2012년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계획금액을 기재하고 계획임을 표시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실적/계획	실적/계획				724/724		
'13						362		
'14						362		
'15						362		
'16						362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204	236	243	41	41	우수 프로그램 공모	공문/도교육청

<2-1-6-1.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충남교육청)>

담당부서	기획관(기획조정팀)	담당자	최 미 섭
전화번호	042-580-7212	이메일	meseop@cnoe.or.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6) 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활성화 (기본계획 p27)</p> <p>□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협의를 위해 시·군 단위에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운영</p> <p>○ 지자체, 교육청, 주민, 전문가 등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지역개발계획과 교육환경 개선과의 연계방안, 교육투자 활성화 방안 등 논의</p>
--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지역교육발전지원단 구성 : 14개 지역교육지원청 총 497명

지역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계
인원	36	31	42	27	39	56	30	33	32	21	42	44	34	30	497

○ 구성기준

- 학계, 교육관계 종사자
- 도의원, 기초의원
- 운영위원 협의회, 학부모 단체
- 각종 봉사단체 인사 : 노인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해병대 전우회, 장애인 단체, 자율방범대, 새마을 단체 등
- 기타 교육관련 인사 및 단체

○ 지역교육발전지원단 협의회 : 총 52회

지역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계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계
개회 횟수	2	2	2	9	2	7	1	3	5	1	3	2	6	7	52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다양한 지역 인사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방안 수립
-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 상반기 : 500천원*14청=7,000천원
 - 하반기 : 500천원*14청=7,000천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시군 교육발전지원단 설치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시·군교육지원청
 - 사업 규모 : 지역별 교육발전지원단 자체 사업
 - 지원 금액 및 형태 : 14청* 1백만원 = 14백만원
 - 지원조건 : 지역교육발전지원단 활성화
 - 지원내용 : 활성화 예산 지원 및 관리 감독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4		14			14
2013			14		14			14
(증△감)			0		0			0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			14				14
	14			14				14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14/14			14/14				14/14
'13	14/14			14/14				14/14
'14	14/14			14/14				14/14
'15	14/14			14/14				14/14
'16	14/14			14/14				14/14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 시·군별 교육발전협의회 연간 3회 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협의회개최	.	44/15	52/14	42/14	42/14	횟수/시군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충남교육청)>

담당부서	총무과(총무팀)	담당자	남도현
전화번호	042)580-7261	이메일	best@cnoe.or.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기본계획 p31)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 농산어촌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 편의 제공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관용차량 150대, 34억 3천 3백만원
- 임차차량 190대, 74억 2천만원

3. 2013년도 추진 계획

- 통학차량 330대 (관용 140대, 임차 190대)지원 : 96억 7천 3백만원
- 통학차량(임차차량) 지원 대상학교 분석 : 2013년 2월말까지
- 통학차량 지원 대상 확정 및 예산 지원 : 2013년 3월중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산어촌 통학버스 지원

-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면지역 이하 통학여건이 어려운 학교순으로 연차 지원
 - 사업 규모(사업량) : 관용 140대, 임차 190대
 - 지원금액 및 형태
 - 관용차량 : 차량운영비, 교체비, 공동활용경비 등 지원
 - 임차차량 : 1대당 38백만원에서 43백만원의 예산 지원
 - 지원조건 : 학구내에 교통여건이 열악하여 교육과정이 어려운 학교
 - 지원내용 : 원거리 통학 학생수를 감안하여 임차차량비 지원
 - 법적근거 : 자체계획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0,853		10,853
2013						9,673		9,673
(증△감)						△1,180		△1,180

※ 세종시 분리로 인하여 감소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40대					40,580		40,580
'11	341대					9,354		9,354
'12	340대					10,853		10,853
'13	330대					9,673		9,673
'14	340대					10,700		10,700

※ 세종시 분리로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10대 감소

나. 농산어촌 통학버스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도교육청(지원대상 확정 및 예산 지원) - 각급학교(차량계약 및 운행)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 통학 버스 지원	339/339	341/341	340/340	330	340	연초 계획 물량 대비 연말 추진 물량 비교	예산편성 및 결산자료

10. 전라북도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 방문건강관리서비스(전라북도)>

담당부서	건강안전과 (건강생활팀)	담당자	안춘원
전화번호	063-280-2447	이메일	ancw@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방문건강관리사업

-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을 가정방문하여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에 기여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추진실적 : 취약가구 150,000가구 관리(전담인력 127명)
- 추진기간 : 연중
- 진행상황 : 계속
- 예산액 : 3,255백만원(기금 49%, 지방비 51%)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사업 내용
 - 사업대상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 2순위 :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군
 - 3순위 : 다문화가정, 빈곤아동 지역아동센터, 미인가시설
 - 4순위 : 보건소 내 타부서 및 관련 기관, 지역사회 기관에서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한 대상자(경로당)
 - 사업규모(사업량) : 취약가구 150,000가구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장애인, 허약노인, 임신·출산여성, 영유아 등 건강관리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의 투약 및 합병증 관리
- 허약노인 우울, 요실금, 약물복용, 낙상 등의 건강문제 관리

○ 추진기간 : 연중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1				1,546	1,546	1,632		3,178
2012				1,585	1,585	1,670		3,255
2013				1,585	1,585	1,670		3,255
(증△감)				0	0	0		0

- '12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가구수)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8,629				1,585	1,670		3,255
도					20	20		40
전주	5,405				147	161		308
군산	9,195				220	227		447
익산	8,822				185	193		378
정읍	10,933				234	242		476
남원	9,785				126	133		259
김제	10,730				137	144		281
완주	6,805				96	102		198
진안	3,737				91	95		186
무주	2,945				22	25		47
장수	3,178				56	59		115
임실	2,678				83	88		171
순창	3,239				52	57		109
고창	5,975				57	61		118
부안	5,202				59	63		122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개 시군				7,886	8,312		16,198
'11	14개 시군				1,546	1,632		3,178
'12	14개 시군				1,585	1,670		3,255
'13	14개 시군				1,585	1,670		3,255
'14	14개 시군				1,585	1,670		3,255
'15	14개 시군				1,585	1,670		3,255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2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4.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투입 전담인력수	125명	127명	128명	127명	127명	전담인력수	보건복지부 보고서식
방문간호사 대비 집중관리가구수	65	70	40	40	40	집중관리가구 /방문간호사	
방문인력 대비 취약계층방문횟수	1,672	1,680	1,800	1,850	1,900	방문횟수/방문인력	

<1-3-3-7.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전라북도)>

담당부서	미래농업과	담당자	윤종현
전화번호	063-280-2634	이메일	jhyoon2001@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p21)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및 경제활동 역량제고 지원

- 시설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 등 기능제고
- 도시 기업인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경영마인드 제고
 - 창업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기법 전수 및 기술적 컨설팅 제공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계획 통보('12. 1월)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계획 홍보('12. 2월~)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12. 2월, 3월, 6월, 9월)
- '13년 여성농업인센터 지원대상자 선정('12. 9월)
 - 8개 센터 선정(기존 8개소)
- 여성농업인센터 시설개선사업 : 4개소(신축 2, 개보수 2)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지침 통보('13. 1월)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13. 1월, 3월, 6월, 9월)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사업 추진실적 보고(분기별)
- '14년 여성농업인센터 지원대상자 선정('13. 9월)
 - 선정심의위원 위촉 및 심의위원회 개최, 현지 확인 등

4. 관련 사업 내용

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으로서 자격·시설·인력을 갖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센터

- 사업 규모(사업량) : 8개소 지원(개소당 130백만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1,040백만원
- 지원조건 : 지방비 90%, 자부담 10%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비 지원(인건비, 관리비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936	104	1,040
2013						936	104	1,040
(증△감)						-	-	-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등			
합계	8					936	104	1,040
남원	2					225	25	250
진안	1					117	13	130
임실	1					117	13	130
순창	1					117	13	130
고창	1					126	14	140
부안	2					234	26	26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등			
합계	46					5,310	590	5,900
'11	8					816/816	144/144	960/960
'12	8					936	104	1,040
'13	8					936	104	1,040
'14	9					1,053	117	1,170
'15	10					1,170	130	1,300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율	100	100	100	100	100	(운영비 지원센터수÷ 도내 센터수)×100	내부자료

<2-1-1-1. 농산어촌 에듀케어 및 전원학교 등 지원(전라북도교육청)>

담당부서	행정과	담당자	정미경
전화번호	063-239-3612	이메일	mkjyung@jbedu.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1.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기본계획 p25)

- ◇ 농산어촌 전원학교 및 돌봄학교 육성을 통해 농어촌 현실에 맞는 교육·복지 학교모델 창출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가.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면지역 학생수 60이상 ~ 300명 내외 초·중학교
(신규 통폐합본교, 초·중·고 통합운영 전환교 포함)
- 사업규모(사업량) : 당북초 외 26개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1,467,320천원
- 지원내용 : 핵심과제*중심 프로그램 운영 지원, 파스텔시스템 활성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학력증진 지원, 특기·적성계발, 맞춤형 돌봄 지원)

3. 2013년도 추진 계획

- 2013. 1분기 : '13년 농어촌전원학교 및 에듀케어 사업 기본계획 수립
'13년 농어촌전원학교 및 에듀케어 사업 지원학교 확정
'13년 농어촌전원학교 및 에듀케어 사업비 교부
- 2013. 2분기 : '13년 농어촌전원학교 및 에듀케어 사업관련 워크숍 개최
'13년 농어촌전원학교 및 에듀케어 사업 컨설팅 실시
- 2013. 4분기 : '13년 농어촌전원학교 및 에듀케어 사업 성과평가 분석
'13년 농어촌전원학교 및 에듀케어 사업 성과 및 우수사례 보고회 개최

4. 관련 사업 내용

가. 2013년 농어촌 전원학교 운영 현황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면지역 학생수 60이상 ~ 300명 내외 초·중학교
(신규 통폐합본교, 초·중·고 통합운영 전환교 포함)
- 사업 규모(사업량) : 농산어촌 지역 초·중 13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프로그램운영비 : 325백만원
- 지원내용 : 농산어촌 지역 학교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함으로써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나. 2013.농어촌 에듀케어(Educare) 육성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면지역 소재 초·중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40개교(초 27교, 중 13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800백만원(특별교부금)
- 지원내용 : 지역학교의 여건 및 특색에 맞는 6개 영역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기초학력 신장, 심리·정서 발달, 사회·문화적 소양 증진, 특기·적성계발, 사업지원 프로그램)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107		1,107	360		1,467
2013						1,125		1,125
(증△감)						765		765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25		1,125
군산						84		84
익산						84		84
정읍						84		84
남원						84		84
김제						84		84
완주						114		114
진안						84		84
무주						84		84
장수						84		84
임실						84		84
순창						84		84
고창						84		84
부안						87		87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07		4,860		5,967
'12	27교			1,107		360		1,467
'13	53교					1,125		1,125
'14	53교					1,125		1,125
'15	53교					1,125		1,125
'16	53교					1,125		1,125

5. 성과목표

(단위:백만원)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전원학교지원 및 농어촌에듀케어 육성지원	2,016	2,450	1,467	1,125	1,125	농산어촌 전원학교 및 에듀케어 육성 지원 예산확보액	내부자료

<2-1-3-1.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전라북도교육청)>

담당부서	행정과	담당자	김지영
전화번호	063-239-3597	이메일	iprome@jbedu.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기숙형 학교 확대 및 운영 내실화(기본계획 p26)

□ 150개 기숙형 고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등 지원
- 기숙사내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 기숙형 고교현황(150개) : '08년 82개교(공립), '09년 68개교(공·사립)

* 지원금액 : ('08) 3,173억원, ('10) 2,720억원, ('11이후) 정책연구 후 사업 확대여부 검토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2008년 : 기숙형 고교 선정(군지역 공립고-한별고 등 8교)
- 2009년 : 기숙형 고교 선정(도·농복합시지역 공·사립고-정읍고 등 5교)
- 2010년 ~ 2011년
 - 기숙형 고교 기숙사 운영 지원 : '08년 선정학교(한별고 등 8교)
 - 기숙형 고교 기숙사 신축 : '09년 선정학교(정읍고 등 5교)
- 2012년
 - 기숙형 고교 기숙사 운영 지원
 - '08년 선정학교(한별고 등 8교)
 - '09년 선정학교(정읍고 등 5교)
 - 일반고교 기숙사 지원 : 40교

3. 2013년도 추진 계획

- 2013년 분기별 기숙형 고교 기숙사 및 일반고교 기숙사 운영비 학교 교부

4. 관련 사업 내용

가. 기숙형 고교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교과부 선정 기숙형 고교
 - 사업 규모(사업량) : 한별고 등 13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1,652,640천원
 - 지원내용 : 기숙사 기본운영비(공공요금) 및 사감인건비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360		1,360
2013						1,653		1,653
(증△감)						293		293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교					1,653		1,653
정읍	2교					302		302
남원	2교					234		234
김제	1교					118		118
완주	1교					124		124
진안	1교					87		87
무주	1교					116		116
장수	1교					107		107
임실	1교					104		104
순창	1교					138		138
고창	1교					171		171
부안	1교					152		152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972		7,972
'12	13교					1,360		1,360
'13	13교					1,653		1,653
'14	13교					1,653		1,653
'15	13교					1,653		1,653
'16	13교					1,653		1,653

나. 일반 고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비평준화지역 중 기숙사 보유교 40교
(도농복합시 및 읍·면지역 고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안성고 등 40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740,880천원
- 지원내용 : 기숙사 기본운영비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582		582
2013						741		741
(증△감)						111		111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0교					741		741
익산	4교					84		84
정읍	10교					186		186
남원	3교					39		39
김제	5교					76		76
완주	1교					30		30
진안	1교					25		25
무주	3교					29		29
장수	3교					62		62
순창	2교					24		24
고창	5교					140		140
부안	3교					46		46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46		3,546
'12	40교					582		582
'13	40교					741		741
'14	40교					741		741
'15	40교					741		741
'16	40교					741		741

다.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군 및 읍면이 있는 도·농복합시, 시지역 농촌동 소재 초·중·고
- 사업 규모(사업량) : 농산어촌 지역 초·중·고 485교(3,418학급)
 - ※ 초 292교, 중 131교, 고 62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 1) 프로그램운영비 : 학교당1,000만원, 학급당100만원, 총10,006,000천원
 - 2) 교육지원청 특색사업비 : 순회강사지원(14명), 총 1,736,000천원
- 지원조건 : 농산어촌 지역 저소득층 학생 중 희망자
- 지원내용 :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기숙형고교 지원	-	-	96.4	97	97	기숙형고 기숙사 입사율	내부자료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전라북도교육청)>

담당부서	인성건강과(평생교육) 교육혁신과(방과후학교)	담당자	안미경 장윤정
전화번호	239-3386 239-3337	이메일	children@jbedu.kr basic68@jbedu.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5)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강화 (기본계획 p27)
-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운영내실화
 -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이용 접근성 제고
 - * 평생학습도시 지정 76개 지자체 중 군지역은 13개
 - * 진안군은 「농촌 창업을 위한 평생학습 경제공동체 리더 양성」 프로그램 실시 중
 - 농어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능력 함양
 -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고령농어업인,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만족도 제고
 - *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 8.8억('09)
 -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휴일·방과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가. 농어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 사업명 : 지역중심 「평생학습관」 운영
- 사업량 : 7개기관
- 사업비 : 140백만원

나.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 개방

- 사업명 : 농어촌 학교마을도서관 개방 운영
- 사업량 : 초등학교 29교
- 사업비 : 69백만원

3. 2013년도 추진 계획

가. 농어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 지역중심 「평생학습관」 운영
 - 2013년 본예산 편성시 지역배분 자료로 산정하여 배부: 2012년 12월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해당기관에서 연중 실시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중간평가 : 2013년 7~8월중
 - 성과평가 및 운영현황 보고서 제출 : 2013년 12월

나.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 개방

- 농어촌 학교마을도서관 개방 운영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네이버문화재단에서 연중 실시
 - 중간평가 및 운영현황 보고서 제출 : 연 2회

4. 관련 사업 내용

가. 지역중심 「평생학습관」 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완주공공도서관, 진안공공도서관, 무주공공도서관, 장수공공도서관, 임실공공도서관, 순창공공도서관, 고창공공도서관 총 7개
 - 사업 규모 : 20,000천원 × 7기관 = 140,000천원
연중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정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에 따른 강사비 및 재료비 등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예산)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지원내용 : 기관당 지원하되, 2012년까지 진행했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성과 분석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함
 -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40		140
2013						140		140
(증△감)						0		0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					140		140
완주	1					20		20
진안	1					20		20
무주	1					20		20
장수	1					20		20
임실	1					20		20
순창	1					20		20
고창	1					20		2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					700		700
'12	7/7					140/140		140/140
'13	7					140		140
'14	7					140		140
'15	7					140		140
'16	7					140		140

나. 농어촌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학교도서관 개방
- 사업 규모 : 2,400천원 × 초등학교 15교 = 36,000천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예산)
- 지원조건 : 지방비 100%(학교마을도서관 운영학교)
- 지원내용 : 방과후 및 방학중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활용함
- 법적근거 : 해당없음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69		69
2013						36		36
(증△감)						△33		△33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					36		36
완주	3					8		8
진안	2					4		4
무주	3					8		8
장수	3					8		8
임실	0					0		0
순창	0					0		0
고창	2					4		4
부안	2					4		4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9					213		213
'12	29/29					69		69
'13	15					36		36
'14	15					36		36
'15	15					36		36
'16	15					36		36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평생학습관 운영 예산액(백만원)	84	112	140	140	140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경비	내부자료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예산액(백 만원)	32	55	69	36	36	학교도서관 개방 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지원 경비	내부자료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전라북도교육청)>

담당부서	행정과	담당자	김범일
전화번호	063-239-3600	이메일	ynb000@jbedu.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 기회 제공(기본계획 p31)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 노후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현실화 추진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소규모 통폐합학교 통학차량지원(1987년)
- 통학차량 통합관리 지침시달(2006년) : 승차정원 범위 내에서 인근학생 공동이용, 학생교육활동 지원
- 농어촌지역 초등학교로 통학차량 지원 확대(2009년) : 252교, 295대
- 도시 농촌동 지역 초등학교까지 지원(12교, 12대) 확대(2012년)
- 농어촌지역 무료 통학 지원(2012년말 현재)
 - 대상
 - 통학버스 지원 : 유 14원, 초 250교, 중5교(총 269교)
 - 통학택시 24교, 하숙비 41명
 - 지원내용 : 직영버스 213대, 전세버스 123대, 안전도우미 209명
통학차량 교체 30대, 통학택시 지원 30대, 하숙비 41명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지역 무료 통학 지원
 - 지원기간 : 2013.1. ~ 2013. 12.
 - 대상 : 유 42원, 초 253교, 중 5교

- 지원내용 : 직영버스 215대, 전세버스 178대, 안전도우미 210명
통학차량 교체 18대, 통학택시 지원 52대, 하숙비 39명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산어촌지역 무료 통학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지원대상 :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의한 통·폐합학교, 통학여건이 불편한 읍·면·농촌동지역 초등학교 및 공립유치원
- 사업규모(사업량)
 - 통학버스 지원 : 유 42원, 초 253교, 중 5교(총 393대)
 - 통학택시 지원 : 유 6원, 초 28교, 중 4교(총 52대)
 - 하숙비지원 : 39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13,168,949천원
- 지원내용 : 직영버스 215대, 전세버스 178대, 안전도우미 210명
통학차량 교체 18대, 통학택시 지원 52대, 하숙비 39명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0,962		10,962
2013						13,169		13,169
(증△감)						2,207		2,207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169		13,169
전주						725		725
군산						1,515		1,515
익산						1,475		1,475
정읍						1,523		1,523
남원						965		965
김제						1,466		1,466
완주						1,110		1,110
진안						570		570
무주						401		401
장수						323		323
임실						610		610
순창						566		566
고창						1,118		1,118
부안						802		802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3,638		63,638
'12						10,962		10,962
'13						13,169		13,169
'14						13,169		13,169
'15						13,169		13,169
'16						13,169		13,169

5. 성과목표

(단위:백만원)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산어촌 무료통학지원비	9,830	9,131	10,962	13,169	13,169	농산어촌 무료통학지원 예산확보액	내부자료

11. 전라남도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담당부서	보건한방과	담당자	김경화
전화번호	061-286-6054	이메일	eco34567@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의료서비스 강화

□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의 여성,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정, 허약노인 등 대상으로 지역담당제를 통한 가족중심의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22개시군, 방문전담인력 225명 투입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낙도지역에는 병원선을 이용한 순회진료 서비스 제공
 - 11개시군, 184개 도서주민 15,310명에 대해 연 6회 방문진료 실시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의료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 125,757가구 등록관리, 212명 방문전담인력 306,556회 방문
 - 진료, 물리치료, 교육·상담, 건강생활 실천 지도 등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섬주민 순회진료 및 상비약품 등 지원
 - 11개시군, 187개도서 연간 6회 23,802명 진료
 - 응급환자 발생 대비 상비약품 150개도서 286상자(10종) 지원
 - 6개시군 12개도서 전기·가전제품 수리, 이·미용 등 봉사활동 전개
- 응급환자 후송체계가 취약한 도서 등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 2012년 전용헬기 1대 운항 응급환자 207회 후송

3. 2013년도 추진 계획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 업무담당자 및 방문전담인력 교육 추진 : 3~9월
- 보건소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체계 구축 및 활용 : 연중
- 관리가구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지역담당간호사 1인당 집중관리군 적정 관리가구수 유지

【무의도서주민 순회진료】

- 병원선 2척 이용 : 전남511호(여수권), 전남512호(목포권)
 - 11개시군, 184개도서, 7,620세대, 15,310명, 연 6회
 - 지원인력 : 32명(내과2, 한의사2, 치과의사2, 간호사5, 의료기사5, 선원진 등16)
- 사업기간 : 2013. 1월~12월(연간 216일 운항, 180일 진료)
- 진료계획 : 15,608명 (의과 8,462, 한방과 3,255, 치과 1,302, 각종검진 2,589)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 국립중앙의료원 항공의료사업단에 위탁 운영하여 대한항공에서 운항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홍보 및 수혜지역 지속 확대

4. 관련 사업 내용

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 사업대상 : 의료취약계층 중 건강위험군 115천가구(50%)
 - 취약계층의 여성,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정, 허약노인 등
- 사업규모 : 51억원, 22개 보건지소 지원
- 지원조건 : 기금 50% 시군비 50%
- 지원내용 : 가정방문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225명), 전담인력 및 담당공무원 교육비 지원(250명)
- 사업내용 : 건강사정 및 진단, 방문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영양상담, 암환자 호스피스 간호 등

○ 예 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538	2,538	2,538		5,076
2013				2,538	2,538	2,538		5,076
(증△감)				-	-	-		-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구분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72				2,538	2,538		5,076
목포시	23				124	124		248
여수시	33				166	166		332
순천시	29				162	162		324
나주시	21				114	114		228
광양시	25				140	140		280
담양군	23				126	126		252
곡성군	21				116	116		232
구례군	11				55	55		110
고흥군	17				95	95		190
보성군	19				107	107		214
화순군	23				129	129		258
장흥군	13				69	69		138
강진군	15				75	75		150
해남군	25				137	137		274
영암군	23				126	126		252
무안군	19				108	108		216
함평군	19				107	107		214
영광군	19				105	105		210
장성군	21				120	120		240
완도군	25				116	116		232
진도군	19				94	94		188
신안군	29				147	147		294

○ 중기재정계획

구분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84명							
'11	472명/472명				2,379/2,378	2,379/2,378		4,758/4,758
'12	472명/472명				2,538/2,538	2,538/2,538		5,076/5,076
'13	480명				2,581	2,581		5,162
'14	480명				2,581	2,581		5,162
'15	480명				2,581	2,581		5,162

나. 섬주민 순회진료 및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선 순회진료】

- 사업대상 : 11개시군, 184개도서, 7,620세대, 15,310명
- 사업기간 : 2013. 1월~12월(연간 216일 운항, 180일 진료)
- 추진방법 : 병원선을 이용한 도서주민 순회진료 연 6회
- 진료반 : 병원선 2척 - 전남511호(여수권), 전남512호(목포권)
 - 지원인력 : 32명(내과2, 한의사2, 치과과사2, 간호사5, 의료기사5, 선원진 등16)
- 진료계획 : 15,608명 (의과 8,462, 한방과 3,255, 치과 1,302, 각종검진 2,589)

【상비의약품 지원】

- 무의도서주민 상비의약품 지원
- 사업 지원대상 : 11개시군, 150개도서
- 추진기간 : 2013. 5월~8월(4개월)
- 사업량 : 286상자
- 지원금액 : 20백만원 (도비 100%)
 - 지원기준 : 도서 인구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마을이장 등 책임하에 관리
- 지원내용 : 해열진통제 등 10개 품목이 들어 있는 의약품상자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363		2,363
2013						2,754		2,754
(증△감)						391		391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계								
도	15천명, 184개도서					2,754		2,754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1천명							
'11	22천명/18천명					2,403/2,403		2,403/2,403
'12	23천명/17천명					2,363/2,363		2,363/2,363
'13	17천명					2,523		2,523
'14	17천명					2,523		2,523
'15	17천명					2,523		2,523

※ 무의도서 순회진료사업 국비지원 3.5억 예상/도서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업량 감소

다.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 운항지역 : 배치의료기관(목포한국병원) 반경 100km이내
- 운항대수 : 1대
- 지원금액 : 30억원(기금 70%, 도비 30%)
- 지원내용 : 취약지역 응급환자 현장 처치 및 신속 후송

○ 예 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100	2,100	900		3,000
2012				2,100	2,100	900		3,000
(증△감)				-	-	-		-

- '12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구분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대				2,100	900		3,000
도	1대				2,100	900		3,000

○ 중기재정계획

구분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대							
'11	1대/1대				1,050/1,050	450/450		1,500/1,500
'12	1대/1대				2,100/2,100	900/900		3,000/3,000
'13	1대				2,100	900		3,000
'14	1대				2,100	900		3,000
'15	1대				2,100	900		3,0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취약가구 적정 등록관리율	44	48	50	51	52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통계자료 활용	보건복지부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율 97%	117%	127%	139%	106%	106%	(실적/목표)×100	내부자료
환자이송 실적	100%	100%	100%	100%	100%	실적/목표량×100	병원 이송실적

<1-3-3-7.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문 연 안
전화번호	061-286-6244	이메일	moonya00@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시행계획 p390)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및 경제활동 역량제고 지원

- 시설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 등 기능제고
- 도시 기업인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경영마인드 제고
 - 창업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기법 전수 및 기술적 컨설팅 제공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여성농업인센터 시설개선사업
 - 대 상 : 무안여성농어업인센터(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905-9번지)
 - 기 간 : 2012. 11 ~ 2012. 12월
 - 사업비 : 112백만원(마사회기금 100, 자담 12)
 - 사업내용 : 증축(26.18㎡) 및 리모델링(사무실, 어린이 놀이방, 주방, 휴게실)
- 여성농업인센터 시설개보수
 - 대 상 : 고흥여성농업인센터(고흥군 두원면 두원로 458)
 - 기 간 : 2012. 3 ~ 2012. 8월
 - 규 모 : 280㎡(보육시설 121.5, 공부방 121, 놀이터)
 - 사업비 : 112백만원(농어촌희망재단 100, 자담 12)
- 여성농업인센터 차량구입비 지원
 - 대 상 : 고흥여성농업인센터(고흥군 두원면 두원로 458)
 - 사업비 : 25백만원(농어촌희망재단) - 추가비용 자담
 - 지원내용 : 센터 운영 차량구입(스타렉스 12인승)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 사업량 : 4개소(나주, 고흥, 무안, 장성)
 - 사업비 : 451백만원(도비 68, 시군비 315, 자담 68)
 - 재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70%, 자담 15%
 - 지원내용 : 센터 종사자 인건비, 차량유지비, 관리비 등
- 이주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 대 상 : 고흥여성농업인센터(고흥군 두원면 두원로 458)
 - 사업비 : 5,830천원(농어촌희망재단) * 830천원×7개월×1명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센터 도우미 지원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대상자 선정(4개소) : 1월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보조금 도비 교부결정(68백만원) : 1월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상황 현지 지도점검(2회) : 5월, 8월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도비 송금(68백만원) : 매분기

4. 관련 사업 내용

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 사업량 : 4개소(나주, 고흥, 무안, 장성)
- 사업비 : 451백만원(도비 68, 시군비 315, 자담 68)
 - 재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70%, 자담 15%
- 지원내용 : 센터 종사자 인건비, 차량유지비, 관리비 등
- 사업내용 : 영유아 보육, 방과 후 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문화 활동, 고충상담, 도농교류 사업 등
- 법적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383	68	451
2013						383	68	451
(증△감)						0	0	0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개소					383	68	451
나주	1개소					96	17	113
고흥	1개소					96	17	113
무안	1개소					95	17	112
징상	1개소					96	17	113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개소							
'12	4개소/4개소					383/383	68/68	451/451
'13	4개소					383	68	451
'14	4개소					383	68	451
'15	4개소					383	68	451
'16	4개소					383	68	451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프로그램 운영	4개분야 20천명	4개분야 22천명	4개분야 26천명	4개분야 28천명	4개분야 30천명	운영 프로그램 수 및 이용인원	내부자료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담당부서	행정과(교육청)	담당자	조정희
전화번호	061-260-0877	이메일	iamjunghee@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5)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강화 (시행계획 p127)

- 농어촌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능력 함양
 -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고령농어업인,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만족도 제고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소외계층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운영내용 : 문해교육, 장애인 시설로 찾아가는 강좌,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는 문화체험 등
 - 운영실적 : 19관, 161강좌(31,404명)

3. 2012년도 추진 계획

-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 성인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국제결혼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신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비활동적인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농어촌 고령자의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한 방안 모색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 사업 규모(사업량) : 평생학습관 19관
 - 지원금액 및 형태 : 평생학습관 자체 예산
 - 지원내용 : 평생학습관 자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54	705	859
2013						150	705	855
(증△감)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관)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	21/21							
'12	21/21					154	705	859
'13	21/21					150	705	855
'14	21/21					150	705	855
'15	21/21					150	705	855

* 각 평생학습관 자체 예산으로 운영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율	80%	84%	84%	100%	100%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관수/ 전체평생학습관 수	분기별 실적 취합

<2-1-6-1. 시·군 교육미래위원회 운영>

담당부서	정책기획관(교육청)	담당자	박운경
전화번호	061-260-0087	이메일	yun7210@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6) 시·군 교육미래위원회 설치·활성화

-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협의를 위해 시·군 단위에 교육미래위원회 구성·운영
 - 지역교육청 관할 구역의 교육발전 방안과 미래의 교육시책 수립 및 그 밖에 교육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미래위원회 연찬회 : 하반기 1회
- 교육미래위원회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 지역교육청별 연 2~5회 실시
- 지역교육청 교육미래위원회 제2기 위원 구성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전남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공감 형성을 위한 연찬회 : 1회
- 교육미래위원회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 수시 (안전 발생 시)

4. 관련 사업 내용

가. (지역교육청) 교육미래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역교육청) 교육미래위원회
 - 사업 규모(사업량) : 22개 지역교육청 (1청당 1개 교육미래위원회 구성·운영)
 - 지원조건 :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에 의거 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 지급
 - 지원내용 : 교육미래위원회 정기회 및 임시회 운영 (수당, 여비, 기타운영비 등)
 - 법적근거 : 전라남도교육미래위원회 규칙 제14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13	113
2013							83	83
(증△감)							△30	△30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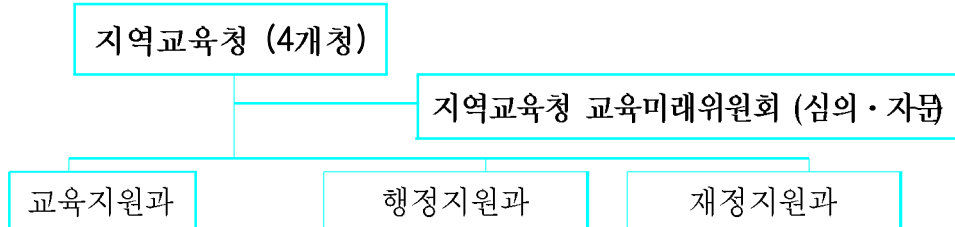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개 지역청						83	83
목포	1청						3	3
여수	1청						4	4
순천	1청						4	4
나주	1청						4	4
광양	1청						4	4
담양	1청						3	3
곡성	1청						4	4
구례	1청						4	4
고흥	1청						6	6
보성	1청						4	4
회순	1청						3	3
장흥	1청						4	4
강진	1청						3	3
해남	1청						4	4
영암	1청						4	4
무안	1청						4	4
함평	1청						4	4
영광	1청						3	3
장성	1청						4	4
완도	1청						3	3
진도	1청						4	4
신안	1청						3	3

○ 중기재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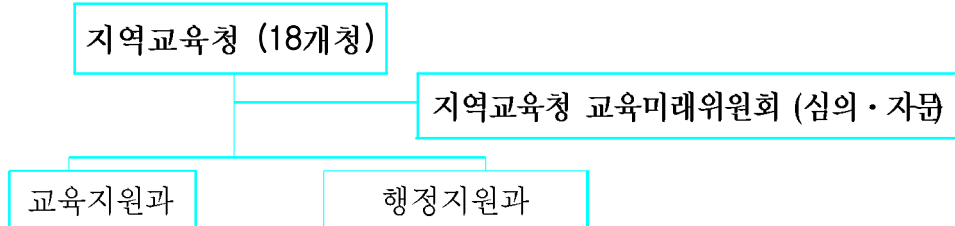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청/22청						3.91	3.91
'12	22청/22청						1.13	1.13
'13	22청/22청						0.83	0.83
'14	22청/22청						0.65	0.65
'15	22청/22청						0.65	0.65
'16	22청/22청						0.65	0.65

나. (지역교육청)교육미래위원회 운영

- 사업 추진주체 : 지역교육청 소속 교육미래위원회
- 사업 추진체계
 - 4개 지역교육청 (목포, 여수, 순천, 광양)



- 18개 지역교육청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회의 개최율	22회	22회	22회	22회	22회	(회의개최수/교육청수)*100	지역교육청별 연간 회의 개최 현황 파악
교육미래위원회 구성율	22청 (100%)	22청 (100%)	22청 (100%)	22청 (100%)	22청 (100%)	(위원회 구성 교육청수/ 지역교육청수)*100	지역교육청별 교육미래위원회 구성 현황 파악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담당부서	총무과(교육청)	담당자	류성춘
전화번호	061-260-0693	이메일	springkuk@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기본계획 p31)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 노후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지원 확대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재원별	'10	'11	'12	계
		노후차량 교체	사업량	27대	48대
	사업비	1,584	3,573	2,996	8,153
통학버스안전도우미 지원	사업량	225명	303명	297명	825명
	사업비	749	1,060	1,216	3,025
사업비 계		2,333	4,633	4,212	11,178

3. 2013년도 추진 계획

- 통학차량 교체 : 17대, 1,349백만원
- 통학버스안전도우미 지원 : 305명, 1,249백만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노후차량 교체 : 최단운행 기준연한(7~8년)을 경과한 차량 중에서 최단
주행거리 12만 km이상 차량 대상

· 통학버스안전도우미 지원 : 통학버스 운영학교 중 희망 초·중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노후차량 교체 : 17대
 - 통학버스안전도우미 지원 : 305명
- 지원내용 :
 - 노후차량 교체 : 운전원 정원이 있는 학교 중 교체 기준에 도달한 대상 차량 전체 지원
 - 통학버스안전도우미 지원 : 학교당 주당 14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별 통학 시간 및 인력 채용여건을 고려하여 신청교 전체 지원(1인당 지원액 연간 4,095천원)
- 법적근거 : 「전라남도립학교 차량관리 운영규정」 및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및 운전자 의무)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4,212		4,212
2013						2,598		2,598
(증△감)						△1,614		△1,614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노후차량 교체	100	100	100	100	100	교체차량/교체대상차량 *100	예산편성자료
통학버스안전 도우미지원	100	100	100	100	100	지원인원/지원요구인원 *100	예산편성자료

12. 경상북도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담당부서	경상북도청 보건정책과 여성정책관	담당자	박승권, 박영순 박성훈
전화번호	053-950-2416 053-950-2445 053-950-2556	이메일	psk999@korea.kr pys1222@korea.kr psh1029@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기본계획 p18)

□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오벽지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검진으로 찾아가서 보살피는 고품격 감동 의료서비스를 통한 도민 섬김정신 실현
-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 및 적극적 건강생활 실천 유도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가.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 검진인원 : 3,506명
- 검진항목 : 7,798건
 - 기초검진 3,553, 엑스선 1,672, 초음파 147, 심전도 325, 안저검사 301, 골밀도 1,107, 한방 693

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 등록관리가구수 : 110,526가구
- 방문건강서비스 제공 : 602,636회

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검진인원 : 2,154명(연인원)
- 산전검사 실적 : 4,341건(초음파 2,665, 임신성당뇨 349, 태아기형 등 1,327)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사업추진 지침 통보 : '13. 1월 중
- 예산 교부 : '13. 2월
- 대상자 등록 및 서비스 제공 : '13. 1월 ~ 1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 사업 내용
 - 사업대상 :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족 등
 - 주요내용 : 검진차량을 이용한 이동 무료검진
 - 주요장비 : 검진차량 3, 승합차 3, 의료장비 15종, 비품 등 6종
 - 운영주관 : 3개 지방의료원(포항, 김천, 안동)
 - 운영현황 : 의료원별 주2회(총 6회) 순회검진
 - 검진항목 : 초음파, X-선촬영, 골밀도·심전도·이화학적 검사 등
 - 검진절차 : 검진대상 시군 통보 → 검진대상자 선정 → 이동검진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400		2,400
2013						360		360
(증△감)						△2,040		△2,04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 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					3,840		3,840
'12	3					2,400		2,400
'13	3					360		360
'14	3					360		360
'15	3					360		360
'16	3					360		360

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여성,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정, 허약노인 등
- 사업 규모(사업량) : 5,170백만원(23개 시군)
- 지원금액 및 형태 : 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지방비(도비, 시군비)
- 지원조건 : 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 지원내용 : 보건소 방문전담인력(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건강문제 기초조사 : 가구조사, 건강면접조사 등
 - 결과에 따른 생애주기별, 질환별 건강관리서비스
 - ※ 고혈압, 당뇨, 암, 영양상담, 재활서비스, 방문간호,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585	2,585	2,585		5,170
2013				2,585	2,585	2,585		5,170
(증△감)				-	-	-		-

- '12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금등	도비	시군비		
합계	25			2,585	775	1,810		5,170
포항	2			315	95	220		630
경주	1			169	51	117		337
김천	1			124	37	87		248
안동	1			113	34	79		226
구미	2			248	74	174		496
영주	1			94	28	66		188
영천	1			115	35	81		231
상주	1			101	30	71		202
문경	1			124	37	87		248
경산	1			169	51	118		338

군위	1			68	20	47		135
의성	1			101	30	71		202
청송	1			54	16	38		108
영양	1			68	20	47		135
영덕	1			90	27	63		180
청도	1			79	24	56		159
고령	1			68	20	47		135
성주	1			79	24	56		159
칠곡	1			147	44	103		294
예천	1			82	25	58		165
봉화	1			75	22	52		149
울진	1			79	24	56		159
울릉	1			23	7	16		46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시군)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115				12,925	12,925		25,850
'12	23/23				2,585	2,585		5,170
'13	0/23				2,585	2,585		5,170
'14	0/23				2,585	2,585		5,170
'15	0/23				2,585	2,585		5,170
'16	0/23				2,585	2,585		5,170

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도내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8개 군의 임산부
 - 대상지역 : 군위,의성,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군
- 사업규모 : 1,675명(8개 군지역 출생아 수)
- 지원형태 : 도비 100%(안동의료원 위탁운영)
 - 찾아가는 산부인과 장비구입 및 유지보수, 임산부 검진비, 운영인력 인건비 등
- 지원내용
 - 임신부 산전검진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매월 1회 이동 검진 실시
 - 검진시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전문 병원과 연계 치료실시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400		400
2013						430		430
(증△감)						30		3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 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0					2,150		2,150
'12	8					430		430
'13	8					430		430
'14	8					430		430
'15	8					430		430
'16	8					430		43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찾아가는 행복 병원 운영	-	3,506	3,700	3,900	4,000	검진인원	실적보고 자료
방문서비스제공	590,000	600,000	610,000	615,000	620,000	방문서비스 횟수	실적보고 자료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3,806	4,341	4,500	4,500	4,500	검사실적	실적보고 자료

<1-3-3-7.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경상북도청 농업정책과	담당자	최혜은
전화번호	053-950-3708	이메일	hekitten@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p21)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및 경제활동 역량제고 지원

- 시설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 등 기능제고
- 도시 기업인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경영마인드 제고
- 창업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기법 전수 및 기술적 컨설팅 제공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가.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 해당없음
- 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계속)
 - 사업추진계획 통보 및 선정 : 2011. 12. 13.
 - 사업지원대상자 선정 : 2011. 12. 28.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2. 2. 13
 - 여성농업인센터 현황 조사 : 2012. 7월, 10월(2회)
 - 센터이용자 만족도 조사 : 2012. 12월

3. 2013년도 추진 계획

- 가.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 해당없음
- 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 사업추진계획 통보 및 선정 : 2012. 12. 21
 - 사업지원대상자 선정 : 2013. 1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3. 1월
 - 업무추진관련 간담회 개최 : 2013. 4월
 - 여성농업인센터 현황 조사 : 2013. 7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 해당사항 없음

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 사업규모 : 2개소(안동,영양)
 - 지원금액 및 형태 : 개소당 113백만원 지원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70%, 자부담 15%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92	34	226
2013						192	34	226
(증△감)						-	-	-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					192	34	226
안동	1					96	17	113
영양	1					96	17	113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0					192/960	34/170	226/1,130
'12	2/2					192/192	34/34	226/226
'13	0/2					0/192	0/34	0/226
'14	0/2					0/192	0/34	0/226
'15	0/2					0/192	0/34	0/226
'16	0/2					0/192	0/34	0/226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이용조사만족도 (%)	70	75	80	85	90	설문조사	우편, 메일
여성농업인센터수 (개소수)	2	2	2	2	3	센터증가수	내부자료

<2-1-3-1. 기숙형고교 지정·육성(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	담당자	장세은
전화번호	053-603-3703	이메일	jse382@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기숙형 학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기본계획 p26)

□ 150개 기숙형 고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

- 교육낙후지역에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등 지원
- 기숙사내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 * 기숙형 고교현황(150개) : '08년 82개교(공립), '09년 68개교(공·사립)
 - * 경북교육청: '08년 13개교(공립), '09년 12개교(공립9교, 사립3교)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기숙형고 프로그램비 지원
 - 총 25개교, 7억4,000만원 지원(정원기준 차등 지원: 교당2,600만원~3,200만원)
- 기숙형고 연구학교 운영비 지원
 - 연구학교 지정 3교(점촌고, 영주여고, 영천여고), 2,700만원 지원(교당 9백만원)
- 기숙사운영비 지원
 - 기숙사 운영비는 자치단체 대응투자가 있는 학교에 한하여 학생 1인당 월5만원 지원함
 - 총 지원액: **10억3,039만원**
 - 2012년 자치단체 총 대응투자액: 13개 자치단체, 12억270만원 지원
- 저소득층자녀 기숙사비 지원
 - 자치단체 대응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 1인당 월5만원 지원
 -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총 지원액: **1억5,222만원**(총341명, 월5만원)
- 기숙형고는 교과부장관이 지정하므로 경북 25개교 이외에 향후 추가 선정은 없음

3. 2013년도 추진 계획

- 기숙형고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숙사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등)를 지원함
-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기숙사비 안정적 지원과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에 대해 학교장의 자율성을 부여함
- 공동체 의식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 제고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확대로 기숙형고교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예정
 - 기숙사대수선비, 비품교체비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예정

4. 관련 사업 내용

가.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 사업 내용(※ 기숙형고 추가선정 없음- 2008~2009년 지정 관련임)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및 도농복합도시에 소재하는 일반계 공·사립고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기숙형고교 25개교(2008년 13교, 2009년 12교 지정)
 - 2009~2012년 지원금액 및 형태
 - 시설비: 723억7,082만원
 - 프로그램지원비: 16억2,100만원
 - 기숙형고 기숙사운영비(비품구입 포함) 및 저소득층자녀기숙사비:71억6,500만원
 - 기숙형고 지정조건
 - 기숙형고교로 지속가능한 적정 규모의 학교(학생 수의 적정성, 중장기 학생변동 추이 등)
 - 지역 내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숙사 시설이 필요한 지, 충분한 기숙사 시설 보유 여부
 - 사립의 경우 지자체 및 법인의 시설비 대응투자 이행조건이 있을 것
 - 지원내용 : 기숙형고 기숙사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767					1,182		1,949
2013						1,178		1,178
(증△감)	-767					-4		-771

* 2013년 본예산 편성액이며, 2013년 1회추경 후 예산이 달라질 수 있음

* 기속형고 육성 관련-보통교부금(지방비) 109억5천만원 중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됨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					1177.7		1177.7
경주	1					9.5		9.5
김천	2					20.5		20.5
구미	2					149.6		149.6
영주	2					22.5		22.5
영천	2					28		28
문경	2					71.6		71.6
상주	1					84.2		84.2
군위	1					51.9		51.9
의성	2					131.8		131.8
청송	1					24.6		24.6
영양	1					31.8		31.8
영덕	1					42.1		42.1
청도	1					28.4		28.4
성주	1					91.8		91.8
칠곡	1					84.6		84.6
예천	1					76.9		76.9
봉화	1					71.6		71.6
울진	2					156.3		156.3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25	767				35,210		35,977
'12	25/25	767				1,182		1,949
'13	25/25					1,178		1,178
'14	25/25					10,950		10,950
'15	25/25					10,950		10,950
'16	25/25					10,950		10,950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나. 기숙형고 기숙사운영비 및 저소득층자녀 기숙사비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기숙형고 25개교 학교장
- 지원기준: 자치단체 대응투자여부와 관계없이 교당 기본운영비 지원
- '13년 지원액: 총11억7,837만원

다. 2013년 1회 추경예산 반영 계획

- 기숙형고 시설대수선비, 비품교체비, 프로그램비 지원 예정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기숙형고교 기숙사학생총원율			70%	71%	72%	금년도기숙사학생총원율/전년도기숙사학생총원율	기숙형고 통계자료 활용 (매년4.1.기준)

* 2012년도 경북교육청 KPI성과지표 인용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경상북도청 인재양성과	담당자	정수미
전화번호	053-950-2107	이메일	jsm04@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5)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강화 (기본계획 p27)

-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운영내실화
 -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이용 접근성 제고
 - * 평생학습도시 지정 76개 지자체 중 군지역은 13개
 - * 진안군은 「농촌 창업을 위한 평생학습 경제공동체 리더 양성」 프로그램 실시 중
- 농어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능력 함양
 -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고령농어업인,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만족도 제고
 - *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 8.8억('09)
-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휴일·방과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 성인문해교육(기초한글교육) 지원 : 16개소 160백만원
- 찾아가는 도민참여교육 실시
 - 운영실적 : 27회 6,390명
 - 소요예산 : 115백만원

3. 2013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 성인문해교육(기초한글교육) 지원 : 16개소 160백만원
- 찾아가는 도민참여교육 실시
 - 운영실적 : 25회 5,400명
 - 소요예산 : 102백만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성인문해교육(기초한글교육)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문자해득교육 희망자(비문해자)
- 사업 규모(사업량) : 16개 사업
- 지원금액 및 형태 : 160백만원(도비 80, 시군비 80)
- 지원내용 : 문해교육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시군당 최고 20백만원)
-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제16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60		160
2013						160		160
(증△감)						-		-

- * 농특세 전입금 사업은 농특세로 기재하고, 현 회계는 별도 기재
- * 마사회 적립금 등 기금 성격이 높은 재원은 기금으로 기재하고, 자원명을 별도기재
- * 2012년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계획금액을 기재하고 계획임을 표시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6					160		160
경북	16					160		160

나. 도민참여교육

○ 사업 내용

- 교육계획 : 23개 시군, 25회, 5,400명
- 운영방법 : 유명강사를 섭외하여, 읍면 지역을 찾아가서 2~3시간 정도 교육

- 사업비 : 102백만원
-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제16조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15		115
2013						102		102
(증△감)						△13		△13

- * 농특세 전입금 사업은 농특세로 기재하고, 현 회계는 별도 기재
- * 마사회 적립금 등 기금 성격이 높은 재원은 기금으로 기재하고, 자원명을 별도기재
- * 2012년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계획금액을 기재하고 계획임을 표시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					102		102
경북	25					102		102

다. 평생학습마을 지정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13개 읍면동(신규 5, 기지정 8)
 - ※ 마을당 3년간 매년 10백만원(도비) 지원
- 사업비 : 260백만원(도비 130, 시군비 130)
- 사업내용
 - 전문강사 초빙강연(평생학습 이해, 노래교실, 건강강좌 등)
 - 마을공동체 형성사업(노인, 청소년,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 지역현안 해결사업(환경오염, 마을역사, 사회통합 방안 등)
-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제16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60		260
2013						260		260
(증△감)						-		-

- * 농특세 전입금 사업은 농특세로 기재하고, 현 회계는 별도 기재
- * 마사회 적립금 등 기금 성격이 높은 재원은 기금으로 기재하고, 자원명을 별도기재
- * 2012년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계획금액을 기재하고 계획임을 표시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260		260
경북	13					260		260

<2-1-6-1. 시군교육발전협의회 설치(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경북교육청 체육건강과	담당자	박건희
전화번호	053-603-3552	이메일	parkghee@gyo6.net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

2. 사업내용

가. 경상북도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운영

- 최초구성일 : 2009. 9. 1
- 위원구성인원 : 15명
- 위원임기(현위원구성일) : 2년(2011. 9. 1~)
- 기능
 - 농산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농산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농산어촌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경상북도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3. 연차별 추진계획

- 협의사항 발생시 협의회 개최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	담당자	이경동
전화번호	053-603-3704	이메일	dlrudehd2@gyo6.net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기본계획 p31)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농어촌 지역 유아 및 학생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 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통폐합학교)에 통학차량 운영비, 임차비, 노후차량 교체비 및 안전도우미 인건비 지원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농어촌 지역 유아 및 학생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총 7,413,633천원)

-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8개원, 246개교) : 2,432,800천원
-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16개원, 9개교) : 877,772천원
- 노후차량 교체비 지원(3개교, 3대) : 215,079천원
-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인건비 지원(20개원, 229개교) : 3,887,982천원

3. 2013년도 추진 계획

농어촌 지역 유아 및 학생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총 16,978,919천원)

-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3개원, 248개교) : 2,425,900천원
-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0개원, 25개교) : 1,082,153천원
- 노후차량 교체비 지원(4개교, 4대) : 230,180천원
-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인건비 지원(4개원, 232개교) : 3,756,186천원
- 공립유치원 차량운영비 지원(465개원) : 9,484,500천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지역 유아 및 학생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총 724개교(유465개원, 초239개교, 중14개교, 고6개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16,978,919천원
- 지원조건 : 농어촌 지역 공립유치원(전체) 및 초·중·고(통폐합학교)
- 지원내용(2013년)
 - 초·중·고(통폐합학교) : 통학차량 운영비(2,425,900천원), 임차비(1,082,153천원), 노후차량 교체비(230,180천원) 및 안전도우미 인건비 지원(3,756,186천원)
 - 공립유치원(전체지원) : 통학차량 운영비(9,484,500천원)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유아교육과 주관으로 전국 공립유치원 시·도 담당자 회의를 거쳐 공립유치원 원아의 안전한 등·하원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연중 사용할 차량 운영비를 2013년 3월부터 일괄 지원
 - 3학급이상(66개원) 5천만원 지원(총 3,300,000천원) 및 3학급 미만(399개원) 15백만원 지원(6,184,500천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2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7,414		7,414
2013						16,979		16,979
(증△감)						9,565		9,565

* 2013년 본예산 편성액이며, 2013.1회추경 후 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24					16,979		16,979
포항	75					1,689		1,689
경주	60					1,345		1,345
김천	40					932		932
안동	53					1,445		1,445
구미	44					1,138		1,138
영주	30					746		746
영천	37					796		796
상주	49					1,055		1,055
문경	27					565		565
경산	31					705		705
군위	17					403		403
의성	34					955		955
청송	17					638		638
영양	17					410		410
영덕	23					489		489
청도	25					542		542
고령	14					308		308
성주	21					419		419
칠곡	26					510		510
예천	22					568		568
봉화	29					549		549
울진	26					668		668
울릉	7					106		106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24/724					75,330		75,330
'12	272/272					7,414		7,414
'13	724/724					16,979		16,979
'14	724/724					16,979		16,979
'15	724/724					16,979		16,979
'16	724/724					16,979		16,979

* '12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3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을	100	100	100	100	100	지원학교/신청학교	예산서

13. 경상남도

<1-2-2-4.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강화(경상남도)>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자	노혜영
전화번호	055-211-6833	이메일	rhy1222@korea.kr

1. 추진배경

- 출생아 감소에 따른 군 지역의 기존 산부인과 폐업 및 개업 전무
 - 10개군 15개소 ⇒ 5개군 8개소 ※ 분만가능 2개소(남해, 거창)
※ 5개군 8개소 : 함안1, 창녕1, 남해2, 거창3, 합천1
- 임신부관리를 위한 지역 출산 인프라 부족으로 임신부 건강위협 요인 발생
⇒ 대다수 원정출산 및 외래진료 의존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07. 11~12월, 『찾아가는 산부인과』 계획수립, 예산확보(987백만원)
- '08. 1~3월, 이동 진료용 버스 구입, 전문인력 6명 확보, 장비 8종 구입
- '08. 3월, 협약서 체결 (도, 인구보건복지협회 도지회)
- '08. 3. 27, 『찾아가는 산부인과』 발대식 개최
- '08. 3. 28 ~ 10개 군지역 순회진료 실시(월 1~2회)
 - ※ 6개군 + 함안, 창녕, 남해, 거창
- '09. 3. ~ 현재 : 6개 군지역으로 조정 순회진료 (월 2~3회)
- '12. 5. ~ 현재 : 5개 군지역으로 조정 순회진료 (월 2~3회)
가임여성 건강검진 추가 확대
- 진료실적
 - 2008 : 146회 3,193명 진료, 1일 평균 22명(다문화가정 624 전체 20%)
 - 2009 : 157회 3,126명 진료, 1일 평균 20명(다문화가정 753, 전체 24%)
 - 2010 : 146회 3,019명 진료, 1일 평균 21명(다문화가정 854, 전체 28%)
 - 2011 : 148회 2,583명 진료, 1일 평균 18명(다문화가정 639, 전체 25%)
 - 2012 : 150회 2,491명 진료, 1일 평균 17명(다문화가정 491, 전체 20%)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사업지역 : 5개군(의령, 고성, 하동, 산청, 함양)
- 대상인원 : 1,270명 정도(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의 임신부)
- 진료횟수 : 150회(지역별 30회). 지역별 월 2~3회정도

4. 관련 사업 내용

- 관련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모자보건법 제3조
- 사업대상 : 5개군(다문화가족 포함)
- 대상인원 : 2,400명 정도(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의 임신부)
- 주요 사업내용
 - 산전 진찰 횟수 : 1인 총 13회차
 - 주요 검사내용 : 산전기본검사(5종), 초음파 검사, 태아기형아검사, 가임여성 임신전 건강검진 등
- 추진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경상남도지회
 - 이동 산전 진찰반 구성 운영 : 5명(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400		400
2013						360		360
(증△감)						△40		△4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1,270	실적/계획				358		358
'11	1,270	실적/계획				400		400
'12	1,270	실적/계획				400		400
'13	2,400	실적/계획				360		360
'14	2,400	실적/계획				360		360

5. 성과목표

(단위 : 명)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진료인원 (연인원)	3,019	2,583	2,500	2,400	2,300	(진료인원수/계획인원수) *100	별도취합/내부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경상남도)>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자	홍민희
전화번호	211-4992	이메일	hmh63@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기본계획 p18)

□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취약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병원선 운영으로 일반진료 및 노약자 방문진료 등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관리 수준 향상
- 만성 질환자 매년 정기적 관찰관리를 통한 주민 편의제공 등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도모

2. 2012년 추진실적

- 진료기간 : 1~12월 실시(진료일수 165일), 지역별 월 1회 정기적 순회 진료
- 진료대상 : 의료취약 도서지역 7개시군, 50개도서(주민 수 2,996명)
- 진료부분 : 내과, 만성병 관리(고혈압, 당뇨병), 한방진료, 노약자 등 방문진료, 피부질환 구강관리 등
- 진료실적 : 126천명(연인원 기준)
 - 고혈압 81,775명, 당뇨병 7,885명, 한방 1,265명, 방문진료 5,070명, 치과 260명
내과 19,008명, 피부과 774명 기타 10,192명
 - 고혈압 및 당뇨질환자에 대한 매월 30일분 약 처방 등으로 연간 정기적 지속 관찰 관리
 - 연령별 진료현황 : 40세미만 235명(1.9%), 40세~64세 2,439명(20.0),
65세이상 9,543명(78.1%)

3. 2013년 추진 계획

- 진료기간 : 2013. 1월~12월, 도서별 매월 1회 정기 순회 진료
- 진료대상 : 7개시군, 41개도서(주민수 2,849명), 계획 연120천명
- 진료분야 : 일반진료 및 한방, 치과, 방문진료, 만성질환자 관리 등
- 소요예산 : 924백만원(의약품 구입비 70백만원, 병원선 운영비 854백만원)

4. 관련 사업 내용

□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 사업 내용

- 진료대상 : 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가 없는 의료취약 도서 41개도서
(창원시 5, 통영시 30, 사천시 3, 거제시 5, 고성군 2, 남해군 3, 하동군 1)
- 진료인원 계획 : 연인원 120천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924백만원(도비 100%)
- 지원내용 : 일반진료, 한방, 방문진료, 치과, 만성질환자 지속관리 및
월 1회 정기 순회진료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전액 도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	-	-	-	-	664	-	664
2013	-	-	-	-	-	924	-	924
(증△감)	-	-	-	-	-	260	-	26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개소,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전액도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계 (도자체 시행)	41개소, (2,849명)	-	-	-	-	924	-	924

○ 중기 재정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288	-	-	-	-	3,570	-	3,570
'11	2,996	-	-	-	-	654	-	654
'12	2,892	-	-	-	-	664	-	664
'13	2,840	-	-	-	-	924	-	924
'14	2,780	-	-	-	-	664	-	664
'15	2,780	-	-	-	-	664	-	664

5. 성과목표

(단위 : 천명)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진료실적(연인원)	125	126	120	105	99	(진료인원수/ 계획인원수)*100	자체 진료실적

<1-3-3-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경상남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이경선
전화번호	055-211-3626	이메일	ac984232@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p21)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및 경제활동 역량제고 지원

- 시설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 등 기능제고
- 도시 기업인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경영마인드 제고
- 창업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기법 전수 및 기술적 컨설팅 제공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 7개소 870백만원(도비 130.5, 시군비 652.5, 자부담 87)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유공자 도지사 표창 : 2명(12. 2월)
- 여성농업인센터 상반기 운영상황 점검 : '12. 7월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 7개소 870백만원(도비 130.5, 시군비 652.5, 자부담 87)
- 사업계획 제출 및 대상자 확정 : '13. 1월
- 상반기 운영상황 점검 실시 : '13. 7월

4. 관련 사업 내용

- 사업개요
- 사업량 : 7개소(창원, 진주, 사천, 함안, 고성, 거창, 합천)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부정기 사업비 등)
- 지원조건 : 지방비 90%, 자부담 10%
- 법적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및 제1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783	87	870
2013						783	87	870
(증△감)	-				-	-	-	-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					3,915	435	4,350
'12	7개소/7개소					783/783	87/87	870/870
'13	7개소					783	87	870
'14	7개소					783	87	870
'15	7개소					783	87	870
'16	7개소					783	87	87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지원 센터수	6	7	7	7	7	운영비 지원 센터 수	내부자료

<2-1-3-1. 기숙형고교 지정·육성(경상남도교육청)>

담당부서	교육과정과	담당자	박홍범
전화번호	268-1123	이메일	hong9866@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기숙형 학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기본계획 p26)

□ 150개 기숙형 고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등 지원
- 기숙사내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 기숙형 고교현황(20개) : '10년 운영 10개교, '11년 운영 10개교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산어촌 기숙형고 지정 : 군 단위 거점학교 11개교, 도농복합지역 9개교
- 기숙형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 '09년 지원 실적 : 기숙사 건립비 및 비품비 360억원(국고 250억, 자체 110억)
 - '10년 지원 실적 : 10개교 기숙사 운영비 1,186,000천원(공공요금, 사감보조 인력지원비, 프로그램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 '10년 지원 실적 : 기숙사 건립비 및 비품비 387억원(국고 193억, 자체 194억)
 - '11년 지원 : 기숙형고 20교 24억과 농어촌 기숙사 운영학교 22교 6억6천만원
 - '12년 지원 : 기숙형고 20교 27억과 농어촌 기숙사 운영학교 22교 7억3천만원
- 기숙형고 운영 내실화를 위한 학교 지원 강화
 - 기숙형고 워크숍(2회) : 6월(1박2일), 8월
 - 기숙형고 운영성과 평가 및 컨설팅 : 10월
 - 2012. 교과부 기숙형고 평가 우수학교 선정 : 총 12개교(전국 최다)
 - ※ 포상금 총 2억 6천 5백만원 수령

3. 2013년도 추진 계획

- 기숙형고 운영 지원 : 1,991,305천원
 - 프로그램 운영, 공공요금, 사감보조인력, 사회적배려대상자 자녀 급식비 등 지원
 - 기숙형고교 운영 평가 지원단 운영 : 연 2회
 - 기숙형고 업무담당자 워크숍 : 연 1회
- 농어촌 기숙사운영학교 지원 : 790,400천원

4. 관련 사업 내용

- 기숙형고 20교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기숙형고교
 - 사업 규모(사업량) : 총 20개교(공립13, 사립7)
 - 지원금액 : 1,991,305천원
 - 지원조건 : 운영 일수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
 - 지원내용 : 프로그램 운영, 사감보조인력 인건비, 사회적배려대상자 자녀 급식비, 공공요금(일부 보조)
- 농어촌 기숙사운영 학교 22교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기숙사운영 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총 22개교(공립5, 사립17)
 - 지원금액 : 790,400천원
 - 지원조건 : 운영 일수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
 - 지원내용 : 사회적배려대상자 자녀 급식비, 공공요금(일부 보조)
- 예산 2,781,705천원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688		688	2,731		3,419
2013						2,781		2,781
(증△감)						5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교)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동일학교)					14,122		14,122
'11	20					2,691/2,691		2,691/2,691
'12	20					2,731		2,731
'13	20					2,800		2,800
'14	20					2,900		2,900
'15	20					3,000		3,0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기숙형고설치 학교수	10	20	20	20	20	설치학교 수	내부자료
만족도(%)	75	80	85	90	90	(만족학생/입사생*100%	설문조사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경상남도교육청)>

담당부서	과학직업과 (평생교육팀) 교육과정과 (초등장학팀)	담당자	강선미 · 정은영 최말숙
전화번호	268-1235	이메일	ksm9850@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5)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강화 (기본계획 p27)</p> <p>□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운영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이용 접근성 제고(* 평생학습도시 지정 90개 지자체 중 군지역 18개) * 농어촌 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 7.0억('13) <p>□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능력 함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고령농어업인,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만족도 제고 ○ 농어촌 지역에 계층별·특화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 경남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을 활용한 계층·단계별 프로그램운영 <p>□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휴일·방과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개방형 학교마을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화 사업지원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2012.평생교육추진계획 수립 : 과학직업교육과-1440(2012.1.20)
- 평생학습관을 활용한 프로그램운영 : 354개, 9,809명 참여, 176,600천원
- 소외계층관련 프로그램공모 : 45개 프로그램 150,000천원
- 경남평생교육정보센터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 66,500천원
 - 소외계층지원 35개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21개 운영
-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공공도서관 2개관) : 35,580천원
-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활용한 소외계층 교육봉사 : 22명/22개 기관(102,300천원)
- '12년도 평생학습도시 미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 추진

- 2012년도 주민개방형 학교마을도서관 지원
 - 지원기간 : 2012. 3. - 2012. 12.
 - 지원금액 : 50,000천원(단위학교당 5,000천원)
 - 선정학교 : 초8개교, 중2개교
 - 진행상황 : 완료
- 2012년도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화 지원
 - 지원기간 : 2012. 4. - 2012. 12.
 - 지원금액 : 60,000천원(단위학교당 6,000천원)
 - 선정학교 : 초8개교, 중2개교
 - 진행상황 : 완료

3. 2013년도 추진 계획

- 2013.평생교육 추진계획 수립 : 2013. 1월중
- 21개 평생학습관을 활용한 소외계층 프로그램운영 : 100,000천원
- 소외계층관련 프로그램공모 : 30개 프로그램 150,000천원
- 경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 28,800천원
 - 다문화프로그램 6개, 소외계층지원 16개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21개
-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22명/22개 프로그램(108,360천원)
-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시범 운영 : 관련예산확보(56,980천원), 시범운영계획 수립(2013.2월), 시범운영기관 선정(공공도서관 2개관, 초등학교 1개교)
- '13년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공고 및 선정 - 교과부 추진
 - 조성사업 공고 및 선정 : '13. 상반기
 - 국고지원 : '13. 상반기
 - ※ 교과부 주관사업으로 사업시기 및 국고 지원금 미확정
- '13년도 주민개방형 학교마을도서관 지원
 - 지원기간 : 2013. 3. - 2013. 12.
 - 지원금액 : 50,000천원(단위학교당 5,000천원)
 - 선정학교 : 초8개교, 중2개교
- '13년도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화 사업 지원
 - 추진기간 : 2013. 4. - 2013. 12.

- 지원금액 : 60,000천원(단위학교당 6,000천원)
- 선정학교 : 초8개교, 중2개교

4. 관련 사업 내용

가. 소외계층 프로그램 공모사업 실시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경남도민
- 사업 규모(사업량) : 소외계층프로그램 73개, 다문화프로그램 6개, 특화프로그램 21개, 지역아동센터 방학프로그램 16개, 성인문해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금액 및 형태: 공모형태로 실시 / 지방비, 국비·특교예산 594,140천원
- 지원조건: 공모계획에 의거 신청서 제출기관을 대상으로 심사 후 선정
- 지원내용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강사료, 일반운영비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교·특)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2012			40,000		40,000	530,980	570,980
2013			40,000		40,000	554,140	594,140
(증△감)			0		0	23,160	23,16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 미정(공모사업임)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교·특)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0,000		554,140		594,140
경남				40,000		554,140		594,140
..				아래빈칸				
..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프로그램수)	국비(백만원)				지방비 (교·특)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9,000		2,814,520		2,893,520
'11	104			39,000		563,540		602,540
'12	114			40,000		530,980		570,980
'13	117			40,000		554,140		594,140
'14	120			예정불가		570,000		570,000
'15	125			예정불가		600,000		600,000

나.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지원대상 : 교과부 선정
- 사업규모(사업량) : 미정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보조(특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조성사업을 공고, 선정하여 지원하되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 중단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 '12년 미 추진, '13년도 계획 미확정

구 분	국비(천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0
2013								0
(증△감)								0

- '12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미정

	사업규모 (기관)	국비(천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							0
경남	8							0
..								
..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기관)	국비(천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0
'11	8							0
'12	8							0
'13	미정							
'14								
'15								

다. 주민개방형 학교마을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지원대상 : 자체 선정
- 사업규모(사업량) : 20개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방비(교·특)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지원내용 : 조성사업을 공고, 선정하여 지원하되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 중단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 '12년 추진, '13년도 계획

구 분	국비(천원)					지방비 (교·특)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10,000		110,000
2013						110,000		110,000
(증△감)						0		0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사업규모 (개교)	국비(천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					110,000		110,000
경남	20					110,000		110,0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천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00,000		600,000
'12	20					110,000		110,000
'13	20					110,000		110,000
'14	22					120,000		120,000
'15	25					130,000		130,000
'16	25					130,000		130,0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프로그램 운영실적	65	66	67	68	69	수료인원수 / 등록인원 수*100	별도취합/내부
지원기관수	1.3	1.7	1.9	2.1	2.4	지원기관(학교) 수 / 대상 기관수*100	별도취합/내부

<2-1-6-1.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경상남도교육청)>

담당부서	예산복지과	담당자	김명선(주무관)
전화번호	055-268-1404	이메일	ivory1009@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6) 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활성화 (기본계획 p27)

□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협의를 위해 시·군 단위에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지자체, 교육청, 주민, 전문가 등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지역개발계획과 교육환경 개선과의 연계방안, 교육투자 활성화 방안 등 논의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경상남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제정(2005.8.17.)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
-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개최
 - 2006년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 선정 심사(2006.3.16.)
 - 2007년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 선정 (2007.3.9.)
 - 2007년 농산어촌 학교군 구성·운영 학교 선정(2007.4.2.)
 - 2007년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 함안지역 추천 순위 결정(2007.4.17.)
 - 2008년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군 심사 선정(2008.2.25.)
 - 2009년 농어촌 소규모 학교군 운영학교 심사 및 선정(2009.4.24)
 - 2009년 농어촌 전원학교 추천 심의(2009.7.8.)
 - 2012년 경상남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위원 재구성(2012.3.1.)
 - 2012년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개최(2012.12.6.)

3. 2013년도 추진 계획

- 경상남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개최: 연 1회 이상

4. 관련 사업 내용

□ 교육복지협의회 운영

○ 사업 내용

- 근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9조
- 위원 구성(11명)
 - 위 원 장 : 부교육감
 - 부위원장 : 예산복지과장
 - 위 원 : 해당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복지 담당공무원 2명, 사업학교의 장 3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복지 담당공무원 1명, 사업 경력 3년 이상인 교원 2명, 교육복지 전공 교수 1명, 사회복지 기관장 1명, 프로젝트 조정자 1명으로 구성
- 협의내용
 - 사업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사업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
 - 사업관계자 연수 등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사업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운영현황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및 희망키움사업 대상 재지정 및 확대 방안 논의(2011.8.31.)
 - 2013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방안 논의(2012.10.29.)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2		2
2013						1		1
(증△감)						△1		△1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					6		6
'12	1					2		2
'13	1					1		1
'14	1					1		1
'15	1					1		1
'16	1					1		1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개최횟수(회)	0	0	1	1	1	개최 횟수	관련공문 및 내부자료
교육복지협의회 개최횟수(회)	0	1	1	1	1	개최 횟수	관련공문 및 내부자료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학교지원과	담당자	정혜선
전화번호	268-1436	이메일	hyesunj@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기본계획 p31)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 노후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현실화 추진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사업규모
 - 유치원(16원 29대), 초등학교(210교 340대), 중학교(22교 26대)
- 통학지원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유	초	중	합계
차량운영비	92,709	1,747,178	183,112	2,022,999
차량구입비	165,404	1,308,193	91,084	1,564,681
용역비	598,500	3,593,500	178,000	4,370,000
통학편의 확대운영		379,981	32,455	412,436
어린이통학버스 보호탑승자 인건비	83,323		1,684,496	1,767,819
합계	939,936	7,028,852	2,169,147	10,137,935

3. 2013년도 추진 계획

- 통학버스 통합관리 운영 확대
 - 농산어촌 지역의 열악한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차량 정원의 범위 내에서 타고 학생들을 위한 통학편의 확대운영 확대 추진
 - 통학버스 통합관리에 따른 통학버스 운영비의 30% 추가 지원

-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보호탑승자 인건비 지원
 - 학교별 1일 5시간 범위 내의 인건비 지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통학버스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지학구 학생 및 농산어촌지역 학생
 - 사업 규모(사업량) : 교육지원청(2청 2대), 유치원(19원 42대)
초등학교(208교 328대), 중학교(22교 26대)
 - 지원금액 및 형태

(단위:천원)

구분	유	초	중	합계
차량운영비	140,312	1,720,380	183,112	2,043,804
차량구입비	79,432	2,204,475	90,258	2,374,165
용역비	1,079,500	3,165,340	178,000	4,422,840
통학편의 확대운영		369,231	32,455	401,686
어린이통학버스 보호탑승자 인건비	120,708	1,725,423		1,846,131
통학비		245,216	140,949	386,165
하숙비		81,000	6,000	87,000
합계	1,419,952	9,511,065	630,774	11,561,791

- 지원조건 :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교 및 통학차량 보유학교 인근 학교
- 지원내용 :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구 학생의 통학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통학버스를 제공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열악한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근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통합관리 실시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천원)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0,131,180		10,131,180
2013						11,561,791		11,561,791
(증△감)						1,430,611		1,430,611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교 / 대)	국비(백만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1 / 398					11,561,791		11,561,791
창원	14 / 16					579,522		579,522
진주	19 / 31					812,942		812,942
통영	9 / 12					454,876		454,876
사천	13 / 21					700,239		700,239
김해	8 / 11					350,467		350,467
밀양	13 / 23					642,117		642,117
거제	13 / 18					391,485		391,485
양산	3 / 3					52,659		52,659
의령	16 / 24					777,895		777,895
함안	11 / 19					606,209		606,209
창녕	19 / 28					638,063		638,063
고성	19 / 27					949,773		949,773
남해	16 / 27					548,652		548,652
하동	14 / 26					870,655		870,655
산청	15 / 25					730,876		730,876
함양	13 / 25					736,247		736,247
거창	15 / 32					949,286		949,286
합천	21 / 30					769,828		769,828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대)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1,086		61,086
'12	395					10,524		10,524
'13	387					11,562		11,562
'14	390					12,500		12,500
'15	393					13,000		13,000
'16	396					13,500		13,500

나. 통학비 및 하숙비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라 발생하는 폐지학구 학생 중 통학차량 이용이 비효율적인 경우 통학비(버스비, 택시비, 도선비 등) 또는 하숙비 지원
- 사업 규모(사업량) : 초등학교(통학비 : 21교 109명, 하숙비 : 11교 24명)
중학교(통학비 : 17교 177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실비 지급

(단위:천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합계
	통학비	하숙비	통학비	
금액	142,173	81,000	120,127	343,300

- 지원조건 :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지학구 학생
- 지원내용 :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구 학생의 통학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통학버스, 통학비, 하숙비 등을 지원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통폐합학교 통학버스(비) 지원비율	100%	100%	100%	100%	100%	통학버스(비) 지원학교/통폐합학교수	경상남도립 학교 설치조례

14. 제주특별자치도

<1-3-3-7.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제주)>

담당부서	친환경농정과	담당자	이 은 미
전화번호	710-3053	이메일	yiem@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p21)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및 경제활동 역량제고 지원

- 시설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 등 기능제고
- 도시 기업인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경영마인드 제고
- 창업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기법 전수 및 기술적 컨설팅 제공

2. 2012년말까지 추진 실적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계속) : 7개소 · 752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 시설개선 지원 : 3개소 · 1,000백만원
- 하원, 안덕(신축), 김녕(증축)

3. 2013년도 추진 계획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 8개소 · 929백만원

<도 추진>

- 1월 : 여성농업인 센터운영 지원사업 지침 마련(도 → 행정시)
- 4월 ~ 12월 : 지도점검(분기별)

<행정시 추진>

- 1월 : 사업계획 심사 및 대상자 확정
- 2월 ~ 12월 :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교부
- 익년 1월 : 정산보고(여성농업인센터→행정시→도)

4. 관련 사업 내용

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 사업지원대상 : 여성농업인센터 8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929백만원(분권교 316, 지방비 474, 자담 139)
- 지원조건 : 분권교 42.5%, 지방비 42.5%, 자담15%
-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등
 - 농업·농촌의 체험과 도·농교류사업, 농촌 소득증대사업
- 지원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639	113	752
2013						790	139	929
(증△감)						151	26	177

- '12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제주시	4개소					398	70	468
서귀포시	4개소					392	69	461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781	666	4,447
'12	7개소/6개소					639/588	113/104	752/692
'13	8개소					790	139	929
'14	8개소					784	138	922
'15	8개소					784	138	922
'16	8개소					784	138	922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여성농업인센터 계획대비 설치 비율	6	6	7	8	8	운영지원 센터 실적 (추진실적/설치계획)	내부자료